

연구보고서 2019-15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김기태
정은희·이주미·최준영·이병재·박은정·송지원

【책임연구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15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저자 김기태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발간사 <<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사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 교육, 주거 문제의 부담 수준이 높다는 인식도 크다. 특히 이러한 부담이 저소득층에 이르면 더욱 큰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언이 있다. 한때 시장방임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과 부유층에 부를 몰아주면 그 부가 저소득계층에도 흘러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그러졌다. 이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들도 지금과 같은 불평등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인식에서 등장한 것이 포용성장, 포용복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사회통합도 가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개선과 장기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증대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해소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첫째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일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핵심적인 생계비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독에 물을 채우는 데는 물을 더 많이 붓는 방법도 있겠지만, 물이 새는 구멍을 막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에 주목했다. 한국의 가계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가계의 지출 부담을 경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가계의 주거, 의료, 교육비 부담이다. 여기에 더해 주거와 관련된 가계의 부채비용도 고려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2019년 현재 1500조 원을 넘어섰다. 물론 이 가운데는 사업성 부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 가운

데 주거와 관련한 부채에 주목했고, 그 부채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가계가 지는 부담 수준을 고려했다.

한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 개념이 동원되며 가처분소득, 조정가처분소득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듯이 의료, 주거, 교육 등 가구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 및 재생산을 위한 지출을 감한 소득 개념은 정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가별로 의료, 교육, 주거 분야를 얼마나 공공화했느냐에 따라 개별 가구가 느끼는 부담 수준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전 세계에서 매우 부유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 미국에서는 의료를 공공화하는 데 실패하여 가구당 의료비 지출 수준이 매우 높다. 미국인의 평균적인 수명은 상대적으로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은 코스타리카와 비슷하거나 낮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복지국가가 개별 가구의 주거, 의료, 교육비 지출 수준을 얼마나 경감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그리고 한국 가구의 가처분소득에서 주거, 의료, 교육비 및 주거 관련 부채비용을 제한 잔여소득분을 '가용소득' 개념으로 제안했다. 가용소득 개념을 통해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한국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유형 가운데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에 속한 미국, 독일, 스웨덴의 가용소득 수준을 한국과 수평적으로 비교했다. 추가로 한국과 이웃한 일본의 가용소득 수준을 비교했다. 일부 분석 결과는 예상과 어긋났고 일부는 부합했다. 가용소득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새로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한국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5

〈제1부 서론〉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부 이론적 배경〉

제2장 가계소득 증대 및 지출 감소를 위한 논의의 배경	23
제1절 소득주도성장 논의의 등장	23
제2절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논의 및 가계지출 경감 정책	25
제3장 소득 관련 지표의 개념 및 논의	29
제1절 전통적인 소득 개념	29
제2절 가처분소득 이외의 소득 개념들	37
제3절 가용소득의 개념	42

〈제3부 주요국의 소비 여력 지표〉

제4장 일본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49
제1절 일본의 가계 소비 및 지출 특성과 배경	49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55
제3절 일본 가용소득 분석 결과	59
제4절 소결	72
제5장 미국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75
제1절 미국의 주요 사회보장 정책	76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80
제3절 분석 결과	88
제4절 소결	107
제6장 독일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113
제1절 독일의 가계 소비 및 지출 특성과 배경	113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33
제3절 독일 가용소득 분석 결과	140
제4절 소결	155
제7장 스웨덴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159
제1절 각 국가의 특성 및 배경	159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65

제3절 스웨덴 가용소득 분석 결과 170
제4절 소결 180

〈제4부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제8장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추이와 현황 185
제1절 한국의 소득 및 지출 수준과 사회정책 185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95
제3절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추이 199
제4절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현황 226
제5절 소결 240

〈제5부 결론〉

제9장 한국과 주요국의 소비 여력 지표 비교 247
제1절 5개국 비교 247
제2절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269

제10장 한국 복지국가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 279

참고문헌 291

표 목차

〈표 1-1〉 기존 연구 내용 비교	19
〈표 3-1〉 임대료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다른 정의	33
〈표 3-2〉 가구소득 개념의 다양한 구성	39
〈표 3-3〉 다른 소득 개념과 비교해서 본 가용소득 개념	44
〈표 4-1〉 한국복지패널과 일본가계패널조사의 표본 비교	55
〈표 4-2〉 표본 가구의 기초통계	56
〈표 4-3〉 한국복지패널과 일본가계패널조사의 변수 비교	57
〈표 4-4〉 일본가구패널조사 변수 활용	59
〈표 4-5〉 일본 가구 유형별 주요 지출과 가용소득(2017년)	60
〈표 4-6〉 일본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62
〈표 4-7〉 일본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64
〈표 4-8〉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전체-노인	66
〈표 4-9〉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청년-아동	68
〈표 4-10〉 일본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변화(2017년, 5분위)	70
〈표 5-1〉 한국복지패널과 미국의 소득패널(PSID) 변수 비교	83
〈표 5-2〉 분석에 사용된 가구 유형	86
〈표 5-3〉 분석 표본의 분포	87
〈표 5-4〉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89
〈표 5-5〉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	92
〈표 5-6〉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	96
〈표 5-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전체노인 가구	100
〈표 5-8〉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청년아동 가구	101
〈표 5-9〉 소득분위별 가용소득(5분위)	105
〈표 6-1〉 독일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1998~2017년)	117
〈표 6-2〉 독일의 의료보장체계(2014년)	124
〈표 6-3〉 주거수당 수급 기준: 임대료 등급에 따른 월 총수입	131

〈표 6-4〉 2013년 독일 소득 및 소비표본조사 EVS 표본 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징	135
〈표 6-5〉 한국복지패널과 독일 EVS의 변수 비교	135
〈표 6-6〉 2013년 독일 소득 및 소비표본조사 EVS 변수 정의	139
〈표 6-7〉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141
〈표 6-8〉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144
〈표 6-9〉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146
〈표 6-10〉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전체·노인 가구	149
〈표 6-11〉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청년·아동 가구	150
〈표 6-12〉 소득분위별 가용소득(5분위)	153
〈표 7-1〉 스웨덴 Hushållens utgifter 2012 표본 수	166
〈표 7-2〉 한국복지패널과 스웨덴 Hushållens utgifter의 변수 비교	168
〈표 7-3〉 스웨덴 Hushållens utgifter(HUT) 2012 변수 활용	169
〈표 7-4〉 스웨덴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2년)	171
〈표 7-5〉 스웨덴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2년)	173
〈표 7-6〉 스웨덴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2년)	175
〈표 7-7〉 주택 소유 형태 가용소득	177
〈표 7-8〉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변화(4분위)	179
〈표 8-1-1〉 한국의 소비지출 수준	189
〈표 8-2-1〉 한국복지패널 표본 수	196
〈표 8-2-2〉 한국복지패널 활용 가능 변수 검토	197
〈표 8-2-3〉 한국복지패널 활용 변수	197
〈표 8-2-4〉 가구 유형별 가구 구분	198
〈표 8-3-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변화	200
〈표 8-3-2〉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변화	204
〈표 8-3-3〉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변화	209
〈표 8-3-4〉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노인 가구) 가용소득 변화	213
〈표 8-3-5〉 주택 소유 유형별(청년 가구/아동 가구) 가용소득 변화	216
〈표 8-3-6〉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변화(5분위)	222

〈표 8-4-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227
〈표 8-4-2〉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229
〈표 8-4-3〉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231
〈표 8-4-4〉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아동 가구) 가용소득(2017년)	233
〈표 8-4-5〉 주택 소유 유형별(노인 가구/청년 가구) 가용소득(2017년)	235
〈표 8-4-6〉 소득분위별 가용소득(2017년)	237
〈표 9-1-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전체 가구)	248
〈표 9-1-2〉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아동 가구)	251
〈표 9-1-3〉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가구)	253
〈표 9-1-4〉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단독 가구)	255
〈표 9-1-5〉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부부 가구)	256
〈표 9-1-6〉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가구)	257
〈표 9-1-7〉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단독 가구)	259
〈표 9-1-8〉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부부 가구)	260
〈표 9-1-9〉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자녀 가구)	261
〈표 9-1-10〉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자가 가구)	262
〈표 9-1-11〉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임차 가구)	263
〈표 9-1-12〉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1분위)	264
〈표 9-1-13〉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2분위)	265
〈표 9-1-14〉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3분위)	266
〈표 9-1-15〉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4분위)	267
〈표 9-1-16〉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5분위)	268

그림 목차

[그림 1-1] 5분위 배율 변화 양상	14
[그림 2-1] 한국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	27
[그림 3-1]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산출 방식	37
[그림 4-1] 일본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추이(2004~2017년)	50
[그림 4-2] 일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61
[그림 4-3] 일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전체 가구, 2017년)	61
[그림 4-4] 일본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63
[그림 4-5] 일본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63
[그림 4-6] 일본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65
[그림 4-7] 일본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65
[그림 4-8]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2017년): 전체-노인	67
[그림 4-9]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전체-노인	67
[그림 4-10]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2017년): 청년-아동	69
[그림 4-11]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청년-아동	69
[그림 4-12] 일본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71
[그림 4-13] 일본 소득분위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71
[그림 5-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90
[그림 5-2] 가구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90
[그림 5-3]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93
[그림 5-4] 노인 가구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93
[그림 5-5]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96
[그림 5-6] 청년 가구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97
[그림 5-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전체 · 노인 가구	101
[그림 5-8] 주택 소유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전체 · 노인 가구	102
[그림 5-9]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청년 · 아동 가구	102
[그림 5-10] 주택 소유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청년 · 아동 가구	103

[그림 5-11]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106
[그림 5-12] 소득분위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106
[그림 6-1] 과세 및 공적이전 전후 순가구소득 지니계수	114
[그림 6-2]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vs. 시장소득 지니계수(2015년)	115
[그림 6-3] 독일 학제의 교육 연한	120
[그림 6-4] 독일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142
[그림 6-5] 독일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142
[그림 6-6] 독일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144
[그림 6-7] 독일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145
[그림 6-8] 독일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147
[그림 6-9] 독일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147
[그림 6-10]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전체·노인 가구	150
[그림 6-11]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전체·노인 가구	151
[그림 6-12]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청년·아동 가구	151
[그림 6-14] 독일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154
[그림 6-15] 독일 소득분위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154
[그림 7-1] 스웨덴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171
[그림 7-2] 스웨덴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172
[그림 7-3] 스웨덴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173
[그림 7-4] 스웨덴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174
[그림 7-5] 스웨덴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175
[그림 7-6] 스웨덴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176
[그림 7-7] 스웨덴 주택 소유 형태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177
[그림 7-8] 스웨덴 주택 소유 형태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178
[그림 7-9] 스웨덴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179

[그림 7-10] 스웨덴 소득분위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180
[그림 8-1-1] 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186
[그림 8-1-2] 5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 추이	187
[그림 8-1-3] 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188
[그림 8-1-4] 우리나라의 학제	190
[그림 8-3-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추이	202
[그림 8-3-2]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203
[그림 8-3-3]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 추이	206
[그림 8-3-4]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207
[그림 8-3-5]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 추이	211
[그림 8-3-6]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212
[그림 8-3-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추이(전체 가구/노인 가구)	218
[그림 8-3-8]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추이(청년 가구/아동 가구)	218
[그림 8-3-9]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전체 가구/노인 가구)	219
[그림 8-3-10]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청년 가구/아동 가구)	220
[그림 8-3-11]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추이(5분위)	224
[그림 8-3-12]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5분위)	225
[그림 8-4-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227
[그림 8-4-2]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228
[그림 8-4-3]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2017년)	229
[그림 8-4-4]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230
[그림 8-4-5]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2017년)	232
[그림 8-4-6]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232
[그림 8-4-7]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아동 가구) 가용소득(2017년)	234
[그림 8-4-8]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아동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2017년)	235

[그림 8-4-9] 주택 소유 유형별(노인 가구/청년 가구) 가용소득(2017년)	236
[그림 8-4-10] 주택 소유 유형별(노인 가구/청년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2017년)	237
[그림 8-4-11] 소득분위별 가용소득(2017년)	239
[그림 8-4-12]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239
[그림 9-1-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전체 가구)	249
[그림 9-1-2]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전체 가구)	249
[그림 9-1-3]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아동 가구)	251
[그림 9-1-4]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아동 가구)	252
[그림 9-1-5]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가구)	253
[그림 9-1-6]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노인 가구)	254
[그림 9-1-7]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단독 가구)	255
[그림 9-1-8]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부부 가구)	256
[그림 9-1-9]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가구)	257
[그림 9-1-10]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청년 가구)	258
[그림 9-1-1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단독 가구)	259
[그림 9-1-12]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부부 가구)	260
[그림 9-1-13]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자녀 가구)	261
[그림 9-1-14]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자가 가구)	262
[그림 9-1-15]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임차 가구)	263
[그림 9-1-16]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1분위)	264
[그림 9-1-1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2분위)	265
[그림 9-1-18]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3분위)	266
[그림 9-1-19]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4분위)	267
[그림 9-1-20]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5분위)	268
[그림 9-2-1] 한국과 OECD 회원국 교육비의 공적 지출 수준	270
[그림 9-2-2] 한국과 OECD 회원국 교육비의 사적 지출 수준	271
[그림 9-2-3] 가구 의료비	272

[그림 9-2-4] 공공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의 수준	274
[그림 9-2-5] 주거비 지출	275
[그림 9-2-6] 한국 및 OECD 회원국 자가 소유 비율	276
[그림 9-2-7]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277
[그림 9-2-8] 가구 순조정가처분소득	278
[그림 10-1] 분위별 주거비·의료비·교육비·부채비용 지출 비율(상: 한국I, 하: 한국II) ·	286
[그림 10-2] 가처분소득 및 가용소득 5분위 배율	287



Abstract <<

Analysis of Household Useable Income After Essential Expenditure

Project Head: Kim Ki-tae

Income distribution has consistently deteriorated since the 1980s in most of the welfare states,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capitalism.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IMF, OECD and ILO, have also expressed concerns over the widening income inequalities. Once championing the neo-liberalism, these organisations suggested measures against the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Inclusive growth (income-led growth) is the measure suggested in this background. The current South Korean administration has also implemented the wage-led growth policy since its inception in 2017. The wage-led growth policy has three pillars including increase in wages, strong social safety nets and reduction in household expenditure. This report focuses on the third element, because the wage-led growth could be fruitless without due control of household expenditure.

Given this, this report attempts to analyse the amount or ratio of the indispensable expenditure out of a household dis-

posable income. As we do not have any appropriate concept to measure the income level after deducting the core expenditure of households, we propose a new term ‘useable income.’ There are various concepts to measure a household income such as disposable income, market income, discretionary income²⁾ or adjusted disposable income, but none of them suits the concept of what this report tries to measure. Useable income here can be defined as “household disposable income let of essential living costs.” The essential expenditure in this report includes spending on four elements: 1) housing, 2) healthcare, 3) child rearing and education, 4)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for housing-related debt. This report measures the amounts or the ratio of the useable income over the last 11 years in Korea using the welfare panel. The analysis leads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old-age household, among various household types, has the lowest ratio of the usable income out of the disposable income mainly due to its housing and healthcare cost. Second, renter households spend relatively more on housing and owner households more on the repayment of their debt. The ratio of usable income is higher in owner households than renter ones. Third, 1st and 2nd quintiles bear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housing and healthcare cost than the rest. The

2) Discretionary income is similar with useable income in its definition, as it measures the amount of income after paying taxes and living cost. However, the term is used mainly to analyse consumer behaviour in economics, not to seek measures to reduce household’s financial burden.

relatively poorer groups spend relatively less on child rearing and education because they are mainly old-age households without children.

In addition, Korea's usable income is also compared with those of four other welfare states of US, Japan, Germany and Sweden. The comparison leads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housing expenditure is relatively smaller in Korea than those of the other states. There are several reasons such as the impact of the *jeonse* system, relatively low rent amounts in comparison with housing price, Korea's lowest charge on tap water and electricity. Second, South Korean household spend relatively high amounts on healthcare and education in comparison with other welfare states. It also should be noted that this report does not include private education cost of household as core expenditure. South Korean household bear the financial burden of child rearing and education while the burdens are negligible in Sweden and Germany.

*Key words: useable income, income-driven growth, household essential expenditure, disposable income



요약

이른바 복지국가의 황금이라고 일컬어지는 196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소득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90년대 IMF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지표가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주류 담론으로 등장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의 탈규제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합의 약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신자유주의가 경기침체와 불평등 심화라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소득 주도성장론이다. 현재의 불평등 수준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해야만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가능하고, 총수요 확대를 통해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2017년부터 유지하고 있으며, 세 가지 핵심 축은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 및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이 보고서는 이 가운데 두 번째인 가계지출 경감 수준에 주목했다. 가계의 소득 가운데 주거·교육 및 보육·의료 관련 핵심생계비 부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부담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해당 소득분에 대한 적절한 학술적 개념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가용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여기서 가용소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운데 주거, 의료, 보육,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거에 관한 지출에는 주택 소유 혹은 임차를 위한 부채 원금 상환액 및 이자액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가용소득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패널을 활용했다. 또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상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자료를 이용해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일본가계패널조사(JHPS/KHPS: Japan/Keio Household Panel Survey)를 활용하여 일본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주요 지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일본 전체 가구의 가용소득은 가처분소득 대비 74.2%로 주거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노인 가구는 77.7%, 청년 가구는 약 73.7%로 모두 70%를 넘은 반면, 아동 가구만 유일하게 70%에 미치지 못하는데, 아동 가구는 교육비와 주거 부채 상황에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소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용소득은 자가 가구가 임차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차이는 임차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자가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는 1분위의 가용소득 비율이 전체 가처분소득의 약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1분위의 주거비는 전체 가처분소득의 약 30%를 차지해 저소득층에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거비는 주요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주거보장에 대해 여전히 잔여적 경향이 강한 일본의 특성을 보여 준다(배준호 외, 2018, p. 662; 이태진 외, 2016, p. 101). 주거비 부담 문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 유형을 통틀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미국의 소득패널조사(PSID: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유형별, 주택 소유 유형별, 소득분위별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과 소비 여력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출 항목 중 주거비 지출이 모든 가구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주거비 부담률은 청년 가구에서 가장 높다. 청년 가구 유형 중에서는 청년 단독 가구, 노인 가구 유형 중에서는 노인 단독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다. 자가 가구는 주거비 지출 규모가 임차 가구보다 크지만 주거비 부담은 임차 가구가 3배 이상 더 크다. 이는 자가 소유 여부가 소득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하위 1분위는 자신의 소득 중 약 39%를 임대료 및 주거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주거비 지원 정책은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의 정책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축소하고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복지지출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가용 소득 수준이 낮아져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다른 항목들의 지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들은 가계의 가용소득을 높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 이를테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홈리스가 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정책 변화는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 핵심생계비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주거비와 주택 관련 부채가 분명한 역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지출이 많고, 주거 관련 부채비용 비율은 낮다. 둘째, 독일은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높으며, 주택 임대료가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소득이 낮은 임차 가구에는 주택 임대료 상승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의 부채비용 부담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는 가족 형성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중점적인 지원 방

안이 요구된다. 넷째, 노인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빈곤과 관련된 문제로, 1인 노인 가구 중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모든 소득분위에서 교육비 지출 격차가 거의 없었다. 이는 독일의 공교육 중심 무상교육 체계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 패키지 등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지적되고 있는 이분화된 보험 체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보험 보장성과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에서 체감하는 실질소득을 높이고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의료보장제도가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확대하지 않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또는 가용소득의 불평등은 가족 구조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사회임대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7장에서는 스웨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Hushållens utgifter 2012 (HUT, Household budget survey) 데이터를 통해 스웨덴 가구의 소비 수준과 가용소득을 확인,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관심사인 가구의 가용소득을 분석하기 위해 HUT 2012 데이터에서 스웨덴 가구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채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가구의 가처분소득에서 제하였다. 스웨덴 가구의 의료비, 교육비는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지출 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주거비는 최근 급등한 임대 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웨덴 전체 가구의 가용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거비였다.

스웨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은 77.4%로 한국 가구의 비율(약 8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세부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의료비(1.9%), 교육비(0.3%) 비율이 낮고 주거비(15.7%)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 비해 한국은 의료비, 교육비 항목에 지출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다. 스웨덴 가구의 가용소득을 가구 형태별로 살펴보면 스웨덴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다른 가구(아동 가구, 노인 가구)에 비해 낮은 편(76.8%)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가구가 지출하는 주거비의 비율이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높게 측정된 탓이다.

8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 2009~2017년 자료(5~13차)를 활용하여 한국의 소비 수준과 가용소득 실태를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약하면, 노인 단독 가구를 위해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노인 부부 가구에는 의료비,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는 교육비와 주택 관련 부채, 청년 단독 가구의 주거비와 안정적인 주거 지원, 아동 자가 가구의 주택 관련 부채 부담 완화, 1분위 소득계층에는 적절한 주거 환경과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의료 수요는 높지만 소득이 낮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 경감,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와 기준 임대료 인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9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4개의 국가와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비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주거·의료·교육 수준의 총량 지표들을 한국의 수준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9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한국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다른 국가에 견줘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 한국의 주택가격이 높은 편은 아니고, 둘째, 한국의 전세제도가 월세 부담을 덜어 주며, 셋째, 한국의 월세 부담 비율이 집값에 견줘서는 높지 않은 편이고, 넷째, 주거비의 일부인 수도광열비를 구성하는 전기료, 수도료가 한국에서 매우 낮은 편이며, 다섯째,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때문에 주거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 교육에 드는 지출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10장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의료, 교육 부문의 공적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것이 가계의 지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1~9장에 걸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며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주요 용어: 가용소득, 소득주도성장, 핵심생계비, 가처분소득

제 1 부 서론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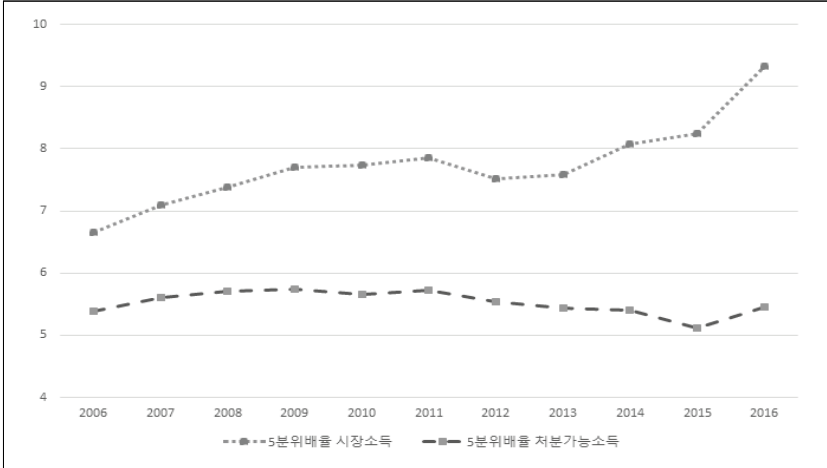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만들어 내면서 복지국가의 뼈대를 건설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소득분배 지표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시장 소득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1) 참조). 한국 경제는 오랜 기간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왔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성장률이 둔화하고,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중심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 사회계층에 골고루 전달되는,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 모델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며, 세계적인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도 현재의 소득불평등 수준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포용성장론' 혹은 '소득주도성장론'이 등장하고 있다. 포용성장론이나 소득주도성장론이 주장하는 내용의 결은 다소 다른 측면이 있지만, 핵심은 적극적인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14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그림 1-1] 5분위 배율 변화 양상



자료: 통계청 KOISIS,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각 연도,
(http://kosis.kr/kosisP_dev/search/search.do에서 2019. 10. 24. 인출)

물론 ILO가 주도하는 임금주도성장 전략이 지금까지 불평등을 초래해 온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에 비판적인 반면, OECD,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은 현재의 불평등이 신자유주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둔다(윤홍식, 2018).

한국에서도 2017년 이후 소득주도성장의 취지 아래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세웠다. 첫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둘째, 가계지출을 경감하는 동시에 셋째,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가운데 두 번째인 가계지출 부분에 주목한다. 시장에서의 분배 혹은 국가를 통한 재분배를 통해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필수적인 지출 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없고, 유효수요 창출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사회정책이 미성숙해 의료비 자기부담 수준 및 교

육비 부담이 높은 ‘고비용사회’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가구가 부담하는 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주거비 및 주거 관련 부채비용을 가구의 핵심생계비로 보고, 그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구의 가처분소득에서 의료·교육·보육·주거 관련 비용을 뺀 액수를 가용소득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 수준을 분석했다.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가용소득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구에서 핵심생계비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을 확인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가구 유형별, 소득 분위별 가용소득 수준을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주요 복지국가들의 가용소득 수준과 비교한다.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이며,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상대적으로 파악한다. 셋째,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에 대해 종적, 횡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가구의 실질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보고서는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들을 개관했다. 2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논의의 등장 배경을 세계적인 맥락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어떤 방식으

로 정책화했는지를 일람했다.

3장에서는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기에 앞서 가구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소득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가처분소득, 조정가처분소득, 사회임금, 재량소득 등의 개념을 살펴보고,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가용소득 개념이 왜 제시돼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4장부터 7장까지는 각각 일본과 미국, 독일, 스웨덴의 가용소득 현황 및 해석을 넣었다. 각 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해당 국가의 가구소득과 지출 수준을 일람한 뒤, 각국의 교육, 의료, 주거 관련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가 사회정책의 포괄성, 충분성이 가구의 핵심생계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으로 해당 국가의 가용소득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 및 변수를 밝힌 뒤에 가용소득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의 가용소득 분석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소결 형식으로 정리했다.

8장에서는 한국의 가용소득 추이 및 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한국의 소득 및 지출 수준과 의료·주거·교육·보육 관련 정책을 일람한 뒤, 자료 및 활용 변수를 설명하고, 분석 결과와 소결을 담았다. 분석 결과는 2009~2017년 사이 가용소득의 변화 양상을 짚었다. 또한 2017년 시점 기준으로 한국의 가용소득 내용을 가구 유형별, 분위별로 분석했다. 8장 4절의 한국의 가용소득 분석 내용은 4~7장의 국가별 분석 내용과 수평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담았다.

9장에서는 4~7장과 8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수평적으로 놓고 국가별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한국과 다른 4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가구 유형이나 분위에 따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며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한 가지 더 제시했는데,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전세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10장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며 그 결과가 가지는 한국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해 국내외 문헌 검토 및 원자료와 2차 자료 분석의 방법이 활용됐다.

먼저 소득주도성장과 가구소득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 관련 홈페이지를 활용해 문헌 고찰을 했다. 또 가용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비교 분석의 취지에 맞춰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자료 가운데 연구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선정했다. 한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일본은 일본가계패널조사(JHPS/KHPS: Japan/Keio Household Panel Survey), 미국은 미시건대학교의 소득패널(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독일은 독일연방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및 소비표본조사 EVS(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스웨덴은 통계청(SCB)에서 제공하는 Hushållens utgifter(HUT, Household budget survey)를 활용했다.

국가 간의 수평적 비교 연구를 위해 연구진은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국가의 자료에 제시된 변수들의 포함 및 누락 여부를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일부 국가의 자료에서는 다른 국가의 자료에서는 별도로 분류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테면, 일본가계패널조사에서는 공

교육비와 사교육비 항목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합쳐져 설문 문항으로 잡혀 있었다. 연구진은 숙고 끝에 일본 자료에서는 두 항목을 합한 교육비 자료를 공교육비 자료로 반영했다. 각국의 제도가 다르고 자료의 항목이 불가피하게 첨가되거나 누락된 변수가 일부 있었다. 개별 변수의 포함 및 누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9장에 명기됐다. 이 부분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겨 둔다.

아울러 연구진은 의료, 주거, 부채 영역에 관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3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숙고와 협의의 결과다.

3. 기존의 연구 동향

가구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소득분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표 1-1〉 참고).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개념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는 까닭에 이 보고서에서는 불가피하게 ‘가용 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이현주 외(2016)는 저소득층의 소비 특성과 빈곤집단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의 소비 경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 자체가 낮은 집단, 의료비 지출이 높은 집단, 교육비 지출이 높은 집단, 주거비 지출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됐다. 또한 저소득층의 부채 내용을 분석하면서 주로 식생활,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기초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 빚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의료·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현주 외(2016)는 빈곤층의 소득뿐 아니라 지출 내용 및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현주(2019) 역시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지출을 고려한 조정가처분소득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분야에서 가구지출 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정가처분소득을 통한 접근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 역시 이현주(2019)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한국 가구에서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적, 횡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표 1-1〉 기존 연구 내용 비교

구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이현주 외(2016), 저소득층 가구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 저소득층의 소득뿐 아니라 소비를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저소득층의 욕구와 미충족 위험 분석	분석 방법: 빈곤층을 중심으로 국민계정, 가계동향조사 자료, 가계금융복지 자료, 한국복지패널 자료 분석	저소득층 소비의 특성 분석. 소비에 대한 공적이전 소득, 실직 및 부채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소득층 생계형 부채가 생계에 미치는 악순환 고리 분석을 통해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제언.
	2 이현주(2019),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조정가처분소득의 의미 기초육구의 가구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한 분석	분석 방법: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분석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와 같은 기초육구 영역을 차감하여 조정가처분소득을 구성하며, 이를 통해 빈곤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소득빈곤과 지출 압박을 고려한 빈곤 모니터링 필요.
	3 석재은(2003)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 수준 연구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소득 수준 도출	분석 방법: 가구소비실태조사 분석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 차이 분석.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에서 차이. 이 연구의 대상인 '가용소득'과는 다른 개념.

석재은(2003)은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 차이를 비교 분석하면서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

하며 필요소득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가용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여분을 의미한다면, 필요소득 수준은 핵심생계비를 맞추기 위한 수준의 소득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재은(2003)은 가구의 핵심생계비 지출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에 따르면 노인의 필요소득 수준은 근로연령기 소득의 6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지출을 기준으로 역으로 필요한 소득 수준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 2 부

이론적 배경

제2장 가계소득 증대 및 지출 감소를 위한 논의의 배경

제3장 소득 관련 지표의 개념 및 논의



2

가계소득 증대 및 지출 감소를 위한 논의의 배경

제1절 소득주도성장 논의의 등장

1960~7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 이후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케인스주의가 1970년대 경제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자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담론으로 등장했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의 탈규제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지출 축소, 세금 삭감, 노동조합의 약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장기침체의 주범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했다(윤홍식, 2018).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의구심은 증폭됐다. 신자유주의적인 해법을 거치면서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심화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다시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성장으로 이어졌다(Lavoie & Stockhammer, 2013a). 이와 같은 결과는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분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소득주도성장론 혹은 임금주도성장론이 제기됐다. Lavoie & Stockhammer(2012)는 특히 분배정책을 ‘친자본적 분배정책’과 ‘친노동적 분배정책’으로 분류하고, 친자본적 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제도, 노동조합, 고용보호법을 약화시키는 일련의 정책들을 포함하며 노동시장 혹은 임금유연성의 증대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소득과세에 자본소득을 제외하거나 법인소득세를 내리는 등 자본과 부유층에게 친화적인 조치를 취하는 반면, 노동자의 임금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

다는 것이다. 반면, 친노동정책은 실업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액을 늘이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Lavoie & Stockhammer(2012)는 또 경제체제 유형을 이윤주도와 임금주도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이들은 소득분배가 이윤에 유리하게 바뀔 때 경제에도 유리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를 이윤주도 경제체제라고 설명하고, 반대로 불리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를 임금주도 경제체제라 일컬었다. 이러한 체제 유형은 앞서 살펴본 분배정책과 함께 결합하면 네 가지의 조합을 만들어 낸다. 그 가운데 이윤주도 경제에서 친자본 분배정책을 추구하면 이윤주도 성장 프로세스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모델을 Lavoie & Stockhammer(2012)는 “이론적 신자유주의”(p. 6)라 일컬었다. 반대로 전통적인 임금주도 경제에서 친노동 분배정책을 추구하면 임금주도성장 프로세스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전후 복지국가 시대의 모델인데, 여기에서는 실질임금의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다시 이윤을 높이면서 기업과 노동 모두에 혜택이 돌아간다.

Lavoie & Stockhammer(2012)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후자인 임금주도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확대하면서 유효수요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핵심으로 임금 증가를 제시한다.

ILO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접근이 자리 잡고 있다. IMF나 OECD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화의 첨병 역할을 했던 국제기구들도 불평등 및 빈곤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위협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한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돼야 하고, 성장의 결과가 더 고르게 분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의 접근은

여전히 성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현재 불평등과 장기침체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조와는 무관하다는 인식은 있다(윤홍식, 2018). 그런 점에서 이들과 ILO가 주로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론 혹은 임금주도성장론은 차이가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에서는 70년대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성장 전략이 불평등과 빈곤을 낳고 부채를 수반했다고 비판한다는 점이 차이이다(윤홍식, 2018). 따라서 소득주도성장론에서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달리 강력한 노동조합,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규제, 공적 인프라 확대, 임금 상승, 소득보장 정책의 확대를 주장한다(윤홍식, 2018).

물론 소득주도성장론에서 가구의 소득 증대를 통한 유효수요 확대라는 전략은 제시되지만, 가구소득 증대의 한 경로로 가구의 지출 경감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 듯하다(Lavoie, & Stockhammer, 2013b). 이 부분은 오히려 한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2절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논의 및 가계지출 경감 정책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틀을 갖추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이후 소득의 불평등도는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03년 11.1%에서 2018년 1/4분기에 13.7%로 증가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는 2003년 0.275에서 2018년 1/4분기에 0.328까지 뛰어올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 경제성장률은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10년 동안 연평균 8%를 넘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에는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성장은

국내 소비와 점차 더 무관해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민간소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노태우 정부 때 6.06%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 1.70%로 급감했다(한국은행, 2018; 윤희식, 2018 재인용).

이와 같은 상황은 과거의 대기업 및 수출주도성장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8). 즉,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증대가 투자를 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낙수효과가 약화하면서 전통적인 정책 기조가 기업과 가계 사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그리고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3중의 불균형'을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김태일(2018)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제시하는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한 성장의 경로를 정리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 증가가 다시 총수요 증대,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분배정책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불평등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장기적인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은 넓게 보면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에 해당된다. 셋째,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수요 증대도 필요하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수요 부족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가계의 소득 증대는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국정 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과 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8)으로 정의된다.

[그림 2-1] 한국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



자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누리집(http://www.ilg.go.kr/html/sub2_1.do에서 2019. 10. 31. 인출.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 가운데 주목을 끄는 지점은 ‘가계지출 경감 정책’ 부분이다([그림 2-1] 참조). 소득주도성장은 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으로 상징되지만, 이 부분은 소득 주도성장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가계지출 경감 대책이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주요한 축이 되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가계소득을 시장을 통해서 증대시켜도, 공공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가계의 지출 부담이 크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문제의식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2018)는 현재 가계지출의 35%가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점을 지적하며 가구의 핵심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핵심생계비가 줄어들면 여가·문화·자기개발 등에 쓸 수 있는 여분이 늘고, 그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를 늘려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시하는 지출 비용 경감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지고 있다(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8).

첫째는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이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역할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제시됐다. 둘째는 보육과 양육의 국가 책임 강화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등을 뼈대로 하는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이 세부적인 정책이다. 셋째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 호 공급, 주택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여 가계의 소비 여력을 증대하고 생활 수준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구에서 필수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요구된다. 다음 장에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소득 관련 지표의 개념 및 논의 <<

제1절 전통적인 소득 개념

가구소득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가구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조정가처분소득, 재량소득, 사회임금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장에서는 가구소득의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개념들이 포괄하려는 가구소득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 보도록 하겠다. 그에 근거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용소득의 개념과 의의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포괄적인 의미의 가구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가구소득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캔버라 그룹의 가구소득 정의는 다음과 같다(United Nations, 2011).

“가구소득은 한 가구 혹은 해당 가구의 성원이 일 년에 한 번 혹은 더 자주 받는 현금과 현물(재화 혹은 서비스)의 총합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부정기적이고 일회성으로 받는 액수는 제외한다. 가구소득은 현재의 소비를 위해 사용 가능하며, 가계의 순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창출되어서는 안 된다. 즉, 가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액을 줄이거나,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기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구소득은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하는 노동소득, 2) 자산소득, 3)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 내 생산을 통한 소득, 4) 이전소득을 포괄한다.”(pp. 9-10)

캔버라 그룹의 정의대로라면, 가구소득은 가구의 현재 소비를 위해 쓰일 수 있어야 한다. 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도 밝혔는데, 가구의 현금 적립액을 줄이거나 자산을 줄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식으로 생기는 수입은 제외한다.

국제노동기구 역시 200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에서 가구소득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ILO, 2003). ILO(2003)가 제시하는 가구소득의 정의 역시 캔버라 그룹의 정의와 유사하다.

“가구소득은 가구 혹은 가구의 성원들이 해마다 혹은 더 자주 정기적으로 받는 현금, 현물 혹은 서비스로 구성된다. 가구소득에서 부정기적으로, 가장 전형적으로는 일회성으로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가구소득은 현재의 소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18조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가구의 현금 자산을 줄이거나 다른 금융성 혹은 비금융성 자산의 처분을 통해 혹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구의 순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창출되서는 안 된다.”(p. 82)

ILO(2003)는 가구소득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정리했는데, 노동소득(income from employment), 자산소득(property income),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income from the production of household services for own consumption) 및 이전소득(transfers received)이다.

통계청(2015)은 캔버라 그룹과 ILO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가구소득을 여섯 개의 범주로 정리했다. 여섯 가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실물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다. 여기에는 ILO(2003)가 제시하는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은 누락돼 있는데,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평가에서 불가피하게 누락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ILO(2003)에서 제시하는 나머지 세 개의 기준은 두 개씩으로 나뉘어, 즉 노동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자산소득은 금융소득과 실물자산소득으로, 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2015)은 ILO(2003)와 캔버라 그룹(United Nations, 2011)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서, 여섯 가지 가구소득 범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근로소득(employee income)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이뤄진다. 1) 근무시간과 작업량에 따른 임금(wages and salaries),³⁾ 2) 현금으로 받은 상여금과 사례금, 3) 수수료와 봉사료, 4) 이사로서 일하면서 받은 소득, 5) 이윤분배 상여금 및 다른 형태의 성과금, 6) 연차휴가, 공휴일 또는 유급휴가 등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 주어지는 보수, 7) 자사주, 8) 고용주로부터 무상 또는 보조가격 형태로 주어지는 재화와 서비스 등이다. United Nations(2011), ILO(2003)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역시 가구소득에 포함하라고 밝히고 있으나, 통계청(2015)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내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있다.”(p. 12)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둘째, 사업소득(Income from self-employment). 통계청(2015)은 사업소득을 “주어진 조사 기간 동안 소유주나 동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

3)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누리집(kostat.go.kr/understand/info)을 보면 ‘wages and salaries’를 임금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번역하고,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서 받는 보수로,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salary’는 주급 혹은 월급으로 일정 기간의 노동에 대해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액수라는 의미에서 ‘봉급’이라는 표현이, ‘wage’는 시급 단위로 받는 액수를 가리켜서 ‘임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지만, 여기에서는 통계청이 제시한 표준용어를 따른다.

여 개인이 얻은 이익 혹은 손실”(p. 14)이라 정의했다. 물론, 대상자가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통계청은 소득의 결정 근거, 경제적 위험의 정도, 고용계약의 존재 여부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소득의 결정 근거 측면에서 피고용인인 노동자는 “일한 시간이나 생산한 양에 의해 소득이 결정”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이익에 의해” 소득이 정해진다. 사업소득의 종류로는 자영업의 순이익, 주택 및 건물 임대 수익, 장비 등의 임대 수익, 부업 활동으로부터의 수익, 작가의 인세와 저작권 소득, 발명가의 발명안 판매 소득 등이 포함된다.

셋째,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금의 합이다(통계청, 2015). 통계청(2015)은 ILO(2003)의 기준에 따라 이자와 배당금을 정의하는데,⁴⁾ 이자는 “은행(제2금융권 기관 포함)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국채, 회사채, 가구 외 개인에게 빌려준 대부금의 이자”(p. 17)로 정의되고, 배당금은 “직접 일하지 않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과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적보험에서 받는 연금”(p. 17)이다.

넷째, 실물자산소득은 임대료와 로열티로 구성된다. 임대료는 “토지와 같은 천연자원처럼, 생산되지 않은 실물자산 혹은 주택과 같이 생산된 실물자산을 임대하고 얻는 소득”이다. 로열티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나 발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다. 임대료의 ‘주택 및 건물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는 ILO(2003)와 통계청(2015)의 기준이 같

4) 통계청(2015)의 가구소득 구분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통계청은 금융소득(A1)을 이자(a1)와 배당금(a2)으로 정의하고, 실물자산소득(A2)은 임대료(a3)와 로열티(a4)로 정의하면서 ILO(2003)의 기준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ILO(2003)는 금융소득(A1)과 실물자산소득(A2)의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두 개념을 합한 자산소득(A)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통계청(2015)이 ILO(2003)의 기준을 따르는 대목은 자산소득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이자(a1), 배당금(a2), 임대료(a3) 및 로열티(a4) 각각의 개념 정의뿐이다. 이 개념들의 상위 개념으로 ILO(2003)는 자산소득(A)을, 통계청(2015)은 금융소득(A1)과 실물자산소득(A2) 개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린다. ILO(2003)는 이를 자산소득에 넣는 반면, 통계청(2015)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로열티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기준이 다른 점을 알 수 있는데, ILO(2003)가 로열티를 자산소득으로 간주하는 반면, 통계청(2015)은 로열티 가운데 본인이 생산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상속받은 내용에 대한 로열티는 실물자산소득으로 분류한다. 조금은 복잡한 두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 임대료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다른 정의

	ILO(2003)	통계청(2015)
주택 및 건물 임대료 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
인세, 저작권, 특허권 소득	자산소득	(본인 생산물이면) 사업소득 (상속받은 생산물이면) 자산소득

다섯째,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험금, 공적부조금, 정부보조금의 수령액 합”(통계청, 2015, p. 18)이다.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유형을 1) 퇴역 군인이나 전직 공무원, 국가 유공자, 체육인, 국민연금 수혜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 2) 정부보조금, 3) 농림수산물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지자체 지급 출산장려금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패널에서는 명시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1) 사회보험(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액, 2)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3)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장애수당,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농어업정부보조금, 긴급복지 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혹은 보조, 통신 및 감면 혹은 보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 가지 주의할 대목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물이나 서비스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다(ILO, 2003; United Nations, 2011). 그러나 소득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는 현물과 서비스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ILO, 2003). 이 점은 다음에 다루게 될 사적이전소득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섯째, 사전이전소득은 비영리기관이나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을 가리킨다. ILO(2003)는 1)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기관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받는 장학금, 노조파업금, 의료보조금, 생계보조금 등과 같은 정기적인 기부금이나 보조금”(p. 83)과 2) “사적으로 받는 생계지원금(양육비, 생활비 등), 유산이나 기금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 기타 정기적으로 받는 기부금이나 보조금”(p. 19)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애경사에 받는 부조금은 부정기적인 성격을 가진 비경상소득이므로 사전이전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범주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도 있다. 첫째, 앞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income from the production of household services for own consumption)은 원칙적으로는 가구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소득의 조작적 정의에서는 제외된다(United Nations, 2011; 통계청, 2015).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imputed rent of owner-occupied dwellings)다.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는 “거주 공간을 소유해서 얻게 되는 주거서비스 순가치의 추정액”(United Nations, p. 14)으로 정의된다. 풀어서 표현하자면, 해당 주

택을 만약 임대했다면 내야 하는 임대료의 가치를 말한다. 다만,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에 ‘순가치’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는 주거서비스의 가치에서 집의 수리비나 관련된 이자비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United Nations(2011)나 ILO(2003) 모두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를 가구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계청(2015)은 해당 변수를 가계금융조사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셋째, 가구 성원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unpaid domestic service)나 가구 내구재의 서비스(services from household consumer durables)도 제외된다(통계청, 2015). 전자는 가구 성원이 가구 내에서 제공하는 요리, 청소, 보육과 같은 서비스를 가리키고, 후자는 자동차나 세탁기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가리키는 데, 두 가지 모두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기준들에 따라, 가구소득은 크게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측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득 범주들을 다른 지출 개념들과 함께 가감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소득 개념이 제시된다(ILO, 2003; United Nations, 2011; 통계청, 2015). 참고로 지출은 흔히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뉘고, 비소비지출은 다시 사회보장분담금(공적연금, 사회보험) 및 조세, 기타 비소비지출로 나뉜다. 이를 포함한 소득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고용소득(income from employment)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생산소득(income from production) = 고용소득 +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
- 주소득(primary income) = 생산소득 + 금융소득 + 실물자산소득
- 총소득 (total income) = 주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 총소득 - 사회보장 부담금 - 조세 - 기타 비소비지출

○ 조정가처분소득(adjusted disposable income) = 가처분소득 + 현물공적이전소득 + 현물사적이전소득

위의 개념들 가운데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이나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들은 개별 가구 단위에서 계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소득과 같은 개념들은 국민계정에서 사용하는 소득 개념이다. 따라서 주소득을 포함하는 총소득과 같은 개념들을 추정할 때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이나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 등의 조작적 정의가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ILO(2003)는 명시하고 있다. ILO(2003), United Nations(2011)가 제시하는 개념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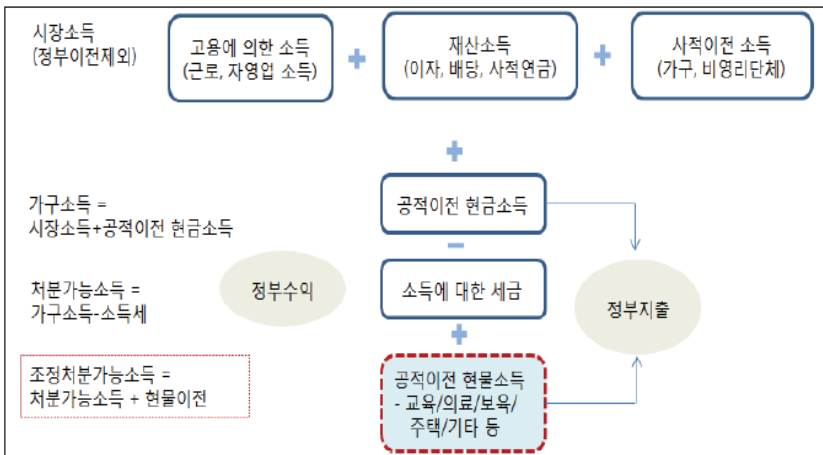
앞서 제시한 대로, 가내 소비를 위한 생산이나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 같은 개념들은 국민계정에서 주로 활용 가능하다. 국가 단위의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나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을 추정하면서 주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별 가구 단위에서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나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의 가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⁵⁾ 따라서 통계청이 산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나 복지패널 등에서는 이와 같은 통계를 산출하지는 않는다.

5) 물론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의 가구별 소득과 생활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4년마다 실시하는 유럽공동체 가구패널조사(EU-SILC)(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에서는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나 자가 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화의 가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의 측량 방식에 대한 것은 이 보고서의 연구 내용을 벗어나므로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제2절 가처분소득 이외의 소득 개념들

위의 개념들은 모두 가구의 소득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저마다 포획하는 가구소득의 수준이 있다. 이 가운데 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총소득 가운데 세금, 사회보험료, 기타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가구가 소비의 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표 3-2〉 참조).

[그림 3-1]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산출 방식



자료: 유경준, 김서영, 홍경희. (2018). 그림 2.1 가구소득의 구성 및 조정처분가능소득.

그러나 가처분소득도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현주, 2019). 동일한 가처분소득을 가진 두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두 집의 실생활에서 욕구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중위 40~50%인 가구의 균등화된 월평균 월세는 0원에서 42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며, 의료비 지출액도 매달 0원에서 최대 90만 원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이현주, 2019).

이와 같은 가치분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는 개념이 조정 가치분소득(adjusted disposable income)⁶⁾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미리 밝혀 두자면, 조정가치분소득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를테면,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치분소득을 균등화한 결과를 가리키기도 한다(Smeeding, 2002; Smeeding & Sandstrom, 2005).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조정가치분소득은 흔히 가구의 가치분소득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값을 더한 개념이다. 여기서 포함하는 서비스의 영역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의료, 교육, 주거 등을 포괄하는 현물 및 서비스(OECD, 2019)를 가리키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의료와 교육(Hoeller, Joumard, Bloch, & Pisu, 2012)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통계청(2018) 역시 같은 의미의 ‘조정처분가능소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을 포함한 소득통계를 제시했다.⁷⁾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국가 및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p. 1)이다. 통계청은 복지지출 규모가 크거나,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거나, 서비스의 가치 추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서비스 부문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6개 분야를 포함했다.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및 기타 바우처 등이다. 기타 바우처에는 노인 돌봄, 산모·신생아 관리, 장애인 활동 지

6) 이현주(2019)는 조정가치분소득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의미는 “가치분소득에 현물 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을 가산한” 값이고, 두 번째 의미는 “가치분소득에서 주거비와 같은 기초육구 영역의 가구지출을 차감”한 값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소득만 조정가치분소득이라고 쓴다.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루게 될 ‘재량소득’ 혹은 ‘가용소득’이라 명명할 것이다.

7) 통계청(2018) 등에서는 가치분소득 대신 처분가능소득이라는 표현을 쓴다. 마찬가지로 조정가치분소득 대신 조정처분가능소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가치분소득은 처분가능소득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원, 가사·간병 지원 등 10개 사업을 포함했다. 즉, 이러한 부분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에 해당되거나 해당 내역에 대한 지출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조정처분가능소득은 <표 3-2>와 같이 제시된다. 조정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표 3-2> 가구소득 개념의 다양한 구성

근로소득	고용소득	생산소득	주소득	총소득	세금, 사회보험료, 기타 비소비지출	
사업소득					가처분 소득	조정 가처분 소득
자가의 유추된 임대료						
자가 소비 위한 생산						
금융소득						
실물자산소득						
현금공적이전						
현금사적이전						
현물공적이전						
현물사적이전						

자료: 통계청. (2015). 이용자용통계정보보고서_가계금융복지조사 표 3-5. (p. 22).

조정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한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은 상당히 완화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2018)에서 보면, 현물이전소득이 1분위에서 2016년 기준 523만 원이 발생했지만, 5분위에서는 403만 원이 발생했다. 저소득층이 공적 서비스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고, 이를 고려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 수준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357인 반면,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7로 크게 떨어진다(통계청, 2018). 조정처분가능소득은 공적이전이 그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얼마나 완화했는지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반면,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심화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을 다소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조정처분가능소득 개념을 활용하는 데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조정처분가능소득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회임금은 노동자가 기업에서 얻는 시장임금과 대비되며, 국가가 재분배를 통해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의 총액을 가리킨다. 사회임금은 종종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에서 노동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한 액수를 가리킨다(Maniatis, 2003). 북유럽은 노동조합이 자본과의 협상을 통해 시장임금 수준을 정하고,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사회임금을 조정해 왔는데, 두 가지의 타협이 연동해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Kiander et al., 2011). 북구 복지국가의 높은 수준의 사회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 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활성화했다.

오건호(2009)는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이 총가계운영비의 7.9%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영국(25.5%), 일본(30.5%), 프랑스(44.2%), 스웨덴(48.5%)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건호(2009)는 사회임금이 작을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불안 위험은 커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임금은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측량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미래 과제로 남겨 둔다. 사회임금을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조정가처분소득 개념을 이해하는 데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조정가처분소득이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조정가처분소득이 제시하는 대로, 교육이나 의료 등의 영역에서 국가가 급여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면 가계의 지출 부담이 줄고, 따라서 가계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사회임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의료보장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의료비의 자기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을 통해 받는 의료비 혜택만 소득으로 넣고 개인부담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의료비와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가처분소득이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조정가처분소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재량소득(discretionary income)이다. 재량소득은 “모든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가구에 남은 소득분”(Linden, Green & Coder, 1988)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지출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한 측면은 있다. 이를테면, Dolnicar et al.(2008)은 재량소득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필수품’(essentials)을 제외한 지출을 위한 소득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필수품의 예로 식료품과 주거를 들었다. 다만, 재량소득의 개념은 주로 마케팅이나 소비자행동학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량소득의 개념은 가계의 생활 수준 향상이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사회정책학적인 맥락이라기보다는 소비자 행태 분석을 통한 마케팅의 목적에 사용된다. 재량소득 기준의 재분배효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이유다.

가처분소득에서 필수품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접근이 일부 있다. 영국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에서 저소득 가구 통계를 생산하면서 주거비용을 제외한 가구소득(after housing cost income)을 뽑아 빈곤율이나 소득 불평등의 지표 산출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의료서비스가 무상이고 대학을 제외한 공교육이 대부분 무상인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만을 제한 액수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을 한국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제3절 가용소득의 개념

지금까지 전통적인 소득 개념과 아울러 가처분소득과 조정가처분소득, 사회임금, 재량소득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모두가 가구의 소득 수준을 측정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계도 있다. 총량 관점에서 통계를 산출하는 국민계정에서도 처분가능소득 및 조정처분가능소득 개념까지 집계하지만,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차감한 액수를 산출하지는 않는다(한국은행, 2015).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소득 개념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하며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가용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한국 가구의 소득 수준을 측정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소득 개념에서는 필수적인 소비 항목, 이를테면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제외한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가처분소득이 가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소득분을 ‘가처분’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 및 의료, 교육은 가구의 생계 및 재생산을 위

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항목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정가처분소득이나 사회임금으로는 공공을 통한 가구의 소득 증가분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개념으로는 복지국가의 미비로 인해 생기는 가구의 소득 부담분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이 가구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념이 유용하지만, 반대로 건강보험의 한계가 가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 그래서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한국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1990년대에 뼈대를 잡은 뒤 지속적으로 질적 개선과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 상승에 따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 미비로 인한 개인부담 비율이 높다.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 및 대학교 등록금 부담이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의료 및 교육서비스가 가계의 부담을 대부분 덜어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스웨덴에서 동일한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가진 가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거·의료·교육 등 필수 지출 항목을 통제할 다음의 소득 수준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가용 소득 기준 소득 수준 측정이 필요하다.

가용소득의 개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용소득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주거, 의료, 보육,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거에 관한 지출에는 주택 소유 혹은 임차를 위한 부채 원금 상환액 및 이자액을 포함한다.

44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표 3-3〉 다른 소득 개념과 비교해서 본 가용소득 개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가임대료, 금융소득, 실물자산소득, 현금이전소득 등	총소득	세금, 사회보험료 등		
		가처분소득	조정가처분소득	필수 소비 항목 (주거, 의료, 교육 등)
현물이전소득	현물이전소득			가용소득
				현물이전소득

자료: 통계청.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통계정보 보고서. p. 99. 〈표 3-5〉를 변용함.

가용소득이 어디까지 포괄하는지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어디까지가 필수적이냐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가용소득과 가장 유사한 개념인 재량소득을 연구하는 사람들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다. “누군가에게 사치재가 되는 것은 다른 이에게는 필수품”(Linden et al., 1988, p. 7)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주거비를 핵심생계비로 포함했다. 주거비에는 월세 외에도 주거 관리비와 수선비, 광열수도비를 포함했다. 주거와 관련한 부채도 고려해 주택 관련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도 포함했다.

의료비도 핵심생계비에 넣었다. 보건의료비에는 입원비와 외래의료비를 비롯한 약값, 간병비, 건강진단비 등을 포함했다. 의료와 관련한 지출 가운데 민간의료보험비는 의료비에서 제외했다. 한국인의 66.3%가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점과 2014년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가 3조 5천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오승연, 2015), 보험료 부담 및 보험 혜택이 두루 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손보험의 보험료 부담액과 이로부터 받는 의료비 혜택에 대한 국내외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공교육비만을 포함했다. 사교육비가 한국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하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가구의 필수 지출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교육비 지출의 가격 탄력성이 2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우천식 외, 2004) 사교육비는 핵심생계비 항목에서 제외했다. 반면, 보육비는 포함했다.

앞서 밝힌 대로, 부채 가운데 주택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핵심생계비에 포함했다. 다만, 기타 부채와 관련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제외했다. 기타 부채에는 사업성 부채가 포함됐는데, 이를 핵심생계비로 보기는 어려웠다.

식비와 교통·통신비는 잠정적으로 핵심 생계비에서 제외했다. 물론 두 지출 영역이 가구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주거, 의료, 교육 및 보육 영역이 사회정책 개입의 여지가 있는 분야인 반면, 두 영역은 정책 개입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 두 영역을 포함한 핵심생계비 측정과 그에 따른 가용소득 측정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이 부분은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 개입 및 그에 따른 재분배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의료·교육·보육 영역에 한정해서 한국의 가용소득 변화 양상 및 한국과 주요 복지국가의 비교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제 3 부

주요국의 소비 여력 지표

제4장 일본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제5장 미국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제6장 독일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제7장 스웨덴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4

일본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

제1절 일본의 가계 소비 및 지출 특성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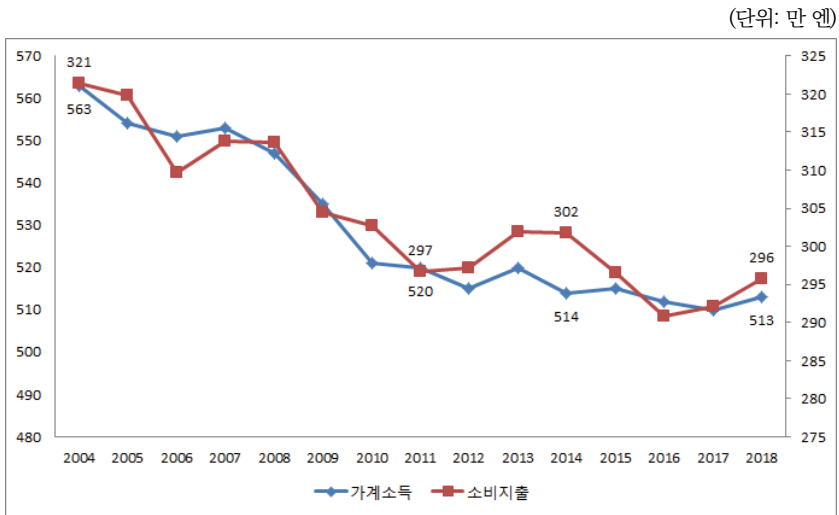
1. 일본 가구소득과 지출 수준

일본은 200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최근까지 일본 경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곧 경제 주체의 고령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전체 가계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킨다(한국은행, 2018, p. 3). 인구의 고령화가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부담금이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일본의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여전하지만, 지난 20년간 연금·보험소득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것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제자리걸음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게 만들고 있다(한국은행, 2018, pp. 5-6).

일본의 소비지출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가계소비지출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은행, 2017, p. 2). 고령층은 의료 및 간호 등을 대비하여 소비지출에 신중해지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의 경우 고령층의 소비가 위축되면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무직 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도 가구의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해 비관적인 청년층 또한 소비 성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은행, 2017, p. 4). 장년층의 경우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 증가로 소비 여력이 감소되었고 이 때문에 향후 소비 확대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한국은행, 2017, p. 5).

[그림 4-1] 일본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추이(2004~2017년)



주: 전체 가구(Total households) 기준.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홈페이지 <https://www.e-stat.go.jp>에서 2019. 10. 21. 인출.

[그림 4-1]에서는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에서 발표한 2004~2018년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추이를 보여 준다. 2004년부터 소득과 지출 수준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 수준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정체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소비지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구간별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2018)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활발한 사회활동과 자산 축적으로 구매력을 갖춘 고령층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한국은행,

2018, p. 17), 향후 소비지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청년층과 장년층의 소비지출이 회복되지 않고,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거시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한국은행, 2018. p. 21).

2. 교육, 의료, 주거 관련 정책

가. 교육정책

일본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학 전 교육(유치원 또는 보육원)-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 및 대학원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김미숙 외, 2016, p. 30). 이는 일본의 학제 과정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및 정책의 바탕이 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김미숙 외, 2016, p. 56). 일본의 초등학교는 소학교(小學校)라 지칭하며 6년제의 의무교육과정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교육 과정으로 묶여 있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사립중학교의 경우 아직 입학시험제도가 남아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고등학교는 3년제로 일반계, 직업계 등으로 구분되며 직업기술 또는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교양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 고등학교 3년과 대학 2년의 과정을 통합하여 이론 학습과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하는 고등전문학교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등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2년 또는 3년제의 단기대학(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미숙 외, 2016, p. 30).

일본의 의무교육은 중학교 과정까지 보호하고 있다(김미숙 외, 2016,

p. 109). 의무교육에서는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통학비와 급식비 등은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유아교육을 의무화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원 확보 문제로 인해 도입이 미루어지고 있다(김미숙 외, 2016, p. 109). 실제로 아베 정권은 무상교육 제공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헌법 개정 중 무상교육을 주요 내용에 포함하여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고등학교 수업료까지는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교육비에 대한 일본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출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향후 고등교육까지 무상화가 실현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유아교육의 경우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지영, 윤종혁, 정은하, 2017, p. 7).

나. 의료정책

일본의 의료제도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 공급을 담당하고 재원은 공공 영역에서 지불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배준호 외, 2018, p. 456), 일본 의료제도의 발전은 일본 의료체계의 기본이 되는 「의료법」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의료법은 1948년에 제정되어 전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배준호 외, 2018, p. 458), 지금까지 총 6차까지 개정되었다. 의료법은 일본 의료계의 인적 자원, 시설과 기기, 의약품 등 매우 상세한 법을 다루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본 의료정책을 의료보장 측면에서만 살펴본다.

일본의 의료보장은 주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건강보험과 개호(介護)보험, 노재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준호 외, 2018, p. 489). 의료보장은 일본 전 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수급자는 의료부조를 수급하고 있다(배준호 외, 2018, p. 491). 1920년대 출범한 건강보험은 제도 초기 피보험자가 국민의 3%에 불과하였으나 1960년대 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으로 확장되었고 「노인복지법」, 「건강보험법」, 「고령자의료확보법」 등의 법 개정으로 현재의 안정적인 건강보험으로 정착되었다(배준호 외, 2018, p. 495).

일본의 의료보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1973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 의료비의 무료화가 시행되었으나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또한 증가하여 1982년 「노인보건법」 개정으로 다시 노인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간호제도 개편으로 수발간호와 개호 관련 급여가 개혁되었다. 2000년부터 도입된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건강정책이다. 이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고,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와 부양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6년에는 「고령자의료확보법」이 제정되면서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시행되었다(배준호 외, 2018, pp. 493-494).

이 외에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부조,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임금을 보상하는 노재보험 등이 일본 의료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주거정책

최근 들어 주택보장과 주거서비스가 사회보장 영역으로 인식되어 우리

나라의 경우 주거급여를 포함한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실질적인 주거보장을 실시하지 않았다(배준호 외, 2018, p. 661). 국가가 보장하는 영역은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중위생과 의료 등으로 제한되었으며 주택과 주거서비스, 취업과 고용 등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으로 강조되었다(배준호 외, 2018, p. 662).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주거정책이나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보장 수준이 취약하다. 일본의 주거보장은 공영주택 보급, 주택부조 등으로 한정적이었으나 2006년부터 주거정책이 사회보장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주택안전망 개념이 도입되었다(배준호 외, 2018, p. 675). 2007년 「주택안전망법」이 제정되면서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발맞춰 임대료 보조와 주거급여 강화 등이 시행되었다(배준호 외, 2018, p. 676).

일본의 주거보장은 크게 공영임대주택 보급과 임대료 보조로 나눌 수 있는데 공영임대주택 보급은 주택 확보의 어려움, 주거 빈곤 등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낮은 임대료의 공영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배준호 외, 2018, p. 676). 임대료 보조는 전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주거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배준호 외, 2018, p. 679). 최근 들어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신혼 가구나 대가족 가구 등 지역 주민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여 주거비 지원 외에 이사비 지원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배준호 외, 2018, p. 680).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 분석 자료의 특성

일본가계패널조사(JHPS/KHPS: Japan/Kieo Household Panel Survey)는 일본 사회 전체의 인구 구성과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패널조사이다. 게이오가계패널조사(KHPS)는 2004년부터, 일본가계패널조사(JHPS)는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두 조사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두 개의 조사는 유사한 내용을 표본만 달리하여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었으며, 표본 수가 증가하면서 표본 유지율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얻었다.

〈표 4-1〉 한국복지패널과 일본가계패널조사의 표본 비교

(단위: 가구)

연도	한국복지패널			일본가계패널조사		
	원가구	추가 가구	합계	KHPS	JHPS	JHPS/KHPS
2004	-	-	-	4,005	-	-
2005	7,072	-	-	3,314	-	-
2006	6,580	-	-	2,887	-	-
2007	6,314	-	-	4,062	-	-
2008	6,207	-	6,207	3,691	-	-
2009	6,034	-	6,034	3,422	4,022	7,444
2010	5,735	-	5,735	3,207	3,470	6,677
2011	5,732	1,800	7,532	3,030	3,160	6,190
2012	5,619	1,693	7,312	3,877	2,821	6,698
2013	5,438	1,610	7,048	3,586	2,581	6,149
2014	5,343	1,571	6,914	3,312	2,358	5,670
2015	5,189	1,534	6,723	3,124	2,198	5,322
2016	5,081	1,500	6,581	2,945	2,048	4,993
2017	4,997	1,477	6,474	2,741	1,885	4,626

자료: 한국복지패널(2006~2017) 및 일본가계패널조사(2004~2017) 원자료.

국내의 대표적인 패널 조사인 한국복지패널과 표본 수를 비교해 보면 <표 4-1>과 같다. 일본가계패널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며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배우자에게도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최종적으로 조사된 가구는 총 4626가구이지만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3237가구이다. 이것은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되는 소득, 지출, 주거 형태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를 제외한 숫자이다. <표 4-2>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 가구의 기초통계를 보여 준다. 응답자(respondent)의 성별은 남녀가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응답자 연령을 보면 주로 중고령층 이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표본 가구의 기초통계

(단위: 명 또는 가구, %)

구분		N	%
응답자 성별	남	1,614	49.9
	여	1,623	50.1
응답자 연령	만 34세 이하	142	4.4
	만 35~49세 이하	204	6.3
	만 50~64세 이하	1,795	55.4
	만 65세 이상	1,096	33.9
가구 규모	1인	374	11.5
	2인	924	28.5
	3인	779	24.1
	4인	717	22.2
	5인 이상	443	13.7
주거 형태	자가	2,614	81.2
	임대	606	18.8
계		3,237	100.0

주: 1) '가구주'가 아닌 '응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가계패널조사는 가구주(household)를 지정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는 가구원(respondent)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임. 그러나 대부분 가구주가 응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가구는 소득, 지출, 부채, 주거 형태 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하고 총 3237가구임.

3) 주거 형태는 무응답(또는 모름) 17가구가 제외됨.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 (2018). JHPS/KHPS 2017 raw data.

2. 활용 변수

일본가계패널조사의 조사 내용은 소득 및 지출, 고용, 주거, 교육, 건강·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의 한국복지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연구의 분석에서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주거, 의료, 교육 분야의 주요 지출, 주거 관련 대출에 대한 변수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해당 변수는 모두 조사되고 있음을 <표 4-3>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을 보면 한국복지패널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일본은 구분 없이 교육비 전체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채 또한 부채 총액과 주거 관련 부채만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표 4-3> 한국복지패널과 일본가계패널조사의 변수 비교

구분	한국복지패널(2017)	일본가계패널조사(2017)
지출	식료품비	식료품비(외식, 학교급식 따로)
	월세	주거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리비
	광열수도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가사용품비(디지털 가전제품 따로)
	보육료비	-
	피복신발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교통비
	통신비	통신비(우편+인터넷)
	기타 소비지출	기타
	사적이전지출	사적이전지출(용돈 따로)
	세금	-
	사회보장부담금	-

58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구분	한국복지패널(2017)	일본가구패널조사(2017)
소득	경상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주거 관련	주택 가격	주택 가격
	1년간 총 원금 상환액(가)	1년간 총 주거 관련 대출 상환액
	12월 31일 기준 주택 관련 부채액(나)	주거 관련 총부채액(잔액)
부채	금융기관대출	부채 총액 (주거 관련 부채 제외)
	일반 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 돈)	
	외상, 미리 탄 깻돈	
기타 부채		
이자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
	기타 이자	-

자료: 한국복지패널 및 일본가구패널조사 조사표(2017년 기준).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는 <표 4-4>와 같다. 먼저 주거비는 월세 등의 기본적인 주거비 지출에 광열수도비, 보수유지비를 합한 금액을 도출하였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세부 항목 구분 없이 총액을 조사하고 있어 그대로 활용하였고 부채는 주거 관련 대출상환액, 가처분소득은 1년간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annual take-home income)을 사용하였다. 가용소득은 모든 주요 지출과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와 의료비, 주거비, 주거 관련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모든 소득과 지출 변수에는 가구균등화를 적용하였다.

〈표 4-4〉 일본가구패널조사 변수 활용

구분	변수 정의
주거비	월세 등+광열수도비+보수·유지비(천 엔/월)
의료비	의료비 총액(천 엔/월)
교육비	교육비 총액(천 엔/월)
주거 관련 부채	주거 관련 부채(만 엔/년)÷10엔÷12개월
가처분소득	작년 가처분소득(만 엔/년)÷10엔÷12개월
가용소득	가처분소득-(주거비+의료비+주거비+주거 관련 부채)

제3절 일본 가용소득 분석 결과

1. 가구 유형별 분석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 지표(가처분소득, 가용소득)와 주요 지출(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 관련 부채)의 수준을 가구 형태별·주거 형태별로 분석해 보았다(〈표 4-5〉 참조). 먼저 일본 전체 가구의 가용소득은 74.2%로 한국(2017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분석 결과 80% 내외)에 비해 약 5%포인트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주거비와 주거 관련 부채가 한국보다 2배 정도 많게 분석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⁸⁾

8) 2017년 전체 가구 기준으로 한국은 주거비가 6.0%, 주거 부채가 4.2%, 일본은 주거비가 12.6%, 주거 부채가 7.8%로 나타났다.

60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표 4-5〉 일본 가구 유형별 주요 지출과 가용소득(2017년)

(단위: 천 엔/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청년 가구	전체 가구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청년 가구
주거비	30.6	28.1	28.3	28.3	12.6	12.8	12.8	10.8
의료비	7.4	4.9	8.9	6.6	3.0	2.2	4.0	2.5
교육비	5.8	11.7	2.1	11.0	2.4	5.3	1.0	4.2
주거 부채	18.9	27.6	9.8	22.8	7.8	12.6	4.5	8.7
합계	62.7	72.2	49.1	68.8	25.8	32.9	22.3	26.3
가용소득	180.6	147.6	171.3	192.6	74.2	67.1	77.7	73.7
가처분소득	243.3	219.9	220.4	261.4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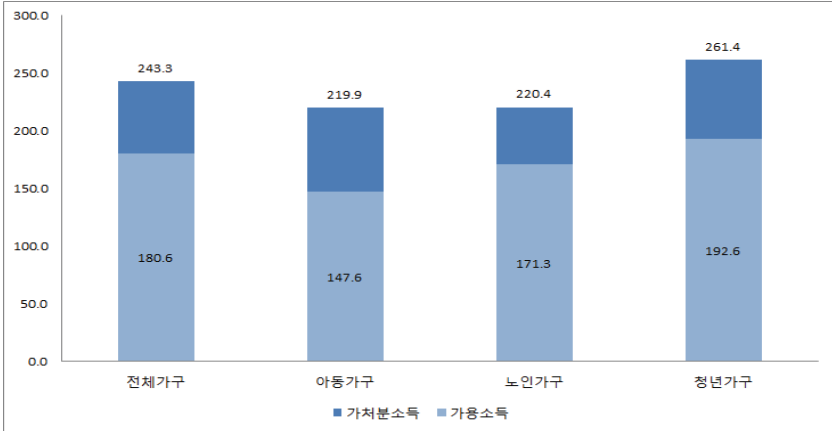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전체 가구와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이 74%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노인 가구는 77.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아동 가구만 유일하게 70%에 미치지 못하는데, 아동 가구는 교육비와 주거 부채 상황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보다 가처분소득 자체는 낮지만 의료비 외에 교육비, 주거 부채의 지출 수준이 낮아 가용소득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가용소득 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주거비와 의료비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교육비와 주거 부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를 제외한 3가지 유형의 가구 형태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아동 가구는 교육비와 주거 부채의 부담이 크고, 노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크다.9)

9) 이 연구의 일본 가용소득 분석에서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가중치를 제공하지 않아 위 분석 결과가 일본 전체 가구의 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OECD(2018)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가처분소득은 우리나라보다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발표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가처분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오며, 이것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일본 총무성(2018)에서는 2018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8%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연구의 기초통계(〈표 4-2〉 참조)에 따르면 전체 분석 대상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34%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는 노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인 가구가 다수

[그림 4-2] 일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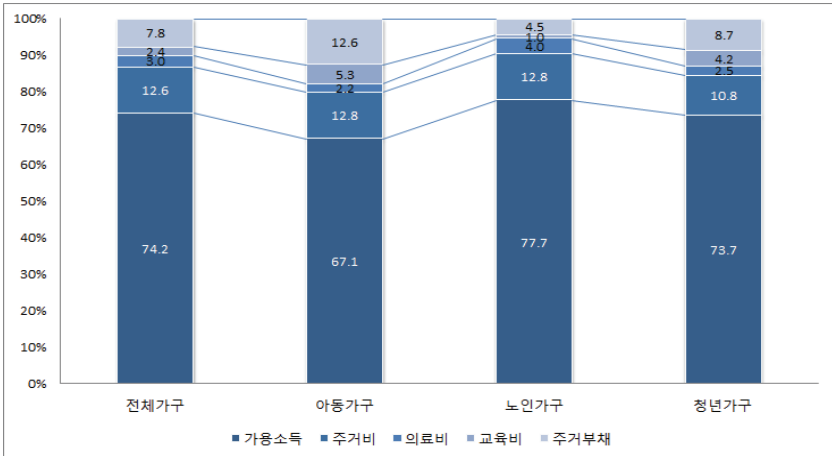
(단위: 천 엔/월)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그림 4-3] 일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전체 가구, 2017년)

(단위: %)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포함될수록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기 마련인데 이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지 못하였다. 향후 일본 가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국가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적용 문제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분석

〈표 4-6〉 일본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단위: 천 엔/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주거비	28.3	35.8	33.6	33.0	12.8	20.1	15.6	12.4
의료비	8.9	9.7	10.7	5.9	4.0	5.4	5.0	2.2
교육비	2.1	0.6	0.6	9.5	1.0	0.3	0.3	3.6
주거 부채	9.8	4.0	5.2	27.9	4.5	2.3	2.4	10.5
합계	49.1	50.1	50.2	76.3	22.3	28.1	23.2	28.7
가용소득	171.3	128.4	165.9	189.9	77.7	71.9	76.8	71.3
가처분소득	220.4	178.5	216.1	266.2	100.0	100.0	100.0	100.0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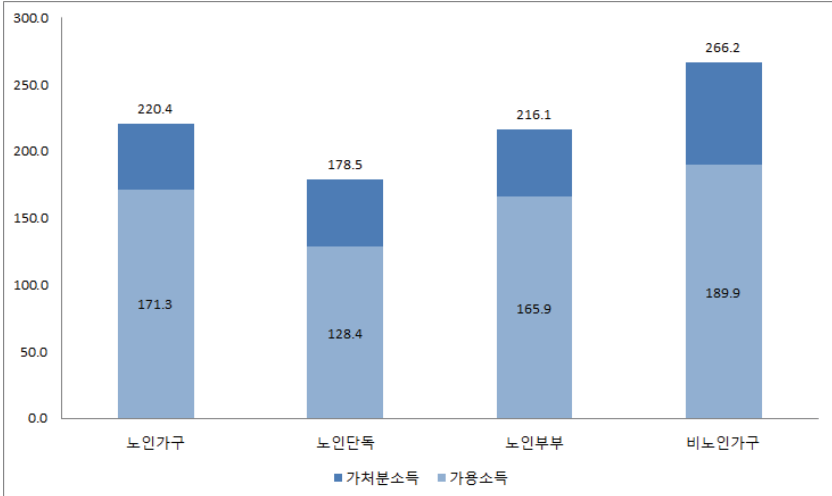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를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자체는 비노인 가구가 높지만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가용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인 가구가 높다.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 모두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노인 가구에 비해 비노인 가구는 주거 부채로 지출하는 비용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노인 가구 전체의 가용소득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노인 단독 가구는 주거비 지출이 전체 가처분소득의 20%를 상회하고 있어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부부 가구 또한 전체 가처분소득의 1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는 모두 주거 부채로 지출하는 수준이 낮았는데, 이것은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대부분이 자가를 소유하기보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비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5% 내외의 지출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지출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림 4-4] 일본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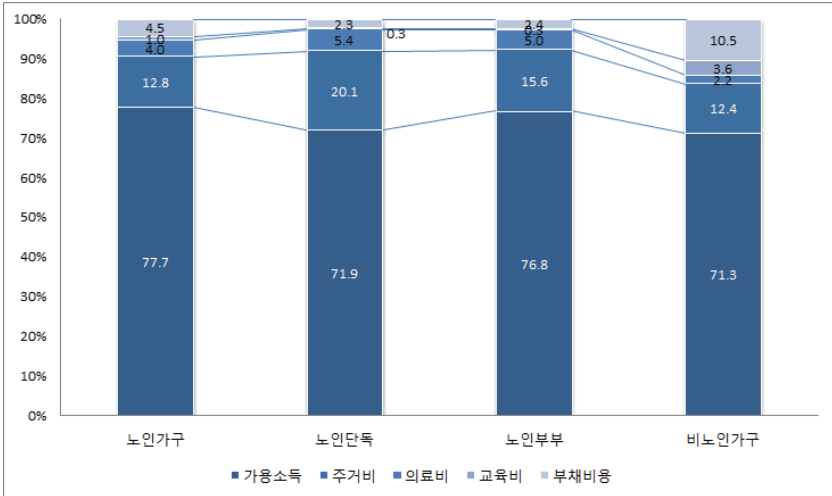
(단위: 천 엔/월)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그림 4-5] 일본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단위: %)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3.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분석

〈표 4-7〉 일본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단위: 천 엔/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자녀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자녀
주거비	28.3	53.2	44.5	38.7	10.8	21.0	15.0	21.6
의료비	6.6	3.7	8.0	3.0	2.5	1.4	2.7	1.7
교육비	11.0	2.8	0.6	5.1	4.2	1.1	0.2	2.8
주거 부채	22.8	0.0	17.3	16.8	8.7	0.0	5.8	9.4
합계	68.8	59.7	70.4	63.6	26.3	23.6	23.7	35.4
가용소득	192.6	193.4	226.2	116.0	73.7	76.4	76.3	64.6
가처분소득	261.4	253.1	296.6	179.6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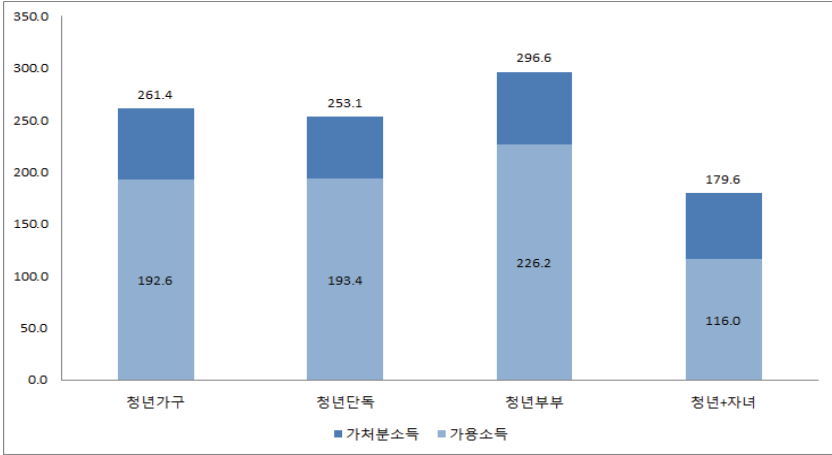
주: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자녀 가구는 표본 수가 제한적(100가구 미만)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청년 가구는 노인·아동 가구에 비해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자체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청년 부부의 경우 모든 인구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인다.¹⁰⁾ 반면 청년+자녀 가구는 다른 청년 가구 유형에 비해 소득 수준 자체가 낮고 가용소득 비율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 단독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은 높지만 주거 관련 부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청년 부부 가구는 청년 단독 가구에 비해 주거비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주거 부채가 증가하였는데 청년+자녀 가구는 주거비와 주거 부채 지출이 둘 다 크고 자녀를 위한 교육비까지 지출하고 있어 주요 지출 항목에서 대부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청년 가구의 소득 수준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가중치 조정을 통해 청년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 반영되었다면 일본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수준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6] 일본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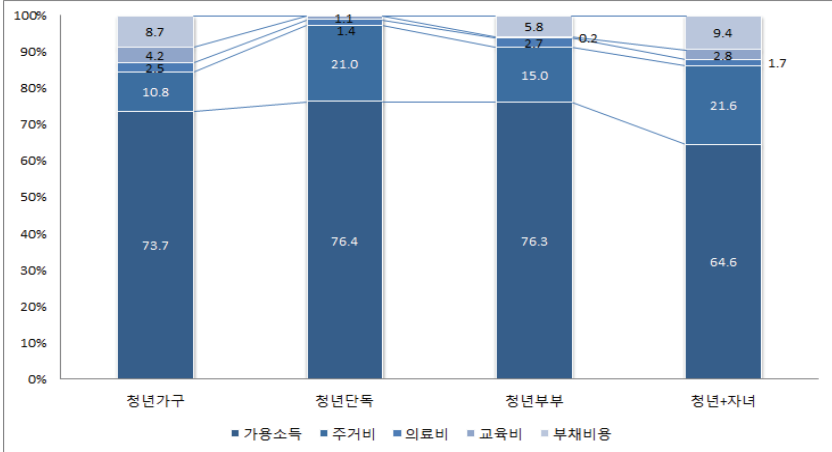
(단위: 천 엔/월)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그림 4-7] 일본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단위: %)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4. 주택 소유 유형별 분석

〈표 4-8〉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전체-노인

(단위: 천 엔/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노인 가구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주거비	25.3	53.7	25.4	53.3	10.1	25.4	11.3	29.4
의료비	7.7	6.0	8.9	8.4	3.1	2.8	3.9	4.6
교육비	6.2	3.9	2.3	0.5	2.5	1.9	1.0	0.3
주거 부채	23.0	1.1	11.0	0.0	9.2	0.5	4.9	0.0
합계	62.2	64.7	47.6	62.2	24.9	30.6	21.1	34.4
가용소득	188.0	147.1	177.5	118.9	75.1	69.4	78.9	65.6
가처분소득	250.2	211.8	225.0	181.1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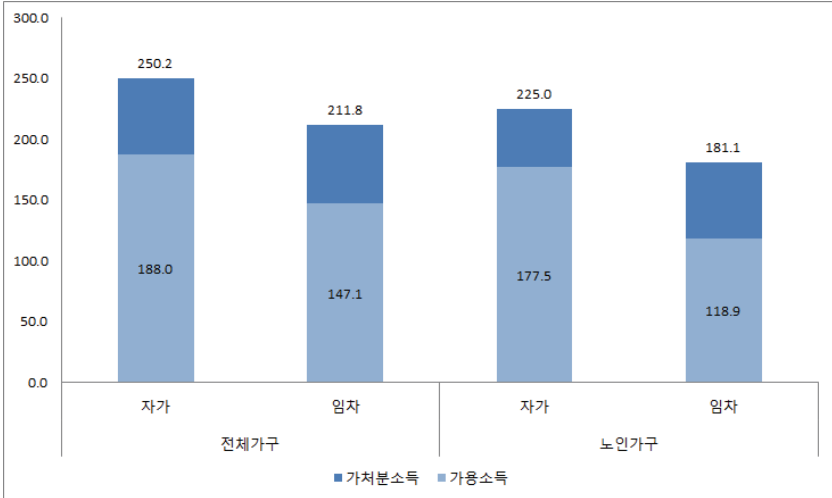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 (2018). JHPS/KHPS 2017 raw data.

가구 유형에 따른 주요 지출과 가용소득 수준을 주택 소유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먼저 전체적인 가용소득은 모든 가구 유형에서 자가 가구가 임차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주거비와 주거 부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 중 자가 가구의 가용소득은 가처분소득의 75% 수준인 데 비해 임차 가구는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자가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반면 주거 관련 부채는 임차 가구보다 자가 가구가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노인 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가 가구는 주거 관련 부채 부담이 높고 임차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가 가구의 주거 부채 부담보다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의료비에서는 주택 소유 형태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교육비 부담 수준은 자가 가구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2017년): 전체-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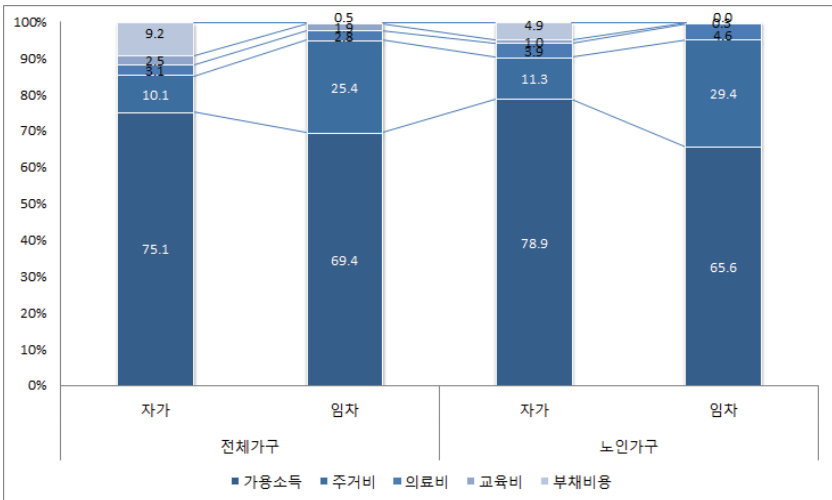
(단위: 천 엔/월)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그림 4-9]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전체-노인

(단위: %)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표 4-9〉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청년-아동

(단위: 천 엔/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가구		아동 가구		청년 가구		아동 가구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주거비	23.7	49.8	23.4	45.9	8.6	24.9	10.2	24.5
의료비	6.8	5.4	5.1	4.0	2.5	2.7	2.2	2.1
교육비	12.0	6.7	12.9	7.3	4.4	3.4	5.6	3.9
주거 부채	27.8	0.3	34.8	0.8	10.1	0.1	15.2	0.4
합계	70.4	62.2	76.1	58.0	25.6	31.1	33.3	31.0
가용소득	204.6	137.5	152.4	129.2	74.4	68.9	66.7	69.0
가처분소득	274.9	199.7	228.4	187.2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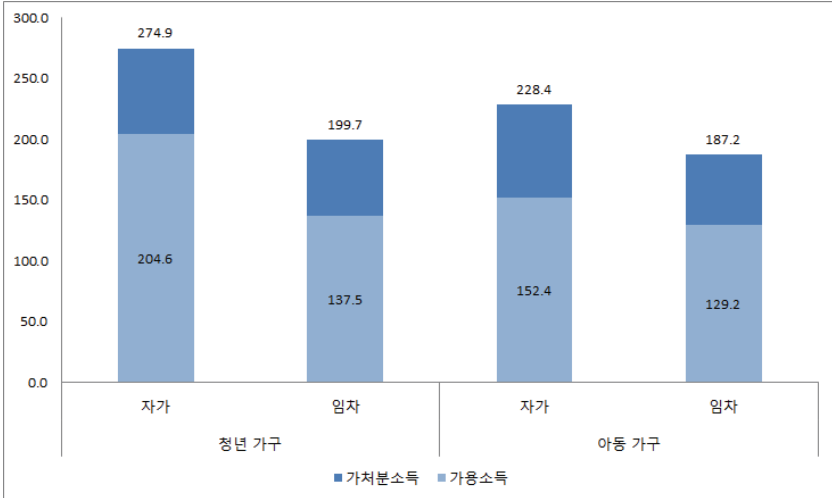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주택 소유 유형별 주요 지출과 가용소득 수준을 청년 가구와 아동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자가 가구의 주거 부채 부담이 큰 것은 다른 가구 유형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아동 가구는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아동 가구의 경우 가구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가구와 청년 가구, 노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수준 자체가 매우 낮았고 그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지출을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가구를 유형별로 분석했을 때 청년+자녀 가구의 가처분소득 수준이 낮고 그 때문에 가용소득 비율이 낮았던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아동 가구 중 자가 가구의 주거 부채가 전체 가처분소득 대비 15%를 상회하고 있어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을 위한 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는 것 또한 가용소득 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4-10]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2017년): 청년-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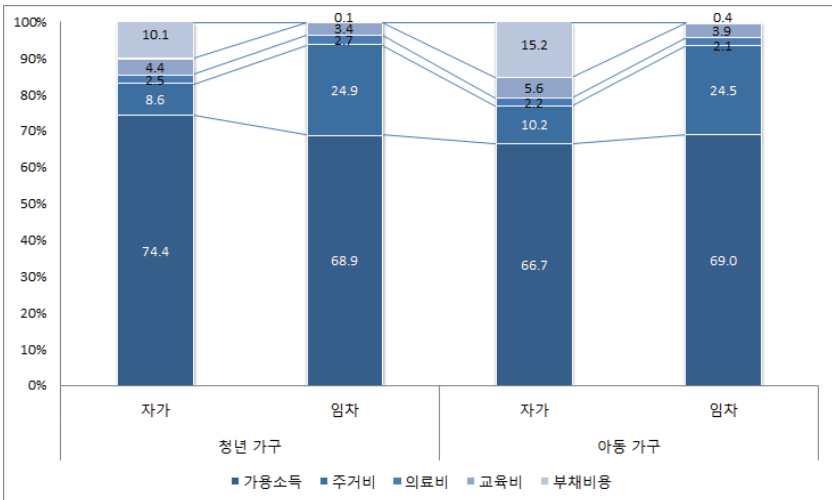
(단위: 천 엔/월)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그림 4-11] 일본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청년-아동

(단위: %)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5. 소득분위별 분석

〈표 4-10〉 일본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변화(2017년, 5분위)

(단위: 천 엔/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거비	31.2	29.0	28.8	30.2	34.6	29.3	17.0	13.1	10.6	7.4
의료비	7.2	7.3	6.7	7.6	8.3	6.8	4.3	3.0	2.7	1.8
교육비	1.6	2.9	5.4	7.2	13.1	1.5	1.7	2.4	2.5	2.8
주거 부채	9.4	8.9	21.0	22.3	34.5	8.8	5.2	9.5	7.8	7.4
합계	49.3	48.1	61.8	67.3	90.4	46.4	28.1	28.0	23.6	19.5
가용소득	57.0	122.9	158.7	217.3	374.0	53.6	71.9	72.0	76.4	80.5
가처분소득	106.4	171.0	220.5	284.6	464.5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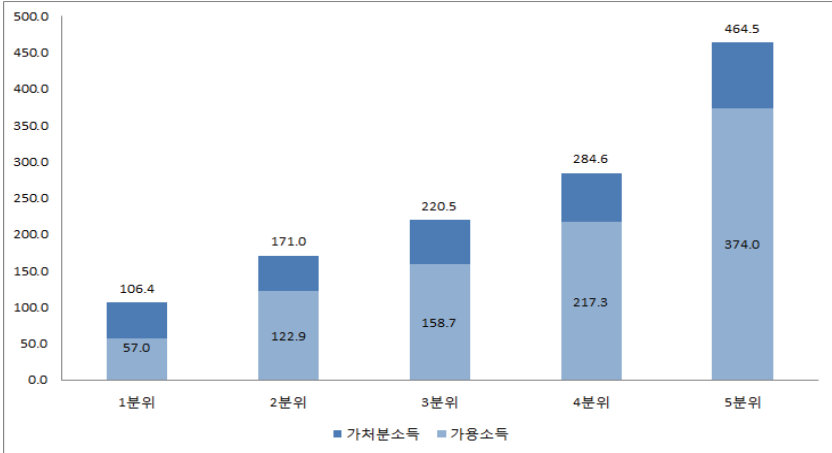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 (2018). JHPS/KHPS 2017 raw data.

소득분위별로 주요 지출과 가용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1분위의 가용소득 비율이 전체 가처분소득의 약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분위의 경우 가처분소득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다른 분위와 비슷한 수준의 지출이어도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주거비의 경우 전체 가처분소득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서 느끼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보장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주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는데(배준호 외, 2018, p. 662), 2006년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안전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위별로 지출 수준을 비교했을 때 의료비는 모든 분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1분위에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분위의 경우 일본의 모든 가구 유형별 분석 결과 중 유일하게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그림 4-12] 일본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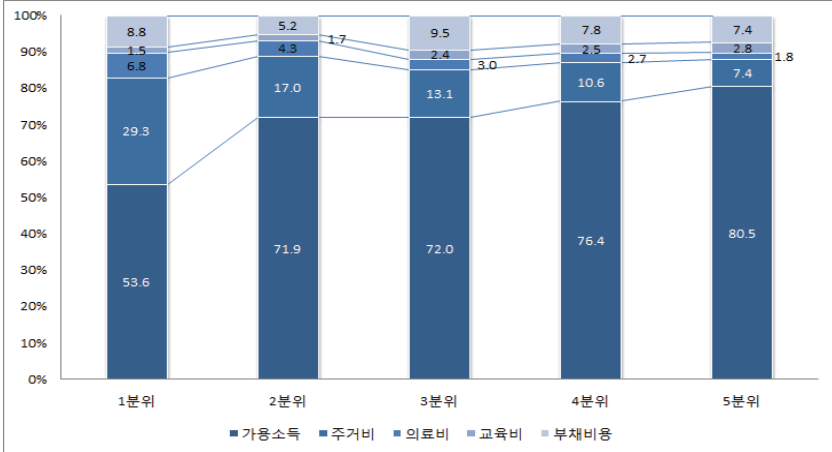
(단위: 천 엔/월)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그림 4-13] 일본 소득분위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7년)

(단위: %)



자료: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일본의 가계소비와 지출의 특성을 알아보고, 가구 유형별로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주요 지출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가구의 가용소득은 전체 가처분소득 대비 74% 정도로 나타났고 노인 가구는 약 77%, 청년 가구는 73%, 아동 가구는 67%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가구 유형별로 주거 부채의 부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가구는 교육비와 주거 부채 상환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용소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수준 자체는 전체 가구에 비해 낮지만 모든 가구 유형 중 가용소득 비율은 가장 높는데, 노인 가구는 교육이 지출이 거의 없고 주거 부채 상환 수준도 가장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노인 단독 가구는 주거비 지출이 전체 가처분소득의 20%, 노인 부부 가구는 15%를 상회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분석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부부의 경우 높은 소득 수준을 보여준 반면 청년+자녀 가구는 소득 수준이 낮고 가용소득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자녀 가구는 주거비와 주거 부채 지출이 크고 자녀를 위한 교육비까지 지출하고 있어 주요 지출 항목에서 대부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소유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모든 가구 유형에서 자가 가구가 임차 가구에 비해 가용소득이 컸으며 그 차이는 주거비와 주거 부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모든 가구 유형에서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5% 이상 차이 난 것과는 다르게 아동 가구는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동 가구 중 자가 가구가 부담하고 있는 주거 관련 부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다른 유형의 자가 가구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는 1분위의 가용소득 비율이 전체 가처분소득의 약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주거비의 경우 전체 가처분소득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서 느끼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며, 의료비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구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 유형 중 아동 가구는 주거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모두 높아서 가용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 노인 단독 가구는 가처분소득 자체가 낮아서 비슷한 규모의 지출을 하더라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자가 가구에 비해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1분위의 가용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국내의 상황과도 비슷하다.

반면 청년 가구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김문길 외(2017)의 연구에서 국내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빈곤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청년 단독 가구와 청년 부부 가구, 청년 부부+자녀 가구의 빈곤율을 비교했을 때 청년 단독 가구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일본의 청년 가구를 분석한 결과, 청년 단독 가구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표본 수가 제한적이고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한 한계가 반영된 것

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일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후속 연구로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가구 유형을 관통하는 주요 지출 항목은 역시 주거비이다. 가구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거비는 4개 주요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제한적인 주거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특성을 보여 준다(배준호 외, 2018, p. 662; 이태진 외, 2016, p. 101). 이는 국내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주거보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국내와 일본 모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가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설계를 고려할 때이다.

5

미국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

가계의 가용소득은 필수적인 지출에 사용되는 비용의 합과 사회가 필수적인 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가계에 어느 정도 보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은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복지국가 유형으로는 시장경제를 우선시하고 복지제도는 시장이 기능을 못 할 때 임시적으로 기능하는 잔여적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논의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사적부문 지출 규모가 크고 공적 영역에서 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못 미친다. 미국은 사회복지지출이 공적 영역에서 GDP 대비 18.7%이고(OECD, 2018), OECD 평균¹¹⁾은 GDP 대비 21.3%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11.1%이다. 따라서 미국의 가용소득은 필수적인 항목에 지출하는 비용이 크다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¹²⁾ 이 장에서는 잔여적 또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미국을 사례로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 수준과 가계의 가용소득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미국 정부 차원의 지출보전 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소개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1) 2018년 자료의 경우,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균을 낸 것이며, 37개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일본, 칠레,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은 2018년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이들 국가는 제외함 값이다.

12) 물론 가계의 소비 여력은 해당 국가에서 필수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식품 사용에 지출하는 비용과 교통비에 사용하는 비용 등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용소득의 규모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는 다르기 때문이다.

제1절 미국의 주요 사회보장 정책

1. 주택 및 주거 지원 관련 정책

미국의 주택 및 주거 지원 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지원, 민간소유 주택 보조금 지원(세액공제 형식),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선웅, 2006, p. 102; Olsen & Zabel, 2014, p. 4).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슬럼화하고 우범지역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개보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HOPE VI)했다. 공공임대주택 환경 개선 정책을 통해 최근에는 민간 공동주택과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주택도 늘어나고 있다(권현주, 2016, p. 19).

현재는 100만 가구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이며(Urban Institute, 2018, p. 5), 주택 지원을 받은 가구 중 60%는 아동 가구, 23%는 장애인, 18%는 노인 가구이다. 그러나 예산을 먼저 배정하는 방식(진미윤, 2017, p. 39)으로 인해 저소득계층의 40%만 혜택받고 있다(CBPP, 2019)는 비판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지원 사업은(Urban Institute, 2017, p. 5)은 민간 임대업자에게 정부에서 제시하는 주거의 질과 환경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세액공제를 해 주는 프로그램(LIHTC: Low-income Housing Tax Credit)으로 민간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약 120만 가구가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과 민간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취약계층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은 주택바우처(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프로그램이다.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230만 저소득 가구에 임대시장에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방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임차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면 공시임대료(Fair Market Rent)를 기준으로 차액만큼 지원(권현주, 2016, p. 22; Urban Institute, 2017, p. 5)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수급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보전받고 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민간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상승하면 주택 소유주는 주택 바우처를 수급하지 않는 비수급자를 선호하게 되어 저소득층이 주택 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다(권현주, 2016, p. 21).

미국은 난방과 에너지 관련한 비용 지출이 높은 편이다(〈표 5-1〉 참조). 저소득층의 난방과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LIHEA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택을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으로 개보수하기 위해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이준서, 2017, p. 39)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위 의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난방 비용 지출을 보전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가 하락할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이재연, 2011, p. 26).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자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구입 자금의 3.5%만으로도 장기 대출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고제현, 방송희, 2015, p. vi).

2. 의료서비스 지원 정책

미국의 공적 의료지원 체계는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Medicaid)와 노인 대상 메디케어(Medicare)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며, 기업 복지의 일환으로 고용주가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신한나, 2018, p. 62).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2010년 시행된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인구에게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김수진, 2018, p. 433).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6년 만에 의료보험 미가입률은 16%에서 8.6%로 줄어들었다(정지아, 2017, p. 19).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공공의료보험 가입 비율이 35.6%,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55.3%이고, 미가입 비율은 9.1%이다(OECD, 2017a, p. 89). 오바마케어에 따라 의료 접근성은 일부 높아졌으나 의료비용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22.3%나 된다(OECD, 2017, p. 91).

의료비 지출 비용은 OECD 중 가장 높고(9892달러) 정부의 의무지출(4860달러)과 개인의 자발적 지출 수준(5032달러)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OECD 평균은 의료비 지출 비용이 4003달러, 정부의 의무지출이 2937달러, 개인의 자발적 지출 수준이 1066달러(OECD, 2017, p. 133)이다.

현재 미국은 의료비도 매우 높은 편인데, 기업에서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높아지는 의료비로 인해 기존에 제공하던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보험 혜택이 줄어들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미주한국일보, 2019).

3. 교육 및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

미국의 교육제도는 유치원(만 4~5세 대상 Kindergarten)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공립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무상이다(김미숙, 윤종혁, 최수진, 구자역, 2016, p. 12). 우리나라보다 교육을 위해 사적 지출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에서 정부 재원이 67%를 차지하고, 가계지출이 25%, 나머지가 기타 민간 재원으로 구성돼 있다(OECD, 2017b, p. 190). 따라서 교육과 관련한 가계지출은 크지 않은 편이다.

보육 지원은 직접 서비스 제공, 세금공제 방식(정익중, 2018)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주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보육 지원은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다. 헤드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제공하는 조기 개입 보육 및 교육서비스다. 처음에는 3~5세 빈곤층 자녀에게 제공하였으나 점차 대상을 영아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 대상 아동이 있는 빈곤층 가정의 52.3%는 가구소득의 약 20%를 지출하고 있고, 6세 미만 자녀를 둔 일반적인 가구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의 약 8.8%를 보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Mattingly, Schaefer, & Carson, 2016, p. 2).

미국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가 없고 아동 양육과 관련된 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같은 세금환급금제도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공

제하고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 외에도 아동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익중, 2018, p. 579).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 분석 자료

미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패널(PSID: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을 이용하고자 한다. PSID는 미국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 데이터 중 소득과 지출,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등 이 연구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SID는 미국 빈곤의 동태적 특성 분석을 위해 미시건대학교의 사회조사 연구소(ISR: Insitute for Social Research at the Michigan University)에서 1968년에 4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1968년부터 1997년까지는 1년 단위 패널조사였으나,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아동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분가 가구까지 포함하면 현재 조사 대상 가구는 약 1만 가구이다. PSID는 미국을 대표하는 전국 조사이며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소득과 복지급여 및 지출과 관련한 변수가 풍부하다(ISR, 2019a).

본 연구에서 사용할 샘플은 공개된 데이터 중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7년 조사로 총 9607가구와 2만 6445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ISR, 2019a). PSID에서 제공하는 소득과 임금변수는 결측치를 대체

하여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더피(Duffy, 2011)의 논문 “2007 PSID Income and age Imputation Methodology”에 소개되어 있으며, 2017년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었다(ISR, 2019a, p. 72 부표 참조). PSID는 사회복지급여와 관련된 변수가 풍부하다. 따라서 공적이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장려금(EITC)과 보육장려금(CCC) 같은 세금환급금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는 NBER에서 제공하는 TAXSIM 프로그램(version 27)을 이용하여 가구소득, 결혼 상태, 아동 수 정보를 이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세금환급금을 따로 계산하여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였다(NBER, 2019).¹³⁾

세금환급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 중 개인 연령이나 부채 관련 정보 등에 결측치가 있어 결과적으로 74가구는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 세금환급금에 결측치가 있다. 따라서 경상소득과 가치분소득 분석에 9533가구가 사용됐다. 지출의 경우 주거와 관련한 부채에서 65가구가 결측치로, 주거와 관련한 부채 분석에 9542가구가 이용됐다. 임대료 및 수도 광열비 등 주거와 관련한 지출에서는 620가구가 결측치로, 주거 관련 지출 분석에 8987가구가 활용됐다. 총지출에 주거 관련 부채 또는 주거비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667가구로 총지출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8940가구이다.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변수별로 다르다(〈표 5-3〉 참조).¹⁴⁾

13) TAXSIM을 적용하는 자세한 방식은 Kimberlin, Kim and Shaefer(2015) An Updated Method for Calculating Income and Payroll Taxes from PSID data using the NBER's TAXSIM, for PSID Survey Years 1999 through 2011. University of Michigan manuscript 참조.

14) 소득과 관련한 변수는 결측 사례가 규모가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이지만 지출 변수에서 결측 사례는 약 7%이다. 따라서 소득 관련 변수에서 결측 사례는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겠지만 지출 관련 변수에서 결측 사례가 특정 소득계층에서 발생했다면,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출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1로 하는 이산분수를 생성하고 결측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가치분소득이 다른지 t-test를 진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

미국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조사(CPS: 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소득과 PSID 소득 데이터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PSID의 평균 소득이 CPS의 평균 소득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ISR, 2019b), 빈곤율은 PSID에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PSID의 조사가 낮은 소득계층의 소득을 CPS에서보다 더 잘 파악하기 때문이다(McKernan and Ratcliffe, 2002). PSID의 지출 또한 통계청의 지출조사 자료(CE: Consumer Expenditure)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ISR, 2019c).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표본손실이 발생하고, 표본손실이 체계적일 경우 표본의 대표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해 PSID는 표본이탈로 인한 표본손실이 PSID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가구소득과 가구지출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Grieger et al., 2009, p. 109).

2. 분석 변수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5-1>에 제시하였다. 경상소득은 가구주와 배우자 및 기타 다른 가족(Other Family Unit Member)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을 합한 소득이다. PSID에서 소득은 결측 사례를 대체했기 때문에 값이 음수인 경우가 있다. 평균을 산출할 때는 음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매 뉴얼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따랐다. 공적이전은 PSID에서 제공하는 변수 외에 연구자가 추가로 계산하여 근로장려금, 보육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같은 세금환급금까지 포함한 소득이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사회

보장 분담금과 연방정부, 주정부의 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세금환급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분담금과 소득세는 PSID에서 제공하지 않아 TAXSIM 프로그램(version 27)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NBER, 2019). 가용소득은 가처분소득에서 총지출을 차감했다.

이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지출 변수는 주거비, 주거 관련 부채, 의료비, 교육·보육비 및 이를 합산한 총지출이다. 주거비는 임대료, 전기, 수도, 난방비와 가스비, 쓰레기 청소 비용(또는 환경개선비), 주택 수선·유지비에 사용된 지출 비용을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주거 관련 부채비용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의 부채비용 중 월 단위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의료비는 입원 및 요양비, 진료비, 약제비, 의료보험료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이다. 교육비는 학비 및 교습비, 기숙사비, 책 구입비, 교복, 교육 관련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지출비와 보육비용의 합을 사용했다. 총지출은 주거비, 주거 관련 부채 의료비 교육비의 총합이다. 분석에 사용한 소득과 지출은 월 단위로 환산하였으며 가구원 수의 제곱근 값으로 균등화한 값을 이용했다.

〈표 5-1〉 한국복지패널과 미국의 소득패널(PSID) 변수 비교

구분	한국복지패널 (2017년 기준)	미국의 소득패널(PSID) (2017년 기준)
지출	식료품비	식료품(Food)
	월세	임대료(Rent),
	주거 관리비	환경 개선(Garbage) 주택 수선·유지(Home Repair & Maintenance) 비용의 합
	광열수도비	전기(Electricity) 수도(Water) 난방과 가스(Gas/Heating)
	-	-
	가구집기·가사용품비	Household furnishings & equipment
보육료비	보육비용 (Childcare Expenditure)	

84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구분	한국복지패널 (2017년 기준)	미국의 소득패널(PSID) (2017년 기준)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¹⁾	입원 및 요양비 (Hospital/Nursing Home Expenditure) 진료비(Doctor Expenditure) 약제비(Prescriptions) 의료보험료 및 본인부담금(Health Insurance Expenditure)
	공교육비 ²⁾	교육비(Education Expenditure)
	사교육비	-
	교양오락비	여가비 지출 (Recreation & entertainment) (Trips & vacations) 교통비(Transportation)
	교통비	Vehicle down payment Vehicle lease payment Insurance Other vehicle expenditures Repairs and maintenance Gasoline Parking and carpool Bus fares and train fares Taxicabs Other transportation
	통신비	통신비 Telecommunication
	기타 소비지출	-
	사적이전지출	사적이전지출
	세금	연방정부 및 주정부 소득세
	사회보장부담금	사회보장 분담금
	-	-
소득 ³⁾	경상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⁴⁾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주거 관련 부채	주택 가격	주택 가격
	1년간 총 원금 상환액(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관련 부채 월 상환액(Monthly Loan Payment)
	12월 31일 기준 주택 관련 부채액(나)	-

주: 1)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세금과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이지만,

- 여기서는 의료보험비용을 빼지 않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보험 방식으로 조세 성격이 아닌 개인이 의료비용으로 지출해야 함. 따라서 여기서 의료보험비용은 사회보장 분담금이 아닌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포함하였음.
- 2) PSID에서 교육비용은 학비 및 교습비, 기숙사비, 책 구입비, 교복, 교육 관련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지출 등을 포함하여 총합으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 시 지출 항목에서 차이가 남에 유의.
 - 3) PSID의 소득은 조사 연도에서 전전연도를 뺀 해의 세전소득(T-2 소득)을 조사하고 있어, 2017년 조사는 2015년도의 소득을 조사하고 있음.
 - 4) PSID에서는 복지급여와 관련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음. 모든 복지급여의 개별 수급 금액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복지급여는 기타 복지급여(Other Welfare) 항목을 따로 두어 조사하고 있음. 그러나 EITC와 CTC 같은 급여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NBER에서 제공하는 TAXI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ITC, CTC 같은 세급환급금을 계산하여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였음.

분석에 사용된 가구 유형은 이 연구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위해 한국의 가용소득 지표에 사용된 분석틀을 유지하였다. 아동의 정의는 만 18세 미만이며,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노인은 만 6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노인 단독 가구와 청년 단독 가구는 각각 노인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를 의미한다. 노인 부부 가구와 청년 부부 가구는 가구주가 노인과 청년인 가구이며 해당 가구주에게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가구는 청년 부부 가구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주거 점유 유형은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로 구분하였다.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제도가 없어 임차 가구에는 월세가구만을 포함했다. <표 5-2>는 분석에 사용한 가구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5-2〉 분석에 사용된 가구 유형

가구 유형	조작적 정의
전체 가구	전체 가구
아동 가구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노인 단독 가구	노인(65세 이상) 단독 가구
노인 부부 가구	가구주가 만 65세 이상인 부부 가구
비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이 없는 일반 가구
청년 가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
청년 단독 가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단독 가구
청년 부부 가구	가구주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부부 가구
청년 부부+자녀	가구주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부부와 자녀 가구
주거 점유 유형	자가 가구(Own House)
	임차 가구(Rent)

주: 주거 점유 유형 중 기타로 분류되는 유형이 있음. 분석에는 사용되었으나 다른 장과의 정합성을 위해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특성은 〈표 5-3〉에 제시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이며 약 60%는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분석 표본의 24.8%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며, 노인 가구는 전체 표본의 27.3%, 청년 가구는 19.6%로 나타났다. 인구집단별 가구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표본에서 노인 단독 가구는 14.1%이며, 노인 부부 가구는 13.2%이다. 청년 단독 가구는 전체 표본에서 8.6%, 청년 부부 가구는 7.9%,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가구는 4.6%이다.

주요 지출 항목의 평균 월 지출 비용은 1587달러이다. 주거비용이 월 평균 679달러로 가장 많이 지출되고, 다음으로 큰 지출은 주거 관련 부채 비용으로 월평균 433달러이다. 의료비 지출은 월평균 311달러이며, 보육과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143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출 관련 통계는 노동부 소속 노동통계청의 소비자 지출 통계(CE: Consumer Expenditure)이다. 2015년 CE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와 주

거 관리비 등을 합산한 주거비 지출 비용은 월평균 633달러이다. 의료비 지출은 월평균 343달러이며, 교육비와 보육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2103달러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75달러이다. PSID의 항목별 지출 비용이 CE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및 그림 참조).

〈표 5-3〉 분석 표본의 분포

구분	사례 수	평균/비율
가구원 수(명)	9,607	2.2
주택 소유 형태		
자가 가구	9,607	59.6
월세 가구	9,607	34.6
기타	9,607	5.8
가구 유형		
아동 가구	9,607	24.8
노인 가구	9,607	27.3
청년 가구	9,607	19.6
노인 가구 유형		27.3
노인 단독 가구	9,607	14.1
노인 부부 가구	9,607	13.2
비노인 가구	9,607	86.8
청년 가구 유형		19.6
청년 단독 가구	9,607	8.6
청년 부부 가구	9,607	7.9
청년 부부+자녀 가구	9,607	4.6
항목별 지출		
주거비용(\$/월)	8,987	679
의료비 지출(\$/월)	9,607	311
월 보육 및 교육비 지출(\$/월)	9,607	143
주거 관련 부채 월지출(\$/월)	9,542	443
총지출(\$/월)	8,940	1,587

주: 주택 소유 형태 중 기타 유형은 임대료 및 주택임대대출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주거 관련 지출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분석함. 인구집단별 가구 유형은 서로 배타적인 항목이 아니므로 유형별 비율의 총합이 100%가 아님에 유의.

제3절 분석 결과

1. 가구 유형별 주요 지출 특성과 가용소득

가구 유형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 관련 부채비용에 대한 월 지출 평균과 월평균 가용소득과 가처분소득 대비 지출, 가용소득 비율은 <표 5-4>, [그림 5-1], [그림 5-2]에 제시하였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3675달러이지만 월평균 필수 지출이 1104달러로 가용소득은 월평균 2571달러이다. 필수 지출 중 월평균 주거비는 498달러로 높게 나타나는데, 주거 관련 부채까지 고려한다면, 월평균 주거와 관련한 지출은 791달러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지출 항목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약 12%에서 19%로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5.7%에서 10.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와 부채까지 고려하면 주거 관련 지출은 가처분소득 대비 18%에서 25%로 전체 필수 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청년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가처분소득에서 주거와 관련한 지출 비율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은 4.4%에서 6.9%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 중 노인 가구의 의료비 비율이 6.9%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 비율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인 아동 가구와 청년 가구의 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교육비, 부채비용과 같은 필수 지출을 제외하면 가용 소득은 가처분소득 대비 67%에서 74%이다.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은 가처분소득 대비 66%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청년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가처분소득 수준은 낮지만 주거

비 부담이 높고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총비용은 다른 가구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노인 가구는 가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노인 가구의 가치분소득 수준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가장 높지만, 필수 항목에 지출하는 총비용은 가장 낮기 때문이다.

〈표 5-4〉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단위: \$/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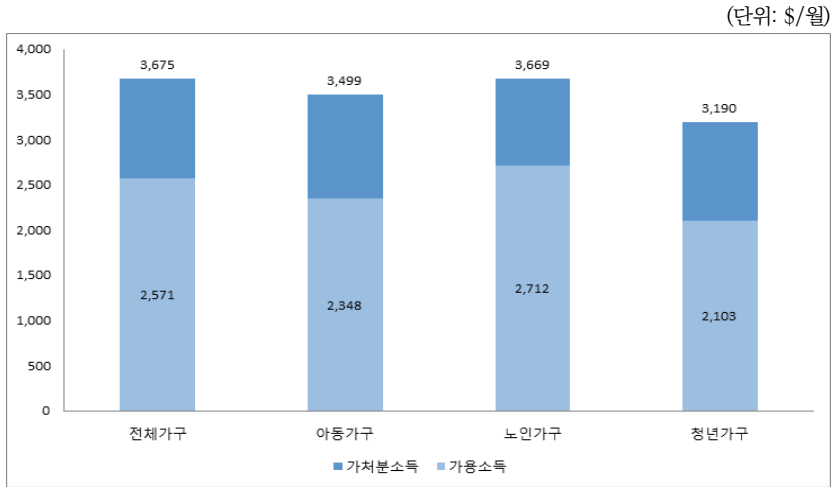
구분	금액				가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가구	이동가구	노인가구	청년가구	전체가구	이동가구	노인가구	청년가구	
2017	주거비	498	425	464	612	13.6	12.1	12.7	19.2
	의료비	218	196	254	140	5.9	5.6	6.9	4.4
	교육비	88	164	13	134	2.4	4.7	0.3	4.2
	부채비용	293	366	210	197	8.0	10.5	5.7	6.2
	합계	1,104	1,151	957	1,087	30.0	32.9	26.1	34.1
	가용소득	2,571	2,348	2,712	2,103	70.0	67.1	73.9	65.9
	가치분소득	3,675	3,499	3,669	3,190	100	100	100	100

주: 가용소득 평균은 가치분소득 평균에서 총지출의 평균을 뺀 값을 이용함. 분석에 사용한 지출과 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하였으며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을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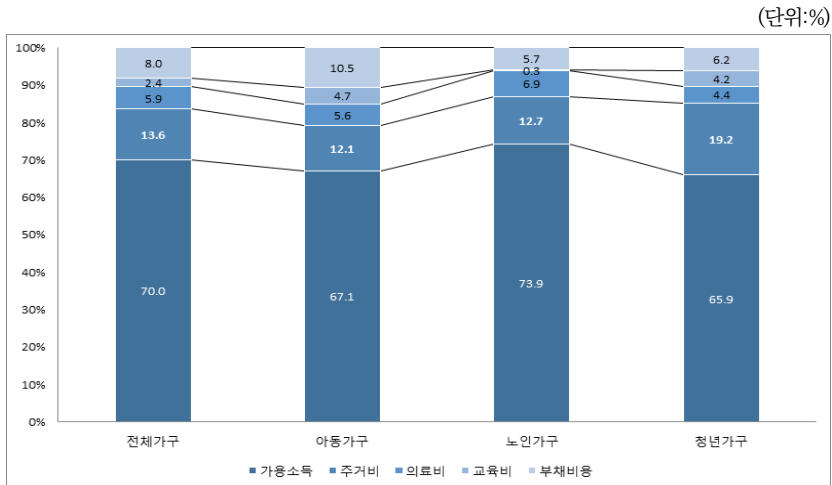
자료: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2019).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2017 Public use dataset.

90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그림 5-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그림 5-2] 가구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2. 노인 가구 유형별 주요 지출 특성과 가용소득

노인 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는데 세부적으로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로 나누어 항목별 지출 수준과 가용소득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5>와 [그림 5-3], [그림 5-4]에 제시하였다.

노인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3669달러이다. 노인 가구 중에서는 노인 단독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노인 부부 가구보다 낮다. 노인 부부 가구는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4701달러이지만, 노인 단독 가구는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2964달러로 노인 부부 가구의 63% 정도이다.

지출 수준은 노인 부부 가구가 노인 단독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노인 단독 가구의 주요 지출 총합은 월평균 886달러이고 노인 부부 가구는 168달러(16%) 많은 1054달러이다.

주거와 관련한 지출은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노인 가구는 월평균 주거비로 464달러를 지출한다. 주거와 관련한 부채까지 더한다면 노인 가구의 주거와 관련한 지출 비용은 월평균 674달러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노인 가구 중에서는 노인 단독 가구가 주거와 관련한 지출 부담이 높다. 부채까지 포함한 주거 관련 지출 비율은 노인 단독 가구가 21.6%로 높게 나타나고, 노인 부부 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15.5%로 나타난다.

노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 또한 높은 편이다. 노인 전체 가구는 월평균 254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노인 부부 가구는 301달러, 노인 단독 가구는 224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한다. 교육비는 월평균 12에서 13달러를 지출한다. 의료비 지출 부담은 노인 단독 가구가 더 크다. 노인 단독 가구는 의료비 지출 비율이 가처분소득 대비 7.6%, 노인 부부 가구는 6.4%로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은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다. 노인 가구의 월평균 가용소득은 2712달러로 가처분소득의 약 74%이다. 노인 가구 유형 중에서도 노인 부부 가구가 노인 단독 가구의 가용소득보다 더 높다. 노인 단독 가구의 가용소득은 2077달러인데 노인 부부 가구의 가용소득은 단독 가구의 약 1.8배 정도인 3647달러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이 노인 단독 가구는 약 70%이며 노인 부부 가구는 약 78%로 비노인 가구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 부부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이 높은 이유는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의 지출 수준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가처분소득 규모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노인 단독 가구의 가용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공적이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거비 지출과 의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5>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

(단위: \$/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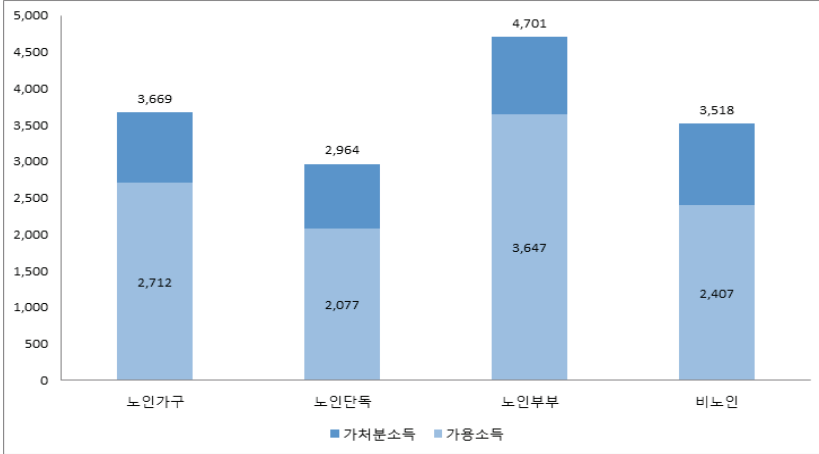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2017	주거비	464	473	448	506	12.7	15.9	9.5	14.4
	의료비	254	224	301	205	6.9	7.6	6.4	5.8
	교육비	13	13	12	100	0.3	0.4	0.3	2.8
	부채비용	210	168	284	294	5.7	5.7	6.0	8.4
	합계	957	886	1,054	1,111	26.1	29.9	22.4	31.6
	가용소득	2,712	2,077	3,647	2,407	73.9	70.1	77.6	68.4
가처분소득	3,669	2,964	4,701	3,518	100	100	100	100	

주: 가용소득 평균은 가처분소득 평균에서 총지출의 평균을 뺀 값을 이용함. 분석에 사용한 지출과 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균등화하였으며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을 이용함.

자료: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2019).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2017 Public use data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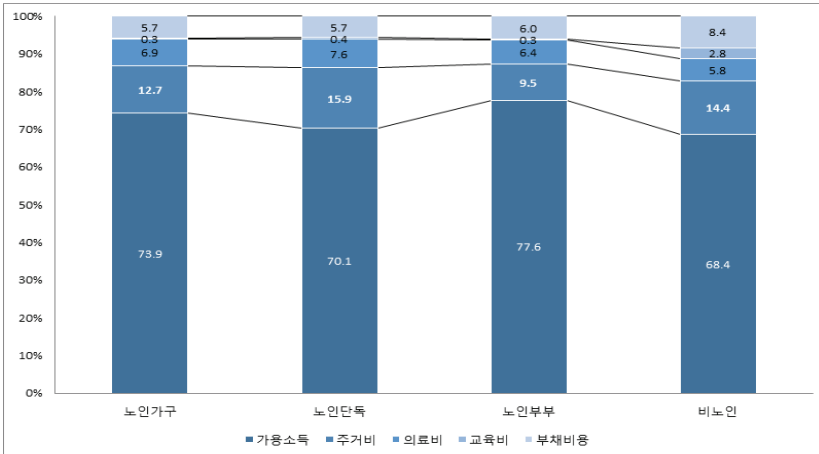
[그림 5-3]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단위: \$/월)



[그림 5-4] 노인 가구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단위:%)



3. 청년 가구 유형별 주요 지출 특성과 가용소득

청년 가구는 청년 단독 가구 청년 부부 가구,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가구로 구분하여 유형별 지출 특성과 가용소득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5-6>, [그림 5-5], [그림 5-6]에 제시하였다.

전체 청년 가구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월평균 3190달러다. 노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청년 가구 유형 중 청년 단독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은 월평균 2783달러다.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2894달러로 청년 단독 가구보다는 약간 높다. 청년 가구 중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는 청년 부부 가구로 월평균 3396달러다. 그러나 청년 가구는 노인 가구와 달리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노인 단독 가구는 노인 부부 가구 가처분소득의 63% 정도지만, 청년 단독 가구는 청년 부부 가구 가처분소득의 82% 정도이다.

전체 청년 가구의 주요 항목 월평균 지출 수준은 1087달러다. 청년 가구 유형 간에는 주요 항목의 월평균 지출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청년 단독 가구는 1011달러이며, 청년 부부 가구는 1109달러다.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가구가 주요 항목에 대한 월평균 지출 수준이 977달러로 다른 가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주요 항목 지출 중에서 주거비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같다. 청년 가구는 부채를 포함하여 주거와 관련한 비용을 모두 합할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항목에 대해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29%까지 지출하고 있다.

청년 가구가 의료비와 교육비에 지출하는 수준은 노인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노인 가구는 교육비보다는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크고 청년 가구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부담은 유사하다.

전체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은 월평균 2103달러다. 청년 가구 중에서는 청년 부부 가구의 가용소득 수준이 2287달러로 가장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수준은 67%다. 청년 단독 가구보다 청년 부부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것은 가구 내 소득원이 부부 모두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 단독 가구는 가처분소득 수준이 낮지만 지출은 다른 가구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용소득 수준과 비율이 가장 낮다. 청년 단독 가구의 가용소득은 월평균 1772달러로 가처분소득 대비 64%다. 청년 부부 가구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이 가장 높다. 마찬가지로, 청년 부부 가구가 가처분소득 수준은 가장 높지만 지출 수준이 다른 가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전체 청년 가구는 가처분소득에서 가용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 가구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청년 가구 유형별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의 차이는 노인 가구 유형별 차이에 비해 크지 않다. 청년 가구 유형 간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의 차이는 3.6%포인트(67.3%-63.7%)이지만 노인 가구 유형 간에는 그 차이가 7.5%포인트(77.6%-70.1%)로 높게 나타난다. 청년 가구 간에 가용소득 비율 격차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많아 아직까지 축적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며,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 축적이 다 이루어진 시기로 소득과 재산의 격차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비 외에도 교육비 지출을 줄일 방안과, 시장소득을 함께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년 가구는 노인 가구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96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표 5-6〉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

(단위: \$/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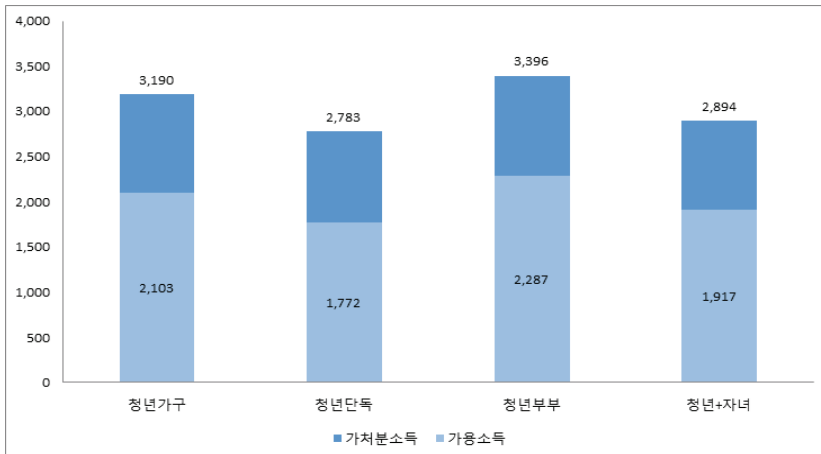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가구	청년 가구			청년 가구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2017년	주거비	612	710	515	397	19.2	25.5	15.2	13.7
	의료비	140	95	157	160	4.4	3.4	4.6	5.5
	교육비	134	124	134	136	4.2	4.5	4.0	4.7
	부채비용	197	82	301	276	6.2	3.0	8.9	9.5
	합계	1,087	1,011	1,109	977	34.1	36.3	32.7	33.8
	가용소득	2,103	1,772	2,287	1,917	65.9	63.7	67.3	66.2
	가처분소득	3,190	2,783	3,396	2,894	100	100	100	100

주: 가용소득 평균은 가처분소득 평균에서 총지출의 평균을 뺀 값을 이용함. 분석에 사용한 지출과 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균등화하였으며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을 이용함.

자료: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2019).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2017 Public use data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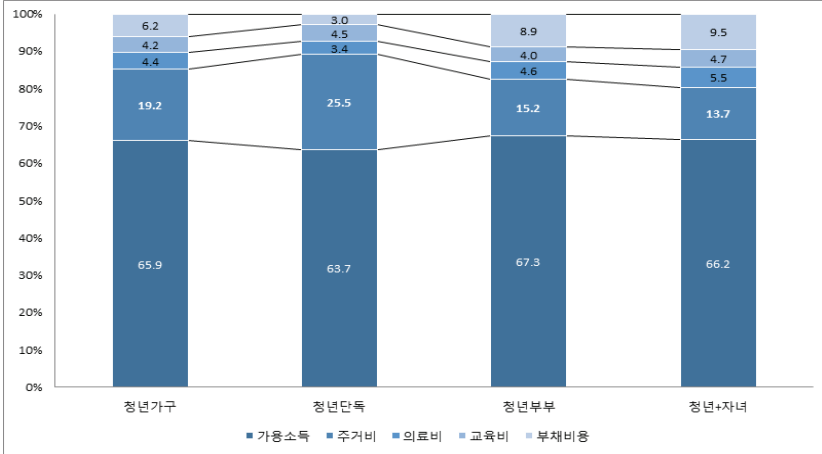
〔그림 5-5〕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단위: \$/월)



[그림 5-6] 청년 가구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단위: %)



4. 주택 소유 유형별 주요 지출 특성과 가용소득

가구 내 가용소득은 인구집단 특성뿐 아니라 주택 점유 형태에 따라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표 5-7>, <표 5-8>, [그림 5-7], [그림 5-8], [그림 5-9], [그림 5-10]은 주택 소유 유형과 인구집단별로 주요 항목에 대한 가구지출 수준과 가용소득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수준은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자가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473달러지만, 임차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2597달러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임차 가구보다 낮지만, 부채비용은 매우 높다. 자가 가구의 주거비는 월평균 400달러이고 주거 관련 부채비용은 월평균 493달러로 주거와 관련한 지출은 월평균 893달러이다. 임차 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출 수준은 월평균 738달러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주거 소유로 인한 부채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다. 주거비와 부채비용을 합산하면 자가 가구가 임차 가구보다 주거와 관련한 지출 수준이 1.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자가 가구는 임차 가구보다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 자가 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월평균 270달러이고 임차 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월평균 144달러로 자가 가구가 임차 가구에 비해 1.9배 정도 더 많이 지출한다. 교육비는 자가 가구가 월평균 102달러로 임차 가구의 73달러에 비해 1.4배 정도 많이 지출한다. 자가 가구의 지출 수준이 높은 이유는 지출에 대한 필요 수준이 높은 차이도 있지만,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 간 지불 능력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자가 가구가 임차 가구에 비해 가처분소득 수준이 1.7배 더 높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 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항목에 대한 총지출 수준은 아동 자가 가구가 1428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필요 지출 항목 모두에 적지 않은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자가 가구 또한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수준이 월평균 1378달러로 아동 자가 가구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노인 자가 가구의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수준은 1001달러로 자가 가구 유형 중에서는 가장 낮다.

노인 가구는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주거 관련 지출은 항목별로 지출 부담 수준이 다르다. 노인 자가 가구의 주거비 지출 수준은 월평균 421달러이며 노인 임차 가구는 월평균 740달러로, 노인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다. 부채비용은 노인 자가 가구만 월평균 286달러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한 총지출 수준은 노인 자가와 노인 임차 가구가 각각 월평균 707달러, 월평균 740달러로 큰 차이가 없다.

노인 자가 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월평균 268달러이며 노인 임차

가구는 월평균 251달러로 두 집단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 가구 내에서는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 간 총지출 수준과 항목별 지출 부담이 차이 난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관련 비용의 차이는 다른 유형의 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차 가구는 임대료가 포함된 주거비 발생 비용이 높고, 자가 가구는 주택 소유에 따른 부채비용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노인 가구와 달리 청년 가구는 주거 관련 총비용 부담이 자가 가구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주거 관련 총비용은 청년 자가 가구가 월평균 1031달러, 청년 임차 가구는 월평균 790달러이다. 또한 노인 가구와 달리 청년 가구는 자가 가구가 임차 가구보다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다. 청년 자가 가구의 의료비는 월평균 197달러이며, 청년 임차 가구는 월평균 106달러이다. 교육비는 청년 자가 가구가 월평균 152달러이며 청년 임차 가구가 월평균 126달러이다.

아동 가구 또한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 간 주거 관련 지출 총액과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서 차이가 난다. 아동 가구 중 자가 가구의 주거 관련 총비용은 월평균 965달러이지만 아동 임차 가구는 월평균 579달러이다. 아동 자가 가구는 월평균 246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월평균 214달러를 교육비로 지출한다. 아동 임차 가구는 월평균 125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월평균 91달러를 교육비로 지출한다. 즉, 아동 자가 가구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아동 임차 가구보다 2배 이상 지출하고 있다.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 간 지출 수준 차이는 지출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욕구 수준 차이보다는 지출에 대한 지불 능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가 가구는 어떤 인구집단에서든 가처분소득 수준이 임차 가구보다 높아 지출에 사용할 소득이 많아 지출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난다. 자

가 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임차 가구의 경우에 가용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지출 부담을 낮춰 주는 것과 함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불 능력이 낮아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5-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전체노인 가구

(단위: \$/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노인 가구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17	주거비	400	738	421	740	8.9	28.4	10.0	32.4
	의료비	270	144	268	251	6.0	5.6	6.4	11.0
	교육비	102	73	17	4	2.3	2.8	0.4	0.2
	부채비용	493	0	286	0	11.0	0.0	6.8	0.0
	합계	1,279	956	1,001	995	28.6	36.8	23.8	43.5
	가용소득	3,194	1,642	3,213	1,290	71.4	63.2	76.2	56.5
가처분소득	4,473	2,597	4,214	2,284	100	100	100	100	

주: 가용소득 평균은 가처분소득 평균에서 총지출의 평균을 뺀 값을 이용함. 분석에 사용한 지출과 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균등화하였으며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을 이용함. PSID는 자가와 임대 이외의 주택 점유 형태로 주차장 거주 등 다른 유형의 주택 점유 형태가 있으나, 이 분석에서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자료: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2019),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2017 Public use dataset.

〈표 5-8〉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청년·아동 가구

(단위: \$/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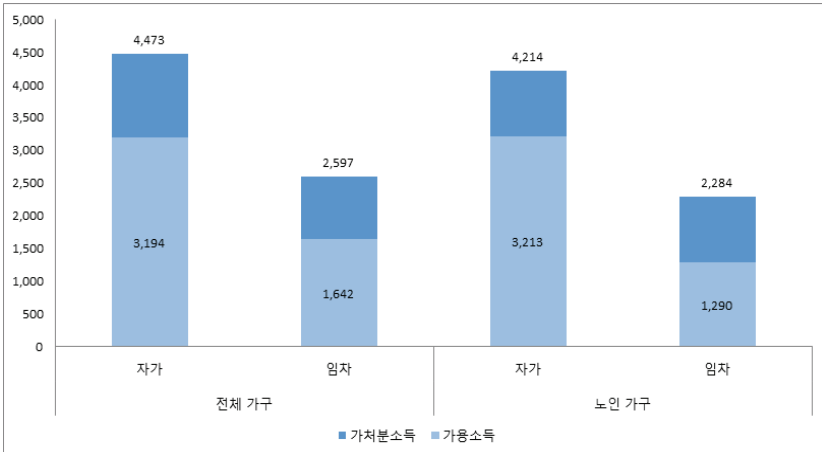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가구		아동 가구		청년 가구		아동 가구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17	주거비	404	790	355	579	9.6	28.1	8.2	25.1
	의료비	197	106	246	125	4.7	3.8	5.7	5.4
	교육비	152	126	214	91	3.6	4.5	4.9	3.9
	부채비용	627	0	610	0	14.9	0.0	14.1	0.0
	합계	1,378	1,028	1,428	793	32.8	36.6	33.0	34.3
	가용소득	2,820	1,781	2,896	1,518	67.2	63.4	67.0	65.7
	가처분소득	4,198	2,809	4,324	2,311	100	100	100	100

주: 가용소득 평균은 가처분소득 평균에서 총지출의 평균을 뺀 값을 이용함. 분석에 사용한 지출과 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균등화하였으며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을 이용함. PSID는 자가와 임대 이외의 주택 점유 형태로 주차장 거주 등 다른 유형의 주택 점유 형태가 있으나, 이 분석에서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자료: PSID(2017), 원자료.

〔그림 5-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전체·노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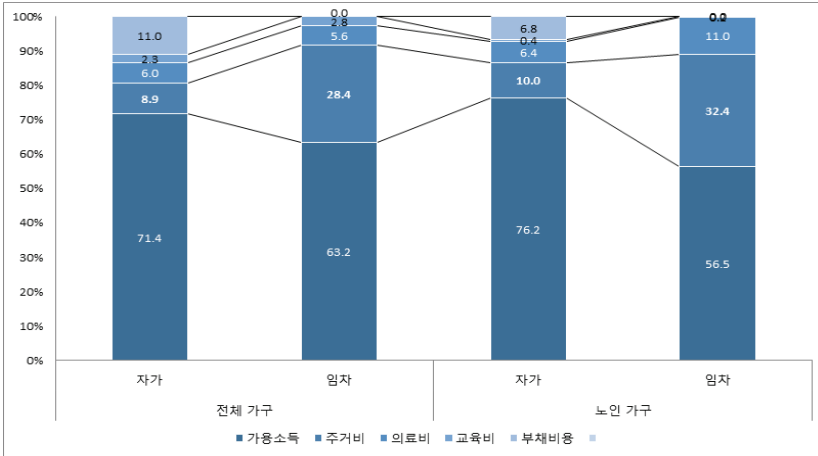
(단위: \$/월)



102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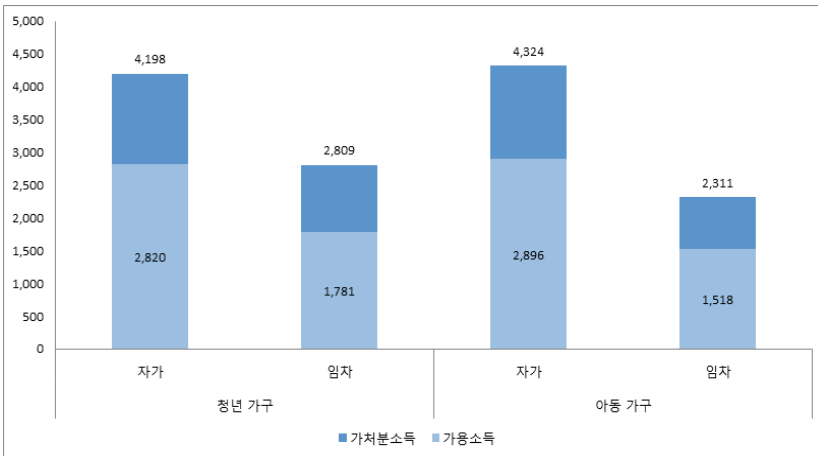
[그림 5-8] 주택 소유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전체·노인 가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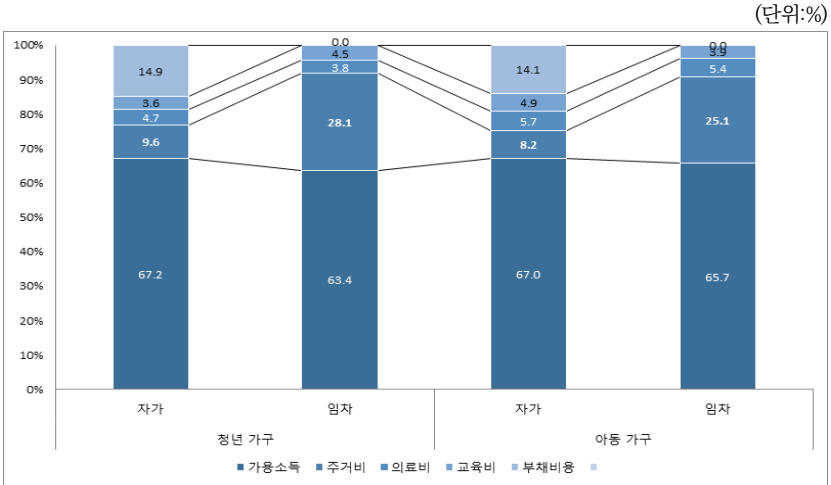


[그림 5-9]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청년·아동 가구

(단위: \$/월)



[그림 5-10] 주택 소유 유형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청년·아동 가구



5. 소득분위별 주요 지출 특성과 가용소득

전체 가구를 5개의 소득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수준과 가용소득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5-9>과 [그림 5-11], [그림 5-12]에 제시했다.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은 1분위는 월평균 923달러이지만 소득 5분위는 월평균 8350달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차이는 7427달러로 소득 5분위가 1분위에 비해 9배 정도 많다. 주요 항목별 지출 수준은 소득 1분위가 월평균 515달러, 소득 5분위는 월평균 1927달러이다.

소득분위와 항목별 지출 수준은 비례관계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항목별 지출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분위에 따라 각 항목별 지출 비율은 반비례하여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항목별 지출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채비용의 경우 예외적인데, 소득분위에 따라 부채비용

이 늘어나고 지출 비율도 늘어난다.

먼저 주거비는 소득 1분위에서 월평균 361달러를 지출하며 5분위에서 약 1.8배 높은 월평균 661달러를 지출한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소득 1분위가 약 39%, 소득 5분위가 8%로 나타난다. 즉, 소득이 낮은 분위에서는 항목별로 지출하는 비용은 낮지만 가구 가처분소득의 상당 비율을 지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필수 지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 하위 분위 가구는 주요 지출을 하고 나면 남아 있는 가용소득이 1분위의 경우 월평균 408달러로 매우 낮다. 남은 소득으로 식품, 의류, 교통, 기타 여가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부채는 주거와 관련한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채비용 지출 수준이 낮다. 따라서 하위 분위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일수록 부채비용 지출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월평균 45달러를 주거 관련 부채비용으로 지출하지만 소득 5분위의 경우 월평균 705달러를 주거 관련 부채비용으로 지출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가처분소득에서 부채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부채비용 수준 자체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매우 높게 나타나 1위와 5분위의 부채비용 수준은 16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위 소득분위는 가처분소득에 비해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 소득 하위 2분위의 경우에도 가처분소득의 약 28%까지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거와 관련한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좀 더 넓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하위 3분위까지도 부담률이 높게 나타난다. 1

분위의 의료비용 지출 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8.0%이며 소득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7.2%와 8.3%이다. 물론 의료비 지출 수준이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높아지기는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비용 부담은 중위소득 계층 까지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또한 소득 하위 계층뿐 아니라 중위소득까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은 민간보험시장이 발달하여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또한 높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필수 지출 부담 비율을 낮추는 것과 함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표 5-9〉 소득분위별 가용소득(5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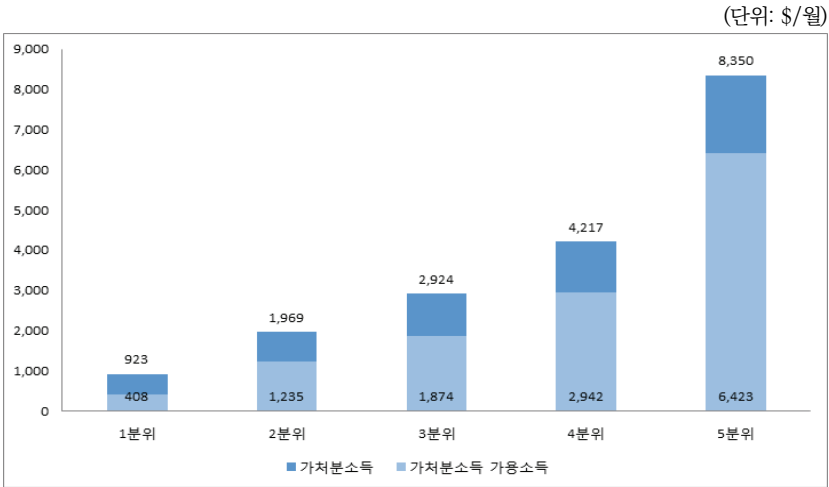
(단위: \$/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7년	주거비	361	443	507	516	661	39.1	22.5	17.4	12.2	7.9
	의료비	74	142	243	272	356	8.0	7.2	8.3	6.5	4.3
	교육비	37	46	69	98	191	4.0	2.4	2.4	2.3	2.3
	부채비용	45	103	233	378	705	4.9	5.2	8.0	9.0	8.4
	합계	515	734	1,050	1,275	1,927	55.8	37.3	35.9	30.2	23.1
	가용소득	408	1,235	1,874	2,942	6,423	44.2	62.7	64.1	69.8	76.9
가처분소득	923	1,969	2,924	4,217	8,35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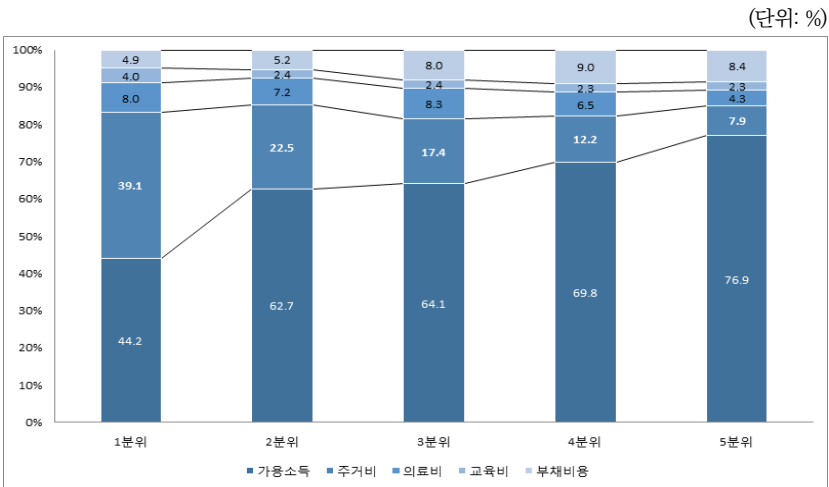
주: 가용소득 평균은 가처분소득 평균에서 총지출의 평균을 뺀 값을 이용함. 분석에 사용한 지출과 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하였으며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을 이용함.

자료: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ublic use dataset(2017).

[그림 5-11]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그림 5-12] 소득분위별 지출과 가용소득 비율



제4절 소결

이 장은 PSID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의 필수 지출에 사용하는 비용 수준을 살펴보고,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한 지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가구 유형별, 주택 점유 유형별,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 유형 중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노인 가구나 아동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지출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많지 않지만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청년 가구는 가구 유형 간 가처분소득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다른 가구에 비해 청년 단독 가구의 가처분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다. 청년 단독 가구보다 청년 부부가 소득원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 청년 부부 가구의 경우 가구 내 소득활동을 부부가 함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 가구보다는 소득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 가구 간 가처분소득 수준 격차는 노인 가구보다는 낮다. 그 이유는 생애주기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축적을 활발히 하고, 노동시장에서 활발하게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축적을 거의 마친 노인보다는 격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출 수준 또한 청년집단 유형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용소득 수준은 지출보다는 애초에 보유하고 있던 소득이 많으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년 단독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가용소득 수준과 그 비율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노인 가구 내에서는 노인 단독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수준이 낮고

노인 부부 가구의 가처분소득 수준이 높다. 노인 가구의 경우 단독 가구보다 부부 가구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부부로 남아 있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축적이 더 많이 이뤄져서 노인이 된 이후 그 격차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가구 유형보다도 노인 부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높은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노인 단독 가구는 의료비 지출 부담도 높다. 노인 단독 가구는 가처분 소득 수준도 낮고 의료비 지출 부담도 높기 때문에 노인 단독 가구의 가용소득 수준은 노인 부부의 2분의 1에 가깝다. 주거비 지출 부담과 의료비 지출 부담 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구는 노인 단독 가구라고 볼 수 있다.

주택 소유 유형은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가 가구는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자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임차 가구 가처분소득과 1.7배 정도 차이 난다. 소득 수준과 지출 수준은 비례하기 때문에 자가 가구의 지출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난다. 자가 가구의 교육비는 임차 가구보다 1.4배, 의료비는 1.9배 정도 더 많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집단은 필수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자체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분위별로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비용 수준과 가구의 비용 부담을 분석할 때와 유사하다. 소득 하위 1분위와 소득 하위 5분위 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9배 정도 차이 난다. 주택 점유 형태별 주요 항목 지출 수준을 분석했을 때와 같이 소득 수준은 해당 항목에 대한 지불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하여 지출 수준도 높다. 또한 남아 있는 가용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요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기타 여가 및 가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

는 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한 지출 부담은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난다. 주거 비용 부담은 소득 하위 계층뿐 아니라 중위 계층에서도 높게 나타난다. 미국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약 20%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의 도시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약 2,600만 명이 주거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470만 명이 연방정부의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다(Urban Institute, 2018, p. 6).

미국의 주거비 지원 정책은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높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의 정책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축소하고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복지지출 비용을 줄이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를 따라간다. 다른 복지급여와 마찬가지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또한 근로를 수급 조건으로 하거나, 평생 수급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복지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다(Urban Institute, 2018, p. 19).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높이고 가구의 가용 소득 수준이 낮아져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다른 항목들의 지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주택 지원을 받는 상당수가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 가구, 장애인, 노인이기 때문에(진미윤, 2017, p. 39; CBPP, 2019)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들은 저소득층 가계의 가용소득을 높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 이를테면 쫓겨나거나 홈리스가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정책 변화는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매우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5장 부록〉

〈부표 1〉 미국의 항목별 가구 소비·지출 평균(2015년): PSID와 CE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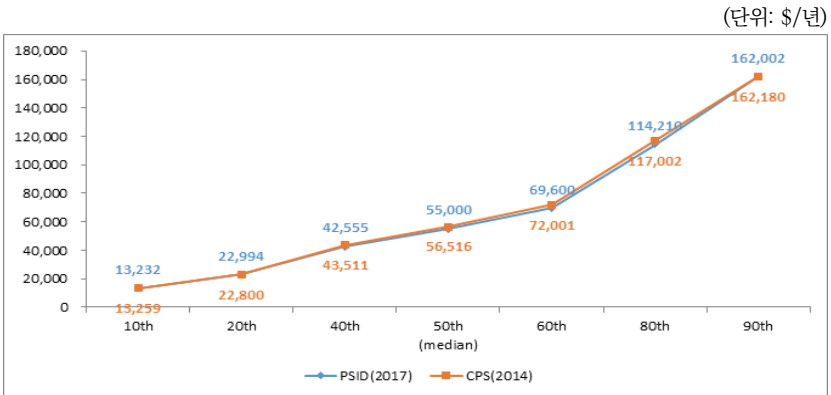
Expenditure category	PSID		CE	
	연간 지출	비율	연간 지출	비율
Food	7,573	17.9	7,936	18.3
At home	5,192	12.3	4,958	11.4
Delivered	108	0.3	NA	-
Away from home	2,274	5.4	2,506	5.8
Alcohol	NA	-	472	1.1
Housing	17,443	41.3	18,333	42.2
Mortgage & loan payments	4,399	10.4	4,703	10.8
Rent	3,112	7.4	3,693	8.5
Property tax	1,776	4.2	2,012	4.6
Insurance	632	1.5	433	1.0
Utilities	2,640	6.2	2,539	5.8
Telecommunication (*)	2,268	5.4	2,123	4.9
Home repairs & maintenance (*)	1,650	3.9	1,365	3.1
Household furnishings & equipment (*)	965	2.3	1,465	3.4
Transportation	7,458	17.6	7,312	16.8
Vehicle loan payment	1,176	2.8	1,647	3.8
Vehicle down payment	1,322	3.1	1,316	3.0
Vehicle lease payment	337	0.8	315	0.7
Insurance	1,383	3.3	933	2.1
Other vehicle expenditures	71	0.2	213	0.5
Repairs and maintenance	1,057	2.5	565	1.3
Gasoline	1,792	4.2	1,962	4.5
Parking and carpool	55	0.1	40	0.1
Bus fares and train fares	86	0.2	92	0.2
Taxicabs	52	0.1	22	0.0
Other transportation	127	0.3	209	0.5
Education	1,454	3.4	1,816	4.2
Child care	388	0.9	286	0.7
Health care	3,978	9.4	4,110	9.5
Hospital & nursing home	550	1.3	158	0.4
Doctor	870	2.1	566	1.3
Prescription drugs	522	1.2	410	0.9
Insurance	2,035	4.8	2,977	6.9
Clothing & apparel (*)	1,275	3.0	982	2.3
Trips & vacations (*)	1,874	4.4	1,269	2.9
Recreation & entertainment (*)	831	2.0	1,386	3.2

Expenditure category	PSID		CE	
Total, including new categories	42,273	100.0	43,431	100.0
(*) New categories	8,863		8,590	
Housing, excluding new categories	12,560		13,380	
Total, excluding new categories	33,410		34,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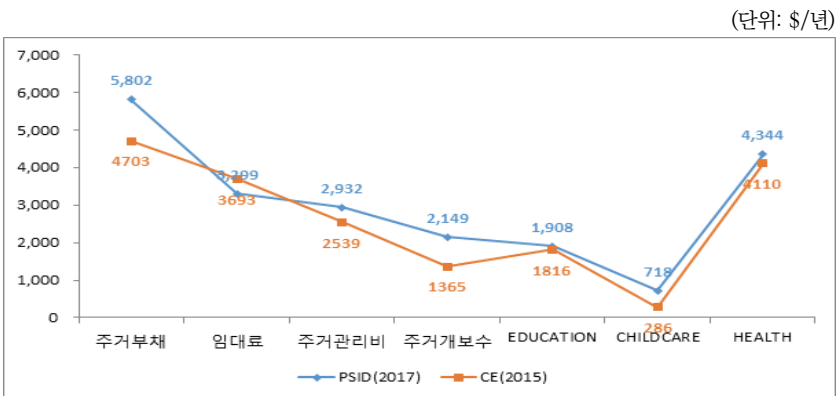
주: CE와 PSID 모두 가중치 적용한 평균 값임.

자료: PSID expenditures compared to th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 from <https://psidonline.isr.umich.edu/Guide/Quality/DataComparisons.aspx>에서 2019. 10. 18. 인출.

[부록 그림 1] 2017년 PSID와 2014년 CPS의 2015년 연간 경상소득 비교



[부록 그림 2] 2017년 PSID와 2015년 CE의 항목별 연간 지출 비교





6

독일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

제1절 독일의 가계 소비 및 지출 특성과 배경

1. 독일 가구소득과 지출 수준

2017년 기준 독일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474유로이며, 이 중 64%가 근로소득이고, 공적이전소득은 22%, 자산 수입은 10%, 기타 소득은 약 4%다.¹⁵⁾ 독일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3461유로이고, 월 가계소비 지출은 2517유로이다.¹⁶⁾

1991년 이후 가계 실질소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Grabka & Goebel, 2018), 1991~2015년 사이에 독일의 가계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실질적인 평균 시장소득이 약 15% 증가하였다. 최근 변화를 보면, 2012~2013년에는 장기적 추이에 비해 평균 이하의 성장을 보였으나, 2013~2015년에는 평균 이상의 증가 추이를 보였다.

독일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은 증가하였지만, 모든 소득계층에서 동일한 소득 상승률을 보인 것은 아니다. 소득 10분위별 비교를 보면, 3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증가하였고, 2분위 이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1991년과 2015년 사이 증가세를 나타낸 소득분위 중에서 소득분위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계층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약 30%로 가장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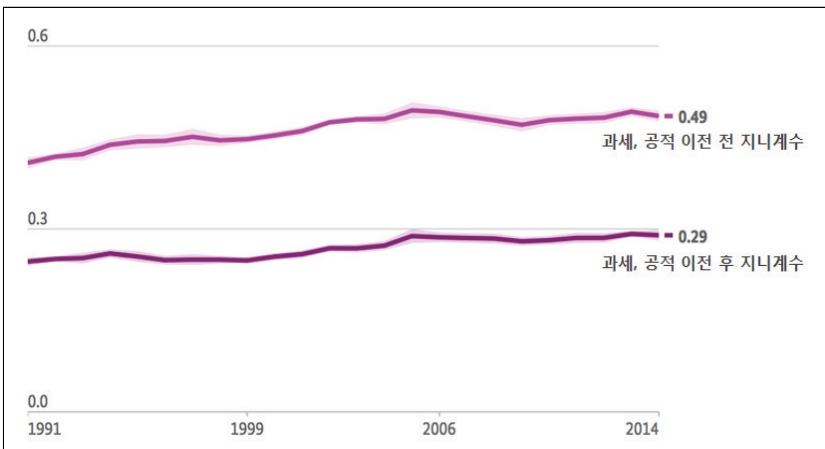
15)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Einkommen-Konsum-Lebensbedingungen/Einkommen-Einnahmen-Ausgaben/bruttoeinkommen.html> (독일연방통계청 홈페이지, 2019. 8. 3. 인출)

16)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Einkommen-Konsum-Lebensbedingungen/Einkommen-Einnahmen-Ausgaben/_inhalt.html (독일연방통계청 홈페이지, 2019. 8. 3. 인출)

증가하였고 소득분위 9분위에서도 16% 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낮은 소득분위에서는 증가율이 그리 크지 않았으며 3분위의 증가율은 5%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2분위에서는 1991~2015년 사이에 실질소득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득분위 1분위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소득분위의 실질소득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2007년 이후에 이주민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독일 가계의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커졌음을 의미한다(Grabka & Goebel, 2018).

독일 가계의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를 더욱 세밀하게 보기 위해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 이후 2005년까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후 2007년까지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이를 보인다. 과세·공적이전이 적용되기 전 지니계수와 적용 후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독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과세 및 공적이전에 의해 다소 완화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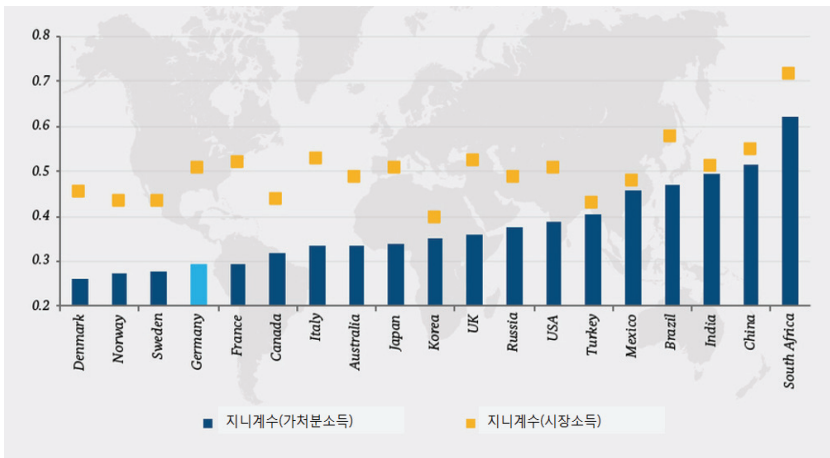
[그림 6-1] 과세 및 공적이전 전후 순가구소득 지니계수



자료: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17)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독일의 조세와 공적이전 체계가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보면, 독일은 약 0.5이고 한국은 0.4 정도이지만, 가처분소득에서는 역으로 한국의 지니계수가 더 높은 약 0.35이고 독일은 약 0.29로 나타났다. [그림 6-2]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독일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소득 10분위와 1분위 상대소득비를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약 9.3이며, 2015년 기준 한국은 약 9.0, 독일은 약 7.1로 나타났다(OECD, 2019c). 결론적으로, 독일의 소득불평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소득재분배 체계가 이를 다소 완화해 주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2]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vs. 시장소득 지니계수(2015년)



자료: 독일 연방재정부 홈페이지.18)

17) <https://www.gut-leben-in-deutschland.de/static/LB/indicators/income/gini-coefficient-income/>(2019. 9. 20. 인출)

1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Topics/International_affairs/Articles/2019-06-07-social-inequality-and-inclusive-growth.html(2019. 9. 9. 인출)

2009년 독일 연방환경청(Deutsches Umweltbundesamt)에 의해 수행된 프로젝트 연구에서 개발된 국가복지지수(NWI: Nationale Wohlfahrtsindex)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1년 이후 국민총생산은 2009년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러나 국가복지지수(NWI)는 1999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이를 보여 2013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국가복지지수의 변화에 복지 요소로서 교육, 건강, 가사노동, 봉사활동 등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denhäuser, Held & Diefenbacher, 2018).

대략적인 독일의 소비지출 구조를 제시하면, <표 6-1>과 같다. 독일 소득 및 소비표본조사(EVS: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는 2013년까지 자료만을 제공하므로,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독일 가계동향조사(LWR: Laufende Wirtschaftsrechnungen) 결과를 덧붙여 작성하였다. 독일 가구의 총소비지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 2013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2013년 소비지출액을 넘어섰다. 1998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가계 총소비지출액이 2061유로에서 2517유로로 456유로 증가하였다. 가장 큰 폭의 지출 증가를 보인 부문은 주거·에너지·주거유지비 부문으로 총 240유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계 소비지출액 중 차지하는 비율도 31.9%에서 35.6%로 3.7%포인트 증가하였다. 건강관리비와 교육비 지출 비용은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4년 이후에 다시 감소하거나 감소 이후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독일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1998-2017년)

(단위: 유로/월, %)

구분	1998	2003	2008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소비지출	2,061 (100.0)	2,177 (100.0)	2,245 (100.0)	2,448 (100.0)	2,375 (100.0)	2,391 (100.0)	2,480 (100.0)	2,517 (100.0)
식료품· 음료·담배류	289 (14.0)	303 (13.9)	321 (14.3)	337 (13.8)	326 (13.7)	332 (13.9)	342 (13.8)	348 (13.8)
의류·신발	118 (5.7)	112 (5.1)	106 (4.7)	119 (4.9)	107 (4.5)	105 (4.4)	108 (4.4)	110 (4.4)
주거·에너지 ·주거유지	657 (31.9)	697 (32.0)	731 (32.6)	845 (34.5)	856 (36.0)	859 (35.9)	877 (35.3)	897 (35.6)
인테리어· 가전가구집 기류	145 (7.0)	127 (5.8)	113 (5.0)	124 (5.0)	132 (5.6)	127 (5.3)	150 (6.1)	140 (5.6)
건강관리	75 (3.6)	84 (3.9)	94 (4.2)	102 (4.2)	92 (3.9)	100 (4.2)	99 (4.0)	98 (3.9)
교통	278 (13.5)	305 (14.0)	328 (14.6)	342 (14.0)	325 (13.7)	314 (13.1)	335 (13.5)	348 (13.8)
우편·통신	51 (2.5)	68 (3.1)	65 (2.9)	66 (2.7)	61 (2.6)	61 (2.6)	62 (2.5)	64 (2.5)
여가·오락· 문화	247 (12.0)	261 (12.0)	255 (11.4)	261 (10.7)	248 (10.4)	252 (10.5)	258 (10.4)	259 (10.3)
교육	11 (0.5)	20 (0.9)	20 (0.9)	22 (0.9)	17 (0.7)	16 (0.7)	18 (0.7)	18 (0.7)
숙박·외식	101 (4.9)	100 (4.6)	113 (5.0)	130 (5.3)	129 (5.5)	135 (5.7)	142 (5.7)	146 (5.8)
기타 물품 ·서비스	89 (4.3)	100 (4.6)	99 (4.4)	100 (4.1)	82 (3.5)	89 (3.7)	90 (3.6)	90 (3.6)

주: 1998, 2003, 2008, 2013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 2014, 2015, 2016, 2017 Laufende Wirtschaftsrechnungen를 바탕으로 재구성.

자료: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Einkommen-Konsum-Lebensbedingungen/Konsumausgaben-Lebenshaltungskosten/Tabellen/privater-konsum-d-EVS.html> &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Einkommen-Konsum-Lebensbedingungen/Konsumausgaben-Lebenshaltungskosten/Tabellen/privater-konsum-d-lwr.html>에서 2019. 7. 4. 인출.

2. 교육, 의료, 주거 관련 정책

가. 교육정책

1) 독일 교육제도 발전 배경

현대 독일 교육체계의 출발은 1870년과 1차 세계대전 사이에 국가가 교육 전달체계에서 교회를 분리하고,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교육체계 개혁에서는 계급에 따른 교육 접근성 문제가 논쟁을 일으키는 주요 주제였으며, 이에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모든 계층의 아동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는 우선 초등학교(Volksschule), 중학교(이차 학교, Sekundarschule), 직업교육이 확대되었다. 또한 3단계의 교육체계가 확립되었는데, 초등학교(Volksschule)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첫 단계 교육기관으로, 실업학교(Realschule)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김나지움(Gymnasium)은 엘리트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Becker, 2014).

이러한 교육체계의 기본 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교육체계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중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종합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모든 계층이 진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973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계획위원회에서 합의된 교육계획에 따른 서독 교육제도의 큰 틀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협력하여 교육정책에 참여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은 주정부 소관이며, 연방정부는 주로 교육의 포괄적인 기본 원칙,

직업교육 등 주정부 영역 이외의 부분을 담당한다(Becker, 2014).

통일 이후에도 기본적인 교육체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동독의 교육체계는 서독의 교육체계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는 계속 대두되었던 독일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문제와 교육체계의 근대화 논의가 볼로냐 선언¹⁹⁾을 계기로 독일 고등교육 개혁으로 이어졌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미국식 학사제도 도입, 엘리트 대학 육성, 대학 등록금 도입 등이다. 대학 등록금 도입은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학위 취득자, 자국 학위를 가진 외국인 학생, 노령 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주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장 먼저 1999년에 바이에른주에서 두 번째 학위 취득자에게 500유로의 등록금을 부과하였고, 이어 바덴뷔르템베르크, 니더작센, 자를란트주에서도 이를 도입하였다. 또한 졸업 연한을 넘긴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부과가 시행되었고, 대부분의 주에서 이러한 페널티 성격의 대학 등록금 제도가 도입되었다(조상식, 2010; Becker, 2014). 그리고 현재 일부 주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다.

2) 현행 학제

독일의 학제는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게 복잡해서 간단히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림 6-3]은 독일 학제를 개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각 단계가 단선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등학교 간 이동이 가능하고 여러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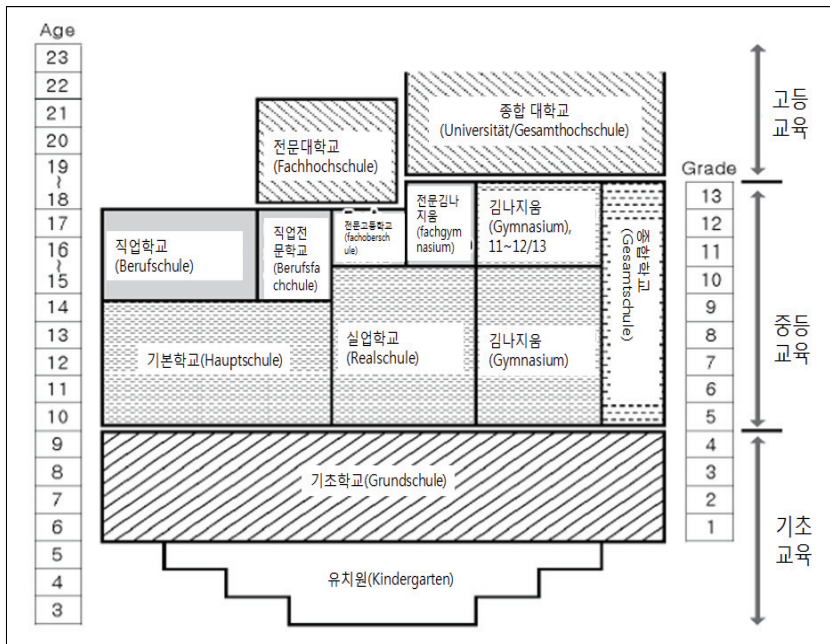
독일 학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취학 전 교육 단계인 유치원은 주로

19) 볼로냐 선언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1999년 유럽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 고등교육체계를 통일하고 유럽 국가의 국제적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을 일컫는다(조상식, 2010, pp. 193-194).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었으나, 만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대로 2017년 기준 만 3세 미만 영유아의 이용률도 33.1%로 증가하였다(송다영, 박은정, 2019, p. 120).

초등교육기관인 기초학교(Grundschule)는 4년제이며, 방과후돌봄은 호르트(Hort)라는 보육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2002년 이후에 종일제 돌봄이 확대되면서 종일제 학교(Ganztagsschule)가 방과후돌봄의 주요 체계로 자리 잡았다(Münder, 2017).

[그림 6-3] 독일 학제의 교육 연한



주: 김나지움 상급반인 11학년~13학년은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12학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2학년을 함께 표시함.

자료: 김성룡(2019, p. 44) 자료를 번역함.

중등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 기본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으로 나뉜다. 기본학교는 5~9학년 또는 10학년까지이며, 실업학교는 5~10학년이고, 김나지움은 5~10학년까지와 상급반인 11~13학년으로 구분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주에서 12학년제를 채택하여 12학년에 대학입학시험인 아비투어(Abitur)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기본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이외에도 통합제 학교인 종합학교(Gesamtschule) 형태도 있다. 중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다른 유형의 중등학교로 이동이 가능하다(김미숙 외, 2016).

중등학교 1단계²⁰⁾를 졸업한 학생은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에 진학할 수 있지만, 직업훈련(Ausbildung)을 받으면서 직업학교(Berufsschule)에 다닐 수도 있다. 독일 직업훈련은 기업체와 학교에서 이중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다. 또한 전문 아비투어(Fachabitur)를 보고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 진학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Universitaet)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정식 아비투어를 보아야 한다. 독일의 전문대학과 일반 대학의 학사 과정은 대부분 6학기 과정으로 운영되며 전공에 따라 최대 8학기까지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학사 학위 이후에 디플롬(Diplom)이나 마기스터(Magister) 학위 과정이 있었으나, 볼로냐 프로세스 이후에 국제화 작업에 따라 대부분 4학기제로 운영되는 마스터(Master) 석사 학위제도로 변경되었다(Becker, 2014).

20) 기본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5~10학년에 해당함.

3) 무상교육 및 학자금 지원

독일의 의무 무상교육은 각 주의 헌법(Landesverfassung)이나 학교법(Schulgesetz)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교육 기간은 중등 2단계 교육까지로 총 11~1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에는 일반적인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의무교육도 포함된다. 중등 2단계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아비투어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과정도 있지만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도 의무 무상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과후돌봄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역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김미숙 외, 2016; Münder, 2017).

독일 교육의 재원은 주로 주정부와 지자체의 조세이다. 학교교육은 평준화되어 있는 국공립 학교를 바탕으로 하며, 학생의 교육비용은 기본적으로 무상이다. 그러나 교육비용에 수업 교재 대금, 교통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김미숙 외, 2016).

무상교육 지원의 범위는 주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연방 차원의 교육패키지(Bildungspaket)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저소득층 아동 대상 지원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 패키지에는 급식비 지원, 준비물 및 학습 자료 지원, 견학 및 수학여행 경비 지원, 필요에 따른 학습 과외 지원, 문화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미숙 외, 2016).

독일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없음에도, 학업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교육 지원(BAföG) 제도, 즉 학자금제도가 있다. 부모 및 학생의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출 자격 심사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다. 2019년 현재 월 상한선은 853유로이다(BMBF, 2019).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50%는 생활을 위한 보조금이며, 50%는 무

이자 대출에 해당한다. 전문학교나 직업교육생도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방 교육 지원금의 50%인 대출금에 대한 상환은 차후 일정 소득 이상일 때부터 사분기마다 상환하면 된다(Feld, Haucap, Wieland & Wigger, 2013).

나. 의료정책

1) 독일 의료보장체계

독일은 188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이다.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은 시작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고, 현재도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가, 언론인, 공무원 등은 공적 의료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공적 의료보험 의무 가입 제외 대상자들은 직종별로 의료보험조합을 조직하거나, 민간 의료보험에 단체 가입하고, 국가는 민간 의료보험을 관리·감독한다. 따라서 독일 의료보험 체계는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나뉘며, 단일 보험자가 아닌 여러 의료보험조합 간 경쟁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공공부조 수급자 및 전쟁피해보상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한 개별 법률에 따른 공적 의료보장도 독일 의료보장 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이용갑, 2018, pp. 509-511).

〈표 6-2〉 독일의 의료보장체계(2014년)

구분	I. 공적 제도		II. 민간 제도
	1. 공적 의료보험	3. 기타 공적 의료보장	2. 민간 의료보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 가입 소득상한선 미만의 연간 근로보수를 받는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 노령연금생활자 대학생 임의가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조 수급자 연방원호법에 의한 전쟁피해보상연금 수급자 교도소 수감자 징병제에 의한 의무군 복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의료보험 의무가입 소득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민간 경제활동 종사자, 연금생활자 및 그들의 피부양자 연방정부 및 주정부 일반 공무원 및 국방·치안 담당 특수 직역 공무원 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의료보험조합(125개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의료보험조합: 11개 - 직장 의료보험조합: 106개 - 수공업자 의료보험조합: 6개 - 광산-철도-해운 보험조합: 1개 - 농업인 의료보험조합: 1개 2차 의료보험조합(6개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RMER GEK, TK, DAK, KKH, HEK, hkk 	(개별 법률에 근거)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지자체가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9개 민간 의료보험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상호보험조합 (가입자 51.9%) - 31개 주식회사 (가입자 48.1%)

주: 1) 2014년 기준 독일 전체 인구 8129만 8천 명, 약 13만 명(0.1%)의 무보험자.
 2) 공적 의료보험은 BMG(2016) 및 VDEK(2015), 민간 의료보험은 PKV(2015) 참조.
 자료: 이용갑(2018, p. 512).

독일은 의료보험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통독 이후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의료보험 체계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재정 효율화를 위한 시도, 즉 의료보험의 재정 적자를 극복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보험조합 간 경쟁 체계를 도입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도를 했다. 이를 위해 다원적 의료보험조합 구조를 만들고 보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증액되었으나, 의료보험조합 선택권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조합을 달리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김영미, 2017).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었던 본인

부담률은 의료보험 재정이 안정화된 이후에 경감 조치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추가 보험료는 0.9%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저소득층에게 특히 부담이 되어 왔던 '외래진료비' 항목이 폐지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다소 경감되었다(김영미, 2017).

2) 의료보험 현황 및 문제점

의료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전체 의료보험 가입자인 7950만 명 중에 7070만 명인 88.9%가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이고, 11.1%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이다.²¹⁾ 2019년 기준, 공적 의료보험 의무 가입 소득선은 월 5062.5유로, 연 6만 750유로이며, 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은 세전소득의 14.6%이다.²²⁾

지속적인 의료보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 간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공적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과 민간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더 높은 소득을 가진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가 공보험을 통한 연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오히려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가 특혜를 받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상대적으로 짧은 대기 시간, 의료진 선택, 외래 진료와 신약에 대한 높은 접근성 등이다. 좌파당, 녹색당, 사민당 등에서는 이원화되

21) <https://de.statista.com/infografik/12075/gesetzliche-und-private-krankenversicherung-in-deutschland/> (2019. 9. 15. 인출)

22) <https://www.krankenkassen.de/gesetzliche-krankenkassen/system-gesetzliche-krankenversicherung/sozialversicherung-rechengroessen-beitragsbemessungsgruenze-versicherungspflichtgrenze/rechengroessen-2019/> (2019. 9. 15. 인출)

어 있는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보험(Bürgerversicherung)²³⁾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Gerlinger, 2018, pp. 29-31).

다. 주거정책

1) 독일 주거정책 전개 과정: 바이마르공화국부터 통독 이전 시기까지

19세기 말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 지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하였다. 20세기 초까지는 시장 내에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택 공급이 증가하였지만, 저소득 노동자 계층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1918년 건립된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고, 자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여러 주택 건설조합에 보조금과 무이자 또는 저금리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건축주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정부의 주택 건설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료도 정부가 제시하는 수준에서 받을 수 있었고,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 기준에 따라 임차인을 선발해야 했다. 이는 현재 사회임대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다(이신용, 2018, pp. 671-674).

독일에서 다시 심각한 주택난이 대두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전쟁의 여파로 생산시설 및 사회 인프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주자들이

23) 시민보험은 독일 전체 거주민이 공동 의료보험에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고, 의료보험 의무 가입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민보험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시민보험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영업 소득, 지대, 자본소득을 모두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 의료보험료 산정에서 불공정을 없앨 수 있고, 오히려 의료보험료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Gerlinger, 2018, p. 31).

파괴되어 도시 지역에 약 900만 명의 노숙자가 발생하였으며, 약 2100만 명의 인구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원했다. 이에 1950년 연방공화국(구서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통제하기 위한 첫 번째 주택건설법(Wohnungsbaugesetz)을 제정하였고, 주택 건축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택 건설 확대에 주력하였다(Egner, 2014, p. 13). 전후에 주택 재건 사업을 통해 건축된 주택들은 개인 단독주택보다는 건축조합, 건축기업, 개인 건축가들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지은 다층 주택이 다수를 이루었다. 1956년까지 주택 건축 지원금을 받고 지어진 사회주택은 총 신축 주택의 60%에 달했고, 이는 임대주택의 58%를 차지했다. 지금까지도 독일 주택의 절반 이상이 다층 주택이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차 주거 형태 비율이 더 높다(Kaltenbrunner & Waltersbacher, 2014; 이신용, 2018, p. 676). 2017년 자가 소유율을 살펴보면, 유럽연합(EU) 28개국의 평균 자가 소유율이 69.3%인 데 반해 독일의 자가 소유율은 51.4%로 상당히 낮다.²⁴⁾

196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 주도의 주택통제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갔다. 이 시기 독일의 주택정책은 국가가 모든 계층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에서 저소득층 및 요보호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5년에는 주택구속법(Wohnbindungsgesetz)을 제정하여 자가주택 건설과 저소득 가구의 사회임대주택 주거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득으로 인해 사회부조(Sozialhilfe)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수당(Wohngeld)도 같은 해에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택시장에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고 임차인에 대한 강한 보호 조치가 일부 폐지됨에

24)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55734/umfrage/wohneigentumsquoten-in-europa/> (2019. 9. 22. 인출)

따라 임대료가 상당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거수당을 도입한 것이다(Egner, 2014, pp. 13-15; 이신용, 2018, pp. 678-6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을 규제하던 법률들의 폐지로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문제가 불거지자, 연방정부는 1971년에 주거공간해지보호법(Wohnraumkündigungsschutzgesetz)을 도입한다. 해당 법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되었으며, 임대료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 내 임대료 수준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되었다(Egner, 2014, p. 15; 이신용, 2018). 1982년에는 건축아동수당(Baukindergeld)이 도입되어 유자녀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국가 통제가 완화되면서 주거 부문이 상당히 시장화되었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구속 기간이 만료된 사회주택이 증가하면서 사회임대주택이 감소하여 다시금 주택 부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Egner, 2014, p. 16).

2) 통독 이후 주거정책

통독 이후 주거정책을 사회임대주택, 자가주택 지원, 주거수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임대주택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거 인구 이동이 발생했고, 동독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다수 생겨남에 따라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1990년대에 사회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 예산은 동독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Egner, 2014). 또한 사회주택의

잘못된 임대 방식 문제²⁵⁾를 해결하고 주택 건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94년 주택건축지원법(Wohnungsbauförderungsgesetz)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임대주택의 임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조사에 따라 새로운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었으며, 행정 간소화를 위해 해당 소득 조사는 주택 건축 지원 및 주거수당과 연계되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택 개량(Modernisierung) 사업도 주택 건축 지원에 포함되었다(Deutscher Bundestag, 1994).

1956년 2차 주택건설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관련법을 개편하기 위해 2001년 주거공간지원법(Wohnraumsförderungsgesetz)이 제정되었다. 기존 법은 전쟁 이후 폭넓은 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나, 이제 주택시장 내에서 주택 공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신설된 법은 자력으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계층에게만 보조금이 투입된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이신용, 2018, p. 683).

2007년부터는 주정부가 사회주택 지원을 관할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임대주택 신축이 감소하고 지역 간 사회주택 지출에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동독 지역의 대다수 주는 주택 신축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은 반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이에른, 니더작센주 등 서독 지역 주들은 임대주택 신축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Schier & Voigtländer, 2016).

25) 사회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하여도 계속 입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계층이 저렴한 사회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고 실제로 지원이 더 필요한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이신용, 2018, p. 680).

* 자가주택(selbstgenutzte Wohnungen) 지원

독일 주택정책의 핵심축 중 하나가 자가주택 지원이었으나, 자가 소유율의 큰 증가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가주택 신축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1980년대에는 주택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가 소유율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1996년에는 자가주택보조금법(Eigenheimzulagegesetz)이 도입되어 기존의 세제 혜택 방식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자가주택보조금은 신축이나 자가주택을 구입한 이후 실제 거주하는 기간 최대 8년 동안 지급되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소득 이하로 수급 자격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2006년에 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자가주택보조금이 폐지되었다(Egner, 2014, pp. 16-17; 이신용, 2018, p. 698).

* 주거수당(Wohngeld)

주거수당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임차인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주거수당 수급 소득 기준은 임대료 수준과 가구 규모(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구분된다. 하르츠 노동시장 개혁으로 도입된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에 주거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II 수급자는 주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외에 사회법전 7권(SGB VII)에 속하는 사회부조를 받는 사람이나 거주시설 입소자도 주거수당을 받을 수 없다(BMAS, 2019, pp. 203-204). 2017년 기준 주거수당을 받는 가구²⁶⁾의 월평균 수급액은 153유로이며, 연방과 주정부는

26)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거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수급 자격자와 수급 미자격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월평균 수급액은 150유로임.

2017년에 주거수당으로 총 11억 3370만 유로를 지출하였다.²⁷⁾

〈표 6-3〉 주거수당 수급 기준: 임대료 등급에 따른 월 총수입

(단위: 유로)

가구 구성원 수	임대료 등급					
	I	II	III	IV	V	VI
1	855	892	923	955	986	1,010
2	1,166	1,216	1,262	1,307	1,350	1,384
3	1,427	1,483	1,534	1,585	1,635	1,672
4	1,909	1,970	2,023	2,075	2,127	2,166
5	2,177	2,244	2,304	2,362	2,419	2,461

자료: BMAS(2019, p. 205).

2020년 1월 1일부터는 「주거수당 강화법」(Gesetz zur Stärkung des Wohngelds)이 발효되어 주거수당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거비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EU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독일 가구의 주거비 지출 증가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5~2015년 사이에 독일 전체 가구의 가계소득 중 주거비용 비율이 2.1% 증가한 것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용은 3배가 넘는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⁸⁾

27)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8/09/PD18_328_223.html (2019. 9. 28. 인출)

28) <https://www.maz-online.de/Nachrichten/Politik/Europavergleich-Wohnkosten-fuer-Geringverdiener-in-Deutschland-besonders-hoch> (2019. 6. 10. 인출)

라. 주거 관련 대출제도

주택 대출 이자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연 4.4%에서 2016년에는 1.2%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주택가격은 2010년 평균 26만 4000유로에서 2016년 32만 8000유로로 상당히 상승하였다. 따라서 저금리로 인해 월 부담액은 감소할 수 있으나, 주택 구입 시 부채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상술한 바와 같이, 주거 구입 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지원으로는 조세 지원이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건축아동수당(Baukindergeld)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이 외에 대표적인 주택 대출 제도로 건축자금지축계약(Bausparvertrag)이 있다. 독일의 건축자금지축계약은 희망하는 대출 금액을 정해 계약을 하고, 희망 대출액의 25~50%를 저축한 이후에 대출이 가능한 제도이며, 주택 구입 및 신축뿐만 아니라 집수리 및 리모델링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계약 시 전체 대출 금액의 1~1.6%를 수수료로 내고, 고정금리로 대출 이자를 지불한다.³⁰⁾

건축자금지축계약의 장점은 일반 주택 대출보다 낮은 고정 대출 이자를 지불하며, 납입 금액, 횟수,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후에 주택 구입 계획을 취소하더라도 자산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가 지원 중 노동자저축보조금(Arbeitnehmersparzulage)은 건축자금지축계약 시 고용주와 사전 합의 후 자산형성지원급여(vermögenswirksame Leistungen)를 명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로, 고용주가 일 년에 최대 470유로를 추가 급여로 지불한다. 이 급여를 직접 지불하는

29) <https://de.statista.com/infografik/5737/baufinanzierung-in-deutschland/>
(2019. 9. 29. 인출)

30) <https://bausparvertrag.com/> (2019. 9. 30. 인출)

것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이지만, 국가에서 노동자저축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이를 고용주가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건축자금저축계약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는 주택건설 보조금(Wohnungsbauprämie)이 있다. 주택건설보조금은 싱글은 연소득 2만 5600유로 이하, 부부는 5만 1200유로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싱글은 최대 연 512유로, 부부는 연 1024유로가 지원된다.³¹⁾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 분석 자료의 특성

소득 및 소비표본조사 EVS(Einkommens-und Verbrauchsstichprobe)는 독일 인구의 사회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득 현황 및 소비 행태를 개괄하고 빈곤 및 부의 분배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EVS 조사 결과는 여러 사회정책, 가족정책, 경기정책, 조세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초생계보장 산정에서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지수와 국가회계 등에도 반영된다(Forschungsdatenzentren der statistischen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19).

EVS는 구서독 연방통계청에서 1962, 63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1969년 2차 조사, 1973년 3차 조사 이후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18년 12차 조사까지 이루어졌으며, 독일연방통계청에서 제공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2013년 11차 웨이브이다. EVS 조사는 일반 사항 조사(AA), 자금 및

31) <https://bausparvertrag.com/staatliche-foerderung/> (2019. 9. 30. 인출)

자산 조사(GS), 가계부 조사(HB), 식료품·음료·담배류 세부 기록부 조사(NGT)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VS 2013년 11차 웨이브 중 일반 사항·자금 및 자산·가계부 조사 통합 데이터(AAGSHB)를 사용하여 독일 가구의 특성에 따른 가용소득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주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³²⁾ 중 월 세후 소득이 1만 8000유로 미만인 가구³³⁾이며, 문항에 따라 가구 구성원에 대한 개별 조사도 실시된다. 설문은 일반적으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일반 사항 조사는 응답자가 온라인 설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조사 참여 가구는 먼저 일반 사항과 자금 및 자산 조사 내용을 기입한 후, 가계부를 3개월간 기록한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가구 중 20% 하위 표본을 추출하여 추가적으로 식료품·음료·담배류 세부 기록부 조사를 한 달간 실시한다(Forschungsdatenzentren der statistischen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19).

2013년 조사 대상 표집은 2010년 독일 마이크로센서스(Mikrozensus)에 기초한 할당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집된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설문 종료 전에 중단한 경우는 최종 데이터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 기준 총 7만 928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최종 표본 수는 일반 사항 조사 5만 9775가구, 자금 및 자산 조사 5만 4949가구, 가계부 조사 5만 3490가구, 식료품·음료·담배류 세부 기록부 조사 1만 1648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항·자금 및

32) EVS에서 가구는 가계경제를 공유하는 가족, 친인척, 사적 관계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며, 개별 경제활동을 하는 1인 가구도 포함된다. 고정 주거지가 없거나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Forschungsdatenzentren der statistischen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19, p. 7).

33) 세후 월소득 1만 8000유로 이상인 가구는 조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 응답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미포함함(Statistisches Bundesamt, 2016, pp. 3-5).

자산·가계부 조사 통합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5만 3490가구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6-4〉 2013년 독일 소득 및 소비표본조사 EVS 표본 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징

(단위: 가구(%))

구분		가구 수(%)
총 가구 수		53,490(100.0)
응답 가구주 성별	남성	32,839(61.4)
	여성	20,651(38.6)
거주 지역	서독	40,559(75.8)
	동독	12,931(24.2)
가구주 연령	만 35세 미만	10,085(22.1)
	만 35세~만 50세 미만	15,597(29.4)
	만 50세~만 65세 미만	16,080(28.2)
	만 65세 이상	11,721(20.3)
주거 형태	자가	26,909(50.3)
	임대	26,581(49.7)
가구주 경제활동	자영업자	2,015(3.8)
	임금노동자	31,524(58.9)
	비경제활동인구*	19,951(37.3)
가구 규모	1인	17,751(33.2)
	2인	21,542(40.2)
	3인	6,946(13.0)
	4인	5,496(10.3)
	5인 이상	1,755(3.3)

*: 실업자, 휴직 및 퇴직자, 연금 수급자, 학생 포함.

자료: Statistische Bundesamt,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2013.

2.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부채 관련 사용 변수

〈표 6-5〉 한국복지패널과 독일 EVS의 변수 비교

구분	한국복지패널 (2017년 기준)	독일 EVS (2013년 기준)
지출	식료품비	식품, 무알코올 음료
	월세	주택 임대료(관리비 포함)
	주거 관리비	
	광열수도비	에너지비(전기, 가스, 기타 난방비)
	-	주거유지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인테리어, 가구집기비	

136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구분	한국복지패널 (2017년 기준)	독일 EVS (2013년 기준)
	보육료비	보육료비(급식비 제외)
	피복·신발비	의류 및 신발
	보건의료비	의료비 의약품 의료용품 정형외과용 신발 의치 비용 의료 장비 및 보장구 수리비 치료 도구 및 장비 비용 의원 진료비 의료서비스 비용 병원비 치과비용 의료 장비 대여비 병원 외 기타 의료비
	공교육비	취학준비반 비용(급식비 제외)
	사교육비	학비 및 시험료
	-	강좌료
	교양오락비	방과후 지도
	교통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통신비	교통비
	기타 소비지출	우편 및 통신비 알코올 음료, 담배류 등 기호품 숙박 및 외식비 기타 물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 기타 지출
	사적이전지출	기타 이전(회비, 부양비 등)
	세금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사회보험료
	-	자산 형성 비용
소득	경상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가치분소득	가치분소득
주거 관련 부채	주택 가격	-
	1년간 총 원금 상환액(가)	(본인이 사용하는 부동산) 주택 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액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주택 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액

구분	한국복지패널 (2017년 기준)	독일 EVS (2013년 기준)
	12월 31일 기준 주택 관련 부채액(나)	-
부채	금융기관 대출	소비자금융신용대출 상환액
	일반 사채	-
	카드빚	-
	전세보증금(받은 돈)	-
	외상, 미리 탄 깃돈	-
	기타 부채	건축자금저축계약(Bausparvertrag)*
이자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본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주택 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주택 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기타 이자	마이너스 통장 이자대출 이자 소비자금융신용대출 이자

*: 아직 미지급된 건축자금저축계약액만 제시되어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2017 조사표 및 Forschungsdatenzentren der statistischen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19.

본 연구에서는 핵심생계비를 주거·의료·교육·주택 관련 부채 지출로 상정하고, 가계의 가치분소득에서 해당 지출 비용을 제하여 가계의 실질적 소비 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용소득’을 도출하였다. EVS 조사에서 가계 경상소득(Haushaltsbruttoeinkommen)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가계 순소득(Haushaltsnettoeinkommen), 즉 가치분소득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고용주 및 연금보험공단의 보조금을 경상소득에 더한 소득액에 소득세, 교회세,³⁴⁾ 연대추가세(Solidaritätszuschlag)³⁵⁾ 등 세금과 공적 사회보험료를 제하여 계산한 소득이다.

34) 독일 교회세는 종교인으로 등록된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징수한 세금은 교인 수에 따라 종교단체에 분배된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D%9A%8C%EC%84%B8>에서 2019. 8. 1. 인출)

35) 연대추가세는 1991년 통독과 2차 걸프전 비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진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요 목적이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재건과 경제발전이었기에 통일세의 성격이 있다.

EVS에서 주거 관련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은 관리비를 포함한 주택 임대료, 주택 소유자의 귀속지대 및 임료, 주택수리비, 에너지비가 있다. 귀속지대 및 임료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만큼 소비한 것으로 보는 추정치를 의미하는데, 분석에는 실제 지출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귀속지대 및 임료는 제외하였다. 에너지비에는 지역난방, 온수, 전기(태양에너지 포함), 도시가스, 천연가스, 프로판 및 부탄가스, 난방용 기름, 석탄, 목재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의료비에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과 반창고, 붕대, 구급상자, 체온계, 피임기구 등의 의료용품, 치과 진료비, 의치 비용, 의료 장비 및 보장구 수리비, 치료 도구 및 장비 비용 및 대여료, 의원 진료비(주치의 또는 전문의 진료비), 의료서비스 비용, 요양비(요양주거시설 비용은 제외) 및 입원비 등에 해당하는 병원비, 기타 의료비 등에 대한 항목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에서 이미 사회보험료를 제하였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지출은 의료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교육비는 보육료비, 취학준비반비, 학비 및 시험료, 방과후지도 비용, 강좌료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육료비는 급식비를 제외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며, 여기에는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비 및 시험료에는 학교와 대학교 재학 중 지출하는 수업료 및 교육서비스 비용, 수학여행비용 등을 포함한다. 단, 교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규 수업 이외에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방과후지도와 정규 학교 수업 외에 실시되는 각종 강좌료³⁶⁾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분석에서는 보육료비, 취학준비반 비용, 학

(<https://de.wikipedia.org/wiki/Solidarit%C3%A4tszuschlag>에서 2019. 6. 30. 인출)

36) 강좌료에는 예체능 강좌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음악, 미술 등은 문화생활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생활비에 포함되어 있다.

비 및 시험료만 분석에 포함되어 있다.

EVS 조사에는 주택의 대출 상환액과 이자액이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 관련 부채를 EVS에서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인의 사용 유무에 따른 부동산 주택 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액과 이자에 대한 항목들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 상환액과 이자액이 이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주택 관련 부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변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건축자금지축계약 항목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건축자금지축계약에는 저축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EVS 조사에서는 아직 지불받지 않은 건축자금지축계약 액수만 물어보고 있어서 현재까지 납부액, 국가 지원금, 계약 시 수수료, 이자 등은 계산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소비자금융대출 등 기타 부채와 관련된 항목도 제외하였다.

〈표 6-6〉 2013년 독일 소득 및 소비표본조사 EVS 변수 정의

구분	변수 정의
주거비	{주택 임대료(관리비 포함)+에너지비+주거유지비(유료/3개월)}÷3
의료비	{의약품+의료용품+정형외과용 신발+의치 비용+의료장비 및 보장구 수리비+치료 도구 장비 비용+의원 진료비+의료서비스 비용+병원비+치과 비용+의료장비 대여비+병원 외 기타 의료비(유료/3개월)}÷3
교육비	{취학준비반 비용(급식비 제외)+학비 및 시험료(유료/3개월)}÷3
주거 관련 부채	{(본인이 사용하는 부동산) 주택 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액 + 이자(유료/3개월)}÷3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유료/3개월)}÷3
가용소득	가처분소득-주거비-의료비-교육비-주거 관련 부채비용

EVS 가계부 조사는 3개월 단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 관련 부채비용, 가처분소득은 가구균등화를 적용한 후 3

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가용소득은 균등화된 값을 바탕으로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 관련 부채비용을 제하여 도출하였다.

제3절 독일 가용소득 분석 결과

1. 가구 유형별 분석

우선 EVS 2013년 기준 독일 전체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은 2406.8유로였다. 아동 가구가 2333.2유로로 가장 높고, 노인 가구가 2211.3유로이며, 청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94.9유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이 세 가구 유형의 가처분소득보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중년층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 유형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채비용의 월 지출액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13.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가구의 주거비는 월 383.7유로,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8.3%로 다른 가구 유형보다 주거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주거비 다음으로 주거비 관련 부채비용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10.9%로 가장 낮았지만 부채비용은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 가구의 자가 비율이 58.5%로 다른 가구의 자가 비율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 가구의 높은 자가 비율로 인해 전체 아동 가구의 임대료 지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주택 구입으로 인한 부채비용 지출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가구 자가 비율은 55.1%로 아동 가구와 3.4%포인트 차이이지만 부채비용은 매우 적게 나

타나는데, 이는 이미 주택 구입 비용 지불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는 질병 발생률이 높은 노인 가구에서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아동 가구가 3.2%, 청년 가구가 가장 낮은 2.5%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교육비 비율은 0.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아동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월 28.6유로(1.2%)로 청년 가구의 25.1유로(1.2%)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가구에서는 거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에서 핵심생계비를 제한 가용소득을 비교해 보면, 주거비 지출이 매우 높게 나타난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이 가처분소득 대비 71.7%로 가장 낮았으며, 주거 관련 부채비용이 많은 아동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은 72%로 청년 가구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노인 가구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았으나, 의료비는 절대적인 지출액에서 주거비나 주거 관련 부채비용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비는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7〉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단위: 유로/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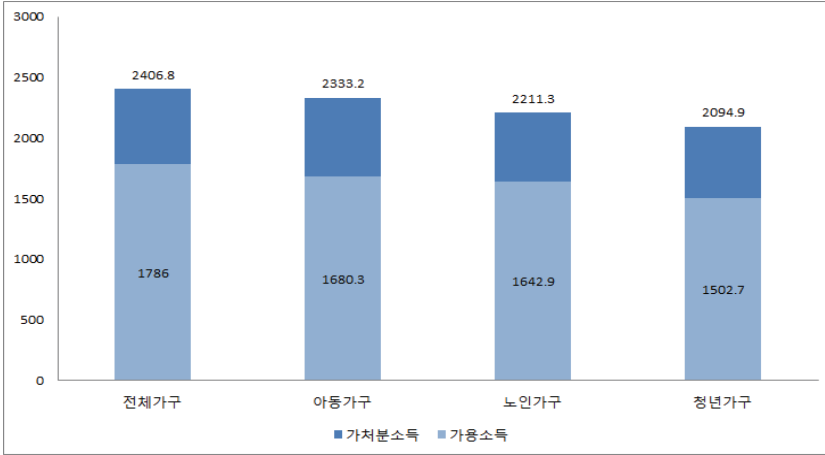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청년 가구	전체 가구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청년 가구	
2013	주거비	325.2	255.2	329.6	383.7	13.5	10.9	14.9	18.3
	의료비	111.3	73.3	179.6	52.3	4.6	3.2	8.1	2.5
	교육비	11.4	28.6	0.5	25.1	0.5	1.2	0.0	1.2
	부채비용	172.9	295.8	58.7	131.1	7.2	12.7	2.7	6.3
	합계	620.8	652.9	568.4	592.2	25.8	28.0	25.7	28.3
	가용소득	1786.0	1680.3	1642.9	1502.7	74.2	72.0	74.3	71.7
가처분소득	2406.8	2333.2	2211.3	2094.9	100.0	100.0	100.0	100.0	

자료: Statistische Bundesamt,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2013.

142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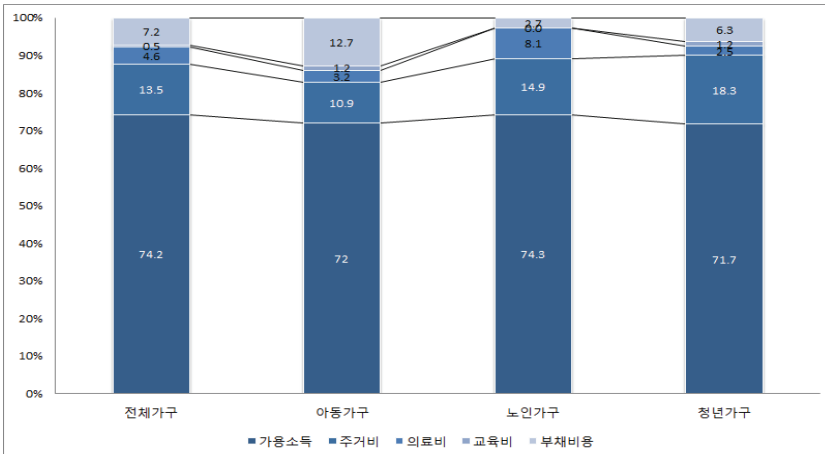
[그림 6-4] 독일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단위: 유로/월)



[그림 6-5] 독일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단위: %)



2.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분석

노인 가구를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의 결과가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났다. 노인 단독 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가 20.5%로 노인 가구 세부 유형을 포함한 전체 가구 유형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 부부의 주거비는 11.9%로 비노인 가구의 주거비 비율인 13.2%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자가 소유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비 지출에서는 노인 부부의 지출 비용이 노인 단독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 부부 가구가 노인 단독 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 자부담 의료비 지출이 많고 병원 이용도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은 노인 단독 가구가 69.9%로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에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이 7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 단독 가구의 주거비 과다 지출과 적은 가용소득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 노인 빈곤 문제는 여성 노인 1인 가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5세 이상 여성 노인 중 55.4%가 단독 가구일 정도로 독일의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매우 높다.³⁷⁾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은 남성 노인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데, 그 이유는 많은 여성이 저임금 직종에 종사했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짧은 연금 수급 기간으로 평균 연금액이 남성 연금의 6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³⁸⁾

37)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L78-Alleinlebende-Alter-Geschlecht-ab-1991.html> (2019. 9. 29. 인출)

38) https://www.focus.de/finanzen/altersvorsorge/arm-im-alter-viele-frauen-verdien-zu-wenig-das-hat-drastische-folgen-fuer-ihre-rente_id_10826742.html (2019. 9. 29. 인출)

144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표 6-8〉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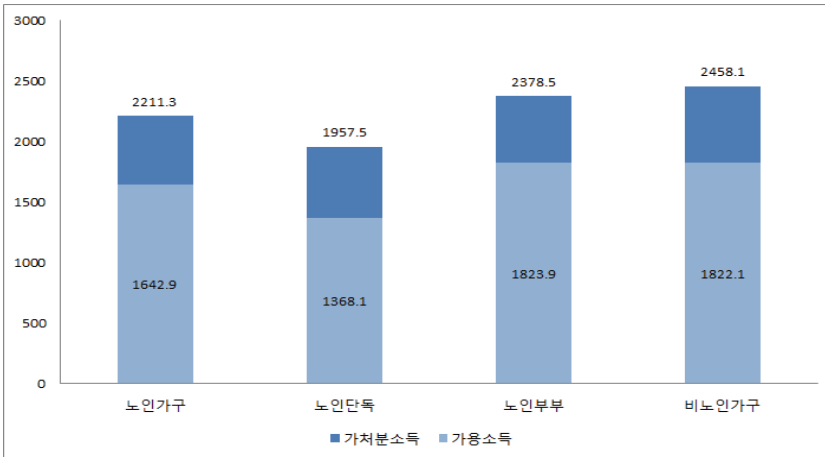
(단위: 유로/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2013	주거비	329.6	401.7	282.0	324.8	14.9	20.5	11.9	13.2
	의료비	179.6	134.1	209.6	92.3	8.1	6.9	8.8	3.8
	교육비	0.5	0.4	0.7	14.4	0.0	0.0	0.0	0.6
	부채비용	58.7	53.2	62.3	204.5	2.7	2.7	2.6	8.3
	합계	568.4	589.4	554.6	636.0	25.7	30.1	23.3	25.9
	가용소득	1642.9	1368.1	1823.9	1822.1	74.3	69.9	76.7	74.1
가처분소득	2211.3	1957.5	2378.5	2458.1	100.0	100.0	100.0	100.0	

자료: Statistische Bundesamt,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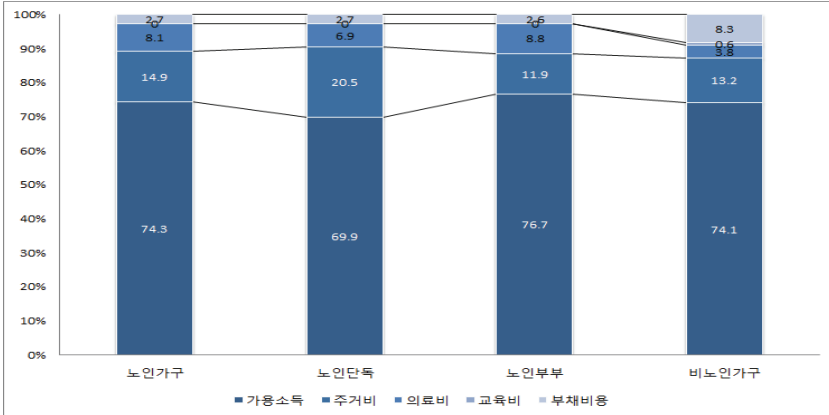
〔그림 6-6〕 독일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단위: 유로/월)



[그림 6-7] 독일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단위: %)



3.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분석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비교를 보면, 청년 단독 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월 409.7유로,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20.1%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자녀를 둔 청년 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청년 단독 가구의 55% 정도였고,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도 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역으로 주거 관련 부채비용은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에서 14.2%로 매우 높았으며, 청년 단독 가구는 4.7%에 그쳤다. 이는 아동 가구의 자가 소유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자녀를 둔 청년 가구에서도 자가 소유율이 높고 주택 구입으로 인한 부채 관련 지출이 높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의 특징이 아동 가구와 매우 유사하긴 하나, 전체 아동 가구에 비해 주거비 지출 비중은 더 낮고, 부채비용 지출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둔 청년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30.5유로로 청년 단독 가구와 청년 부부 가구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지출 비율은 1.2%로 자녀를 둔

청년 가구에서도 교육비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청년 가구의 경우 주거비,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비 지출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 관련 부채비용이 가계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부부 가구 분석에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월 167.2유로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결과가 두드러진다. 이는 자녀를 둔 청년 가구의 2배가 넘는 지출액이다. 청년 부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2731.5유로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은 청년 부부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률이 높고, 의료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한 차후 분석이 필요하다.

청년 가구 세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 비교에서 청년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아동 가구와 노인 가구에 비해 가처분 소득과 가용소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청년 가구에서는 청년 단독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청년 단독 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청년 가구 내 청년 단독 가구의 비율은 4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9〉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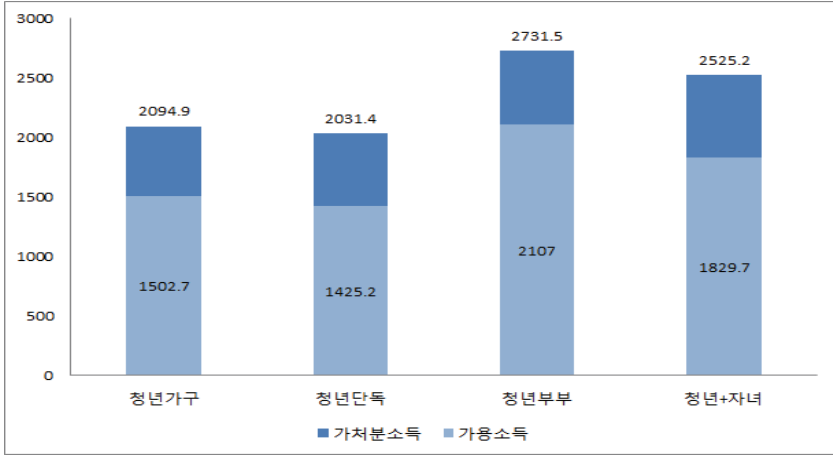
(단위: 유로/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2013	주거비	383.7	409.7	286.0	227.2	18.3	20.1	10.5	8.9
	의료비	52.3	95.1	167.2	80.2	2.5	4.7	6.1	3.2
	교육비	25.1	6.4	2.6	30.5	1.2	0.3	0.1	1.2
	부채비용	131.1	95.0	168.7	357.6	6.3	4.7	6.2	14.2
	합계	592.2	606.2	624.5	695.5	28.3	29.8	22.9	27.5
	가용소득	1502.7	1425.2	2107.0	1829.7	71.7	70.2	77.1	72.5
	가처분소득	2094.9	2031.4	2731.5	2525.2	100.0	100.0	100.0	100.0

자료: Statistische Bundesamt,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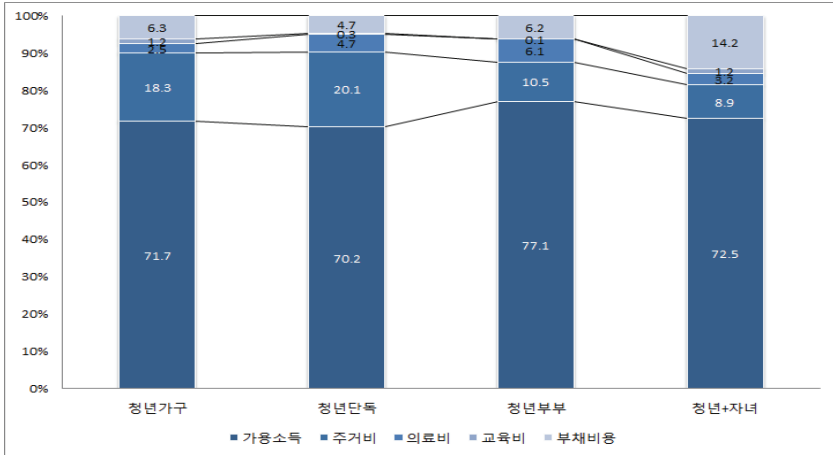
[그림 6-8] 독일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단위: 유로/월)



[그림 6-9] 독일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단위: %)



4. 주택 소유 유형별 분석

주택 소유 유형별 비교 결과,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특징이 분명하게 대비된다. 먼저 소득 수준을 보면 전체 자가 가구가 임차 가구보다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모두 1000유로 이상 높아 자가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핵심생계비 지출을 살펴보면, 임차 가구의 주거비 비율은 25.6%로 가처분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거비로 인한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 임차 가구의 경우는 주거비 비율이 28.9%로 다른 임차 가구 유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 가구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는데, 노인 임차 가구는 주거 임대료 지출 부담까지 과중해 가용소득이 62.9%에 불과했다. 반면, 노인 자가 가구의 의료비 지출 비율은 노인 임차 가구와 유사하지만, 다른 핵심생계비 지출이 많지 않고, 무엇보다 청년 자가 가구와 아동 자가 가구에 비해 주택 관련 부채비용이 상당히 낮아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자가 가구와 노인 임차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의 차는 17.5%포인트로 노인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핵심생계비 지출액 자체도 노인 임차 가구의 지출액이 노인 자가 가구의 지출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은 72.3%로 청년 자가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보다 2%포인트 높았다. 이는 청년 자가 가구의 주택 관련 부채비용에 기인한 것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 관련 부채비용의 비율이 21.2%, 월 610.9유로로 매우 높다. 청년 임차 가구의 주택 관련 부채비용은 월 7유로로 매우 미미했다. 청년 가구에서도 임차 가구의 주거비가

자가 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아 300유로 정도 차이가 났으나, 주택 관련 부채비용의 격차가 워낙 크고,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가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이 임차 가구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용소득액은 청년 자가 가구가 청년 임차 가구보다 약 658유로 많았다. 다만, 청년 가구 내에서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액 격차가 노인, 아동 가구의 주택 소유 유형 간 격차보다 적게 나타났다.

아동 가구도 청년 가구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은 자가 가구가 다소 높으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주택 소유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주거비는 임차 가구에서, 부채비용은 자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년 가구와는 반대로 아동 자가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이 아동 임차 가구보다 2%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액 격차가 청년 가구보다 다소 컸다.

〈표 6-10〉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전체·노인 가구

(단위: 유로/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노인 가구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13	주거비	177.4	474.8	201.9	480.5	6.0	25.6	7.5	28.9
	의료비	140.5	81.7	214.9	134.5	4.8	4.4	8.0	8.1
	교육비	11.4	11.5	1.5	0.4	0.4	0.6	0.1	0.0
	부채비용	334.5	9.3	107.4	1.8	11.3	0.5	4.0	0.1
	합계	663.8	577.3	525.7	617.2	22.5	31.1	19.6	37.1
	가용소득	2285.3	1280.5	2153.2	1047.7	77.5	68.9	80.4	62.9
가처분소득	2949.1	1857.8	2678.9	1664.9	100.0	100.0	100.0	100.0	

자료: Statistische Bundesamt,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2013.

150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표 6-11〉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청년·아동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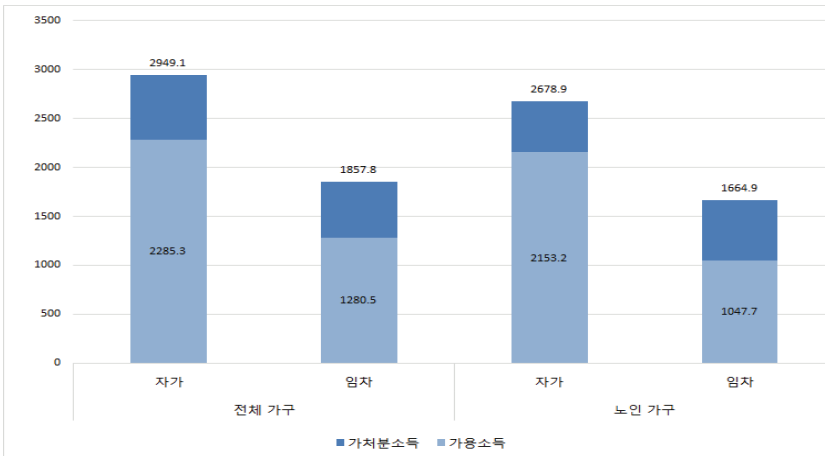
(단위: 유로/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가구		아동 가구		청년 가구		아동 가구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13	주거비	144.5	445.6	134.3	425.5	5.0	23.5	4.9	24.0
	의료비	73.3	46.8	85.8	55.8	2.5	2.5	3.2	3.1
	교육비	27.9	24.4	29.4	27.4	1.0	1.3	1.1	1.6
	부채비용	610.9	7.0	497.9	10.9	21.2	0.4	18.2	0.6
	합계	856.6	523.8	747.4	519.6	29.7	27.7	27.4	29.3
	가용소득	2025.9	1367.3	1982.1	1255.0	70.3	72.3	72.6	70.7
	가처분소득	2882.5	1891.1	2729.5	1774.6	100.0	100.0	100.0	100.0

자료: Statistische Bundesamt,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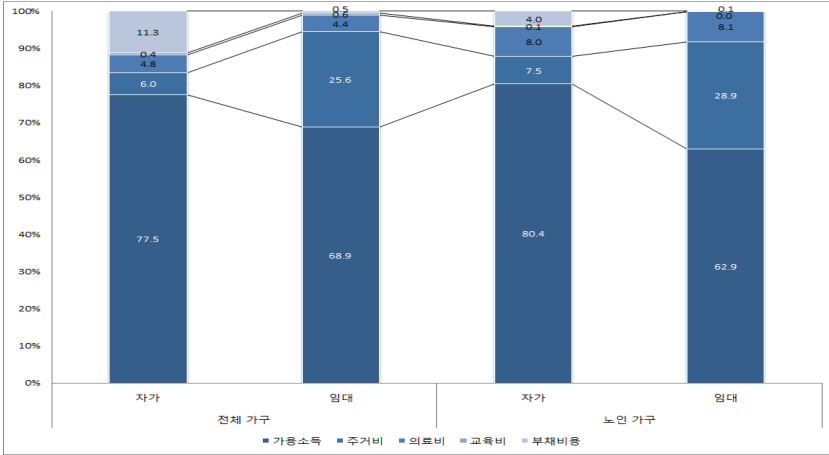
〔그림 6-10〕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전체·노인 가구

(단위: 유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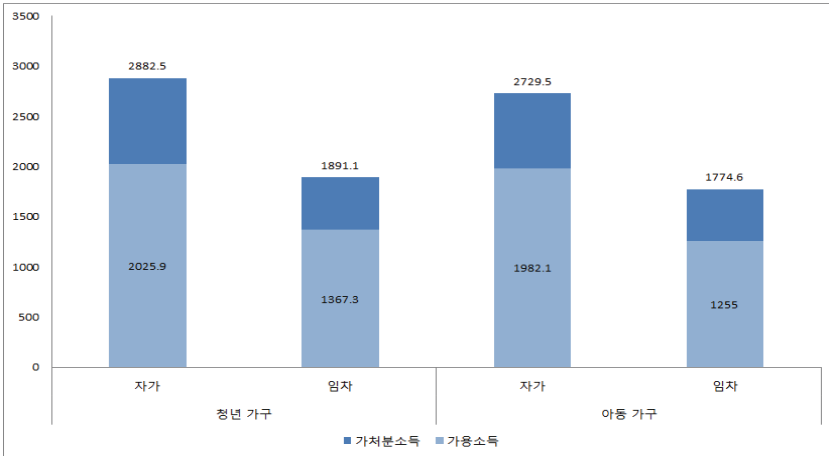
[그림 6-11]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전체·노인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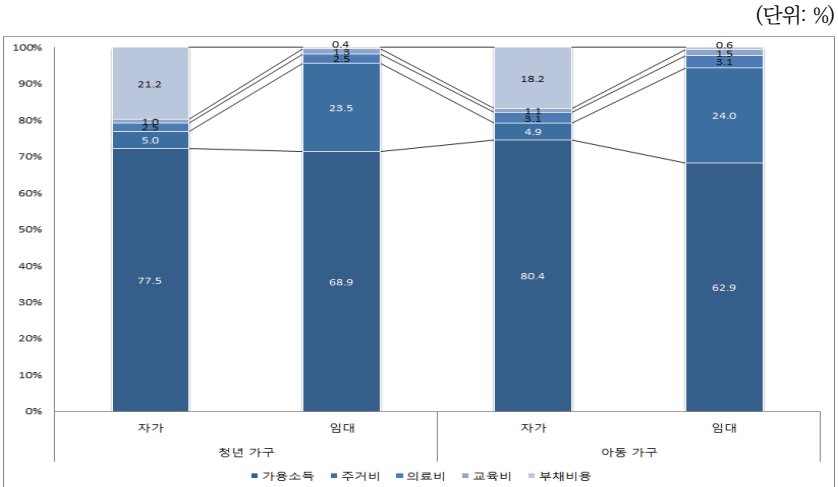


[그림 6-12]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청년·아동 가구

(단위: 유로/월)



[그림 6-13] 독일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청년·아동 가구



5. 소득분위별 분석

〈표 6-12〉에서 소득분위별 소득 격차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4분위까지 분위 간 증가폭에 비해 4분위에서 5분위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위 20% 소득계층에 부가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분위와 5분위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약 4.3배이고, 가용소득은 6배 정도로 가용소득 격차가 가처분소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가 소유율이 낮기 때문에 임대료로 인한 주거비 지출액이 고소득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계층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이 더 많고 서비스도 더 많이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사회부조 내 의료급여 지원으로 의료비 지출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을 보면, 1분위에서 3분위까지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4분위 이상에서 분위가 높을수록 높아졌다. 교육비도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액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1분위와 5분위 간에 월 7유로밖에 차이 나지 않아 오히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지출 비율이 낮아졌다. 주거 관련 부채비용은 주거비와는 반대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용 비율도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전체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나, 다른 소득분위는 모두 20%대인 것에 비해 1분위에서는 42.7%로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5분위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 같은 1분위의 높은 생계비 지출 비율은 주거비 지출에 의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표 6-12〉 소득분위별 가용소득(5분위)

(단위: 유로/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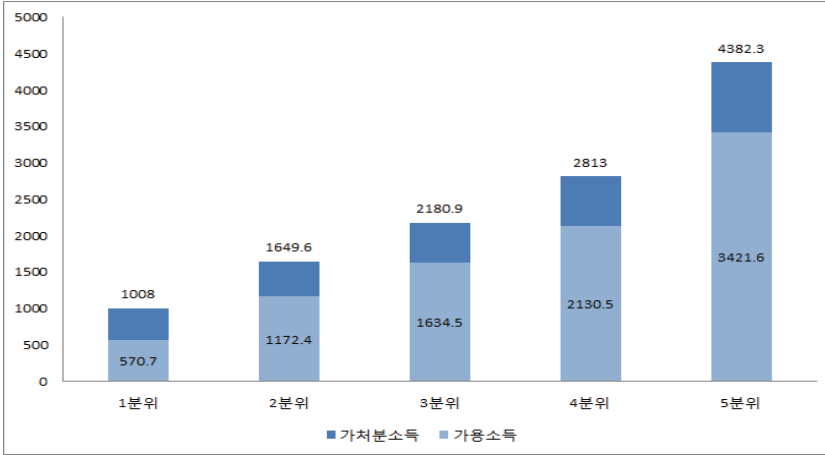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3	주거비	377.5	357.1	315.0	293.8	282.7	37.5	21.6	14.5	10.4	6.5
	의료비	36.8	58.9	80.9	121.3	258.5	3.8	3.6	3.7	4.3	5.9
	교육비	7.8	9.8	11.0	13.8	14.8	0.6	0.6	0.5	0.5	0.3
	부채비용	15.2	51.4	139.5	253.6	404.7	1.2	3.1	6.4	9.0	9.2
	합계	437.3	477.2	546.4	682.5	960.7	42.7	28.9	25.1	24.3	21.9
	가용소득	570.7	1172.4	1634.5	2130.5	3421.6	57.3	71.1	74.9	75.7	78.1
가처분소득	100.0	164.6	218.9	281.3	438.2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Statistische Bundesamt,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2013.

154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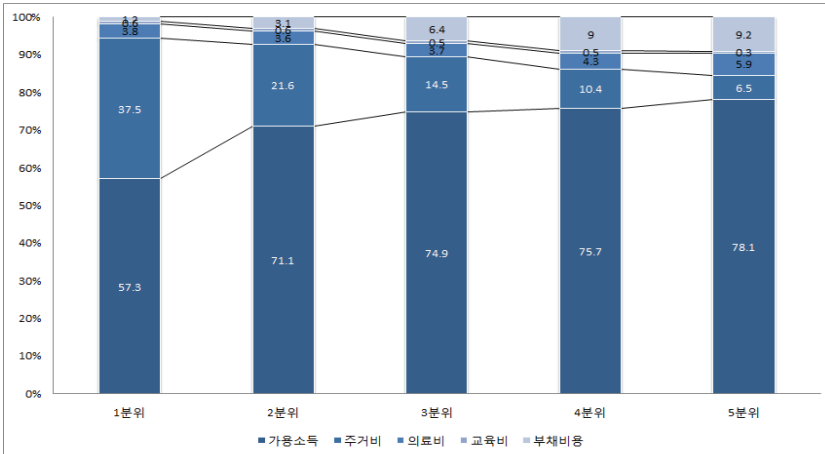
[그림 6-14] 독일 소득분위별 가치분소득과 가용소득 금액(2013년)

(단위: 유로/월)



[그림 6-15] 독일 소득분위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3년)

(단위: %)



제4절 소결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독일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핵심생계비 분석 결과는 주거비와 주택 관련 부채가 분명한 역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지출이 많고, 주거 관련 부채비용 비중은 작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비용 지출액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으나,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출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독일의 경우 주택 임대료가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임차 가구는 자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택 임대료 상승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독일 내에서 이미 있었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주거비 상승에 대한 여러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의 사회임대주택의 경우 사회임대주택의 법적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 수가 매우 증가하였고,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며 현재는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서 사회임대주택을 통한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입된 대응책 중 하나인 주거수당 강화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제도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지는 향후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의 부채비용 부담 문제가 있다. 아동 가구

의 자가 소유율이 높은 편이어서 주택 관련 부채비용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자녀를 둔 청년 가구의 부채비용 비율은 일반 아동 가구보다 더 높았다. 이는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한 이후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큰 부담의 부채를 떠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2006년에 자가주택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의 주택 부채 부담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서 살펴본 건축자금지축계약 제도가 있으나, 대출 이전에 대출금의 25~50% 저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일 마이크로 센서스(Mikrozensus) 조사에 따르면, 2006년과 2014년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율은 48%에서 55%로 상승한 반면, 30~40세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은 오히려 30%에서 27.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piegel Online, 2018. 2. 6.).³⁹⁾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산 창출에서 주택 소유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젊은 층의 주택 자산 형성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가족 형성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노인 임차 가구의 적은 가용소득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노인 가구에서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은 본 연구에서 분류한 가구 유형 중에 가장 적었다. 노인 자가 가구는 비노인 자가 가구에 비해 주거 관련 부채비용이 적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많은 이유도 있고, 노인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는 데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노인 임차 가구, 특히 임차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

39) <https://www.spiegel.de/wirtschaft/immobilien-warum-wohnungen-und-haeuser-so-teuer-sind-a-1189118.html> (2019. 10. 1. 인출)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모든 소득분위에서 교육비 지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대학 진학 위주의 교육 체계가 아니라 아동의 진로 선택에 따른 공교육 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고등교육기관 까지도 무상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점은 학교교육에서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체계 내에서 정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제도인 교육패키지나 연방 교육 지원 제도를 통해 수업료 이외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까지도 지원되기 때문에 학업 수행이나 진학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격차가 발생할 확률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의료보험은 공공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나뉘며 여러 의료보험조합 체계로 되어 있으나, 국가에 의해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공공과 민간 의료보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독일은 기본적으로 높은 보장성을 가진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도 시도해 왔기 때문에 의료비로 인한 계층 간 큰 격차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주거비와 주택 관련 부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분명한 시사점이 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정책과 의료보장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의됐던 주제이나,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재고해 보아야 할 지점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 시장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나, 한국은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독일보다 낮았고 가처

분소득 지니계수는 더 높았다. 이는 독일의 재분배정책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교육제도와 의료보장제도가 이러한 결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업 경비, 생활비 지원이 소득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며, 의료비에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의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구 유형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자녀를 둔 청년 가구와 노인 임차 단독 가구에 대한 각기 상이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을 앞서 언급하였다. 독일에서 최근 출산율 반등이 있었으나, 우리보다 앞서 오랜 시간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경험한 독일의 부족한 면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상자 집단의 필요에 따른 정책 접근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임대주택 정책의 지속적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의 형식에 비해 다양한 공급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임대주택 방식이 활발히 시행되지는 않았다. 독일의 경우 급격한 주택 수요 증가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사회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사회임대주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방 차원에서 해당 분야 투자를 줄였고, 주정부 관할로 일임함으로써 사회임대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임대주택의 적극적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회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파악하며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스웨덴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

제1절 각 국가의 특성 및 배경

1. 가구소득과 지출 수준

스웨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스웨덴의 가구소득 자료(Hushållens ekonomi)를 살펴보면, 측정을 시작한 1991년 이후 스웨덴 가구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스웨덴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07~2009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성장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이후 2013~2016년에 급격히 증가했다. 해당 기간의 평균 소득 증가세는 스웨덴 경제의 호경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8만 1200크로나였으며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22만 100크로나로 가장 높은 비율(약 78%)을 보였다. 연금 및 질병수당, 아동수당 등의 공적이전은 연 기준 9만 7000크로나로 나타났다.

한편 스웨덴 가구의 소비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는 가계 예산 조사 Hushållens utgifter(HUT: Household budget survey)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의 최신 자료인 HUT 2012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소비 여력 지표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2012년 기준, 연구의 주 관심사인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제외하고 스웨덴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는 교양오락 분야(Fritid och Kultur)로 연평균 6만 1170크로나를 지출하며, 이는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16%에 해당한다. 이는 가구의 평균 주거비(부채를 제외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스웨덴 가구가 교양오락 분야에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스웨덴 가구는 교양오락 분야 중 여행과 숙소(Resor, hotell)에 가장 많은 금액(연 기준 약 1만 7000크로나, 26%)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통비(연 기준 4만 9940크로나)와 식료품 구매비(연 기준 3만 4570크로나)가 교양오락비 외에 스웨덴 가구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었다.

복지국가유형론에 따르면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보편적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가구 가용소득 측정에서 중요한 항목인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스웨덴이 자랑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무상에 가까운 교육비와 과도한 비용 청구를 억제하는 상한제를 갖춘 의료비의 경우,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두드러지는 관대성, 포괄성 등을 보여 준다. 스웨덴의 주거정책은 1970년대에 있었던 100만 호 공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 인하 정책, 부족한 주택 공급 등으로 인해 주거비가 급등하여 주거비가 가구의 가용소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스웨덴의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와 관련하여 제도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본다.

2. 교육, 의료, 주거 관련 정책

가. 교육정책

스웨덴 교육법(Education Act)은 성별, 거주, 사회적 조건 등과 관계 없이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함을 강조한다(Swedish Education Act 1:2). 스웨덴에서는 6~7세부터 15~16세까지의 교육(초·중등교육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다수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 진입하며 이때 학생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17가지의 다른 과정 중 자신이 원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Skolverket, 2019). 스웨덴의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 자료 및 급식, 모든 부수적인 비용은 무상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 중 많은 부분을 지방세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 재정의 절반 정도를 교육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취학 전 아동들(1~5세)은 유치원(förskola)과 개방형 유치원(öppen förskola)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시설 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담당하고 있다. 유치원은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평일 6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전일제와 시간제 중 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녀를 맡길 수 있다. 1~5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부모는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 한 명을 보육시설에 맡길 때 지불하는 금액을 월평균 급여의 3%(2019년 6월 기준, 최대 1425SEK, 약 17만 원/월)로 제한했다(Swedish Institute, 2019).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수에 따라 부모의 부담 금액이 낮아지며 4명부터는 부담 비용이 무료이다.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약간의 교육비 지출이 있지만 자녀가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이 있어 교육비 지출이 무상에 가까워진다. 현재 아동수당은 자녀 한 명당 1250SEK(월 기준)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높아진다(Försäkringskassan, 2019).

대학교육과 평생성인교육(예: Kombux) 같은 경우에도 학비가 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는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이라는 교육청의 핵심 가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스웨덴 교육정책은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Skolverket, 2019).

나. 의료정책

스웨덴은 거주지역 및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의료서비스는 21개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외에 노인,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은 29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9개의 종합병원, 70개의 지역병원, 1100여 개의 보건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보건소(1차진료) - 지역병원 - 종합병원 순서로 방문한다.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기관 중 대부분은 국가에서 운영 중이고 20%가량이 민간 서비스업체로 알려져 있다. 민간 병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유롭게 의료서비스에 부과하는 요금 유형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눈에 띄는 만큼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스웨덴의 의료비는 과도한 비용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상한선을 둔 것이 큰 특징이다.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1일 요금은 100SEK(약 1만 3000원)를 상회할 수 없으며, 30일 입원하는 경우 1200SEK를 상회할 수 없다. 보건소와 같은 1차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 금액은 100~300SEK 사이이며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부인과, 소아과 등)의 진료를 받을 때 그 요금은 400SEK를 상회할 수 없다. 응급실 방문 시에는 220~400SEK를 지불하게 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환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högekostnadsskydd)을 설정하고 있는데, 12개월 이내의 의료

서비스 요금을 정액(1100SEK, 약 14만 원)으로 정해 두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이 밖에도 고비용 처방약으로 인한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마련해 두었다. 처방약 비용의 상한선은 12개월 이내 2250SEK로 이 상한선의 적용 시점은 1년 중 언제든 상관없다(Swedish Institute, 2018). 예를 들어 환자가 12개월 이내에 의료서비스를 1100SEK 이상 이용하거나 처방약을 2250SEK 이상 복용한다면 그 이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처방약 비용은 전부 무상이다. 이와 같은 상한선 제도가 있어 스웨덴 국민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다. 주거정책

스웨덴의 주택 구조는 단독주택(villa), 복합·연립주택(radhus, parhus), 아파트(lägenhet)로 나눌 수 있고, 소유와 임대의 종류에 따라 소유권(äganderätt), 주택조합의 지분 취득(bostadsrätt), 그리고 일반 임대(hyresrätt)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 없는 형태가 지분 취득인데, 주택(일반적으로 아파트) 내에 하나의 주택조합(bostadsrättsförening)을 만들게 되면 이 조합에 가입하는 개인이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게 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지분 취득의 개념은 보통 아파트를 구입할 때 사용되는데, 주택조합의 권리를 갖게 되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 권리의 값은 주택을 지을 때 든 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며, 시세에 따라 그리고 해당 주택조합의 운영 사정에 따라 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가구주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본인 주택의 매매, 임대 등의 행위를 할 때 아무런 제

약이 없다. 이 점에서 주택조합의 지분 취득과 차이가 있다. 주택조합의 지분을 취득한 아파트 소유주가 본인 아파트를 임대하고자 할 때 주택조합원들을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소유권은 주택에만 사용되던 개념이었으나 2009년 5월 1일 이후,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소유권 개념을 도입했다. 따라서 가구주가 소유권을 갖고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가구주의 판단하에 임대, 매매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소유권은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2018년 기준 스웨덴 전역에 소유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240개로 나타났다(SCB, 2018).

스웨덴 가구의 주거 형태를 보면 자가 거주 비율이 높고, 임대의 경우 민간 임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임대 비율은 높지만 임대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급자는 지역 공영 주택조합이다. 그 이유는 공영 주택조합이 적용하는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민간인 지주가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인 지주가 직접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인 소유의 임대 주택도 국가가 운영하는 중개소(Bostadsförmedlingen)에 등록된 후 수요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스웨덴은 여전히 거주에 대해 사회주의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의 주택 임대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운영되기보다는 굉장히 경직된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스웨덴 사람들이 자가 거주를 선호하는 요인이 되었다.

스웨덴 사람들의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것은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용이하게 한 정부의 정책 탓도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로 생겨난 높은 가계부채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주택 모기지론이 원금의 분할 상환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제한된 금액의 원금 상환을 포함하고 있었다. 원금 상환이 필요 없는 모기지론의 비율은 2009년 59%에서

2011년 65%까지 증가했다. 즉, 평소에 이자만 내다가 남은 원금은 집을 매각해 갚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한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스웨덴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방지를 막고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였는데, 이때 가계 대출이 다시 한번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은 집값 상승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차례의 조정도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가계 대출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이유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이다. 중앙은행과 국내외 금융시장의 경고가 잇따르자 스웨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낮춘 데 이어 2015년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이자 외에 매년 주택 가격의 최소 1~2%의 원금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여전히 DTI 상한제 도입, 변동금리 비율 축소 같은 추가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 분석 자료의 특성

스웨덴 가구의 가용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스웨덴 통계청(SCB)에서 제공하는 가계 예산 조사(Hushållens utgifter: HUT, Household budget survey)이다. 스웨덴 통계청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데이터를 제공해 왔으나 이후부터는 4년 주기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최신 데이터는 HUT 2012 데이터로 7500가구(0~79세)를 대상(응답률 38%, 총 2871가구)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비 수준을 측정했다.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7500가구는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구(2200가

구), 아동이 없는 1인 가구(2500가구), 아동이 있는 부부 가구(900가구), 아동이 없는 부부 가구(900가구), 기타 가구(1000 가구)로 다양한 가구 형태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HUT 2012 데이터는 이전까지 제공되었던 HUT 2003-2009 데이터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설문 결과의 부정확성이 드러나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 일부만을 담당 관리자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7-1〉 스웨덴 Hushållens utgifter 2012 표본 수

구분		가구 수
총 가구 수		2,871
주거 형태	자가	1,270
	임대	967
	조합 권리 취득	520
가구 형태	한부모 가구	526
	단독 가구	620
	아동 가구	625
	부부 가구	795
	기타	305

소비 수준 측정을 위해 활용하는 변수는 식료품(주류 및 담배 포함), 외식, 사회서비스, 의류, 주거비(수도 및 광열 포함), 가정용품 구입비, 보건 의료비, 여가 및 오락 등이다. 가계 예산 조사(Hushållens utgifter)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유엔 통계 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에서 만든 개별 소비의 목적별 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활용 및 재가공하여 만든 변수다. 한편 스웨덴의 교육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 보육비를 제외한 모든 과정(초·중·고교, 대학)이 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COICOP 코드와는 다르게 HUT(Hushållens utgifter) 데이터는 교육비를 따로 측정하지 않고, 교육비를 사회서비스 변수 내 기타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켰

다. 보육비의 경우 따로 변수를 두어 측정하고 있지만 그 외 교육비 변수의 측정 결과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2. 사용 변수

HUT 2012 데이터는 교육비를 사회서비스(Hushallstjänster) 내 아동 보육(Barntillsyn), 기타 서비스(Övriga tjänster) 내 초·중등 교육(Förskole-, låg- och mellanstadieutbildning), 고교 교육(Högstadiе- och gymnasieutbildning)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다. 교육비를 사회서비스 항목 아래 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스웨덴 가구 소비에서 교육비의 비중은 미미하다. 보육비를 제외한 초·중·고교, 대학 교육비가 무상이고 사교육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투입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비 중 아동 보육 항목만 변수로 취급하여 스웨덴 가구에서 사용하는 교육비로 측정한다.

의료비의 경우, HUT 데이터 내 보건의료(Hälsovård) 항목으로 측정하고 생필품 항목에 들어 있는 개인위생(Personlig hygien) 항목은 변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주거비는 'Bostad(주거비)' 항목으로 측정한다. 주거비 항목 내에는 렌트(임대), 조합비 비용[Hyra/avgift för hyres-/borätt(inkl garage)], 수리비(Reparationer), 보험료(Hem och villaförsäkring), 주거 관련 서비스(Tjänster förknippade med bostaden), 전기·가스비(Elektricitet, gas och andra bränslen)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구 및 가사용품 구입비(Möbler, inventarier, textilier, hushållsutrustning) 항목은 주거비 측정에서 제외한다. HUT 데이터의 주거비 항목 내 주택 관련 부채비용(Räntor: brutto)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항목은 이 연구

에서 측정하는 가구 내 부채비용으로 사용한다.

분석에 사용한 소득과 지출은 월 단위로 계산하였으며 가구균등화를 한 값이다. 스웨덴 데이터(HUT 2012)에서 사용한 가구균등화 방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가중치를 둔) 총 가구원 수로 나눈 방식으로 가구주(성인 부부 혹은 동거인) 1명은 1, 가구주(성인 부부 혹은 동거인) 2명은 1.51, 가구 내 자녀가 1명일 때 0.52, 자녀 2명 이상일 때는 1명당 0.42, 가구 내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다른 성인이 있을 경우 0.60으로 가중치를 두고 계산한다.

〈표 7-2〉 한국복지패널과 스웨덴 Hushållens utgifter의 변수 비교

구분	한국복지패널(2017)	Hushållens utgifter (2012)
지출	식료품비	식료품비
	월세	주거비[렌트 및 조합비: Hyra/avgift för hyres-/borätt (inkl garage)]
	주거 관리비	수리비(Reparationer), 보험료(Hem och villaförsäkring), 주거 관련 서비스(Tjänster förknippade med bostaden),
	광열수도비	전기, 가스, 수도비(Elektricitet, gas och andra bränslen)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가사용품비(디지털 가전제품 따로)
	보육료비	-
	피복·신발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교육비(Barntillsyn, Övriga tjänster 내 교육비 항목)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교통비
	통신비	-
	기타 소비지출	기타 소비
	사적이전지출	-
	세금	세제 혜택(Skattepliktiga formaner)
	사회보장부담금	-

구분	한국복지패널(2017)	Hushållens utgifter (2012)
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주거 관련	주택 가격	주택 부채비용(Räntor: brutto)
	1년간 총 원금 상환액(가)	
	12월 31일 기준 주택 관련 부채액(나)	
부채	금융기관 대출	차량 외 기타 부채-[Ränta(ej bil - brutto), fordonskatt(ej bil)]
	일반 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 돈)	
	외상, 미리 탄 깃돈	
	기타 부채	
이자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
	기타 이자	-

〈표 7-3〉 스웨덴 Hushållens utgifter(HUT) 2012 변수 활용

구분	변수 정의
주거비	월세 등+광열수도비+보수·유지비(1000SEK/월)
의료비	의료비 총액(1000SEK/월)
교육비	교육비 총액(1000SEK/월)
부채	주거 관련 부채(1000SEK/월)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1000SEK/월)
가용소득	가처분소득-주거비-의료비-주거비-부채

제3절 스웨덴 가용소득 분석 결과

1. 가구 유형별 해석

HUT 2012에 따르면, 스웨덴 전체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은 3만 1900 크로나였다. 아동 가구의 경우 4만 4800크로나로 조사 대상 가구 중 가장 높은 가처분소득을 보여 주었다. 노인 가구와 청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1만 7900크로나, 2만 8500크로나로 아동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부채비용을 제하여 계산한 가용소득의 금액 역시 아동 가구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 가구가 가장 낮았다.

스웨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은 77.4%로 한국 가구(약 80%)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구 유형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부채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 노인, 청년 가구 모두 주거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가처분소득 대비 13~19%) 의료비, 교육비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보육비, 초·중·고등교육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도 0%대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의료비를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노인 가구의 의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가구가 가장 낮았다.

가용소득을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청년 가구가 주거비로 지불하는 비용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게 측정된 탓으로 보인다.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는 201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임대 비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UT 2012 자료는 주거 형태와 가구주의 연령을 연결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청년 가구가 어떤 형태로 거주하는지 단정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구 구성원 수가 많지 않고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에 나서기보다는 임대로 거주하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7-4〉 스웨덴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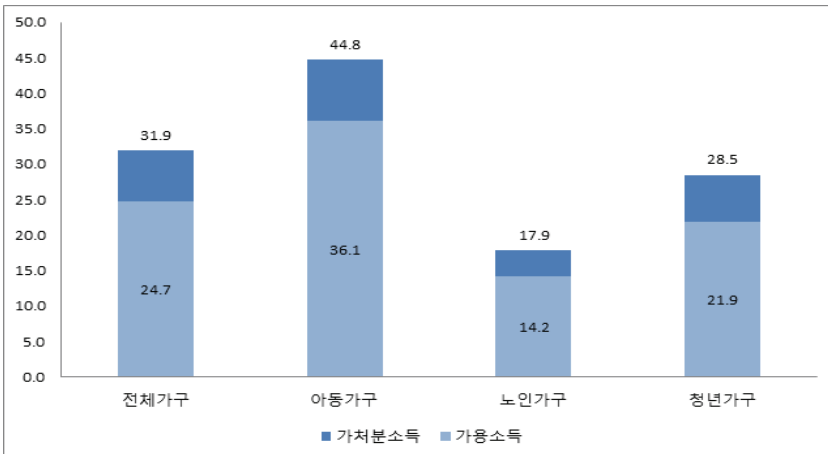
(단위: 1,000SEK/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청년 가구	전체 가구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청년 가구	
2012년	주거비	5.0	5.9	2.9	5.6	15.7	13.2	16.2	19.6
	의료비	0.6	0.6	0.3	0.1	1.9	1.3	1.7	0.4
	교육비	0.1	0.2	0.0	0.1	0.3	0.4	0.3	0.4
	부채비용	1.5	2.0	0.4	0.8	4.7	4.5	2.2	2.8
	합계	7.2	8.7	3.6	6.6	22.6	19.4	20.4	23.2
	가용소득	24.7	36.1	14.2	21.9	77.4	80.6	79.6	76.8
	가처분소득	31.9	44.8	17.9	28.5	100.0	100.0	100.0	100.0

자료: Hushållens utgifter (HU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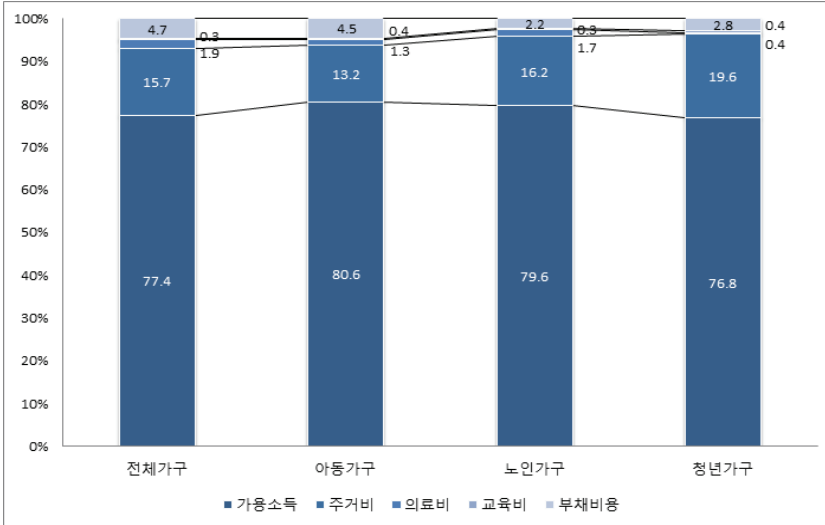
〔그림 7-1〕 스웨덴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단위: 1,000SEK/월)



[그림 7-2] 스웨덴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단위: %)



2. 노인 가구 세부 유형별 해석

스웨덴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은 79.6%로 높은 편이다. 노인 가구 역시 주거비의 비율이 높았으며 부채비용, 의료비가 뒤를 이었다. 노인 가구의 교육비는 보통 평생교육기관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의료비의 경우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과도한 지출 비용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 가구에 비해 비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용소득의 총금액은 높았으나 가용소득의 비율 자체는 노인 가구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단독 가구가 노인 부부 가구에 비해 주거비와 의료비로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용소득의 비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노인 단독 가구의 높은 주거비와 그로 인한 낮은 가용소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노

인 단독 가구의 생활이 다른 가구의 생활에 비해 여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빈곤에 빠질 위험성도 높다는 점이다.

〈표 7-5〉 스웨덴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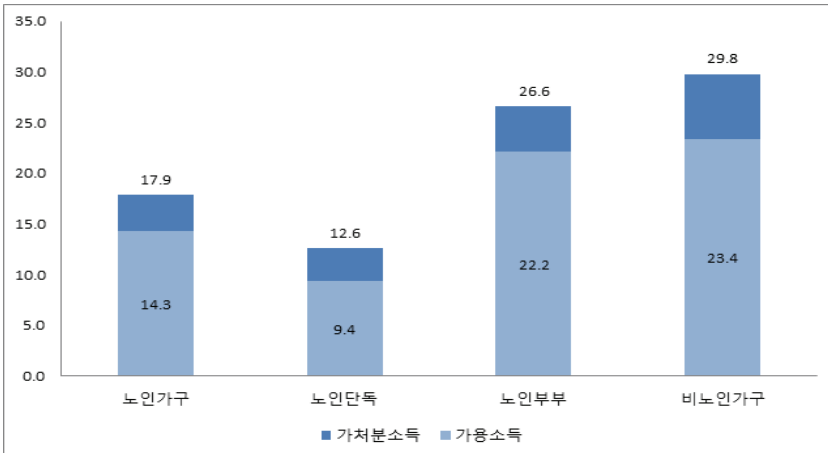
(단위: 1,000SEK/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주거비	2.9	2.6	3.2	4.9	16.2	20.6	12.0	16.4
의료비	0.3	0.3	0.3	0.2	1.6	2.1	1.2	0.6
교육비	0.1	0.0	0.1	0.1	0.3	0.2	0.3	0.5
부채비용	0.4	0.3	0.8	1.2	2.2	2.4	3.0	4.0
합계	3.7	3.2	4.4	6.4	20.4	25.4	16.5	21.5
가용소득	14.3	9.4	22.2	23.4	79.6	74.6	83.5	78.5
가처분소득	17.9	12.6	26.6	29.8	100.0	100.0	100.0	100.0

자료: Hushållens utgifter (HU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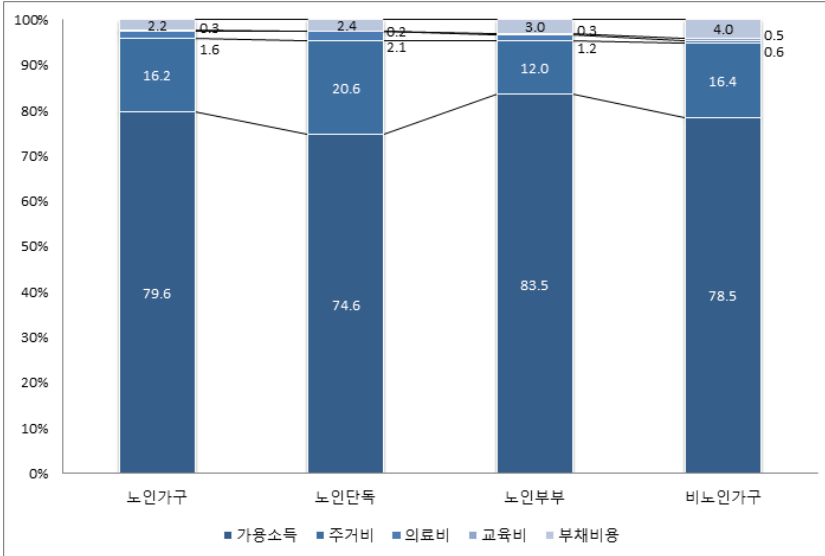
[그림 7-3] 스웨덴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단위: 1000SEK/월)



[그림 7-4] 스웨덴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단위: %)



3. 청년 가구 세부 유형별 해석

청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은 76.7%로 높은 편이다. 청년 가구의 지출 중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거비였다. 노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단독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70.6%)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높은 주거비 지출(26.1%)이 원인으로 보인다. 청년 단독 가구는 높은 주거비와 낮은 주거 부채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교육비 항목에서는 청년 +자녀 가구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약간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자녀 가구의 보육비 지출이 교육비에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가용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 형태는 청년 부부 가구로, 낮은 주거비 지출이 가용소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7-6〉 스웨덴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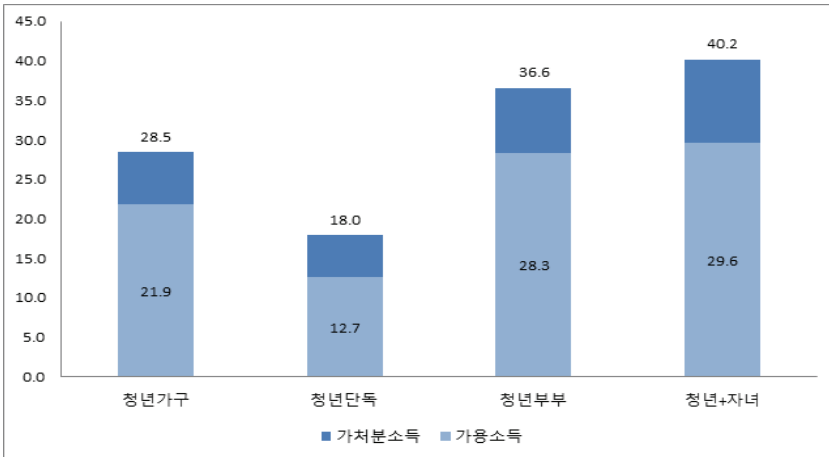
(단위: 1000SEK/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주거비	5.6	4.7	6.5	7.6	19.6	26.1	17.8	18.9
의료비	0.1	0.1	0.6	0.6	0.4	0.7	1.7	1.5
교육비	0.1	0	0	0.4	0.5	0	0.1	0.9
부채비용	0.8	0.4	1.1	2.1	2.8	2.4	3.0	5.2
합계	6.6	5.3	8.3	10.7	23.3	29.4	22.6	26.5
가용소득	21.9	12.7	28.3	29.6	76.7	70.6	77.4	73.5
가처분소득	28.5	18.0	36.6	40.2	100.0	100.0	100.0	100.0

자료: Hushållens utgifter (HU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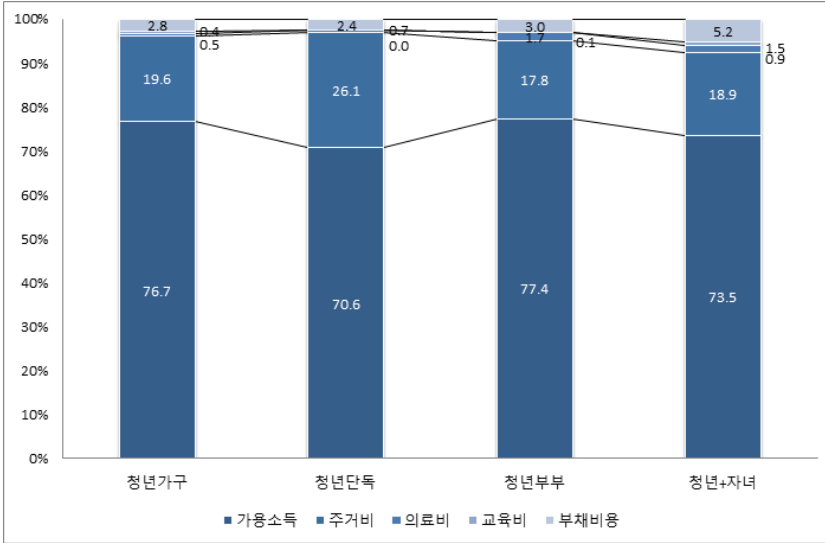
〔그림 7-5〕 스웨덴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단위: 1,000SEK/월)



[그림 7-6] 스웨덴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단위: %)



4. 주택 소유 유형별 해석

스웨덴의 일반적인 주택 소유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자가: 일반적으로 주택, 일반임대: 주택, 아파트 모두 가능, 조합 권리 취득: 일반적으로 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스웨덴은 자가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HUT 2012의 응답 가구 중에서도 자가 소유 가구의 비율(1270가구)이 제일 높았다. 일반임대 가구는 967가구, 조합 권리 취득 가구는 520가구로 뒤를 이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을 살펴보면 자가 소유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일반임대, 조합 권리 취득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반임대 가구는 주거비에서 높은 금액을 지불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최근의 임대 비용 급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일반임대 가구의 높은 주거비 지출은 낮은 가용소득 비율(65.9%)로 이어졌다. HUT 2012는 가

구의 주택 소유 형태와 가구주의 연령을 연결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한 해석만이 가능하다.

〈표 7-7〉 주택 소유 형태 가용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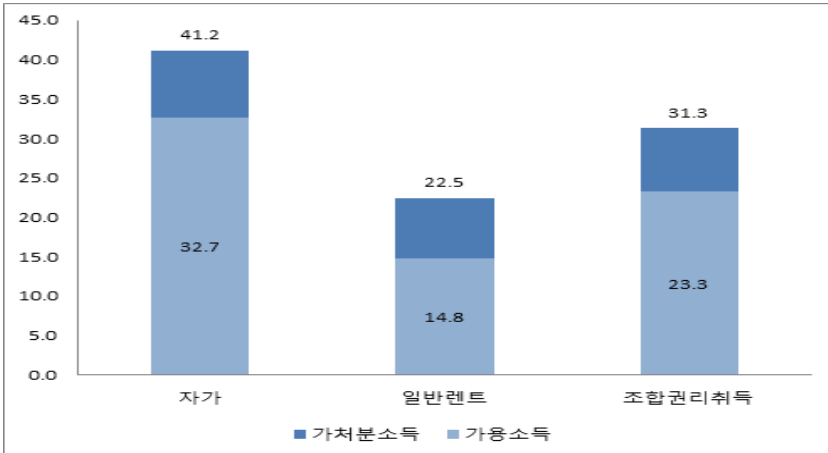
(단위: 1,000SEK/월, %)

구분	주택 소유 형태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자가	일반임대	조합권리 취득	자가	일반임대	조합권리 취득	
2012	주거비	5.5	5.6	5.1	13.3	24.9	16.3
	의료비	0.6	0.4	0.7	1.4	1.7	2.2
	교육비	0.7	0.6	0.6	1.7	2.6	1.9
	부채비용	1.7	1.1	1.6	4.1	4.9	5.1
	합계	8.5	7.7	8.0	20.5	34.1	25.6
	가용소득	32.7	14.8	23.3	79.5	65.9	74.4
	가처분소득	41.2	22.5	31.3	100.0	100.0	100.0

자료: Hushållens utgifter (HU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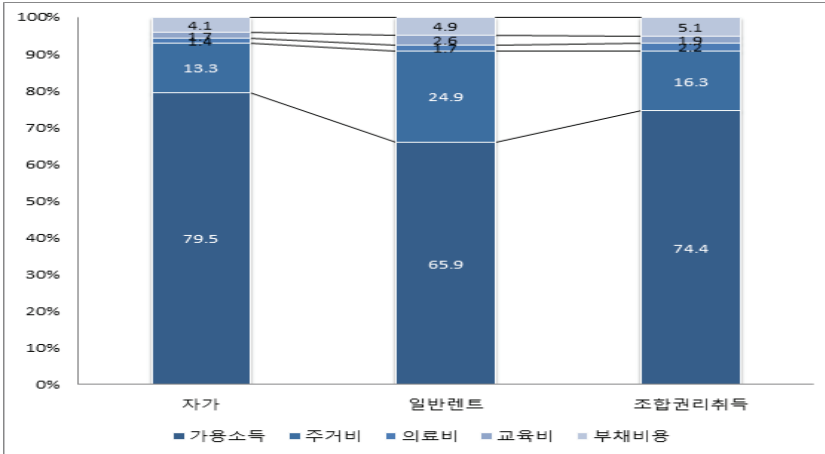
[그림 7-7] 스웨덴 주택 소유 형태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단위: 1,000SEK/월)



[그림 7-8] 스웨덴 주택 소유 형태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단위: %)



5. 소득분위별 해석

HUT 2012는 가구소득분위 자료를 4분위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가구소득 4분위까지만 제공하는 이유로 데이터의 낮은 질을 언급했다. 특히 5분위의 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데이터를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 아예 공개하지 않는 방향을 택했다. HUT 2012 자료를 바탕으로 스웨덴 소득분위별 가용소득을 살펴보면 한국의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비율과 비슷하나 조금 낮은 편이다. 1분위와 2분위 간 격차는 상당하나 2~4분위 간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주거비와 부채비용이 측정 항목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었다.

〈표 7-8〉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변화(4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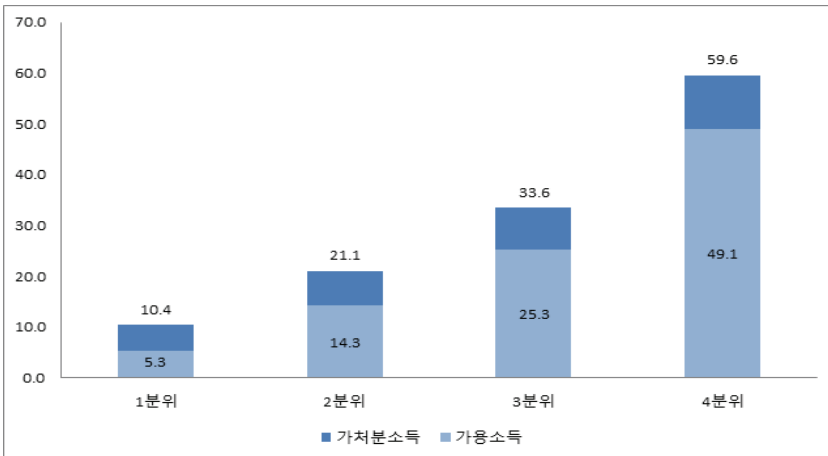
(단위: 1,000SEK/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2012	주거비	3.4	3.9	4.9	6.2	32.7	18.5	14.6	10.4
	의료비	0.4	0.6	0.5	0.7	3.8	2.7	1.5	1.2
	교육비	0.4	0.6	0.9	1.1	4.0	2.8	2.7	1.8
	부채비용	0.9	1.7	2.0	2.5	8.8	8.1	6.0	4.2
	합계	5.1	6.8	9.7	10.5	49.4	32.0	24.7	17.6
	가용소득	5.3	14.3	25.3	49.1	50.6	68.0	75.3	82.4
	가처분소득	10.4	21.1	33.6	59.6	100.0	100.0	100.0	100.0

자료: Hushållens utgifter (HU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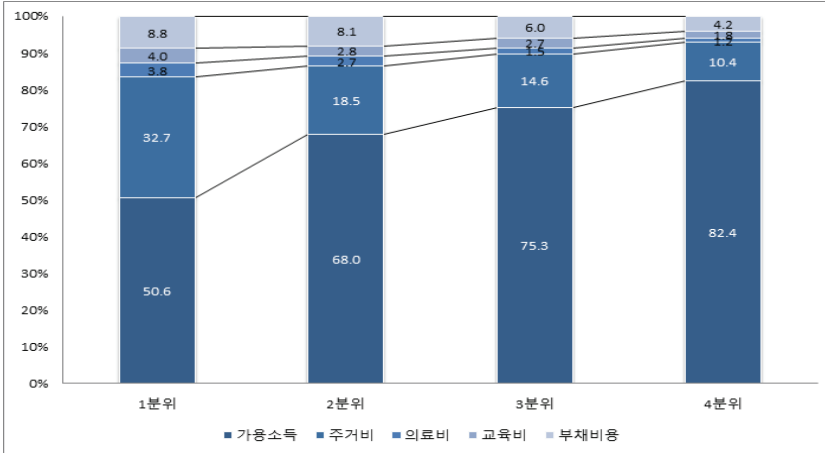
〔그림 7-9〕 스웨덴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가용소득(2012년)

(단위: 1,000SEK/월)



[그림 7-10] 스웨덴 소득분위별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 비율(2012년)

(단위: %)



제4절 소결

이 글에서는 스웨덴 가구의 소비 여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용소득을 측정하였다. 스웨덴 가구의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거비였다. 스웨덴에서는 2010년대 들어 스웨덴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가구 소비 중 주거비의 높은 비중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거비에 비해 다른 항목들의 비중은 낮았다. 무상 교육이 제공됨에 따라 스웨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매우 낮았다. 의료비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스웨덴 정부가 의료비 상한선 제도로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진료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상한선 제도로 보호해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가구의 소비를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항목별 지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스웨덴 가구는 소비 중 주거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주거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스웨덴 가구의 의료비, 교육비, 부채비용 지출은 주거비에 비해 미미한 편이었으나 한국 가구는 해당 항목에 지출하는 비율이 적지 않았다. 또한 가구 형태별로 가용소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스웨덴에서는 아동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한국은 가장 낮았고, 청년 가구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가용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가구 형태였으나 한국의 청년 가구는 가용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 형태였다. 이 역시 주거비의 비중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만을 놓고 보면 스웨덴 가구와 한국 가구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부 지출 항목에서 드러난 차이는 스웨덴과 한국의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다뤘듯, 스웨덴 가구의 낮은 의료비, 교육비 비율은 스웨덴이 추구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높은 주거비는 거시경제의 변화 속에 스웨덴 경제당국과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데, HUT 2012는 발표 시기의 특성상 이 변화를 일부밖에 담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특히 2014~2015년 스웨덴 주택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한 이후 2017년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왔는데, 이후에 나올 최신 HUT 자료에서는 주거비의 비중이 HUT 2012에 서보다 더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제 4 부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제8장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추이와 현황



8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 추이와 현황

제1절 한국의 소득 및 지출 수준과 사회정책

1. 한국의 소득 및 지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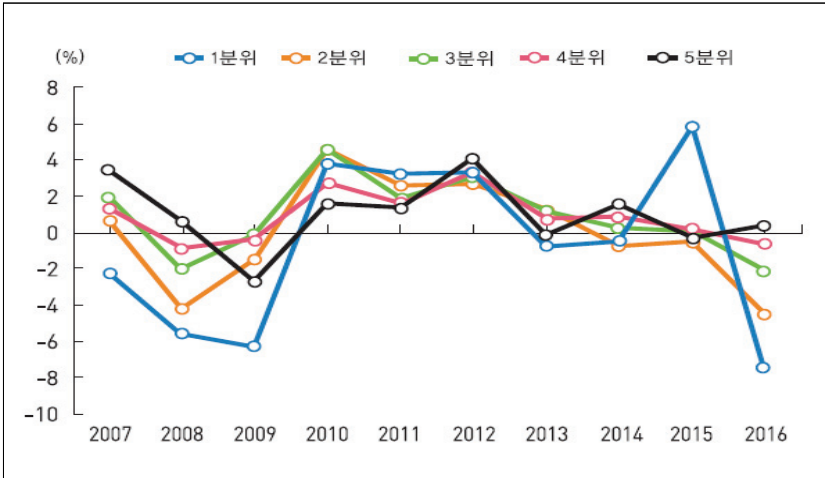
한국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을 먼저 진단해 보고자 한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와 수출 둔화가 지속되고 2016년부터는 무역 보복과 국내의 정치 불안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가계소득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가구원들의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체 가구를 1분위(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와 5분위(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았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2010~2012년에는 평균 3%대였으나 그 후 2013~2016년에는 평균 1% 이하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추이는 경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기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실질소득이 증가하였다. 이 기간 저분위(1, 2분위)의 평균 증가율은 3.4%로 고분위(4, 5분위)의 평균 증가율 2.4%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였다. 특히 2013~2016년에는 저분위(1, 2분위)의 평균 증가율은 -1.0%로 고분위(4, 5분위)의 평균 증가율 0.3%를 하회했을 뿐 아니라 더 급격한 둔화 추이를 보였다. 이는 금융위기에 이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고분위에 비해 좀 더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8-1-1] 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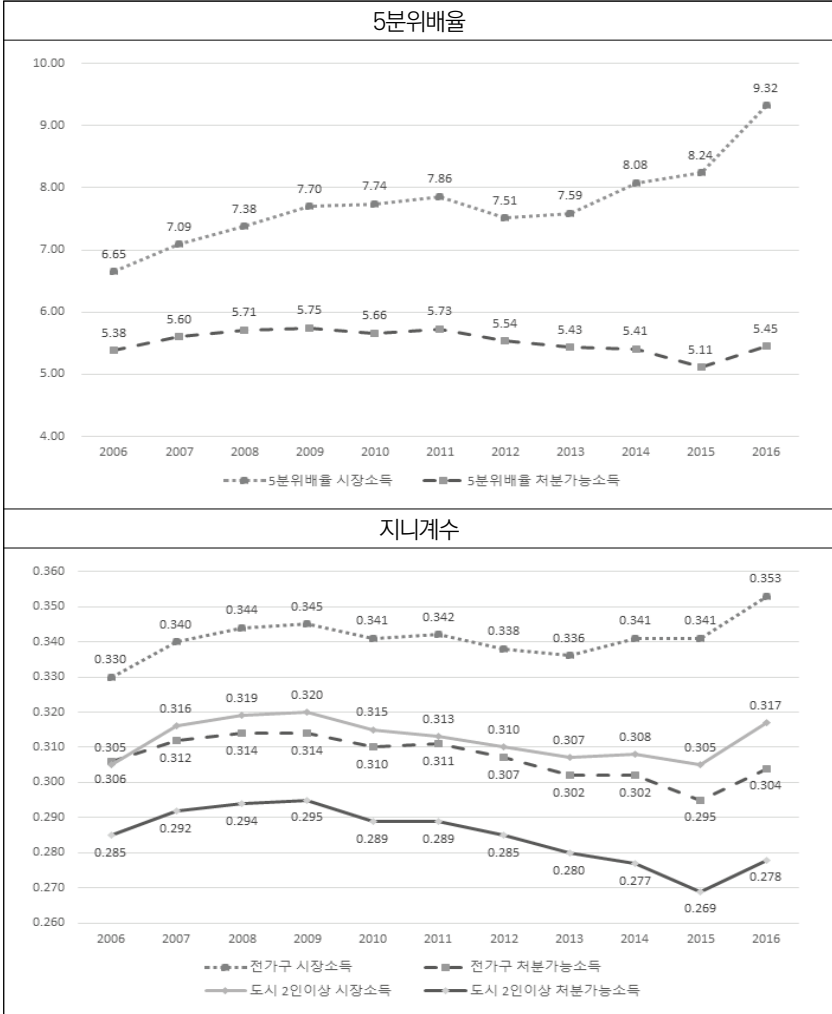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개발원(2017) 한국의 사회동향, 재인용 p. 172.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하락하였다가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2006년 5.38배에서 점차 상승하여 2009년 5.75배, 2016년에는 5.45배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둔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러한 불평등 완화 효과를 상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니계수는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하락하다가 최근(2016년) 들어 다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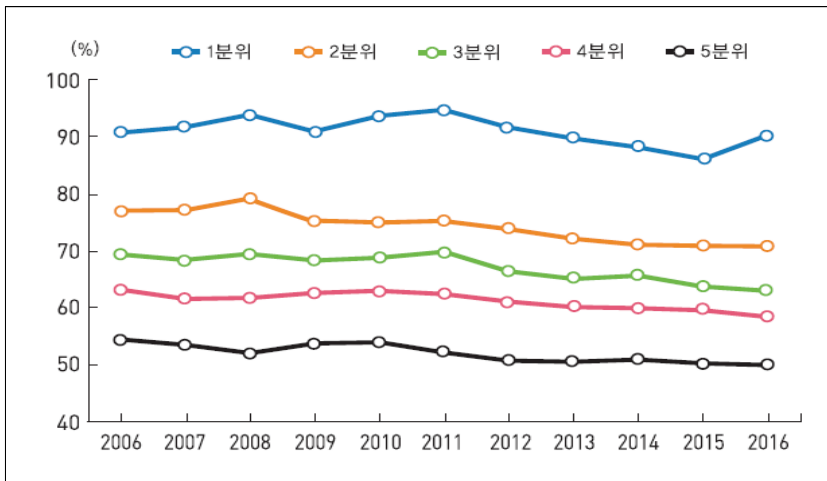
[그림 8-1-2] 5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 추이



자료: KOISIS,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각 연도, 2019. 10. 24. 다운로드.

가구소득은 가구의 지출 재원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가구지출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 그림은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비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비율이 낮고 2011년 이후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 비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1분위 소득계층의 감소폭이 크다([그림 8-1-3] 참조). 한편, 2016년에 1분위 소득계층의 소비지출 비율이 증가한 것은 실제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소득이 감소([그림 8-1-1] 참조)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8-1-3] 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1분위 가구 중, 소비지출 비율이 200%가 넘는 가구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개발원(2017) 한국의 사회동향. 재인용 p. 172.

다음 <표 8-1-1>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 준다. 총소비지출 수준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주거, 교통, 교육, 음식 및 숙박 관련

지출이 각각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식료품비 지출 비율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 음식 및 숙박, 교통, 주거, 교육 지출 순이었다.

〈표 8-1-1〉 한국의 소비지출 수준

(단위: 만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식료품· 비주류 음료	금액	26.3	28.0	30.1	31.0	30.9	30.9	30.7	30.1
	비율	13.9	14.0	14.3	14.4	14.2	14.0	14.0	13.9
주류·담배	금액	2.5	2.6	2.6	2.6	2.6	2.5	2.9	3.1
	비율	1.3	1.3	1.2	1.2	1.2	1.1	1.3	1.4
의류·신발	금액	11.5	12.8	13.7	14.5	14.6	14.5	13.7	13.4
	비율	6.1	6.4	6.5	6.7	6.7	6.6	6.2	6.2
주거·수도· 광열	금액	20.2	21.8	23.1	24.3	25.2	25.1	25.9	25.6
	비율	10.7	10.9	11.0	11.3	11.6	11.4	11.8	11.8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금액	6.7	7.6	7.9	8.3	8.6	9.0	8.9	9.2
	비율	3.5	3.8	3.8	3.8	4.0	4.1	4.1	4.3
보건	금액	12.6	13.7	14.3	14.4	14.8	15.0	15.5	15.7
	비율	6.7	6.8	6.8	6.7	6.8	6.8	7.1	7.3
교통	금액	23.1	23.5	25.4	26.0	26.5	28.2	27.1	25.5
	비율	12.3	11.7	12.1	12.1	12.2	12.8	12.4	11.8
통신	금액	11.5	12.1	12.5	13.2	13.1	12.7	12.3	12.0
	비율	6.1	6.0	5.9	6.1	6.1	5.8	5.6	5.5
오락·문화	금액	9.9	11.0	11.3	11.9	12.2	12.6	12.8	12.9
	비율	5.2	5.5	5.4	5.5	5.6	5.7	5.8	6.0
교육	금액	23.4	23.9	23.8	23.2	22.8	22.5	22.0	21.4
	비율	12.4	12.0	11.3	10.8	10.5	10.2	10.0	9.9
음식·숙박	금액	24.5	25.4	26.3	27.3	27.9	28.9	28.9	29.1
	비율	13.0	12.7	12.5	12.7	12.9	13.1	13.2	13.4
기타 상품· 서비스	금액	16.3	17.8	19.3	19.0	17.7	18.7	18.6	18.6
	비율	8.6	8.9	9.2	8.8	8.2	8.5	8.5	8.6
소비지출	금액	188.4	200.2	210.2	215.7	216.7	220.6	219.3	216.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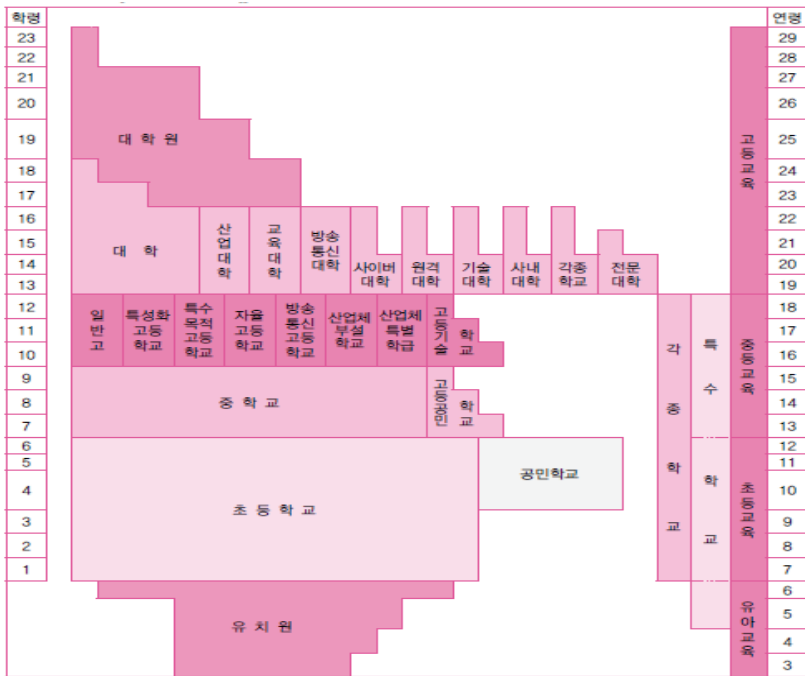
자료: KOISIS, 가계동향조사,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각 연도, 2019. 10. 24. 다운로드.

2. 한국의 관련 정책

가. 교육정책

우리나라의 학제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뉜다. 중·고등교육은 12~13세부터 18~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중간 단계이다. 중학교와 고등공민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교육학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8-1-4] 우리나라의 학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11). 2011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은 대한민국 헌법 제1호가 제정된 1948년 동법 제16조에서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1950년 6월 1일부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한국전쟁 발발로 무색해졌다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한 뒤 휴전 직후부터 초등교육을 늘려 1957년 취학률이 90%를 넘겼고, 1959년에는 96% 목표를 달성하였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부분 도입부터 전면 실시까지 17년이 걸렸다. 1985년 도서산간지방에 우선적으로 실시했는데, 1998년 교육기본법에 중학교 의무교육까지 포함했지만 재정 부족으로 번번이 연기되다 2002년 전면 실시되어 시 지역 1학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 시 지역 전체 중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으로써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었다(교육부, 2018).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낮은 출산율이 문제로 부각되자 무상으로 영유아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누리과정(만 5세를 대상 보육 지원)은 2012년 부분 도입됐고, 이후 2013년에는 만 3~4세까지 확대되었다.

최근 들어 고등교육의 무상교육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육부(2019)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2020년 고 2~3학년 → 2021년 전 학년)하여 2021년에는 완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19. 9. 24. 보도자료).

나. 의료정책

의료보장제도는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이자 제도이다. 한국의 의료보장 관련 사회보험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으며, 공공부조로는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대상자가 국한되어 규모가 크진 않

지만, 일정 부분 의료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민간 의료보험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보장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1989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어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제도 또는 의료급여제도에 속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전 국민의 97%가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저부담-저급여 구조의 제도적 기원이 있는데, 이것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담보 상태를 유지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1차 2005~2008년 / 2차 2009~2013년 / 3차 2014~2018년) 주요 정책은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2005년부터 3대 중증질환(암, 뇌경색, 심혈관 질환)의 법정본인부담 10%로 경감, 식대 급여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암, 뇌경색, 심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이 61.8%였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보장성 향상 효과는 미흡하였다.

2017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문재인케어를 들 수 있는데, 보장성 강화를 위해 1)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 전환, 2) 영유아, 난임 부부, 노인 등 대상자별 본인부담 경감, 3)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다.

다. 주거정책

우리나라 주택 부문 시장은 주로 선성장 후분배 모델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겪으며 경기침체,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분배 구조 악화, 상대 빈곤율 증가 등을 경험하면서 주택 부문은 새로운 접근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난 심화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크게 부각되었다(김미곤 외, 2018).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계획(2003년)은 주택 부문을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매년 10만~11만 호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 부문은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주택 관련 법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전환했다. 「주거기본법」은 정책 기조를 그동안의 물리적 주택 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한다는 선언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1~2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 환경 변화에 주택 부문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정책 의지로 볼 수 있다(김미곤 외, 2018).

이후 우리나라의 주거 관련 정책들에 대해 주요 수요자 중심 주거 지원 방법을 살펴보면, 용자 지원(주택 구입 자금 지원, 전월세 자금 지원, 신용보증), 임차료 보조(주거급여), 임대료 규제(연간 임대료 상승률 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부적인 용자 지원 정책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 최초 7천만 원) 이

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호당 최대 2억 원을 10~30년간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의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 최초 7천만 원) 이하이며, 5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에 호당 최대 2억 원까지 20년 만기 혹은 30년 만기로 지원되는 용자 프로그램이다.

전월세 자금 대출 정책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원)을 2년 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만 35세 이하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며, 호당 960만 원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로 대출하며, 2년 이내 일시 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수급자 및 한부모 가구 대상, 월평균 가구 총소득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월평균 가구총소득 70% 이하),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수급자 및 한부모 가구 우선 공급, 월평균 가구 총소득 50% 이하), 행복부택(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등이 있다.

2015년 7월 이후 개편된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폐지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85㎡의 주택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지출 금액의 10%(연간 공제 한도 75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이 장에서는 미시 자료를 통해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의 추이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활용 가능한 자료에는 소득과 소비 등이 함께 조사되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연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이 있다.

각 조사 자료의 강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기존의 가계자산조사와 가계신용조사, 한국은행패널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한 것이며,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칭하면서 2만여 가구가 조사되고 있다. 타 조사에 비해 조사 규모가 큰 강점이 있으나, 복지 부문(지출 상세)과 금융 부문(자산 상세)으로 구분하여 각각 1만여 가구가 조사되고 있으며, 최근 행정 자료 보완으로 인해 시계열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연간)’ 자료는 8~9천 가구가 조사되고 있으며, 시계열적으로 가장 긴 기간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2002년까지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003년 이후 2인 이상 전국 가구가 조사되었으며, 2006년 이후 1인 가구를 포함한 도시 및 농어촌의 전 가구가 조사되어 제공되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이 분리되어 조사됨에 따라 2017, 2018년에는 소득 부문이 연간 자료가 아닌 분기 자료로 공표되었다. 연간 자료는 2016년까지로,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1차 조사가 시작되어 현재 2017년 13차 조사 자료가 공개되었다.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자산 등이 조사되고 있으며, 13차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표본 수가 7천여 가구로, 타

조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서는 가구 소비 여력을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변화와 가구의 소득 및 주요 지출로 가정하고 있는 지출 항목, 부채 관련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는 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되어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복지패널은 전국 조사 대상으로 표본 수는 7천여 가구이며, 2006년(소득 및 지출 기준 시점 2005년)부터 2018년(소득 및 지출 기준 시점 2017년)까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아래 표는 해당 연도별 표본 수이다.

〈표 8-2-1〉 한국복지패널 표본 수

(단위: 가구)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가구	추가 가구	합계
2005년	7,072		
2006년	6,580		
2007년	6,314		
2008년	6,207	-	6,207
2009년	6,034	-	6,034
2010년	5,735	-	5,735
2011년	5,732	1,800	7,532
2012년	5,619	1,693	7,312
2013년	5,438	1,610	7,048
2014년	5,343	1,571	6,914
2015년	5,189	1,534	6,723
2016년	5,081	1,500	6,581
2017년	4,997	1,477	6,47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분석에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 관련 부채 및 이자를 주요 핵심 지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주거비에는 월마다 지출되는 월세액과 주거 관리비, 광열수도비가 포함된다. 교육비에는 보육료비와 공교육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사교육비는 제외하였다. 부채 관련 비용에는 주택 관련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특성상 1~2차 조사의 경우 생활비 중 식료품비와 보건의료비 등만 조사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3~4차 조사의 경우 보육료비의 구분이 불가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5차(소득 기준 2009년)에서 13차(소득 기준 2017년)까지의 자료로 한정하였다.

〈표 8-2-2〉 한국복지패널 활용 가능 변수 검토

구분	한국복지패널(2017년 기준)	구분	한국복지패널(2017년 기준)	
지출	식료품비	소득	경상소득	
	월세		근로소득	
	주거 관리비		사업소득	
	광열수도비		재산소득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사적이전소득	
	보육료비		공적이전소득	
	피복·신발비	가처분소득	주거 관련	주택 가격
	보건의료비	1년간 총 원금 상환액(가)		12월 31일 기준 주택 관련 부채액(나)
	공교육비		부채	금융기관 대출
	사교육비			일반 사채
	교양오락비	카드빚		
	교통비	전세보증금(받은 돈)		
	통신비	외상, 미리 탄 깃돈		
	기타 소비지출	기타부채		
사적이전지출	이자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세금		기타 이자		
사회보장부담금				

〈표 8-2-3〉 한국복지패널 활용 변수

구분	변수 정의
주거비	월세+주거 관리비+광열수도비(월)
의료비	보건의료비(월)
교육비	보육료비+공교육비(월)
부채	(1년간 총 원금 상환액+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12개월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가용소득	가처분소득-주거비-의료비-주거비-부채

주: 분석에 사용한 소득 및 지출은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균등화하였으며,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을 이용함.

주요 지출 항목과 가용소득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체 가구와 함께 특징적인 가구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비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핵심생계비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주택 관련 부채비용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각 지출 항목이 차지하는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가구의 유형은 크게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아동 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노인 가구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청년 가구로 구분하였다. 이후 노인 가구는 세분화하여 노인 단독 가구, 노인 부부 가구와 비교를 위해 비노인 가구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청년 가구는 청년 단독 가구, 청년 부부 가구, 청년 부부와 자녀 가구로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유형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8-2-4〉 가구 유형별 가구 구분

가구 유형	조작적 정의
전체 가구	전체 가구
아동 가구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노인 단독 가구	노인(65세 이상) 단독 가구
노인 부부 가구	가구주가 만 65세 이상인 부부 가구
비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이 없는 일반 가구
청년 가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
청년 단독 가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단독 가구
청년 부부 가구	가구주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부부 가구
청년 부부+자녀	가구주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부부와 자녀 가구

제3절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추이

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먼저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거비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아동 가구의 주거비 증가율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료비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가구 유형 중 노인 가구의 의료비가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청년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아동 가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5년 이후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택 관련 부채비용을 살펴보면, 노인 가구의 경우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청년 가구와 아동 가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아동 가구의 경우 2014년 이후 주택 관련 부채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관련 부채비용은 노인 가구와 청년 가구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에 감소하였으나, 아동 가구의 경우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동 가구의 주거비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처분소득에서 네 가지의 주요 지출 항목을 제외한 가용소득의 수준을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 가구의 가용소득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6년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7년 다시 증가하였다. 2009~2013년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표 8-3-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변화

(단위: 만 원/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가구	이통가구	노인가구	청년가구	전체가구	이통가구	노인가구	청년가구	
2009년	주거비	14.6	12.4	13.0	15.4	7.6	6.0	10.1	6.7
	의료비	8.0	6.1	10.8	7.4	4.2	2.9	8.5	3.2
	교육비	7.1	10.6	2.7	12.4	3.7	5.1	2.1	5.4
	부채비용	6.5	8.2	3.4	7.1	3.4	4.0	2.7	3.1
	합계	36.3	37.3	30.0	42.3	18.8	18.0	23.4	18.3
	가용소득	157.0	170.5	98.0	188.3	81.2	82.0	76.6	81.7
가처분소득	193.3	207.8	127.9	230.5	100.0	100.0	100.0	100.0	
2010년	주거비	14.6	13.2	13.1	15.1	7.2	5.8	9.7	6.5
	의료비	8.8	6.9	12.3	7.7	4.3	3.0	9.1	3.3
	교육비	7.5	11.1	2.5	13.2	3.7	4.8	1.9	5.7
	부채비용	6.0	10.7	2.7	5.7	3.0	4.6	2.0	2.5
	합계	36.9	41.9	30.7	41.7	18.2	18.3	22.6	18.0
	가용소득	166.1	187.7	104.9	189.8	81.8	81.7	77.4	82.0
가처분소득	203.0	229.7	135.5	231.5	100.0	100.0	100.0	100.0	
2011년	주거비	15.9	14.0	14.7	16.5	8.2	6.3	11.2	6.9
	의료비	9.8	7.6	12.7	8.4	5.1	3.4	9.7	3.5
	교육비	6.4	10.9	1.9	12.9	3.3	4.9	1.5	5.4
	부채비용	6.2	11.0	2.9	7.8	3.2	4.9	2.2	3.3
	합계	38.3	43.4	32.2	45.5	19.8	19.6	24.6	19.1
	가용소득	155.2	178.0	98.5	192.7	80.2	80.4	75.4	80.9
가처분소득	193.5	221.4	130.7	238.2	100.0	100.0	100.0	100.0	
2012년	주거비	16.7	14.8	15.4	17.0	8.2	6.3	11.0	6.6
	의료비	10.2	8.1	13.1	9.2	5.0	3.4	9.4	3.6
	교육비	6.5	11.8	1.6	13.0	3.2	4.9	1.2	5.1
	부채비용	6.3	10.4	2.2	9.0	3.1	4.4	1.5	3.5
	합계	39.8	45.1	32.3	48.1	19.4	19.0	23.2	18.8
	가용소득	165.1	192.4	107.2	208.4	80.6	81.0	76.8	81.2
가처분소득	204.9	237.5	139.5	256.5	100.0	100.0	100.0	100.0	
2013년	주거비	16.8	15.0	15.4	17.3	7.8	6.0	11.5	6.2
	의료비	9.8	7.5	12.2	9.2	4.5	3.0	9.1	3.3
	교육비	6.2	11.1	1.5	13.1	2.9	4.5	1.1	4.7
	부채비용	6.6	12.6	3.2	7.2	3.1	5.1	2.4	2.6
	합계	39.4	46.1	32.2	46.8	18.3	18.6	24.0	16.9
	가용소득	175.5	201.9	102.1	230.7	81.7	81.4	76.0	83.1
가처분소득	214.8	248.0	134.3	277.5	100.0	100.0	100.0	100.0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청년가구	전체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청년가구	
2014년	주거비	17.0	15.6	15.5	16.5	8.0	6.0	11.0	6.3
	의료비	9.7	7.3	12.3	9.6	4.5	2.9	8.8	3.7
	교육비	6.2	11.3	1.5	13.1	2.9	4.4	1.0	5.0
	부채비용	6.0	10.1	2.8	7.2	2.8	3.9	2.0	2.8
	합계	39.1	44.3	32.1	46.9	18.2	17.2	22.8	18.0
	가용소득	175.2	213.2	108.7	213.7	81.8	82.8	77.2	82.0
	가처분소득	214.3	257.5	140.9	260.6	100.0	100.0	100.0	100.0
2015년	주거비	17.1	15.4	15.6	16.6	7.4	5.2	8.9	6.1
	의료비	10.6	8.3	13.2	9.8	4.6	2.8	7.6	3.6
	교육비	5.4	11.3	1.4	11.2	2.4	3.8	0.8	4.2
	부채비용	7.2	14.1	3.0	9.2	3.1	4.7	1.7	3.4
	합계	40.2	49.0	33.1	46.8	17.5	16.5	18.9	17.3
	가용소득	189.6	248.0	141.5	223.3	82.5	83.5	81.1	82.7
	가처분소득	229.9	297.0	174.6	270.1	100.0	100.0	100.0	100.0
2016년	주거비	17.4	16.1	15.4	17.6	7.4	5.9	9.6	6.3
	의료비	11.4	9.0	14.9	10.6	4.9	3.3	9.3	3.8
	교육비	5.3	11.5	1.2	10.6	2.3	4.2	0.8	3.8
	부채비용	9.8	14.7	5.5	13.0	4.2	5.4	3.4	4.7
	합계	43.9	51.2	37.0	51.9	18.7	18.7	23.1	18.5
	가용소득	191.2	223.1	123.1	228.4	81.3	81.3	76.9	81.5
	가처분소득	235.1	274.3	160.1	280.2	100.0	100.0	100.0	100.0
2017년	주거비	17.4	15.7	16.0	17.2	7.1	5.3	9.7	5.8
	의료비	11.6	9.1	15.2	9.9	4.7	3.1	9.2	3.3
	교육비	5.3	12.6	1.2	10.0	2.1	4.3	0.7	3.4
	부채비용	9.0	19.1	2.2	9.3	3.7	6.5	1.3	3.1
	합계	43.3	56.5	34.7	46.4	17.6	19.2	20.9	15.7
	가용소득	203.2	237.5	131.2	249.5	82.4	80.8	79.1	84.3
	가처분소득	246.5	294.0	165.9	295.9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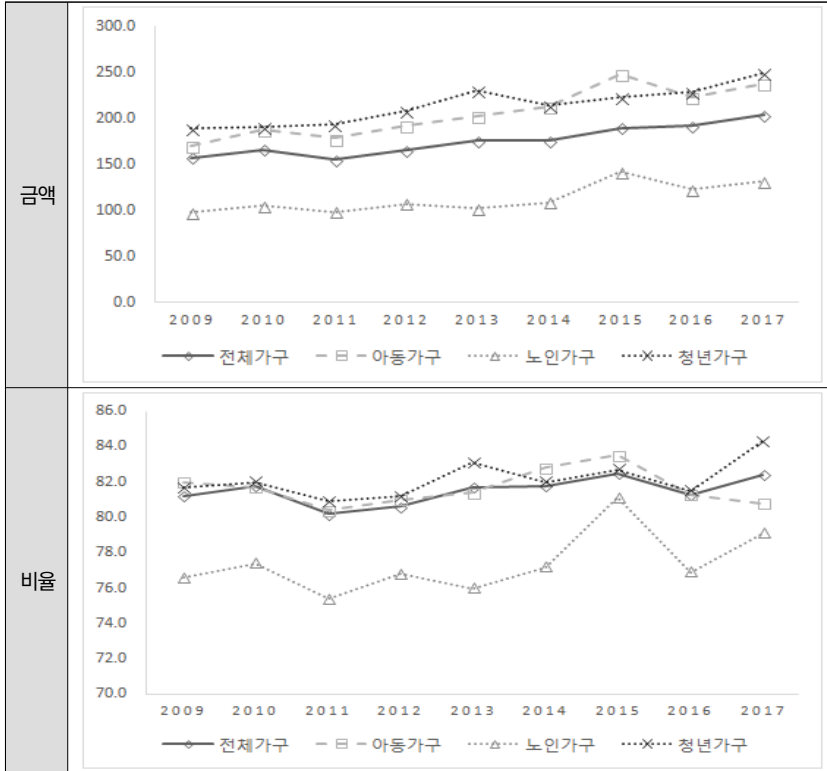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가용소득의 금액과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데, 그중에서도 2015년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 금액과 비율이 급증하였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라 노인 가용소득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역시 노인 가구는 주거비와 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고, 청년 가구는 교육비 지출, 아동 가구는 부채비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2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그림 8-3-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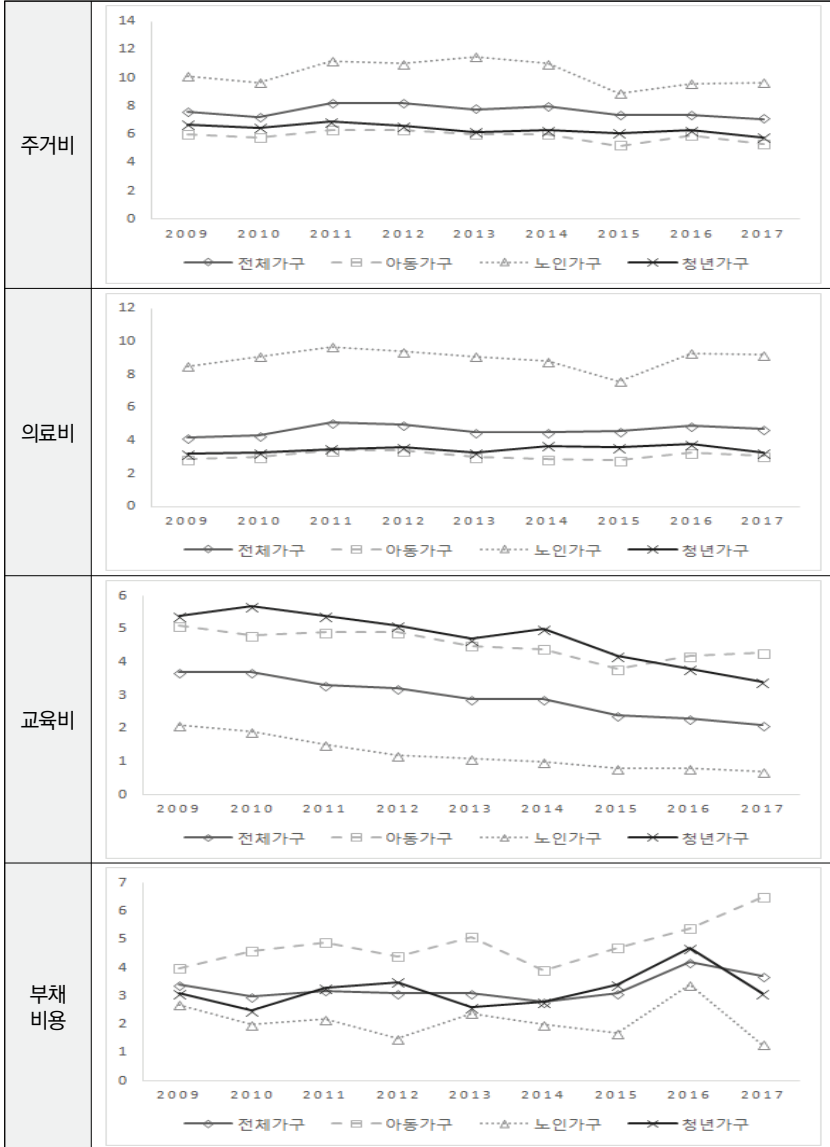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3-2]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을 살펴보면,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은 비노인 가구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가용소득은 비노인 가구의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의 주거비는 비노인 가구 주거비의 85~88% 수준이며, 주택 관련 부채비용은 30~40% 수준이었다. 반면 의료비 항목은 노인 가구가 비노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먼저 비노인 가구의 경우 가용소득이 가처분소득 대비 80% 이상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 가구는 70~75% 수준이었다. 노인 단독 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노인 단독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25% 정도로, 주요 지출 항목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인 부부 가구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3-2〉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변화

(단위: 만 원/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2009년	주거비	13.0	13.4	12.9	15.2	10.1	18.3	11.3	7.0
	의료비	10.8	8.7	14.6	7.0	8.5	11.9	12.8	3.2
	교육비	2.7	0.0	0.0	8.8	2.1	0.0	0.0	4.0
	부채비용	3.4	0.8	4.6	7.7	2.7	1.1	4.0	3.5
	합계	30.0	22.8	32.0	38.7	23.4	31.2	28.1	17.7
	가용소득	98.0	50.4	82.1	179.6	76.6	68.8	71.9	82.3
	가처분소득	127.9	73.2	114.1	218.3	100.0	100.0	100.0	100.0
2010년	주거비	13.1	13.6	13.8	15.2	9.7	16.8	10.7	6.6
	의료비	12.3	9.6	16.9	7.4	9.1	11.8	13.2	3.2
	교육비	2.5	0.0	0.1	9.4	1.9	0.0	0.1	4.1
	부채비용	2.7	1.3	1.6	7.3	2.0	1.6	1.2	3.2
	합계	30.7	24.4	32.4	39.3	22.6	30.2	25.2	17.1
	가용소득	104.9	56.5	96.4	190.1	77.4	69.8	74.8	82.9
	가처분소득	135.5	80.9	128.8	229.4	100.0	100.0	100.0	100.0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노인 가구	노인		비노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		비노인 가구
			단독	부부			단독	부부	
2011년	주거비	14.7	14.6	15.7	16.6	11.2	17.8	11.6	7.4
	의료비	12.7	10.5	15.3	8.4	9.7	12.8	11.3	3.7
	교육비	1.9	0.0	0.0	8.6	1.5	0.0	0.0	3.8
	부채비용	2.9	1.6	2.8	7.8	2.2	2.0	2.1	3.5
	합계	32.2	26.7	33.7	41.3	24.6	32.7	25.0	18.4
	가용소득	98.5	54.9	101.2	183.3	75.4	67.3	75.0	81.6
가처분소득		130.7	81.6	135.0	224.6	100.0	100.0	100.0	100.0
2012년	주거비	15.4	16.1	15.2	17.3	11.0	18.5	10.5	7.3
	의료비	13.1	10.5	17.3	8.9	9.4	12.1	12.0	3.7
	교육비	1.6	0.0	0.0	8.8	1.2	0.0	0.0	3.7
	부채비용	2.2	1.2	1.6	8.3	1.5	1.4	1.1	3.5
	합계	32.3	27.8	34.1	43.4	23.2	32.1	23.6	18.3
	가용소득	107.2	59.0	110.4	193.2	76.8	67.9	76.4	81.7
가처분소득		139.5	86.8	144.4	236.6	100.0	100.0	100.0	100.0
2013년	주거비	15.4	16.3	15.1	17.6	11.5	19.8	11.0	6.9
	의료비	12.2	9.7	15.4	8.5	9.1	11.8	11.2	3.3
	교육비	1.5	0.0	0.0	8.6	1.1	0.0	0.0	3.4
	부채비용	3.2	1.1	3.6	8.3	2.4	1.4	2.6	3.3
	합계	32.2	27.1	34.0	43.0	24.0	32.9	24.8	16.8
	가용소득	102.1	55.2	103.3	212.4	76.0	67.1	75.2	83.2
가처분소득		134.3	82.3	137.3	255.4	100.0	100.0	100.0	100.0
2014년	주거비	15.5	16.4	15.5	17.8	11.0	18.5	10.6	7.1
	의료비	12.3	9.7	15.7	8.4	8.8	11.0	10.7	3.4
	교육비	1.5	0.0	0.0	8.6	1.0	0.0	0.0	3.4
	부채비용	2.8	2.4	2.9	7.6	2.0	2.7	2.0	3.0
	합계	32.1	28.4	34.0	42.6	22.8	32.2	23.3	16.9
	가용소득	108.7	59.8	112.2	208.9	77.2	67.8	76.7	83.1
가처분소득		140.9	88.3	146.2	251.4	100.0	100.0	100.0	100.0
2015년	주거비	15.6	16.3	16.4	17.9	8.9	16.9	10.8	6.9
	의료비	13.2	10.3	16.2	9.2	7.6	10.7	10.6	3.6
	교육비	1.4	0.0	0.0	7.6	0.8	0.0	0.0	2.9
	부채비용	3.0	0.9	2.3	9.4	1.7	1.0	1.5	3.6
	합계	33.1	27.6	34.9	44.0	18.9	28.5	22.9	17.0
	가용소득	141.5	69.1	117.8	215.0	81.1	71.5	77.1	83.0
가처분소득		174.6	96.6	152.8	259.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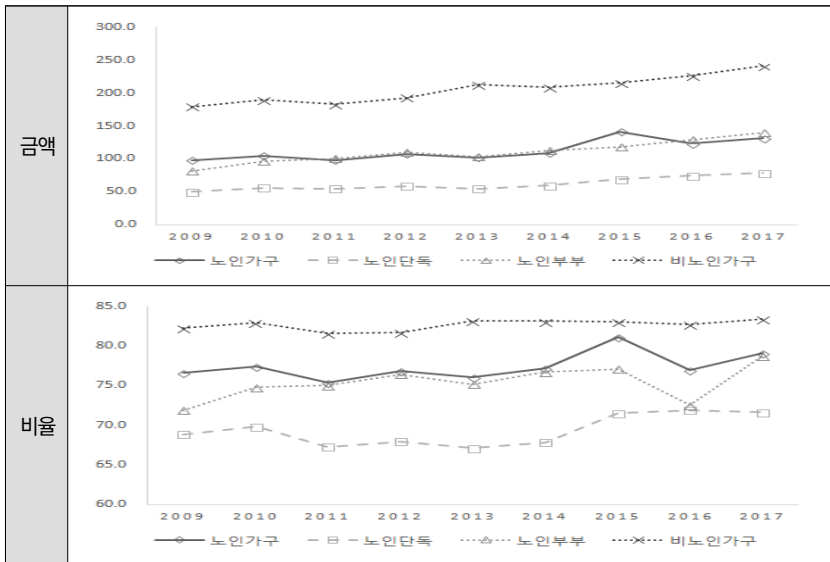
206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노인 가구	노인		비노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		비노인 가구
			단독	부부			단독	부부	
2016년	주거비	15.4	15.9	17.3	18.4	9.6	15.4	9.7	6.7
	의료비	14.9	11.7	20.2	9.6	9.3	11.3	11.4	3.5
	교육비	1.2	0.0	0.0	7.4	0.8	0.0	0.0	2.7
	부채비용	5.5	1.4	11.3	12.0	3.4	1.3	6.3	4.4
	합계	37.0	29.0	48.8	47.4	23.1	28.1	27.5	17.3
	가용소득	123.1	74.3	128.8	226.5	76.9	71.9	72.5	82.7
2017년	주거비	16.0	17.5	16.5	18.2	9.7	15.9	9.3	6.3
	의료비	15.2	12.5	19.8	9.7	9.2	11.4	11.1	3.3
	교육비	1.2	0.0	0.0	7.4	0.7	0.0	0.0	2.6
	부채비용	2.2	1.2	1.5	12.7	1.3	1.1	0.9	4.4
	합계	34.7	31.2	37.8	47.9	20.9	28.4	21.3	16.6
	가용소득	131.2	78.5	139.9	241.3	79.1	71.6	78.7	83.4
	가처분소득	165.9	109.7	177.7	289.2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3-3]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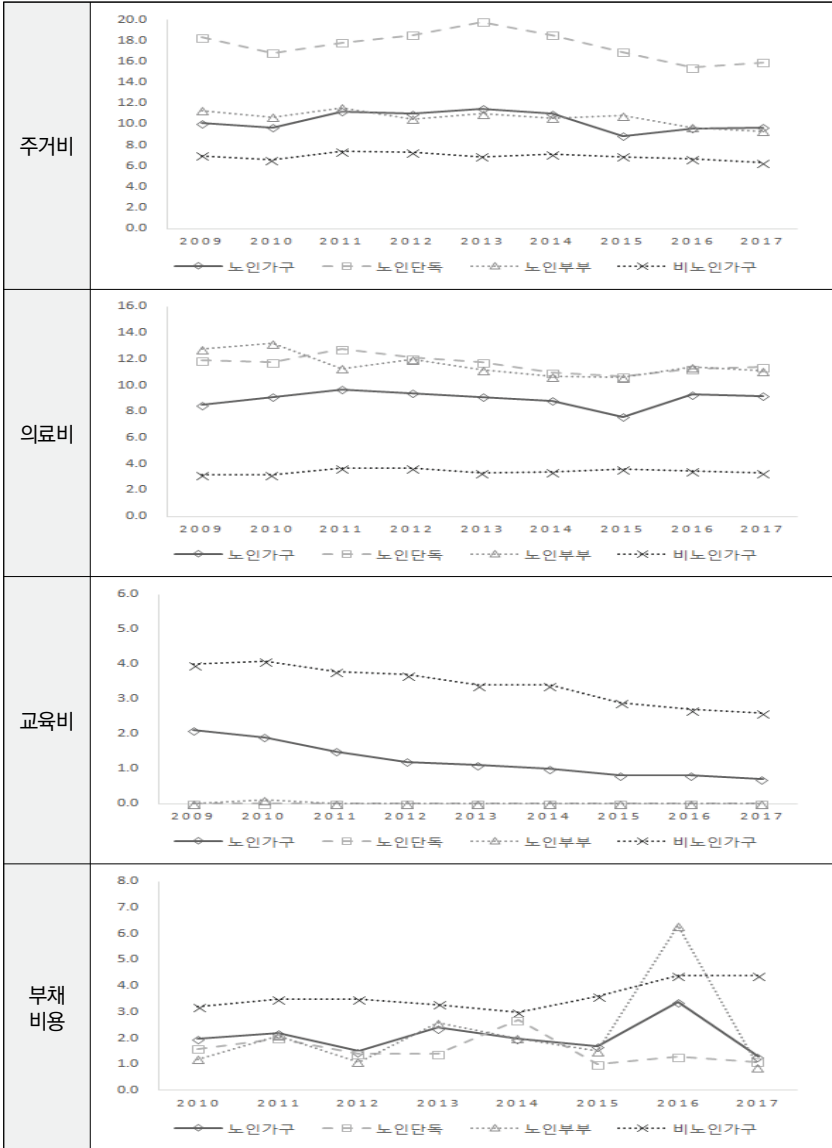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3-4]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청년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비는 청년 단독 가구가 절대적인 수준도 높고 액수도 시간에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지출 평균 금액은 2009년 23만 2000원에서 2017년 28만 2000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 단독 가구는 자가 또는 전세보다는 불안정한 월세 임차 가구일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의료비는 청년 부부 가구가 가장 높았으며, 2009년 5만 6000원에서 2017년 12만 7000원으로 7만 1000원 상승하였는데, 이는 다른 청년 가구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에 반해 주거비 부담이 컸던 청년 단독 가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낮았다. 이를 청년 단독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적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정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상황이 아닐까 염려되기도 한다. 교육비 지출은 단연 청년+자녀 가구가 가장 높았다. 교육비에는 보육료와 공교육비만 포함되었으므로 그 부담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출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로부터의 지원 즉, 공적이전소득(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학비 지원 등) 확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청년 가구 유형별로 부채비용이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장기간 청년+자녀 가구의 부채비용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들어서는 청년 부부 가구의 부채비용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가용소득의 비율은 2015년에 청년 부부 가구(85.3%)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청년 단독 가구(84.2%), 마지막이 청년+자녀 가구(79.9%)였다. 청년+자녀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은 전체 청년 가구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주는데, 그 비율이 75% 이하로 떨어진 시기도 있다. 이는 다른 청년 가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청년+자녀 가구의 필수 지출, 특히 교육비 및 부채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2009년과 2017년을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인 소득 수준인 가처분소득

은 모두 상승하였으나 가용소득의 금액과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에서 지출에 대한 부담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8-3-3〉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변화

(단위: 만 원/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2009년	주거비	15.4	23.2	14.0	13.1	6.7	8.2	4.1	6.2
	의료비	7.4	3.4	5.6	6.3	3.2	1.2	1.6	3.0
	교육비	12.4	2.3	1.2	10.3	5.4	0.8	0.3	4.9
	부채비용	7.1	10.8	11.8	11.7	3.1	3.8	3.4	5.5
	합계	42.3	39.7	32.5	41.4	18.3	14.1	9.5	19.6
		가용소득	188.3	241.8	311.4	169.6	81.7	85.9	90.5
	가처분소득	230.5	281.5	343.9	211.0	100.0	100.0	100.0	100.0
2010년	주거비	15.1	23.1	16.7	17.6	6.5	10.6	5.6	7.7
	의료비	7.7	3.0	10.3	7.4	3.3	1.4	3.4	3.3
	교육비	13.2	2.1	0.0	12.2	5.7	1.0	0.0	5.3
	부채비용	5.7	1.1	6.3	15.7	2.5	0.5	2.1	6.9
	합계	41.7	29.4	33.4	52.9	18.0	13.5	11.1	23.2
		가용소득	189.8	188.1	267.7	175.4	82.0	86.5	88.9
	가처분소득	231.5	217.4	301.1	228.3	100.0	100.0	100.0	100.0
2011년	주거비	16.5	27.2	16.4	15.1	6.9	11.5	5.7	6.0
	의료비	8.4	4.7	11.2	6.7	3.5	2.0	3.9	2.6
	교육비	12.9	1.7	0.2	13.4	5.4	0.7	0.1	5.3
	부채비용	7.8	3.3	16.6	18.8	3.3	1.4	5.7	7.5
	합계	45.5	37.0	44.3	54.0	19.1	15.7	15.3	21.4
		가용소득	192.7	198.6	245.1	198.2	80.9	84.3	84.7
	가처분소득	238.2	235.6	289.4	252.2	100.0	100.0	100.0	100.0
2012년	주거비	17.0	26.5	15.4	16.3	6.6	11.5	5.3	6.5
	의료비	9.2	5.2	13.2	9.1	3.6	2.3	4.6	3.6
	교육비	13.0	1.3	0.4	14.9	5.1	0.5	0.1	5.9
	부채비용	9.0	3.8	19.4	24.2	3.5	1.6	6.7	9.7
	합계	48.1	36.8	48.4	64.5	18.8	16.0	16.8	25.8
		가용소득	208.4	193.0	240.4	186.1	81.2	84.0	83.2
	가처분소득	256.5	229.7	288.7	250.6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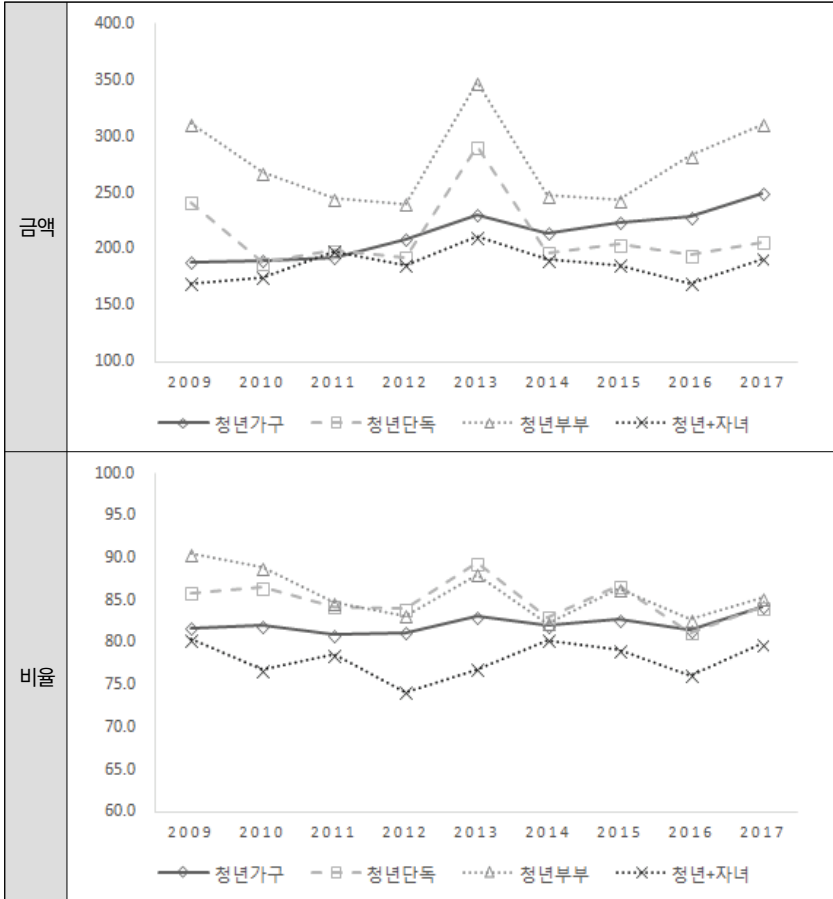
210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2013년	주거비	17.3	26.1	17.1	15.3	6.2	8.0	4.3	5.6
	의료비	9.2	4.1	15.9	10.4	3.3	1.3	4.0	3.8
	교육비	13.1	2.6	0.0	15.3	4.7	0.8	0.0	5.6
	부채비용	7.2	1.5	13.9	22.4	2.6	0.5	3.5	8.2
	합계	46.8	34.4	47.0	63.3	16.9	10.6	11.9	23.1
	가용소득	230.7	291.0	347.9	211.0	83.1	89.4	88.1	76.9
가처분소득		277.5	325.4	394.9	274.4	100.0	100.0	100.0	100.0
2014년	주거비	16.5	26.2	16.3	14.2	6.3	11.0	5.4	6.0
	의료비	9.6	3.5	13.8	9.0	3.7	1.5	4.6	3.8
	교육비	13.1	2.9	1.2	14.4	5.0	1.2	0.4	6.1
	부채비용	7.2	7.8	22.3	9.1	2.8	3.3	7.4	3.8
	합계	46.9	40.4	53.5	46.6	18.0	17.0	17.7	19.7
	가용소득	213.7	197.1	248.2	190.5	82.0	83.0	82.3	80.3
가처분소득		260.6	237.5	301.8	237.1	100.0	100.0	100.0	100.0
2015년	주거비	16.6	22.5	15.6	14.4	6.1	9.5	5.5	6.1
	의료비	9.8	3.3	9.1	8.2	3.6	1.4	3.2	3.5
	교육비	11.2	3.3	0.8	14.0	4.2	1.4	0.3	5.9
	부채비용	9.2	2.4	12.8	12.5	3.4	1.0	4.5	5.3
	합계	46.8	31.5	38.3	49.2	17.3	13.3	13.6	20.9
	가용소득	223.3	204.5	244.0	186.2	82.7	86.7	86.4	79.1
가처분소득		270.1	236.0	282.3	235.3	100.0	100.0	100.0	100.0
2016년	주거비	17.6	27.0	24.4	15.0	6.3	11.3	7.1	6.8
	의료비	10.6	5.5	9.4	9.3	3.8	2.3	2.7	4.2
	교육비	10.6	2.5	1.6	9.6	3.8	1.0	0.5	4.3
	부채비용	13.0	10.2	23.8	18.9	4.7	4.2	7.0	8.5
	합계	51.9	45.1	59.2	52.8	18.5	18.8	17.3	23.8
	가용소득	228.4	194.9	283.6	169.6	81.5	81.2	82.7	76.2
가처분소득		280.2	240.0	342.9	222.4	100.0	100.0	100.0	100.0
2017년	주거비	17.2	28.2	22.2	14.1	5.8	11.5	6.1	5.9
	의료비	9.9	4.6	12.7	9.1	3.3	1.9	3.5	3.8
	교육비	10.0	1.8	0.0	10.4	3.4	0.7	0.0	4.3
	부채비용	9.3	4.2	18.6	14.6	3.1	1.7	5.1	6.1
	합계	46.4	38.8	53.5	48.1	15.7	15.8	14.7	20.1
	가용소득	249.5	206.6	310.7	191.8	84.3	84.2	85.3	79.9
가처분소득		295.9	245.5	364.2	239.9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3-5]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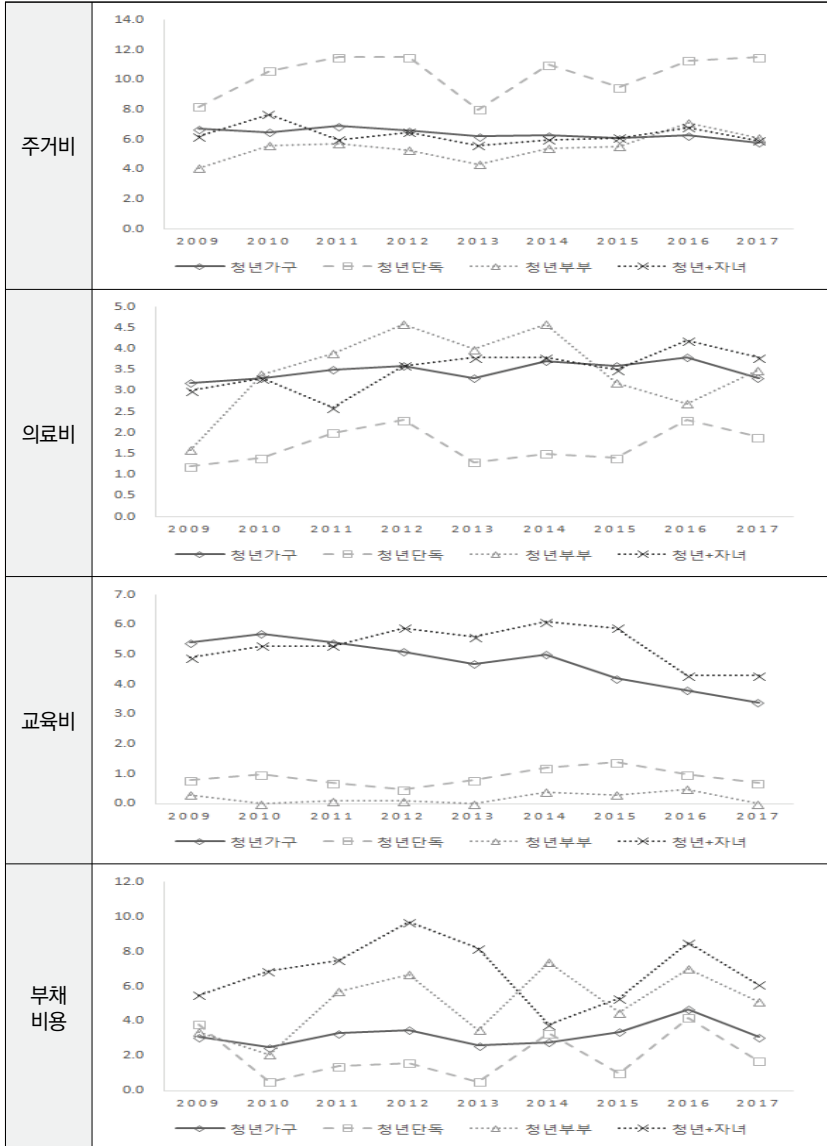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3-6]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주택 소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가 가구의 가처분소득 및 가용소득 절대금액이 임차 가구의 가처분소득 및 가용소득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 가구는 주거비 지출이 많고 자가 가구는 부채비용이 많지만, 주거비 지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노인 임차 가구에서는 2015년을 제외하고는 가용소득 금액과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는 노인 임차 가구의 부담이 가장 컸고, 의료비는 노인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가 큰 차이 없이 높았다. 부채비용은 전체 및 노인 자가 가구가 전체 및 노인 임차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가용소득 비율에서는 노인 자가 가구와 노인 임차 가구를 주목할 만한데, 그 격차는 5% 내외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노인 가구의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이 주거비임을 감안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노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8-3-4〉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노인 가구) 가용소득 변화

(단위: 만 원/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		노인		전체		노인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09년	주거비	13.5	16.9	12.5	15.1	6.7	8.8	8.5	15.3
	의료비	9.5	5.7	11.6	8.1	4.7	3.0	7.9	8.3
	교육비	7.7	6.8	3.1	2.4	3.8	3.5	2.1	2.5
	부채비용	10.2	2.8	5.1	0.6	5.1	1.4	3.5	0.6
	합계	40.9	32.3	32.4	26.3	20.3	16.7	22.0	26.7
	가용소득	160.0	161.0	114.7	72.3	79.7	83.3	78.0	73.3
	가처분소득	200.9	193.3	147.0	98.5	100.0	100.0	100.0	100.0
2010년	주거비	13.1	17.6	12.6	15.3	5.9	9.5	8.3	14.1
	의료비	10.3	6.4	13.6	9.3	4.6	3.5	8.9	8.6
	교육비	7.8	7.3	2.3	4.0	3.5	3.9	1.5	3.7
	부채비용	9.5	2.3	3.6	1.5	4.2	1.2	2.3	1.4
	합계	40.7	33.6	32.1	30.1	18.3	18.1	21.1	27.8
	가용소득	182.2	152.0	120.3	78.3	81.7	81.9	78.9	72.2
	가처분소득	222.9	185.6	152.4	108.4	100.0	100.0	100.0	100.0

214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		노인		전체		노인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11년	주거비	14.3	19.0	14.2	16.8	6.9	10.4	9.6	16.4
	의료비	11.7	7.2	14.6	8.5	5.6	3.9	9.8	8.3
	교육비	7.1	6.0	2.2	1.7	3.4	3.3	1.5	1.7
	부채비용	9.6	2.7	4.1	1.3	4.6	1.5	2.8	1.3
	합계	42.7	34.9	35.1	28.4	20.5	19.1	23.6	27.6
	가용소득	165.6	148.3	113.6	74.4	79.5	80.9	76.4	72.4
가처분소득	208.2	183.2	148.8	102.8	100.0	100.0	100.0	100.0	
2012년	주거비	14.9	20.0	14.9	17.9	6.6	10.5	9.2	16.6
	의료비	12.1	7.7	15.0	8.8	5.4	4.0	9.3	8.1
	교육비	7.2	6.3	1.8	1.6	3.2	3.3	1.1	1.5
	부채비용	10.2	2.2	3.1	0.8	4.6	1.2	1.9	0.7
	합계	44.4	36.2	34.9	29.0	19.7	19.0	21.6	27.0
	가용소득	180.5	154.2	127.0	78.6	80.3	81.0	78.4	73.0
가처분소득	225.0	190.5	161.9	107.7	100.0	100.0	100.0	100.0	
2013년	주거비	15.4	20.0	15.3	17.8	6.8	9.8	9.9	16.9
	의료비	11.2	7.7	13.9	8.2	4.9	3.8	9.0	7.8
	교육비	6.8	5.7	1.6	1.7	3.0	2.8	1.0	1.6
	부채비용	9.3	4.2	4.5	1.4	4.1	2.1	2.9	1.4
	합계	42.6	37.6	35.2	29.0	18.8	18.6	22.9	27.6
	가용소득	183.6	165.1	118.9	76.2	81.2	81.4	77.1	72.4
가처분소득	226.2	202.8	154.2	105.2	100.0	100.0	100.0	100.0	
2014년	주거비	15.5	20.5	14.9	18.9	6.8	9.9	9.4	15.8
	의료비	11.2	7.5	14.1	8.5	4.9	3.6	8.9	7.1
	교육비	7.0	5.5	1.6	1.6	3.1	2.6	1.0	1.3
	부채비용	9.3	2.5	4.3	0.5	4.0	1.2	2.7	0.4
	합계	43.2	36.0	34.9	29.5	18.9	17.4	22.1	24.6
	가용소득	185.4	171.5	123.4	90.4	81.1	82.6	77.9	75.4
가처분소득	228.6	207.5	158.4	119.8	100.0	100.0	100.0	100.0	
2015년	주거비	15.6	20.5	14.8	18.9	6.5	8.8	8.9	7.8
	의료비	12.1	8.2	14.7	8.8	5.0	3.5	8.8	3.7
	교육비	5.9	5.3	1.5	1.4	2.5	2.3	0.9	0.6
	부채비용	10.7	3.5	4.4	0.7	4.5	1.5	2.7	0.3
	합계	44.3	37.5	35.4	29.8	18.5	16.1	21.2	12.4
	가용소득	195.4	195.1	131.5	210.5	81.5	83.9	78.8	87.6
가처분소득	239.7	232.6	166.8	240.4	100.0	100.0	100.0	100.0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		노인		전체		노인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16년	주거비	15.5	21.8	14.6	19.1	6.0	10.2	8.0	14.7
	의료비	13.3	8.7	16.7	11.0	5.2	4.1	9.2	8.4
	교육비	5.8	5.1	1.2	1.5	2.2	2.4	0.6	1.2
	부채비용	14.6	4.4	7.5	3.0	5.6	2.1	4.1	2.3
	합계	49.2	40.1	39.9	34.7	19.0	18.8	22.0	26.6
	가용소득	209.5	173.6	141.9	95.7	81.0	81.2	78.0	73.4
2017년	주거비	15.0	22.2	14.9	20.2	5.6	9.8	8.0	15.0
	의료비	13.4	8.5	16.7	10.8	5.0	3.8	9.0	8.0
	교육비	5.6	5.2	1.4	1.2	2.1	2.3	0.7	0.9
	부채비용	13.7	3.7	2.7	1.9	5.1	1.6	1.5	1.4
	합계	47.7	39.6	35.7	34.1	17.7	17.5	19.3	25.3
	가용소득	221.4	186.5	149.6	100.7	82.3	82.5	80.7	74.7
	가처분소득	269.1	226.1	185.2	134.8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청년 및 아동 가구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은 주택 소유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주거비 지출 비율은 청년 임차 가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아동 임차 가구였으며, 아동 자가 가구와 청년 자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의료비 지출은 청년 자가 가구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부채비용 지출은 아동 자가 가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청년 자가 가구였다.

아동 자가 가구와 아동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 차이는 2%대에서 4.4%까지 차이를 보여 아동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 자가 가구의 주택 관련 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아동 자가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가장 낮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다른 가구 유형의 자가 및 임차 가구보다 크지는 않았다. 청년 자가 가구와 청년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가용소득 금액은 청년 자가 가구가 더 많은 것을 볼 때, 그 지출은 주로 주거비를 제외한 의료비, 교육비, 주택 관련 부채 부담으로 파악된다.

216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표 8-3-5〉 주택 소유 유형별(청년 가구/아동 가구) 가용소득 변화

(단위: 만 원/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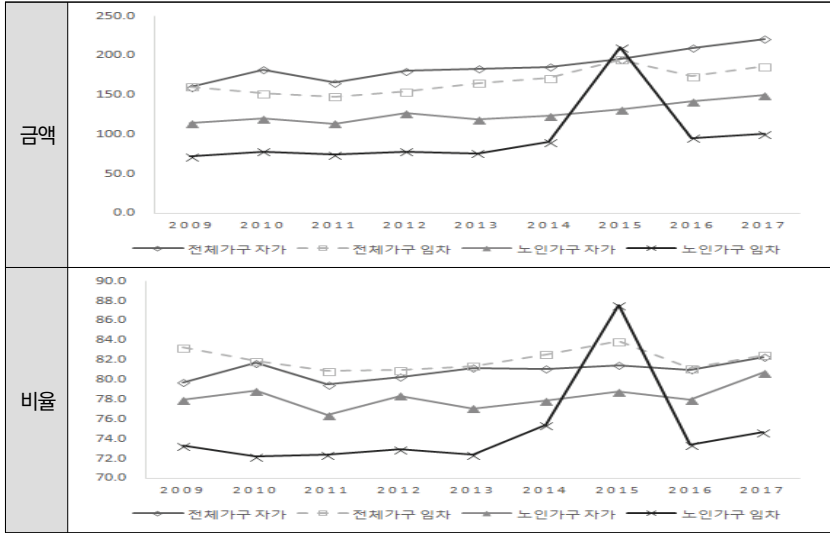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아동		청년		아동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09년	주거비	14.0	17.7	11.6	13.9	5.9	7.7	5.3	7.1
	의료비	8.8	5.6	6.6	5.4	3.7	2.4	3.0	2.7
	교육비	14.4	10.1	10.9	10.3	6.1	4.4	5.0	5.2
	부채비용	10.7	4.1	12.7	3.6	4.5	1.8	5.8	1.8
	합계	47.9	37.6	41.8	33.2	20.3	16.4	19.1	16.9
	가용소득	188.4	191.5	176.6	163.6	79.7	83.6	80.9	83.1
2010년	가처분소득	236.3	229.1	218.4	196.7	100.0	100.0	100.0	100.0
	주거비	12.6	18.5	12.7	14.4	5.0	8.7	4.9	7.3
	의료비	9.4	5.7	7.4	6.3	3.8	2.7	2.9	3.2
	교육비	15.0	11.2	11.5	10.8	6.0	5.3	4.5	5.5
	부채비용	9.2	2.4	17.2	3.4	3.7	1.1	6.7	1.7
	합계	46.2	37.6	48.8	34.9	18.4	17.8	19.0	17.6
2011년	가용소득	204.8	174.1	208.0	162.9	81.6	82.2	81.0	82.4
	가처분소득	251.1	211.7	256.8	197.8	100.0	100.0	100.0	100.0
	주거비	14.2	19.8	13.4	15.1	5.5	9.1	5.5	7.7
	의료비	10.0	6.5	8.1	7.2	3.9	3.0	3.4	3.6
	교육비	15.5	10.1	11.1	10.6	6.0	4.6	4.6	5.3
	부채비용	11.6	4.4	18.3	2.9	4.6	2.0	7.6	1.5
2012년	합계	51.3	40.8	50.9	35.8	20.0	18.6	21.1	18.1
	가용소득	204.6	178.0	190.7	162.0	80.0	81.4	78.9	81.9
	가처분소득	255.9	218.7	241.6	197.8	100.0	100.0	100.0	100.0
	주거비	14.3	20.7	13.5	17.2	5.1	8.9	5.3	7.8
	의료비	11.0	7.2	8.8	7.5	3.9	3.1	3.4	3.4
	교육비	15.6	10.3	12.1	11.5	5.5	4.4	4.7	5.2
2013년	부채비용	14.6	3.5	17.6	2.6	5.2	1.5	6.9	1.2
	합계	55.6	41.8	52.0	38.7	19.7	18.0	20.3	17.7
	가용소득	226.3	190.7	204.3	180.3	80.3	82.0	79.7	82.3
	가처분소득	281.9	232.5	256.2	219.1	100.0	100.0	100.0	100.0
	주거비	15.6	20.2	13.7	17.4	5.4	8.4	5.3	7.3
	의료비	10.4	7.7	8.3	6.7	3.6	3.2	3.2	2.8
2013년	교육비	15.7	9.6	10.9	11.1	5.4	4.0	4.2	4.7
	부채비용	10.4	4.3	17.6	7.6	3.6	1.8	6.8	3.2
	합계	52.1	41.8	50.4	42.9	17.9	17.5	19.4	18.1
	가용소득	238.9	197.6	209.3	193.9	82.1	82.5	80.6	81.9
	가처분소득	291.0	239.4	259.7	236.8	100.0	100.0	100.0	100.0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아동		청년		아동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14년	주거비	14.2	20.2	15.3	16.5	5.0	8.8	5.8	6.4
	의료비	10.7	8.0	7.6	6.9	3.7	3.5	2.9	2.7
	교육비	15.7	10.2	11.3	11.1	5.5	4.4	4.3	4.3
	부채비용	11.3	3.0	15.3	4.0	3.9	1.3	5.8	1.5
	합계	52.5	41.4	49.4	38.5	18.4	18.0	18.9	15.0
	가용소득	233.1	188.7	212.6	218.9	81.6	82.0	81.1	85.0
	가처분소득	285.6	230.1	262.0	257.4	100.0	100.0	100.0	100.0
2015년	주거비	15.0	19.6	14.9	16.9	5.0	8.3	5.4	4.9
	의료비	12.2	7.2	8.9	7.7	4.1	3.0	3.2	2.2
	교육비	12.9	9.7	11.6	10.9	4.3	4.1	4.2	3.1
	부채비용	14.8	3.2	20.0	7.1	4.9	1.4	7.3	2.0
	합계	54.9	39.6	55.4	42.5	18.3	16.8	20.2	12.2
	가용소득	245.2	196.5	218.5	305.4	81.7	83.2	79.8	87.8
	가처분소득	300.0	236.1	273.8	347.9	100.0	100.0	100.0	100.0
2016년	주거비	15.1	22.0	15.8	17.6	4.8	8.9	5.4	7.0
	의료비	12.6	8.5	9.8	7.5	4.0	3.4	3.4	3.0
	교육비	11.7	9.5	11.7	10.6	3.7	3.9	4.0	4.2
	부채비용	19.1	6.7	22.0	4.2	6.1	2.7	7.5	1.7
	합계	58.4	46.7	59.4	39.9	18.7	19.0	20.3	15.9
	가용소득	253.7	199.4	232.7	210.8	81.3	81.0	79.7	84.1
	가처분소득	312.1	246.2	292.0	250.8	100.0	100.0	100.0	100.0
2017년	주거비	13.4	22.7	14.8	17.9	4.1	8.8	4.8	6.5
	의료비	11.8	7.7	9.5	8.4	3.6	3.0	3.1	3.1
	교육비	11.6	8.2	11.6	13.9	3.5	3.2	3.7	5.1
	부채비용	14.1	4.6	26.2	8.1	4.2	1.8	8.5	3.0
	합계	50.9	43.2	62.1	48.3	15.4	16.6	20.1	17.7
	가용소득	280.3	216.6	247.7	225.0	84.6	83.4	79.9	82.3
	가처분소득	331.2	259.8	309.8	273.3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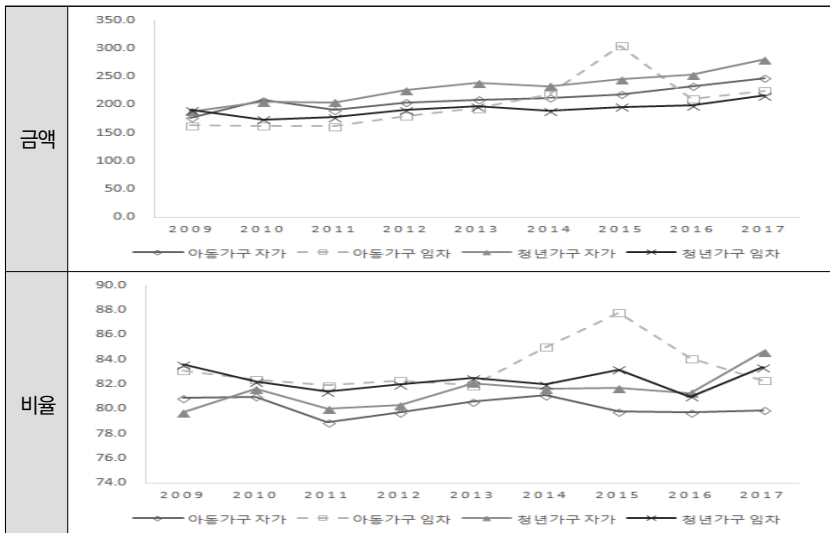
[그림 8-3-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추이(전체 가구/노인 가구)

(단위: 만 원/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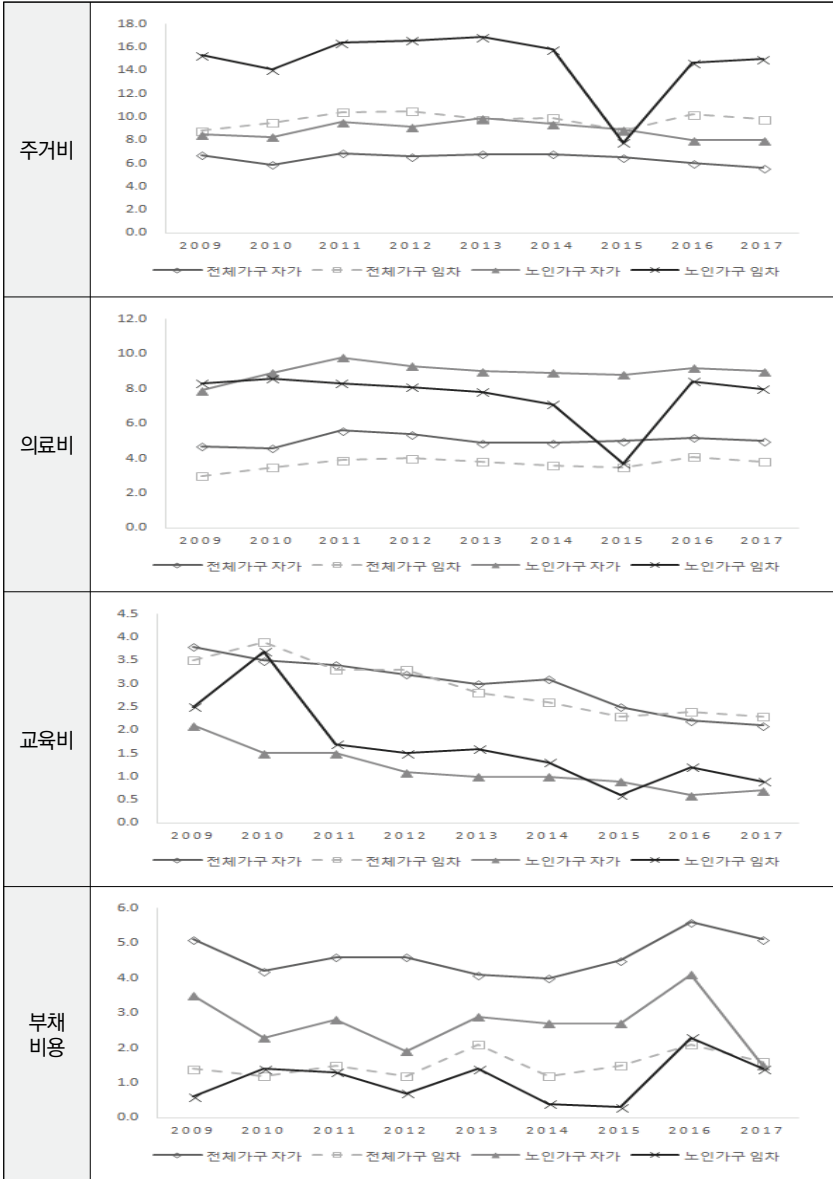
[그림 8-3-8]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추이(청년 가구/아동 가구)

(단위: 만 원/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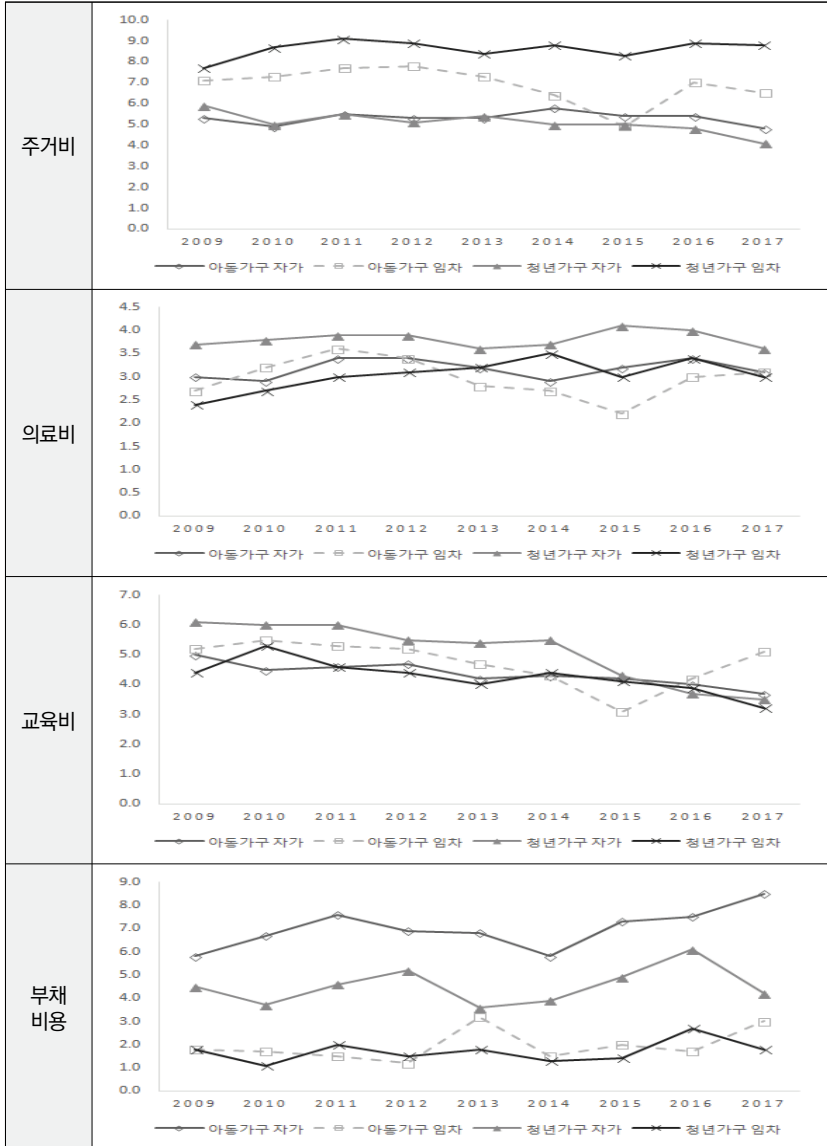
[그림 8-3-9]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전체 가구/노인 가구)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3-10] 주택 소유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청년 가구/아동 가구)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2.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마지막으로 소득분위별 주요 지출 항목과 가용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용소득과 주요 지출의 절대적 금액은 분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가처분소득 대비 항목별 비율은 분위별로 차이를 보인다. 저분위(1, 2분위)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와 의료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분위(4, 5분위)의 경우 주택 관련 부채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1분위는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2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RIR)로 정의하는데, 분석 결과 1분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분위의 의료비 부담 역시 가장 높은데 이는 저분위일수록 일정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가 포진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저분위에는 필수적인 생계를 위한 비용 즉, 주거비 및 의료비 지출의 보존이 절실함을 보여 준다.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저분위일수록 가용소득의 수준은 변동성이 적고 고분위일수록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다. 1분위의 가용소득은 5분위 가용소득의 10% 수준이었으며, 2분위는 약 25%, 3분위는 약 40%, 4분위는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은 저분위일수록 낮게 나타나는데, 1분위는 65% 정도였으나, 5분위는 가용소득이 가처분의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분위의 가용소득은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낮아 주요 지출 항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용소득 수준 또한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222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표 8-3-6〉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변화(5분위)

(단위: 만 원/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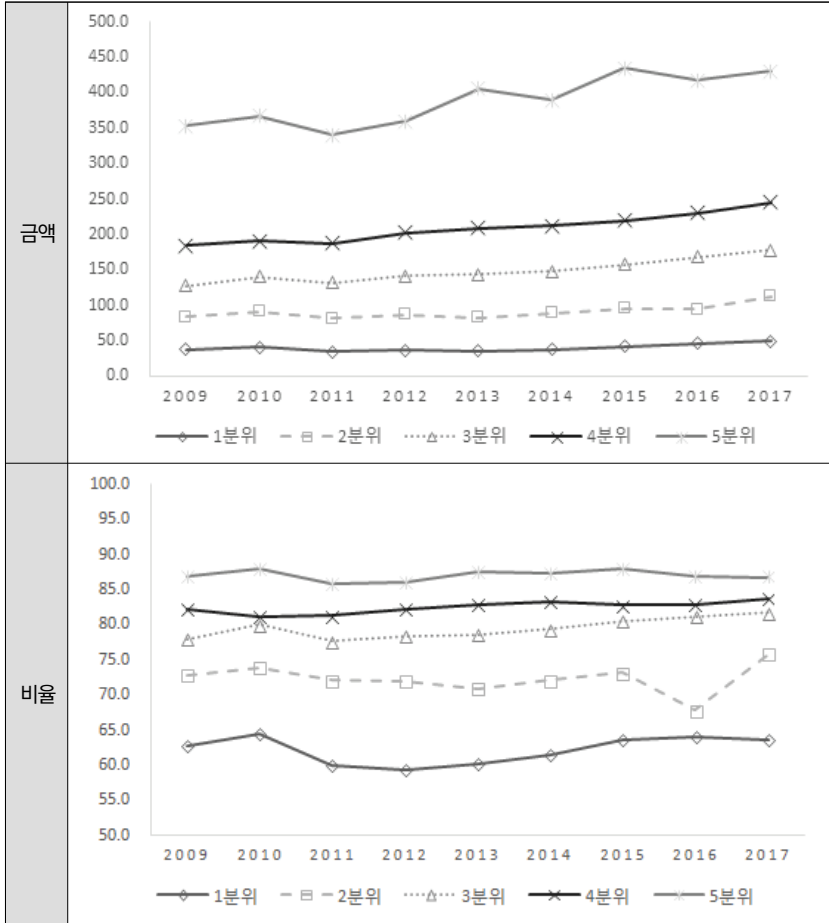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9년	주거비	12.1	13.9	14.1	15.2	17.7	20.5	12.2	8.6	6.8	4.4
	의료비	6.6	7.2	7.4	7.3	11.6	11.1	6.3	4.5	3.3	2.9
	교육비	1.9	5.4	8.5	9.2	10.8	3.2	4.7	5.2	4.1	2.7
	부채비용	1.5	4.4	6.0	7.8	13.0	2.6	3.9	3.6	3.5	3.2
	합계	22.1	31.0	36.0	39.5	53.0	37.3	27.1	22.0	17.7	13.1
	가용소득	37.2	83.3	127.6	183.7	352.9	62.7	72.9	78.0	82.3	86.9
2010년	가처분소득	59.3	114.2	163.6	223.3	405.9	100.0	100.0	100.0	100.0	100.0
	주거비	12.5	14.3	14.3	15.0	17.1	19.6	11.6	8.2	6.4	4.1
	의료비	6.9	8.6	7.2	9.1	11.9	10.8	7.0	4.1	3.9	2.8
	교육비	1.9	6.3	8.5	8.9	11.7	3.0	5.1	4.9	3.8	2.8
	부채비용	1.3	3.0	5.0	11.2	9.6	2.0	2.5	2.9	4.8	2.3
	합계	22.7	32.3	35.0	44.3	50.1	35.5	26.1	20.0	18.9	12.0
2011년	가용소득	41.1	91.1	140.1	190.6	367.6	64.5	73.9	80.0	81.1	88.0
	가처분소득	63.8	123.3	175.1	234.9	417.8	100.0	100.0	100.0	100.0	100.0
	주거비	12.9	15.1	16.6	16.7	18.3	22.4	13.3	9.8	7.2	4.6
	의료비	7.3	9.7	10.0	9.9	12.0	12.7	8.6	5.9	4.3	3.0
	교육비	1.8	4.4	6.5	9.0	10.3	3.1	3.9	3.8	3.9	2.6
	부채비용	1.0	2.3	4.6	7.7	15.2	1.7	2.1	2.7	3.3	3.8
2012년	합계	23.1	31.6	37.8	43.3	55.7	40.0	27.9	22.3	18.7	14.1
	가용소득	34.6	81.6	131.7	187.9	340.0	60.0	72.1	77.7	81.3	85.9
	가처분소득	57.7	113.1	169.4	231.2	395.7	100.0	100.0	100.0	100.0	100.0
	주거비	13.9	16.3	17.6	17.9	18.0	22.8	13.5	9.7	7.3	4.3
	의료비	7.9	10.6	9.1	10.2	13.4	13.0	8.9	5.1	4.1	3.2
	교육비	1.1	4.2	7.4	7.8	11.8	1.9	3.5	4.1	3.2	2.8
2013년	부채비용	1.7	2.5	4.9	7.8	14.7	2.8	2.1	2.7	3.2	3.5
	합계	24.6	33.6	39.0	43.6	57.9	40.6	28.0	21.6	17.8	13.9
	가용소득	36.1	86.5	141.4	202.0	359.5	59.4	72.0	78.4	82.2	86.1
	가처분소득	60.8	120.1	180.4	245.6	417.4	100.0	100.0	100.0	100.0	100.0
	주거비	14.4	17.5	17.2	16.5	18.6	24.4	14.9	9.4	6.5	4.0
	의료비	7.2	9.6	10.6	9.5	12.0	12.2	8.2	5.8	3.8	2.6
2013년	교육비	1.0	4.0	6.5	8.3	11.3	1.7	3.4	3.6	3.3	2.4
	부채비용	0.9	3.1	4.5	8.9	15.6	1.5	2.6	2.5	3.5	3.4
	합계	23.4	34.2	38.7	43.1	57.5	39.8	29.1	21.3	17.1	12.4
	가용소득	35.4	83.1	143.1	209.3	406.2	60.2	70.9	78.7	82.9	87.6
가처분소득	58.8	117.3	181.8	252.4	463.7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4년	주거비	14.0	16.5	18.2	17.5	19.0	22.8	13.4	9.8	6.9	4.2
	의료비	7.1	9.7	9.9	9.8	12.2	11.7	7.9	5.3	3.9	2.7
	교육비	1.0	4.0	6.2	8.6	11.1	1.7	3.3	3.3	3.4	2.5
	부채비용	0.8	4.1	4.0	6.3	14.6	1.4	3.3	2.1	2.5	3.3
	합계	23.6	34.3	38.2	42.2	56.9	38.5	27.9	20.6	16.6	12.7
		가용소득	37.7	88.7	147.6	211.9	390.0	61.5	72.1	79.4	83.4
	가처분소득	61.3	123.0	185.9	254.1	446.9	100.0	100.0	100.0	100.0	100.0
2015년	주거비	13.9	17.0	16.3	17.5	20.6	21.1	13.1	8.4	6.6	4.2
	의료비	7.9	11.3	9.7	10.7	13.4	11.9	8.7	5.0	4.0	2.7
	교육비	1.1	4.0	5.1	7.3	9.6	1.7	3.1	2.6	2.7	2.0
	부채비용	1.1	2.6	6.7	10.0	15.4	1.6	2.0	3.4	3.8	3.1
	합계	23.9	34.8	37.8	45.5	59.1	36.3	26.8	19.4	17.2	12.0
		가용소득	41.9	95.0	157.0	219.6	434.2	63.7	73.2	80.6	82.8
	가처분소득	65.9	129.8	194.8	265.1	493.2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년	주거비	14.0	17.4	17.2	18.1	20.2	19.4	12.5	8.3	6.5	4.2
	의료비	9.1	11.7	10.0	12.1	14.2	12.6	8.4	4.9	4.4	3.0
	교육비	1.0	3.6	5.9	7.2	8.9	1.4	2.6	2.8	2.6	1.9
	부채비용	1.8	12.2	5.7	10.2	18.9	2.5	8.8	2.8	3.7	3.9
	합계	25.9	44.9	38.8	47.6	62.1	36.0	32.2	18.8	17.1	13.0
		가용소득	46.0	94.5	167.7	230.0	417.4	64.0	67.8	81.2	82.9
	가처분소득	71.9	139.3	206.6	277.6	479.6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년	주거비	15.5	17.4	17.2	18.3	18.7	20.1	11.7	7.9	6.2	3.8
	의료비	9.5	11.7	10.9	11.7	14.1	12.2	7.9	5.0	4.0	2.9
	교육비	0.8	3.2	5.7	6.5	10.2	1.1	2.1	2.6	2.2	2.1
	부채비용	2.3	3.5	6.0	11.1	22.2	3.0	2.4	2.7	3.8	4.5
	합계	28.2	35.8	39.8	47.6	65.2	36.4	24.1	18.3	16.2	13.2
		가용소득	49.3	112.6	178.1	245.6	430.1	63.6	75.9	81.7	83.8
	가처분소득	77.5	148.4	217.9	293.2	495.3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3-11]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추이(5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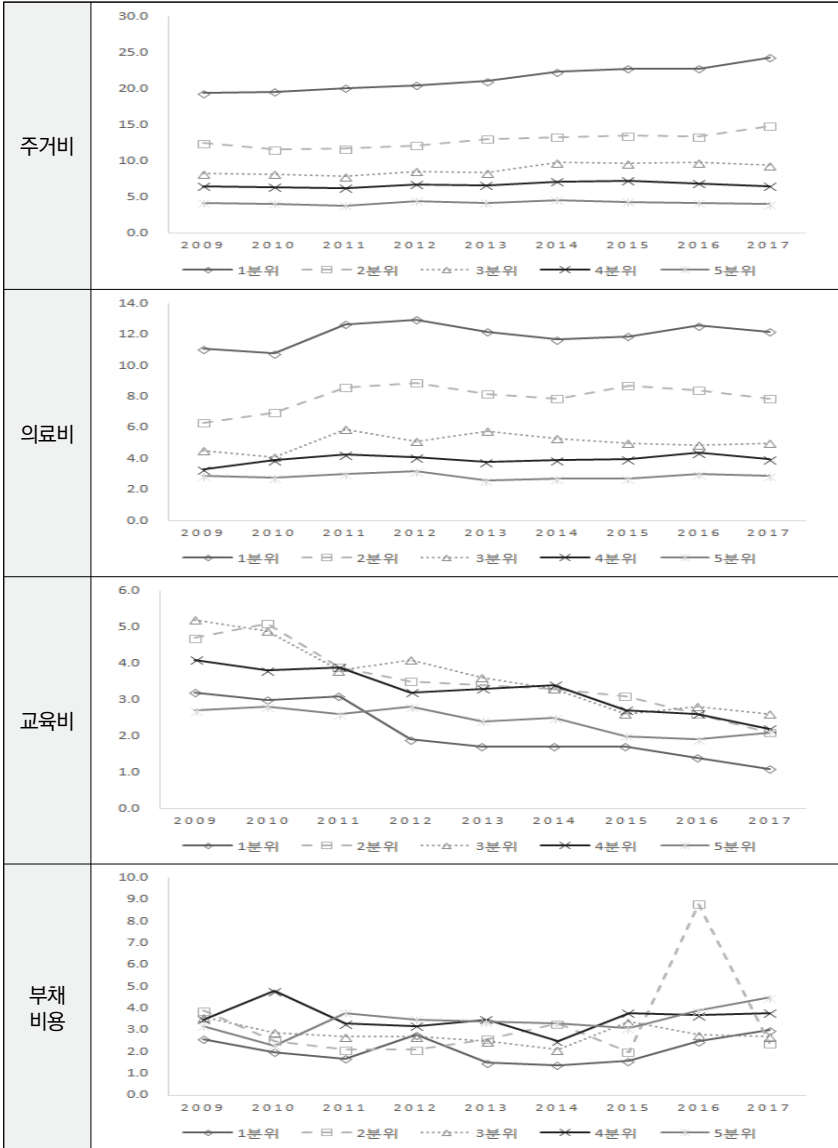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3-12]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추이(5분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제4절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현황

제4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8개년도 한국복지패널(2009~2017)의 최신 연도(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13차 기준 전체 가구 월 가처분소득은 246만 5000원이었으며, 청년 가구가 295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아동 가구 294만 원, 노인 가구 165만 9000원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주택 관련 부채비용을 살펴보면, 아동 가구를 제외한 가구 유형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기준 17만 4000원, 가처분소득 대비 7.1%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 가구는 16만 원으로 9.7%의 주거비 부담이 있었다.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노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비율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 가구는 17만 2000원으로 절대적인 주거비 금액 수준이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았으며, 그 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5.8%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의 경우 전체 가구 기준 11만 6000원, 가처분소득 대비 4.7%로 주거비 다음으로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의료비 지출이 높은 노인 가구가 15만 2000원으로 9.2%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보였다. 아동 및 청년 가구는 9만 원대로 가처분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3%대였다. 교육비 부담은 전체 가구 기준 5만 3000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2.1%를 나타냈는데, 아동 가구가 12만 6000원, 4.3%로 교육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청년 가구가 10만 원, 3.4%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에서는 지출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가구는 82.4%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주거비와 의료비 지출이 높은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전체 가구 평균을 하회하는 79.1%로 가장 낮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주택 관련 부채비용과 주거비 부담이 높은 아동 가구가 80.8%였다. 청년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은 84.3%로 나타났다.

〈표 8-4-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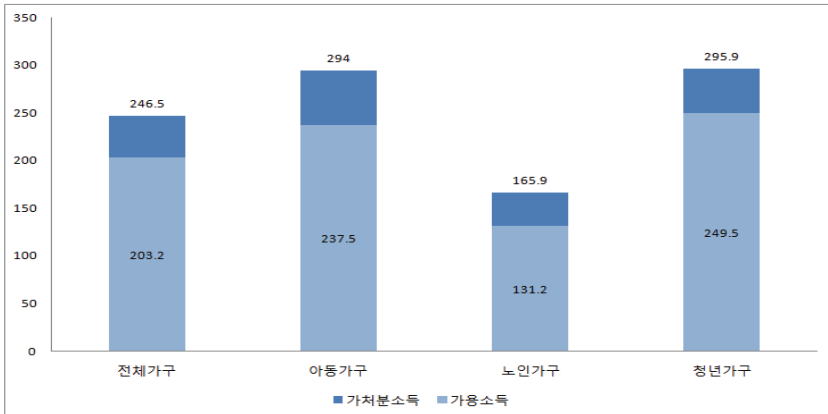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가구	0통가구	노인가구	청년가구	전체가구	0통가구	노인가구	청년가구	
2017년	주거비	17.4	15.7	16.0	17.2	7.1	5.3	9.7	5.8
	의료비	11.6	9.1	15.2	9.9	4.7	3.1	9.2	3.3
	교육비	5.3	12.6	1.2	10.0	2.1	4.3	0.7	3.4
	부채비용	9.0	19.1	2.2	9.3	3.7	6.5	1.3	3.1
	합계	43.3	56.5	34.7	46.4	17.6	19.2	20.9	15.7
	가용소득	203.2	237.5	131.2	249.5	82.4	80.8	79.1	84.3
가처분소득	246.5	294.0	165.9	295.9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4-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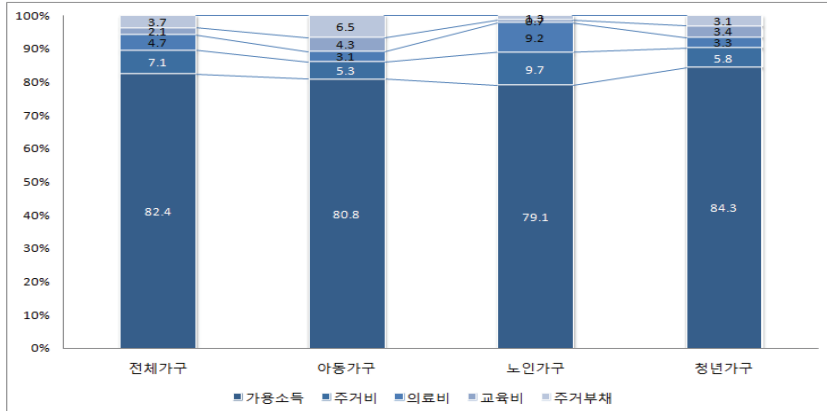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4-2]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노인 가구를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노인 단독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09만 7000원, 노인 부부 가구는 139만 9000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30만 2000원 더 많았다. 비노인 가구는 241만 3000원으로 노인 단독 가구보다 가처분소득이 2배 이상 많았다.

노인 단독 가구는 주거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지출액이 17만 5000원, 가처분소득 대비 15.9%의 비율을 나타냈다. 노인 부부 가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았는데 19만 8000원, 11.1%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은 노인 가구 131만 2000원, 비노인 가구 241만 3000원으로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은 비노인 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노인 단독 가구는 78만 5000원, 노인 부부 가구는 139만 9000원이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전체 노인 가구 79.1%에 비해 노인 단독 가구가 71.6%, 노인 부부 가구가 78.7%로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표 8-4-2〉 노인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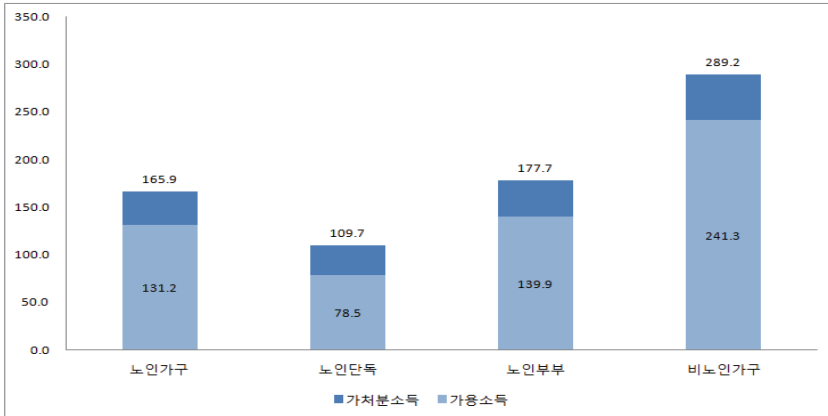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가구	
2017년	주거비	16.0	17.5	16.5	18.2	9.7	15.9	9.3	6.3
	의료비	15.2	12.5	19.8	9.7	9.2	11.4	11.1	3.3
	교육비	1.2	0.0	0.0	7.4	0.7	0.0	0.0	2.6
	부채비용	2.2	1.2	1.5	12.7	1.3	1.1	0.9	4.4
	합계	34.7	31.2	37.8	47.9	20.9	28.4	21.3	16.6
	가용소득	131.2	78.5	139.9	241.3	79.1	71.6	78.7	83.4
	가처분소득	165.9	109.7	177.7	289.2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4-3〕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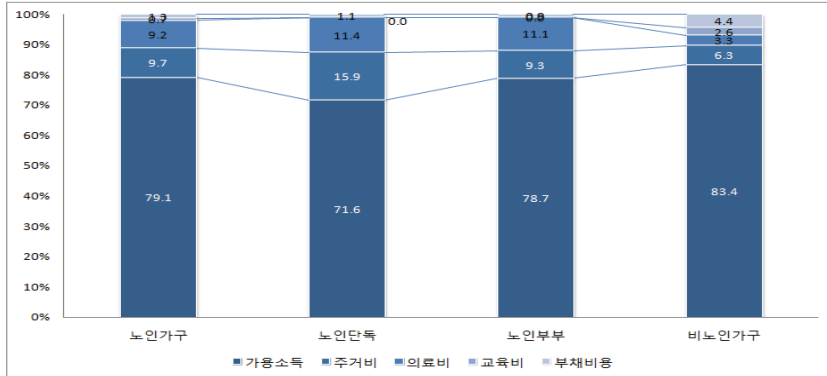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4-4] 노인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청년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청년 가구 기준 가처분소득은 295만 9000원, 청년 단독 가구 245만 5000원, 청년 부부 가구 264만 2000원, 청년+자녀 가구 239만 9000원으로 청년 부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단독 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28만 2000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1.5%로 가장 높았는데, 청년 단독 가구의 핵심생계비 관련 지출 대부분이 주거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청년 부부 가구 역시 주거비 부담(22만 2000원, 6.1%)이 높았으나 주거비만큼이나 주택 관련 부채비용(18만 6000원, 5.1%)도 높았다. 청년+자녀 가구는 주택 관련 부채비용이 14만 6000원,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나타냈고, 그다음이 주거비(14만 1000원, 5.9%), 교육비(10만 4000원, 4.3%) 순이었다.

가용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 가구 기준 가용소득은 249만 5000원, 청년 단독 가구 206만 6000원, 청년 부부 가구 310만 7000원, 청년+자녀 가구 191만 8000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은 청년+자녀 가구가 가장

낮고, 청년 단독 가구가 그다음이며, 청년 부부 가구가 가장 높았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을 보면, 전체 청년 가구는 84.3%로 전체 가구(82.4%)에 비해 1.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단독 가구는 84.2%, 청년 부부 가구는 85.3%로 전체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청년+자녀 가구는 79.9%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청년+자녀 가구의 경우, 지출이 발생할 여러 요인(주택 관련 대출, 교육비, 주거비 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판단된다.

〈표 8-4-3〉 청년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2017년)

(단위: 만 원/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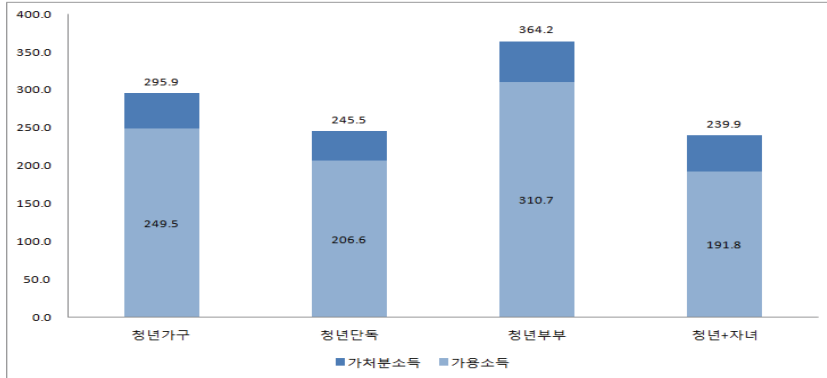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청년 가구	청년 단독	청년 부부	청년+ 자녀	
2017년	주거비	17.2	28.2	22.2	14.1	5.8	11.5	6.1	5.9
	의료비	9.9	4.6	12.7	9.1	3.3	1.9	3.5	3.8
	교육비	10.0	1.8	0.0	10.4	3.4	0.7	0.0	4.3
	부채비용	9.3	4.2	18.6	14.6	3.1	1.7	5.1	6.1
	합계	46.4	38.8	53.5	48.1	15.7	15.8	14.7	20.1
	가용소득	249.5	206.6	310.7	191.8	84.3	84.2	85.3	79.9
가처분소득	295.9	245.5	364.2	239.9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232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그림 8-4-5]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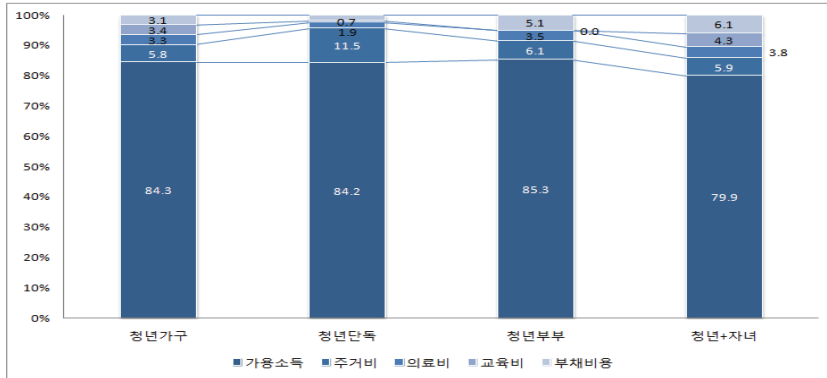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4-6] 청년 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표 8-4-4〉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아동 가구) 가용소득(2017년)

(단위: 만 원/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전체		아동		전체		아동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17년	주거비	15.0	22.2	14.8	17.9	5.6	9.8	4.8	6.5
	의료비	13.4	8.5	9.5	8.4	5.0	3.8	3.1	3.1
	교육비	5.6	5.2	11.6	13.9	2.1	2.3	3.7	5.1
	부채비용	13.7	3.7	26.2	8.1	5.1	1.6	8.5	3.0
	합계	47.7	39.6	62.1	48.3	17.7	17.5	20.1	17.7
	가용소득	221.4	186.5	247.7	225.0	82.3	82.5	79.9	82.3
	가처분소득	269.1	226.1	309.8	273.3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다음으로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8-4-4〉는 전체 가구와 아동 가구를 각각 자가 및 임차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진 자가 가구의 경우, 한 달 주거비 부담액은 15만 원이었고, 임차인의 주거비는 22만 2000원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자가 가구는 월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분석에서 주거비에 주거 관리비나 광열수도비가 포함됐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자가 가구들은 주거 관리비나 광열수도비만으로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는 의미다.

자가 가구의 부채비용(13만 7000원)은 임차 가구(3만 7000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적지 않은 자가 가구가 주택 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자가주택과 임차주택의 의료비는 각각 13만 4000원과 8만 50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 수준 및 인구학적 차이, 즉 자가 가구의 가구원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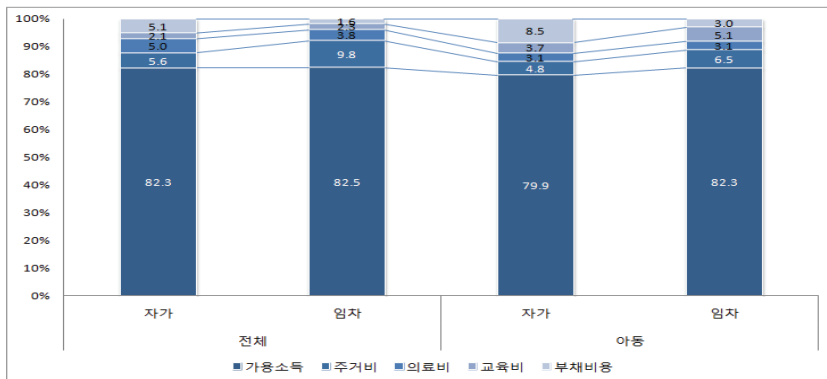
자가·임차 가구의 교육비는 각각 5만 6000원과 5만 2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가처분 대비 비율로 보면, 임차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율

이 2.3%로 자가 가구의 비율(2.1%)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임차 가구 가운데 청년이나 아동 가구의 비율이 높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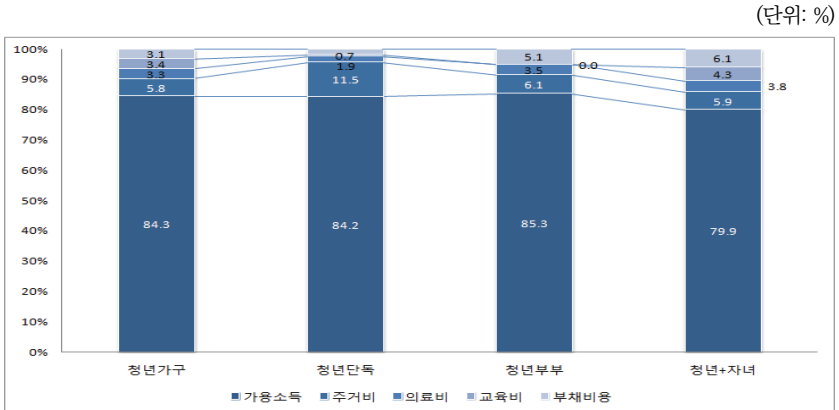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추정과 다소 상반된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도 있다. <표 8-4-4>를 보면, 아동 가구끼리만 비교해 보아도 임차 가구의 교육비 지출의 절대액(13만 9000원)이나 비율(5.1%)이 자가 가구보다(11만 6000원, 3.7%)보다 더 높다. 바꾸어 말하면, 세입자인 아동 가구가 집주인인 아동 가구보다 가처분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로 지출하는 절대액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이유는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집을 소유한 아동 가구의 경우 한 달 부채비용이 26만 2000원으로 임차 아동 가구(8만 1000원)에 견줘 크게 차이 났다. 두 집단 사이의 가용소득 차이가 23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아동 가구의 경우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 사이의 실질적인 경제적 여력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교육비 지출에서는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것이다.

[그림 8-4-7]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아동 가구) 가용소득(2017년)

(단위: 만 원/월)



[그림 8-4-8] 주택 소유 유형별(전체 가구/아동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2017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표 8-4-5> 주택 소유 유형별(노인 가구/청년 가구) 가용소득(2017년)

(단위: 만 원/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노인		청년		노인		청년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17년	주거비	14.9	20.2	13.4	22.7	8.0	15.0	4.1	8.8
	의료비	16.7	10.8	11.8	7.7	9.0	8.0	3.6	3.0
	교육비	1.4	1.2	11.6	8.2	0.7	0.9	3.5	3.2
	부채비용	2.7	1.9	14.1	4.6	1.5	1.4	4.2	1.8
	합계	35.7	34.1	50.9	43.2	19.3	25.3	15.4	16.6
	가용소득	149.6	100.7	280.3	216.6	80.7	74.7	84.6	83.4
가처분소득	185.2	134.8	331.2	259.8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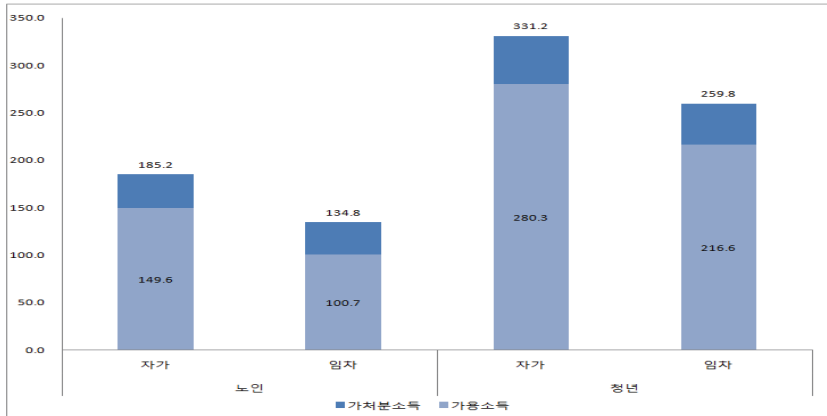
<표 8-4-5>는 노인과 청년 가구를 다시 자가와 임차 가구로 나누어 핵심생계비 및 가용소득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예상 가능한 대로, 노인 및 청년 가구 모두 자가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용소득,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차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가운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가 가구의 두 배에 육박했다. 노인 가구

에서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비율이 15.0%로 자가 노인 가구의 8.0%보다 크게 높았다. 청년 임차 가구도 주거비 부담 비율이 8.8%로 자가 가구(4.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의료비와 교육비에서는 자가와 임차 가구 사이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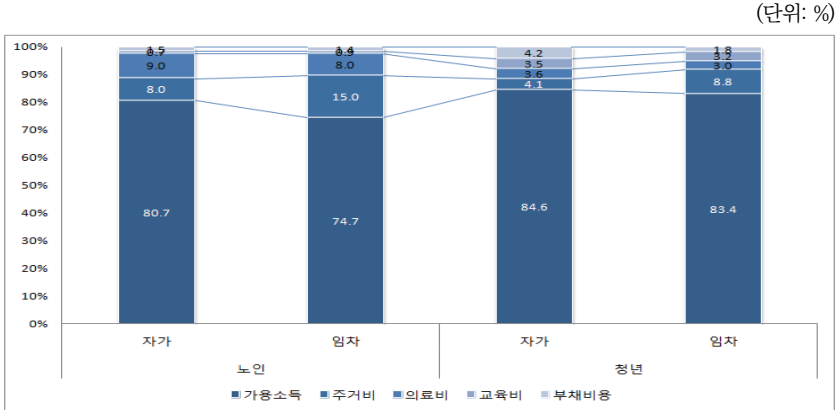
청년 가구에서는 자가와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각각 84.6%와 83.4%로 큰 차이는 없었다. 청년 자가 가구가 청년 임차 가구에 견줘 주거비는 매우 적게 지출하지만, 부채비용은 가처분소득 대비 4.2%를 지출해 임차 가구보다 부채 부담이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집을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청년 가구는 대출로 인한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이고, 다른 청년 가구들은 오히려 집 구입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4-9] 주택 소유 유형별(노인 가구/청년 가구) 가용소득(2017년)

(단위: 만 원/월)



[그림 8-4-10] 주택 소유 유형별(노인 가구/청년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 (2017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2. 소득분위별 가용소득

<표 8-4-6> 소득분위별 가용소득(2017년)

(단위: 만 원/월, %)

구분	금액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7년	주거비	15.5	17.4	17.2	18.3	18.7	20.1	11.7	7.9	6.2	3.8
	의료비	9.5	11.7	10.9	11.7	14.1	12.2	7.9	5.0	4.0	2.9
	교육비	0.8	3.2	5.7	6.5	10.2	1.1	2.1	2.6	2.2	2.1
	부채비용	2.3	3.5	6.0	11.1	22.2	3.0	2.4	2.7	3.8	4.5
	합계	28.2	35.8	39.8	47.6	65.2	36.4	24.1	18.3	16.2	13.2
	가용소득	49.3	112.6	178.1	245.6	430.1	63.6	75.9	81.7	83.8	86.8
가처분소득	77.5	148.4	217.9	293.2	495.3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한국의 소득분위별 핵심생계비 및 가용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일단 절대액 기준으로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채비용, 가용소득, 가

처분소득 모두 분위가 올라갈수록 액수 자체는 늘어났다. 예상 가능한 결과다. 심지어 부채비용도 절대액 기준으로는 부유할수록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지출의 동적인 변화는 가처분소득 대비 항목별 지출 비율에서는 매우 동적으로 나타난다. 일단 주거비와 의료비의 지출 비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난할수록 주거와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주거 및 의료비는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한 핵심적인 지출 영역이라는 점에서 빈곤층의 지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교육비의 지출 비율은 3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율이 양쪽 극단값으로 이동하면서 줄어드는 ‘∧’ 모양을 그렸다. 한국의 중산층이 생활 여력이 닿는 한 자녀의 교육 및 보육에 상당한 액수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분위별 교육비 격차는 사교육비에서 크게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교육비 및 보육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분위의 교육비 지출 비율은 1.1%로 매우 낮는데, 1분위의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이 주된 이유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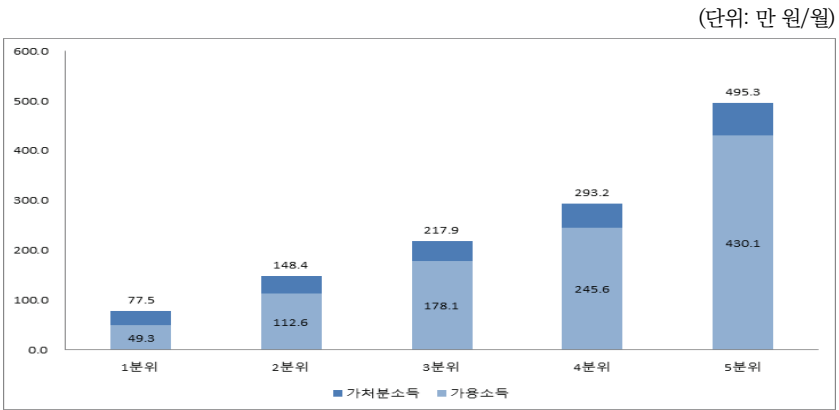
반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용의 비율은 5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분위에서 그 비율이 4.5%인 반면, 낮은 분위로 갈수록 비율은 떨어졌다. 다만 1분위는 2~3분위보다 높은 3.0%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택 관련 부채가 저소득층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절대액 기준으로는 상류층에 대거 집중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가용소득 역시 예상 가능한 대로 분위가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1분위에서 49만 3000원이던 가용소득은 5분위에서 430만 1000원으로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도 1분위에서 63.6%였으나, 분위가 오를수록 비율도 꾸준히 늘어 5분위에서 86.8%까지 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핵심생계비를 쓰고도 남는 소비 여력이 크다는 뜻이다.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가처분소득 배율보다 매우 높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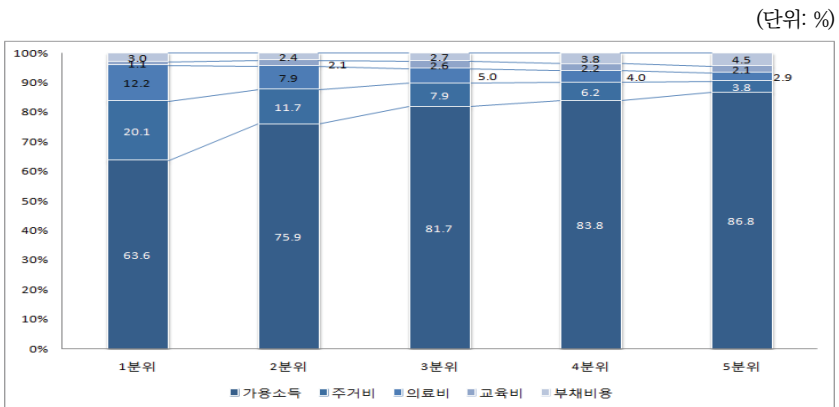
다.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6.39배인 반면, 가용소득 대비 5분위 배율은 8.72배로 1.4배 이상 늘어났다.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계의 경제적 여력의 측면에서 보면, 분위별 생활 수준의 차이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그림 8-4-11] 소득분위별 가용소득(2017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그림 8-4-12]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요 지출 비율(2017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제5절 소결

한국복지패널(2009~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가구 유형별, 주택 점유 형태, 소득분위별 주요 지출, 가처분소득, 가용소득 수준과 비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전체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인 가구의 주거비와 의료비가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비는 청년 가구에서 2014년까지 가장 높게 나타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아동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 관련 부채비용은 청년 가구와 아동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가용소득의 수준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인 가구가 가장 낮았고, 청년 가구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 금액과 비율이 2015년에 급증하는데, 이는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라 노인 가용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인 가구 유형별로는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은 비노인 가구의 절반 수준, 노인 단독 가구는 비노인 가구 가용소득의 30% 수준이었다. 노인 단독 가구는 주거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인 부부 가구는 의료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셋째, 청년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단독 가구의 주거비 지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지출은 낮았다. 교육비 지출은 청년+자녀 가구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지출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공적이전소득 지원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며, 주택 관련 부채비용은 청년+자녀 가구와 청년 부부 가구가 높았다. 청년 부부+자녀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가장 낮는데, 이는 필수 지출(교육비 및 부채비용)이 다른 청년 가구 유형보다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9년과 2017년을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인 소득 수준인 가처

분소득은 모두 상승하였으나 가용소득의 금액과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때, 지출에 대한 부담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청년 단독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큰 이유는 자가 또는 전세보다는 불안정한 월세 임차 가구이기 때문이다.⁴⁰⁾ 또한 청년 단독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낮은데, 이는 실제 지출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청년 임차 가구의 의료비 지출 금액과 비율이 가장 낮은 결과와 연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 소유 유형별로는 자가 가구의 가치분소득 및 가용소득 절대 금액이 임차 가구의 가치분소득 및 가용소득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임차 가구는 주거비 지출이 많고 자가 가구는 부채비용이 많지만, 주거비 지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이 더 낮았다. 주거비 부담은 노인 임차 가구가 가장 높았고, 의료비는 노인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가 큰 차이 없이 높았다. 가용소득 비율에서는 노인 자가 가구와 노인 임차 가구를 주목할 만한데 그 차이는 5% 내외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 가구의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이 주거비 임을 감안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노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 자가 가구와 아동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 차이는 2%대에서 4.4%까지 차이를 보여 아동 임차 가구의 가용소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자가 가구의 주택 관련 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소득분위별로는 저분위(1, 2분위)의 경우 가치분소득 대비 주거비와 의료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분위(4, 5분위)의 경우 주택

40) 인구총조사(2015)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 20~24세의 보증부 월세 62.7%, 보증금이 없는 월세 9.0%, 25~29세의 보증부 월세 47.7%, 보증금이 없는 월세 5.3%로 나타남.

관련 부채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분위의 경우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20%를 상회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상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보통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2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RIR)로 정의하는데, 분석 결과 1분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분위의 의료비 부담 역시 가장 높은데, 이는 저분위일수록 일정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가 포진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저분위에는 필수적인 생계를 위한 비용 즉, 주거비 및 의료비 지출의 보존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분위별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주거비와 의료비의 지출 비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난할수록 주거와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주거 및 의료비는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한 핵심적인 지출 영역이라는 점에서 빈곤층의 지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비의 지출 비율은 3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중산층은 생활 여력이 닿는 한 자녀의 교육 및 보육에 상당한 액수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분위별 교육비 격차는 사교육비에서 크게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공교육비 및 보육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1분위의 교육비 지출 비율은 매우 낮는데, 1분위의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이 주된 이유로 추정된다.

반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용의 비율은 5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분위의 비율이 4.5%인 반면, 낮은 분위로 갈수록 비율은 떨어졌다. 다만 1분위는 2~3분위보다 높은 3.0%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택 관련 부채가 저소득층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절대액 기준으로는 상류층에 대거 집중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가용소득 역시 예상 가능한 대로 분위가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1분위에서 49만 3000원이던 가용소득은 5분위에서 430만 1000원으로 증가

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도 1분위에서 63.6%였으나, 분위가 오를수록 비율도 꾸준히 늘어 5분위에서 86.8%까지 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핵심생계비를 쓰고도 남는 소비 여력이 크다는 뜻이다.

이 장의 분석 결과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특수성과 주거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후속 연구에서 필요하다. 제9장 각국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부담이 크긴 하지만 주거비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지 않음은 우리나라의 주거비가 적정한 수준이라기보다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또한 이 연구는 각국의 데이터를 동일한 변수 체계로 검토하는 것에 의의를 둔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거 점유 형태에서 전세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정리하면, 노인 단독 가구를 위해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노인 부부 가구에는 의료비, 청년 부부+자녀 가구에는 교육비와 주택 관련 부채, 청년 단독 가구의 주거비와 안정적인 주거 지원, 아동 자가 가구의 주택 관련 부채 부담 완화, 1분위 소득계층에게는 적정한 주거 환경과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에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의료 수요는 높지만 소득이 낮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속으로 임대료 경감,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와 기준 임대료 인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 5 부

결론

제9장 한국과 주요국의 소비 여력 지표 비교

제10장 한국 복지국가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



9

한국과 주요국의 소비 여력 << 지표 비교

제1절 5개국 비교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가처분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와 가용소득의 지출 비율을 살펴보았다. 수평적인 비교를 위해 이 장에서는 다섯 나라의 지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여기에는 한국의 지표를 하나 더 더해서 비교할 것이다. 한국 전세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독특한 제도다.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살다가 이사 나가면서 그 액수를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 점유 형태(윤주현, 2000)를 말한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목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전세보증금 총액은 455조 원으로 추정됐다(경향신문, 2015).

따라서 전세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 견줘 한국의 세입자가 지는 월세 부담은 적다. 한국감정원(2019)이 제시하는 2017년 12월 기준 전월세보증금 환산율은 전국 평균 6.3%다. 이를테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한 해 630만 원의 월세를 덜 낸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전세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전세보증금의 6.3%를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주거비로 환산했다.

따라서 전월세보증금 환산액을 반영하지 않은 한국 통계를 한국I로, 반영한 통계를 한국II로 제시했다. 물론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의해

야 할 대목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한국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내고 월세 부담을 덜었다면, 다른 국가의 세입자들은 그만큼의 액수를 다른 곳에 투자해 일정한 재산소득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세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든(한국 I), 고려하든(한국 II)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두 통계를 모두 외국과의 비교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둘째, 이 보고서에서 활용한 복지패널에서는 세입자에 대해 조사 연도 기준으로 ‘거주했던’ 집의 전세금을 적어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 가구가 대출을 끼고 소유하고 있는 집 A를 다른 가구에 전세를 주고 다른 집 B에 전세금을 내고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거주했던’ 집은 B이므로 주택 관련 부채는 ‘0’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자가 소유 가구 가운데 적지 않은 비율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택을 점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보고서에 나타난 주거 관련 부채액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도 한국 전세제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표 9-1-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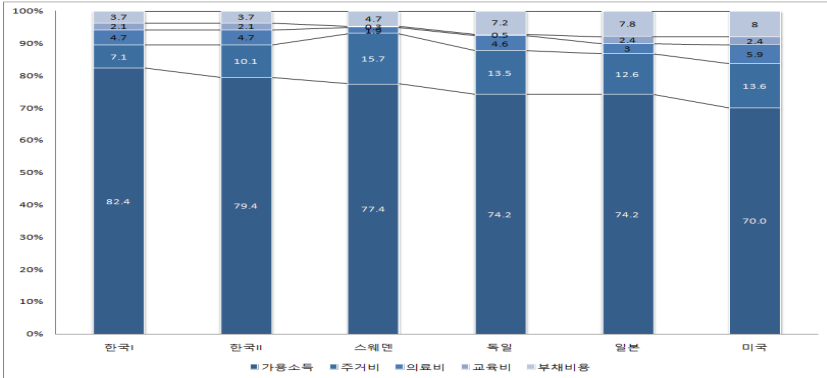
(단위: %, 달러/월)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비율	가용소득	82.4	79.4	77.4	74.2	74.2	70.0
	주거비	7.1	10.1	15.7	13.5	12.6	13.6
	의료비	4.7	4.7	1.9	4.6	3.0	5.9
	교육비	2.1	2.1	0.3	0.5	2.4	2.4
	부채비용	3.7	3.7	4.7	7.2	7.8	8.0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PP 기준	가처분소득	2,898.8	2,898.8	3,608.6	3,105.5	2,421.8	3,675.0
	가용소득	2,389.6	2,301.4	2,794.1	2,304.5	1,797.9	2,571.0

자료: 4~8장 내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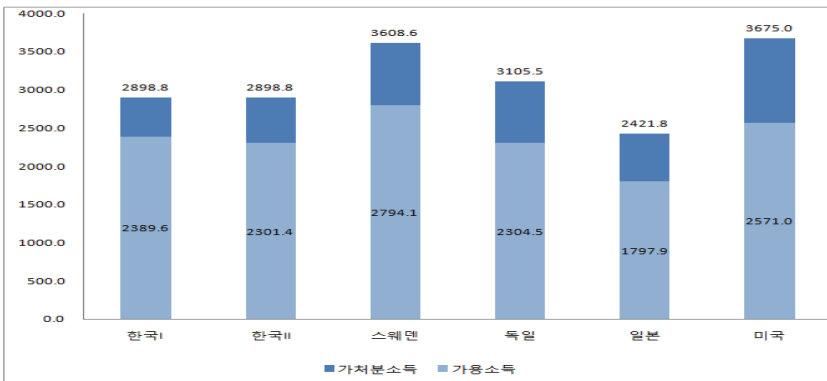
[그림 9-1-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전체 가구)

(단위: %)



[그림 9-1-2]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전체 가구)

(단위: 달러/월)



한국 주택시장의 이와 같은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앞서 살펴본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과 핵심생계비 및 가용소득 지출 비율을 비교해 보면 <표 9-1-1>과 같다. 한국의 가용소득 비율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전세금을 월세로 상환하지 않든(한국 I, 82.4%), 상환하든(한국 II, 79.4%) 그 비율은 나머지 네 나라보다 높았다. 한국의

가용소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주거비 부담 비율이 낮아서였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10%를 쉽게 초과하는 반면, 한국은 전세금을 월세로 상환하더라도 10.1%에 머물렀다. 한국 가구가 부담하는 주거 관련 부채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어 3.7% 수준에 머물렀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부담이 한국의 두 배를 넘었다.

한국의 의료비 부담 비율(4.7%)이 미국(5.9%) 다음으로 높고 교육비 부담(2.1%)이 미국(2.4%)이나 일본(2.4%) 다음으로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의료나 교육 분야의 공공화 수준이 미흡해서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이 장 2절에서 조금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한국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을 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구의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이 낮은 데는 주거비 및 주거 관련 부채비용이 매우 낮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0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PPP 기준으로 다섯 나라의 가처분소득 및 가용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9-1-2] 참조), 한국의 가처분소득은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가용소득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다. 이를테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한국이 독일보다 가구 가처분소득액이 적었지만, 가용소득 기준으로는 더 많았다(한국 기준).

〈표 9-1-2〉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아동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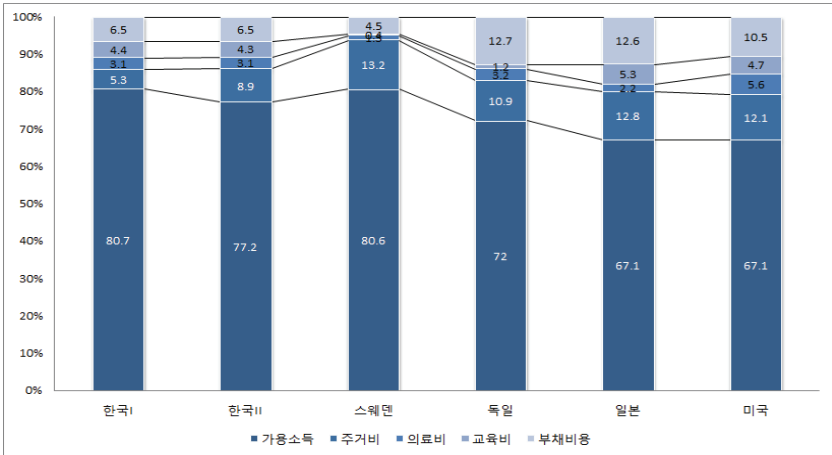
(단위: %, 달러/월)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비율	가용소득	80.7	77.2	80.6	72.0	67.1	67.1
	주거비	5.3	8.9	13.2	10.9	12.8	12.1
	의료비	3.1	3.1	1.3	3.2	2.2	5.6
	교육비	4.4	4.3	0.4	1.2	5.3	4.7
	부채비용	6.5	6.5	4.5	12.7	12.6	10.5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PP 기준	가처분소득	3,457.4	3,457.4	5,067.9	3,010.6	2189.1	3,499.0
	가용소득	2,793.0	2,668.3	4,083.7	2,168.1	1469.6	2,348.0

자료: 4~8장 내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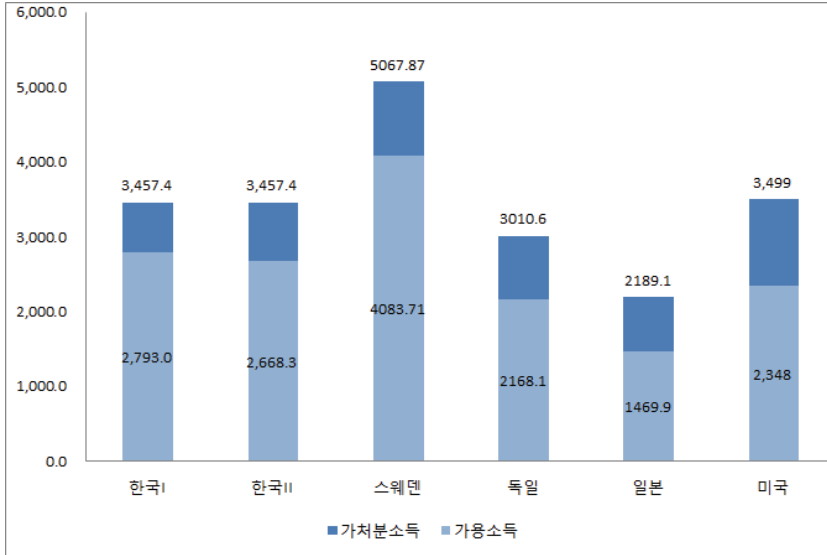
〔그림 9-1-3〕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아동 가구)

(단위: %)



[그림 9-1-4]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아동 가구)

(단위: 달러/월)



아동 가구 기준으로도 한국의 가용소득 비율은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주거비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이 원인이었다. 한국 아동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볼 때 주목할 점이 있다. PPP 기준으로 한국 아동 가구의 가처분소득이나 가용소득이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아동 빈곤율이 7% 수준으로 OECD 평균(13%)보다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Thevenon, 2018). 한국 아동의 생활 수준이 높은 이유는 저소득 가구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전체 출산율도 낮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 아동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저소득 가구에서도 일정한 출산이 이뤄진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한국 아동 가구에서 가처분소득 및 가용소득 수준이 높은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9-1-3〉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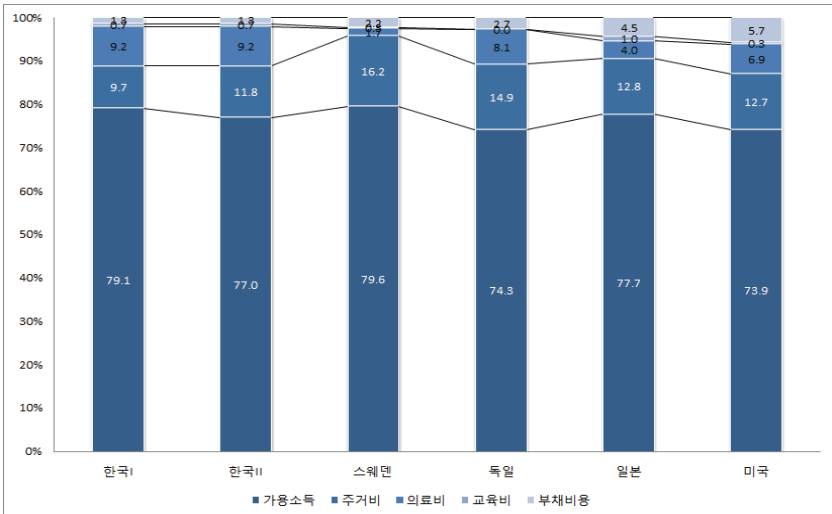
(단위: %, 달러/월)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비율	가용소득	79.1	77.0	79.6	74.3	77.7	73.9
	주거비	9.7	11.8	16.2	14.9	12.8	12.7
	의료비	9.2	9.2	1.7	8.1	4.0	6.9
	교육비	0.7	0.7	0.3	0.0	1.0	0.3
	부채비용	1.3	1.3	2.2	2.7	4.5	5.7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PP 기준	가처분소득	1,950.9	1,950.9	2,024.9	2,853.3	2194.0	3,669.0
	가용소득	1,542.9	1,501.7	1,606.3	2,119.9	1705.6	2,7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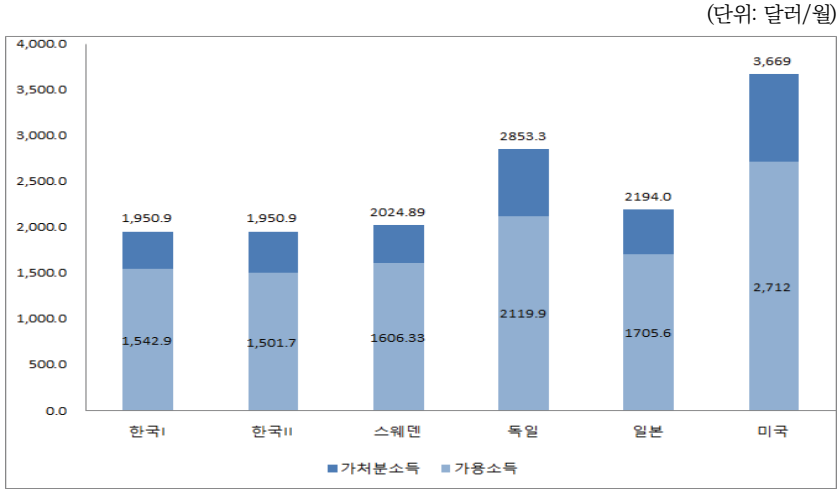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5]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가구)

(단위: %)



[그림 9-1-6]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노인 가구)



노인 가구의 핵심생계비 및 가용소득의 비율은 역시 한국에서 높게 나타났다지만,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는 크게 줄었다. 주거비 부담 및 주거 관련 부채 비율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 이유였다. 또 한국 노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비는 9.2%로 미국(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노인 의료비 부담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메디케어(Medicare)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큰 것도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일부 설명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노인 가구의 과도한 지출 부담으로 이어졌다.

〈표 9-1-4〉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단독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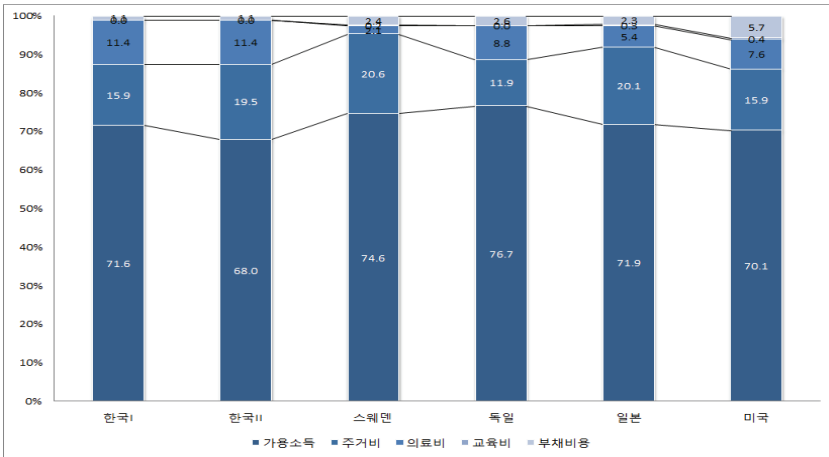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71.6	68.0	74.6	76.7	71.9	70.1
주거비	15.9	19.5	20.6	11.9	20.1	15.9
의료비	11.4	11.4	2.1	8.8	5.4	7.6
교육비	0.0	0.0	0.2	0.0	0.3	0.4
부채비용	1.1	1.1	2.4	2.6	2.3	5.7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7]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단독 가구)

(단위: %)



노인 가구를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는 가용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 II 기준). 주거비 부담 비율도 스웨덴(20.6%)과 일본(20.1%) 다음으로 높았고, 의료비 부담도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살펴볼 노인 부부 가구와 비교해 보아도, 한국 독거노인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노인 단독 가구의 경제적인 취약성은 국제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표 9-1-5〉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부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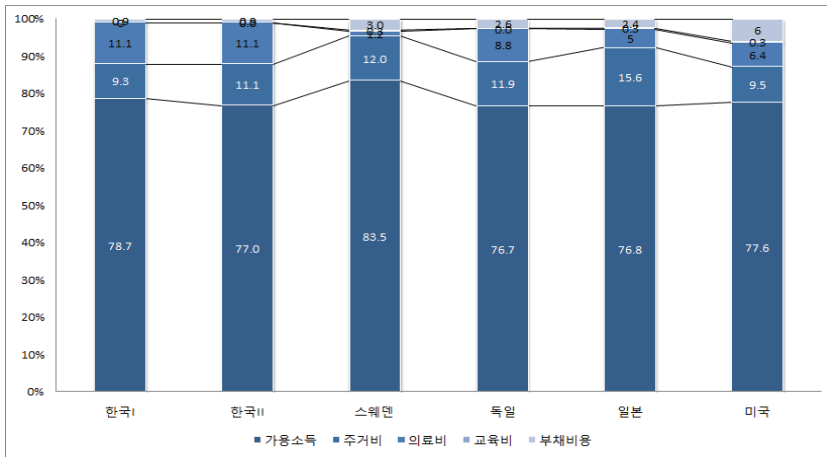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78.7	77.0	83.5	76.7	76.8	77.6
주거비	9.3	11.1	12.0	11.9	15.6	9.5
의료비	11.1	11.1	1.2	8.8	5.0	6.4
교육비	0.0	0.0	0.3	0.0	0.3	0.3
부채비용	0.9	0.9	3.0	2.6	2.4	6.0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8]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노인 부부 가구)

(단위: %)



노인 부부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을 보면, 한국의 노인 가구에는 의료비와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가구의 특성상 교육비 부담은 없고 부채비용 역시 매우 가벼운 반면, 의료비 부담(11.1%)이 미국 노인 가구(6.4%)의 두 배에 육박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표 9-1-6〉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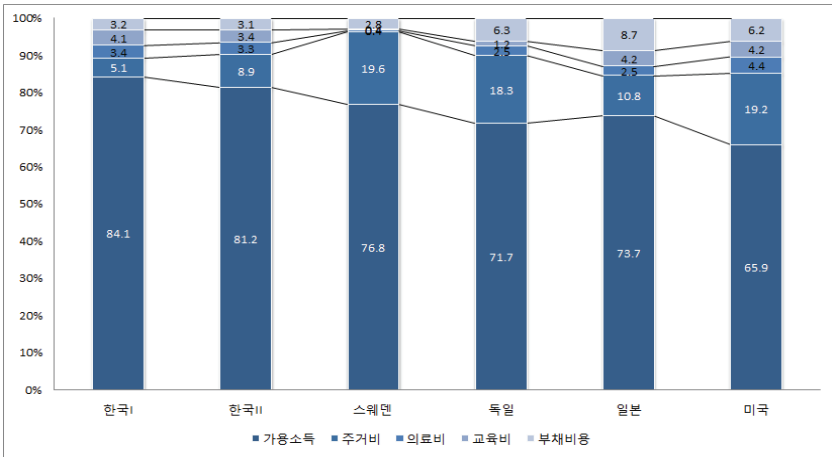
(단위: %, 달러/월)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비율	가용소득	84.1	81.2	76.8	71.7	73.7	65.9
	주거비	5.1	8.9	19.6	18.3	10.8	19.2
	의료비	3.4	3.3	0.4	2.5	2.5	4.4
	교육비	4.1	3.4	0.4	1.2	4.2	4.2
	부채비용	3.2	3.1	2.8	6.3	8.7	6.2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PP 기준	가처분소득	3,479.7	3,479.7	3223.98	2703.1	2602.5	3,190
	가용소득	2,934.1	2,827.1	2477.38	1939.0	1917.9	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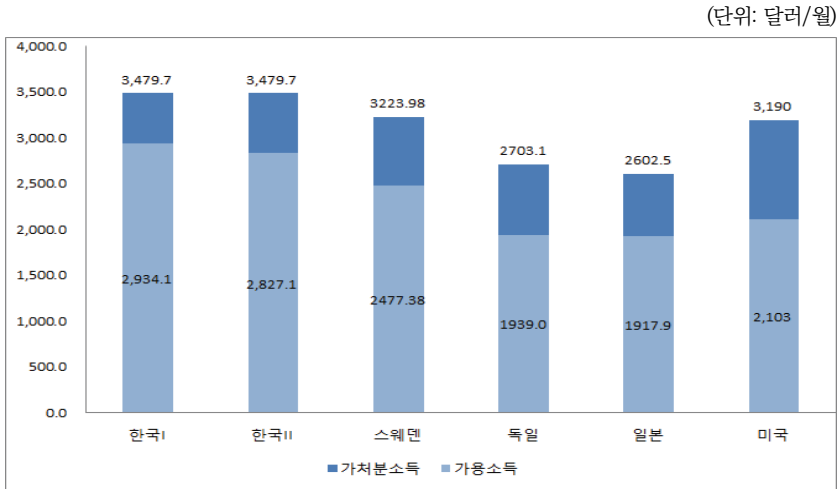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9]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가구)

(단위: 만 원/월, %)



[그림 9-1-10]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및 가처분소득: PPP 기준(청년 가구)



한국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한국 I 통계 기준으로 84%를 넘어섰다. 한국 청년 가구의 의료비와 교육비 부담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 가구가 부담하는 주거비 부담이 매우 가벼워서 한국 청년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비율이 다른 나라의 청년 가구보다 낮은 이유는 한국 청년 가구의 독특한 소비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I 통계 기준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비율(5.1%)이 한국 전체 가구의 주거비 부담 비율(7.1%)보다 낮았다. 반면, 비교 대상이 된 다른 국가의 경우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체 가구 주거비 부담 비율보다 높았다. 한국 청년 가구의 PPP 기준 가처분소득의 절대액 자체가 높은 것이 한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 가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독특한 경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9-1-7〉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단독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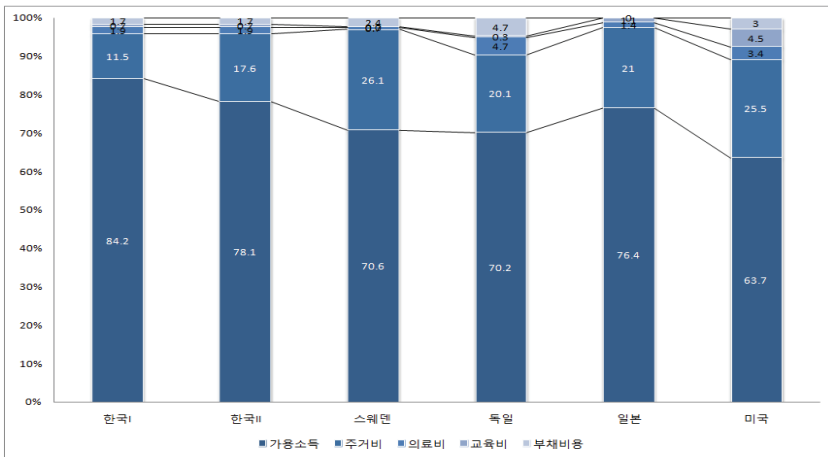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84.2	78.1	70.6	70.2	76.4	63.7
주거비	11.5	17.6	26.1	20.1	21.0	25.5
의료비	1.9	1.9	0.7	4.7	1.4	3.4
교육비	0.7	0.7	0.0	0.3	1.1	4.5
부채비용	1.7	1.7	2.4	4.7	0.0	3.0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11]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단독 가구)

(단위: %)



한국의 청년 단독 가구도 가용소득 비율이 매우 높았다. 청년 단독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높은 이유는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 비율에 있었다. 한국 청년 단독 가구는 의료비 부담 비율이 청년 부부 가구나 청년 및 자녀 가구에 견줘서도 현저하게 낮았다. 청년 단독 가구의 경우는 건강보험상 부모 등 다른 비동거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

패널에서 묻는 의료비 항목이 결국 의료비의 자기부담액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홀로 사는 청년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의료서비스 지출을 꺼렸을 가능성도 있다.

〈표 9-1-8〉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부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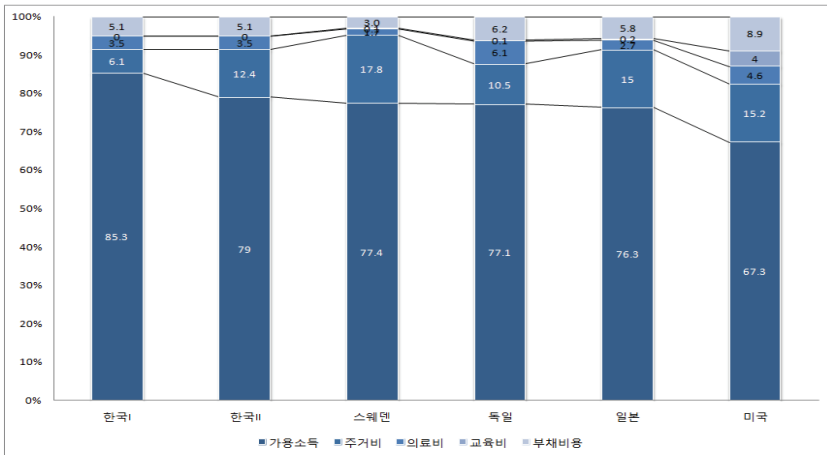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85.3	79.0	77.4	77.1	76.3	67.3
주거비	6.1	12.4	17.8	10.5	15.0	15.2
의료비	3.5	3.5	1.7	6.1	2.7	4.6
교육비	0.0	0.0	0.1	0.1	0.2	4.0
부채비용	5.1	5.1	3.0	6.2	5.8	8.9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12〕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 부부 가구)

(단위: %)



한국의 청년 부부 가구 역시 가용소득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청년 가구 유형과 마찬가지로, 주거비 및 부채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교육비 부담도 전무했는데, 자녀가 없고, 부부 가운데 학령 인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표 9-1-9〉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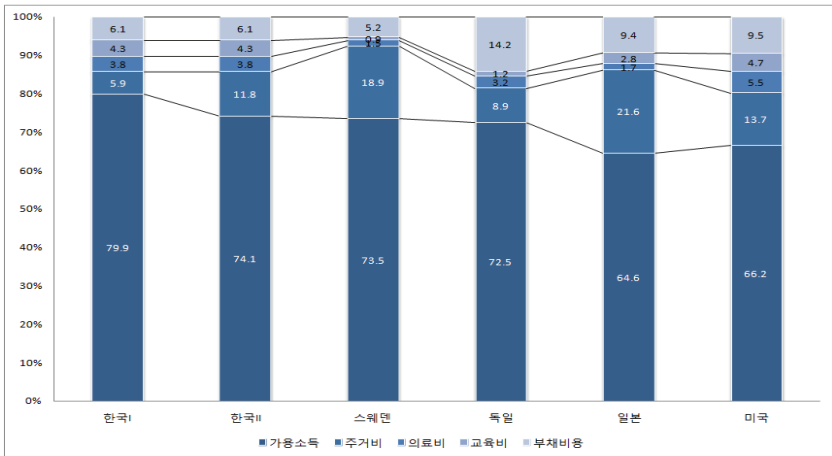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79.9	74.1	73.5	72.5	64.6	66.2
주거비	5.9	11.8	18.9	8.9	21.6	13.7
의료비	3.8	3.8	1.5	3.2	1.7	5.5
교육비	4.3	4.3	0.9	1.2	2.8	4.7
부채비용	6.1	6.1	5.2	14.2	9.4	9.5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13] 가구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청년+자녀 가구)

(단위: %)



한국의 청년 및 자녀 가구 역시 다른 청년 유형과 마찬가지로 가용소득 비율이 높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비 부담(4.3%)이 미국(4.7%)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다는 점이다. 의료비 부담(3.8%)도 미국(5.5%) 다

음으로 높았다. 청년 및 자녀 가구에서 짊어지는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주거 관련 지출 부담이 한국 청년 및 자녀 가구의 가용소득 수준을 높였다.

〈표 9-1-10〉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자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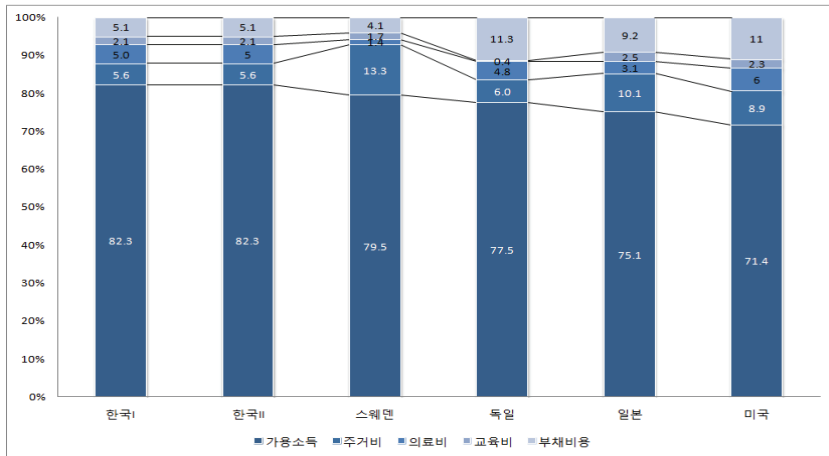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82.3	82.3	79.5	77.5	75.1	71.4
주거비	5.6	5.6	13.3	6.0	10.1	8.9
의료비	5.0	5.0	1.4	4.8	3.1	6.0
교육비	2.1	2.1	1.7	0.4	2.5	2.3
부채비용	5.1	5.1	4.1	11.3	9.2	11.0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14〕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자가 가구)

(단위: %)



다음으로, 자가 및 임차 가구 유형으로 나누어 가용소득 수준을 살펴보았다. 한국 자가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은 다른 국가들보다 현격하게 높았다. 참고로, 이 대목에서는 한국 I과 한국 II의 주거비 부담 비율이 같았

다. 집을 소유한 가구이므로 월세로 환산할 전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낮은 주거비 및 주거 관련 부채비용은 높은 수준의 의료비 비용 부담을 상쇄했다.

〈표 9-1-11〉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임차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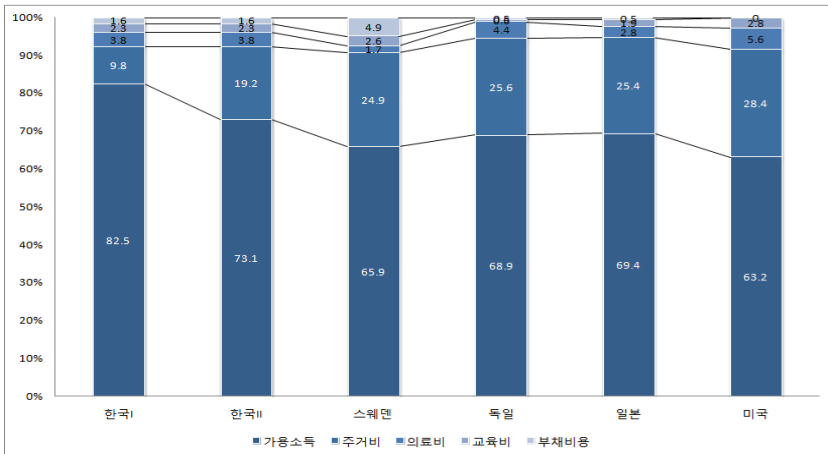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82.5	73.1	65.9	68.9	69.4	63.2
주거비	9.8	19.2	24.9	25.6	25.4	28.4
의료비	3.8	3.8	1.7	4.4	2.8	5.6
교육비	2.3	2.3	2.6	0.6	1.9	2.8
부채비용	1.6	1.6	4.9	0.5	0.5	0.0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15]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임차 가구)

(단위: %)



한국의 임차 가구에서는 한국 I과 한국 II의 지표가 큰 차이를 보였다. 전세금의 월세 환산액을 반영하면, 주거비 부담 비율이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세입자의 매월 지출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리가 전반적으로 안정화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완화하면 전세제도가 점차 위축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윤주현, 2000)에 따르면,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표 9-1-12〉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1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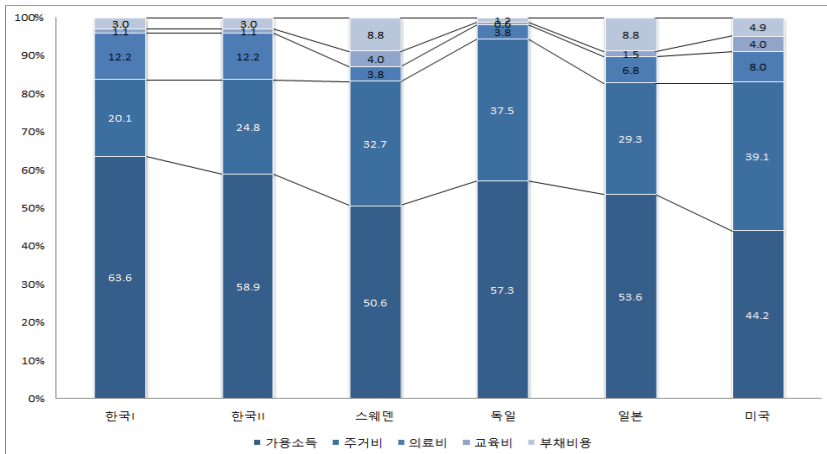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I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63.6	58.9	50.6	57.3	53.6	44.2
주거비	20.1	24.8	32.7	37.5	29.3	39.1
의료비	12.2	12.2	3.8	3.8	6.8	8.0
교육비	1.1	1.1	4.0	0.6	1.5	4.0
부채비용	3.0	3.0	8.8	1.2	8.8	4.9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16]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1분위)

(단위: %)



다음으로 분위별 가용소득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겠다. 먼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경우, 한국의 가구는 주거비 부담(20.1%)이 가장 가벼운 반면 의료비 부담(12.2%)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주거비의 지출 비중이 모든 국가에서 매우 높아,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은 가장 높았다. 한국의 1분위에서 의료비 부담이 유독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득 1분위에 노인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 1분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2분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주거비 부담 수준이 낮고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은 현상은 여전히 관찰됐고, 가용소득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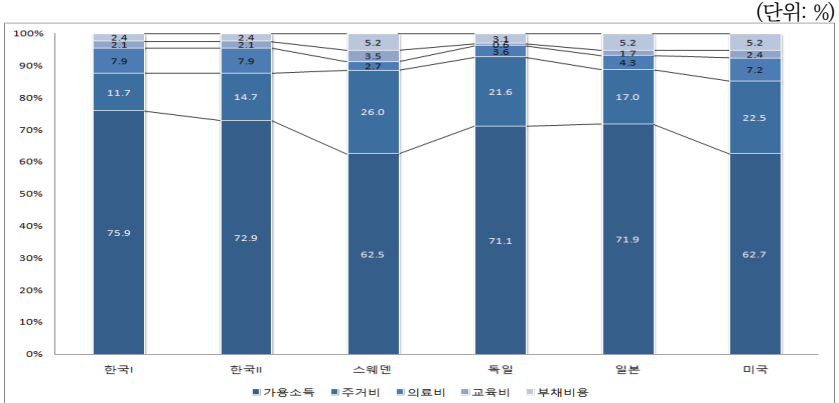
(표 9-1-13)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2분위)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75.9	72.9	68.0	71.1	71.9	62.7
주거비	11.7	14.7	18.5	21.6	17.0	22.5
의료비	7.9	7.9	2.7	3.6	4.3	7.2
교육비	2.1	2.1	2.8	0.6	1.7	2.4
부채비용	2.4	2.4	8.1	3.1	5.2	5.2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17) 주택 소유 유형별 가용소득 비율(2분위)



〈표 9-1-14〉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3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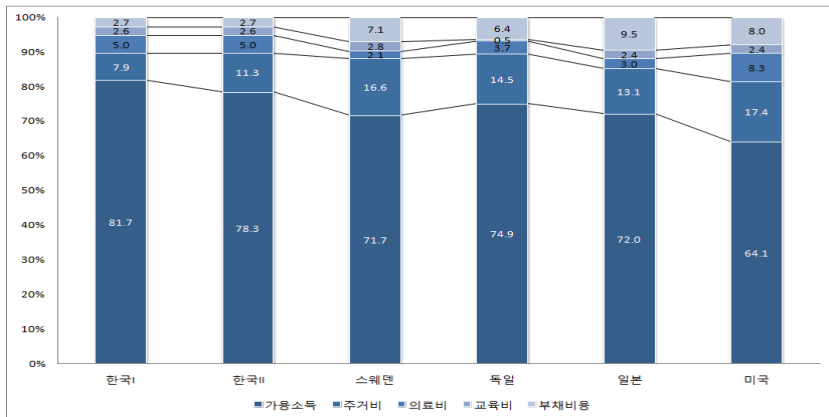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81.7	78.3	71.7	74.9	72.0	64.1
주거비	7.9	11.3	16.6	14.5	13.1	17.4
의료비	5.0	5.0	2.1	3.7	3.0	8.3
교육비	2.6	2.6	2.8	0.5	2.4	2.4
부채비용	2.7	2.7	7.1	6.4	9.5	8.0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18〕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3분위)

(단위: %)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는 한국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낮았고, 의료비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그 결과, 한국의 가용소득 비율은 다른 국가들과 격차를 두고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3분위 지표의 해석에서 한 가지 유의할 대목은 있다. 스웨덴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서 소득 4분위 통계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편의상 스웨덴의 4분위값을 다른 국가의 1, 2, 4, 5분위값과 비교하고, 스웨덴의 3분위값에 대해서는 2, 4분위 통계값을 평균한 수치를 넣었다.

〈표 9-1-15〉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4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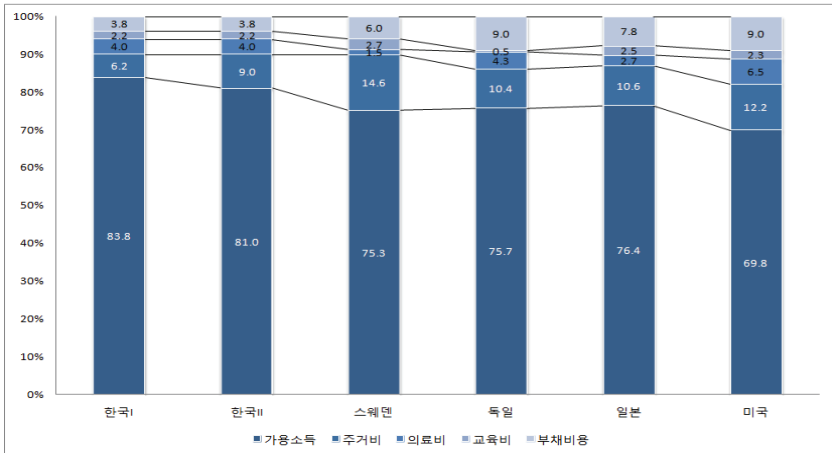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83.8	81.0	75.3	75.7	76.4	69.8
주거비	6.2	9.0	14.6	10.4	10.6	12.2
의료비	4.0	4.0	1.5	4.3	2.7	6.5
교육비	2.2	2.2	2.7	0.5	2.5	2.3
부채비용	3.8	3.8	6.0	9.0	7.8	9.0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19〕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4분위)

(단위: %)



<표 9-1-16>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5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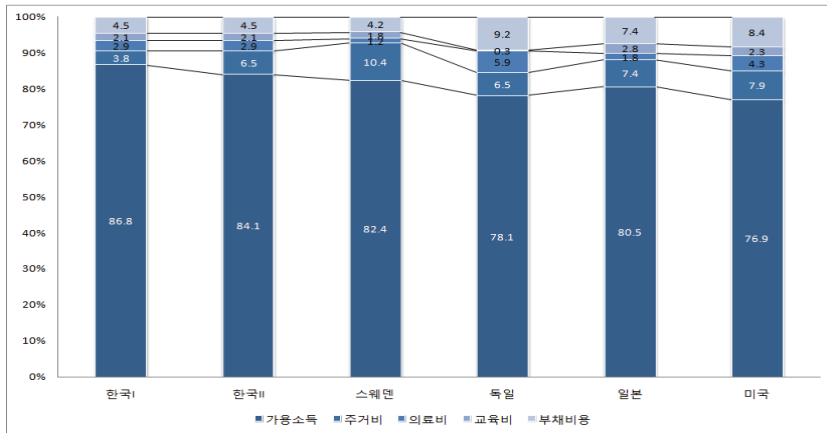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가용소득	86.8	84.1	82.4	78.1	80.5	76.9
주거비	3.8	6.5	10.4	6.5	7.4	7.9
의료비	2.9	2.9	1.2	5.9	1.8	4.3
교육비	2.1	2.1	1.8	0.3	2.8	2.3
부채비용	4.5	4.5	4.2	9.2	7.4	8.4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8장 내용 종합.

[그림 9-1-20] 분위별 가용소득 비율(5분위)

(단위: %)



상류층에 해당하는 4, 5분위에서도 한국의 가용소득 비율은 높게 유지됐다.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에서도 전세의 월세 환산액을 반영하면 주거비가 2.7%포인트 상승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소득 1분위(4.7%포인트 상승)나 2분위(3.0%포인트 상승)에서 관찰되는 주거비 부담 비율 상승폭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 부분 역시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소득 상위 20% 가구에서도 전세 세입자 수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구 소유의 주택을 임대해서 전세금을 받거나 월세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복지패

널 방식의 조사가 이러한 주거 형태에서 유래되는 주거 관련 부채비용을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한국의 가용소득 비율이 상승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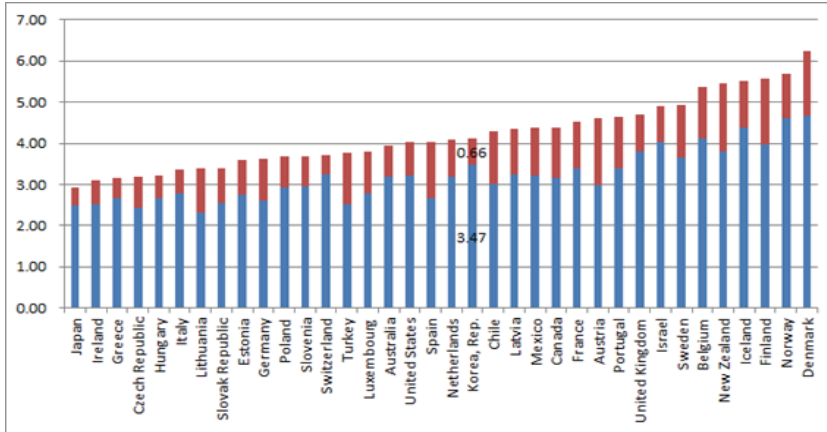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네 나라와 비교해 보았다. 지금부터는 OECD 전체 회원국들과 견줘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상대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물론 OECD 국가들의 가구 단위 가용소득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OECD 국가들과의 비교는 각 국가의 총량을 수평 비교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의료비의 경우 OECD 국가들의 개인부담 총액 비율(개인부담 총액/GDP)을 나라별로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주거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OECD 자료에서 나타난 회원국들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및 주거 관련 부채의 국가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국가의 관련 사회정책이 가계의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테면, 치료 시점의 무상의료를 원칙으로 하는 영국의 경우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지출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이번 장에서 살펴보는 국가 단위의 자료들은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국가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그림 9-2-1]을 보면, 한국과 OECD 회원국들이 교육을 위해 공적으로 투입하는 재원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파란 부분은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수준(pre-primary education to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에서 지출하는 비율이고, 빨간 부분은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에 지출하는 수준이다.

[그림 9-2-1] 한국과 OECD 회원국 교육비의 공적 지출 수준

(GDP 대비,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stats.oecd.org, 2019. 8. 13.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그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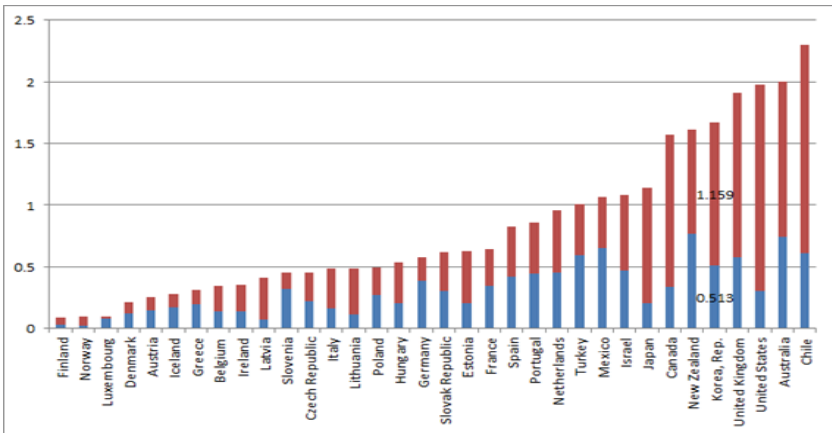
그림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지출하는 재정 투입 액수는 GDP 대비 3.47%로 OECD 평균인 3.20%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에 투자하는 공적 지출 수준은 GDP 대비 0.66%로 OECD 평균(1.0%)을 밑돌고 있다. 두 영역의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액수의 비율에서는 한국(4.13%)이 OECD 평균(4.20%)보다 약간 낮다. 앞서 비교 대상이 된 국가들의 경우 스웨덴(4.92%)만이 한국보다 더 많은 공적 자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독일(3.62%), 미국(4.02%), 일본(2.93%)은 교육에 대한 공적 자원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교육에 대한 공적인 투자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 분야에서 양질의 공적 인프라 및 서비스가 제공되면 가계에서 사적인 지출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림 9-2-2]는 OECD 자료가 제시하는 교육의 사적 지출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의 가계가 교육에 지출하는 액수는 GDP 대비 1.67%로, OECD 국가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이른바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되는 호주(2.00%), 미국(1.98%), 영국(1.91%)과 칠레(2.30%)다. 참고로, [그림 9-2-2]의 자료 역시 학생의 사교육을 제외한 수치다(OECD, 2019). 본 연구에서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국제 비교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교육이 필수재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적인 배경이 사교육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김현진, 2004), 하위 소득 가구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두어도 두 자녀 이하인 가구에 비해 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박종서, 2015). 물론 한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를 포함한다면, [그림 9-2-2]에서의 한국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9-2-2] 한국과 OECD 회원국 교육비의 사적 지출 수준

(GDP 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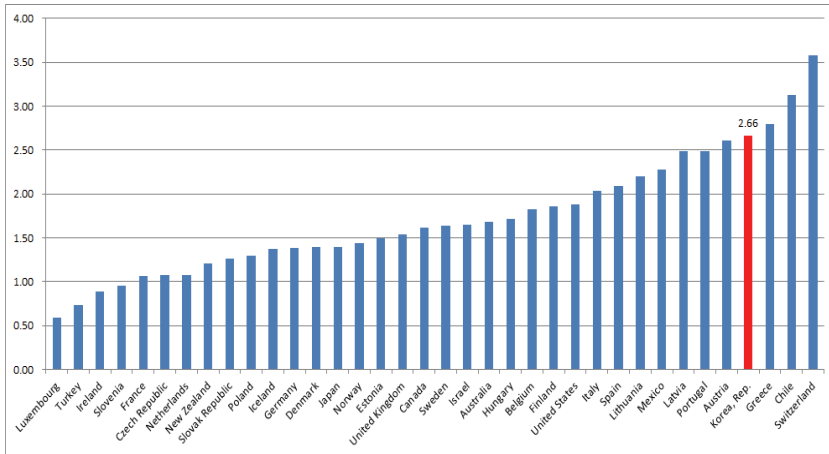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stats.oecd.org, 2019. 8. 13.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그림 작성.

[그림 9-2-2]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한국 가구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미국(1.98%)보다는 낮지만, 독일(0.58%), 일본(1.14%)보다는 높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자료는 OECD 자료에서는 누락됐다. 특히 한국은 대학교육에 쓰는 사적 지출(1.159%)이 OECD 국가에 견줘 현격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다른 OECD 국가보다 현격하게 높은 것이 한 원인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의 공적 교육 투자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가계의 교육 부담을 온전히 덜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9-2-2]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가구 지출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9-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유럽 국가의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액수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2-3] 가구 의료비



자료: OECD statistics (Out-of-pocket health spending, stats.oecd.org. 2019. 8. 13.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그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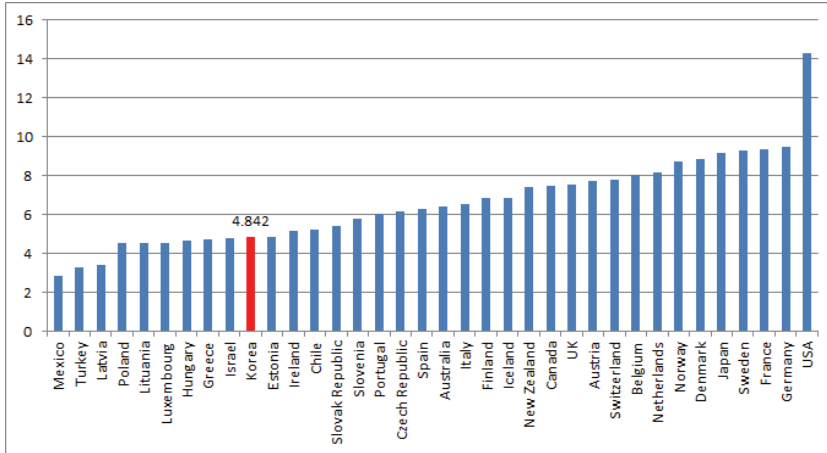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견줘 보면([그림 9-2-3] 참조), 한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 총액은 GDP 대비 2.66%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OECD 평균(1.73%)보다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스위스(3.57%), 칠레(3.13%), 그리스(2.80%) 세 나라다. 미국(1.88%), 스웨덴(1.64%), 일본(1.39%), 독일(1.39%) 등의 순서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낮았다.

한국에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체 의료비 가운데 공공이 조세 혹은 강제적 사회보험 형태로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은 GDP 대비 4.84%로 OECD 평균인 6.6%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9-2-4] 참조). 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이 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막지 못한 결과, 그 부담이 가계로 몰리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의 의료비 부담 비율은 각국의 2018년 기준 추정치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그림 9-2-5]를 보면, 한국의 가구가 짊어지는 주거비 부담 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는 주거비 부담 항목으로 임대료, 귀속임대료(imputed rentals for owner-occupied housing) 및 주거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를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비교 대상이 된 OECD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주거비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13.71%로, OECD 평균인 17.96%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대부분의 나라는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한국과 멕시코는 2016년,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는 각각 2018년과 2015년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그림 9-2-4] 공공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의 수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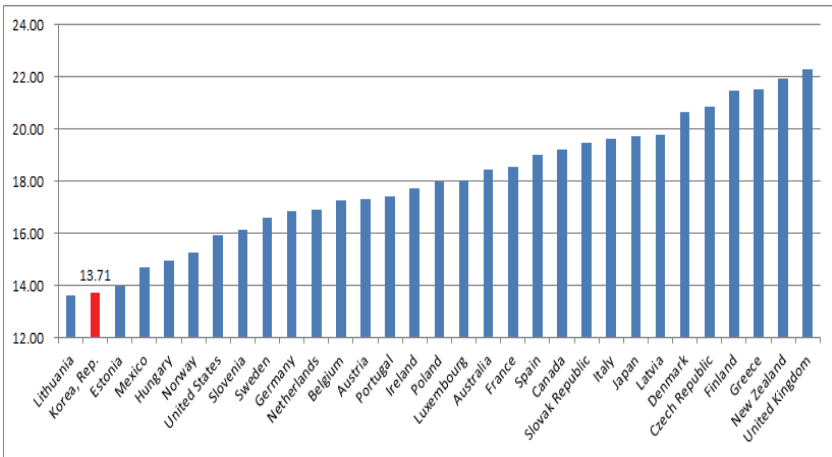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Public spending on health, stats.oecd.org. 2019. 8. 13.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그림 작성.

한국인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OECD Better Life Index도 다른 측면에서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비교했는데, 여기에서는 가구의 총조정가처분소득(gross adjusted disposable income) 대비 주거 관련 지출의 비율을 분석 및 비교했다. 한국은 15.2%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정해식 외, 2018). OECD 평균은 19.0%였다. 한국은 2007년 이후 해마다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가장 낮은 주거비 지출 부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주거비 지출 통계를 보면, 한국 가계의 주거비 지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가 월세의 수준을 낮췄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세제도가 없는 외국의 경우, 세입자들이 전세금만큼의 자산을

이용해서 저금 이자나 주식 투자 수익으로 얻을 수 있을 텐데, 한국의 세입자들은 그러한 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월세 부담을 덜어 낸다는 뜻이 된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어떤 근거로 한국의 자료를 뽑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OECD는 ‘국제 비교 요건에 맞춰 통계를 자체 재가공한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다(조선일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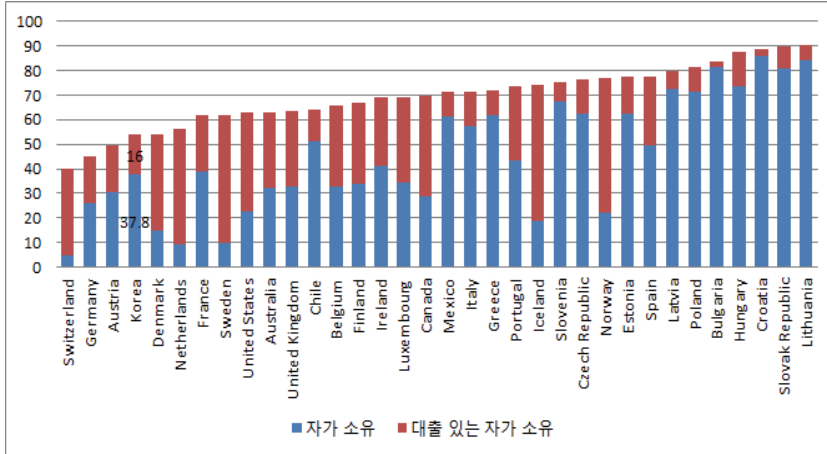
[그림 9-2-5] 주거비 지출



자료: OECD statistics (Housing expenditure, stats.oecd.org, 2019. 8. 13.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그림 작성.

[그림 9-2-6]은 국가별 자가 소유 비율을 나타낸다. 푸른색 기둥은 자가 소유 비율이고, 붉은색은 대출을 끼고 자가를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의 자가 소유 비율은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합해 53.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을 보면, 구 공산권 국가인 동유럽에서 자가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한국은 자가 소유 비율이 낮은 대신 광범위한 전세 혹은 반전세제도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9-2-6] 한국 및 OECD 회원국 자가 소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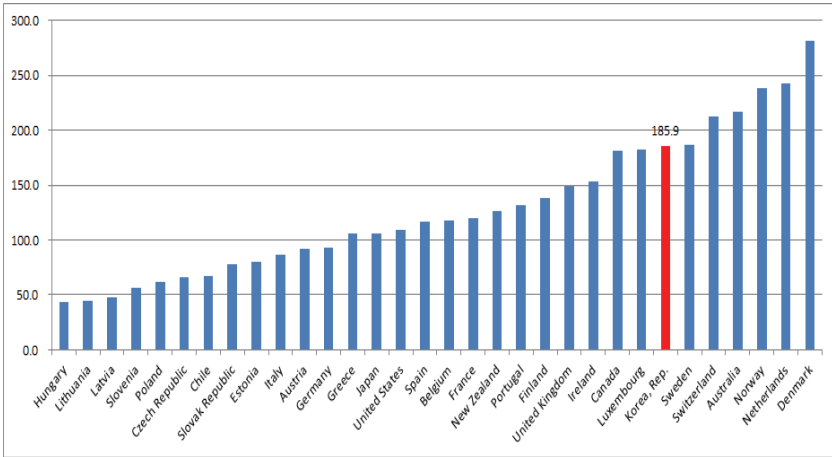


자료: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 2019. 8. 14.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그림 작성.

다음으로 OECD 회원국들의 가계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비교 대상이 된 32개 국가 가운데서 한국의 가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5.9%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 관련 부채의 원금 상환액 및 이자 상환액만을 통계에 포함한 반면, OECD 자료는 모든 유형의 가계부채를 포괄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OECD 자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신용대출까지도 가계부채에 포함했다. 따라서 [그림 9-2-7]의 가계부채 비율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가계부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 가운데 덴마크(281.2%), 네덜란드(242.8%), 노르웨이(238.5%), 스웨덴(186.7%) 등 북유럽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연금이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한국에서는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북유럽에서도 가계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덴마크의 사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Booth, 2014). 첫째, 덴마크 자유당이 2003년에 도입한 이자 상환 대출 제도로 많은 이들이 고액의 대출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 덴마크의 부동산 가격은 최고 1200%까지 치솟았다. 둘째, 덴마크 복지국가의 높은 연금 수준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그림 9-2-7]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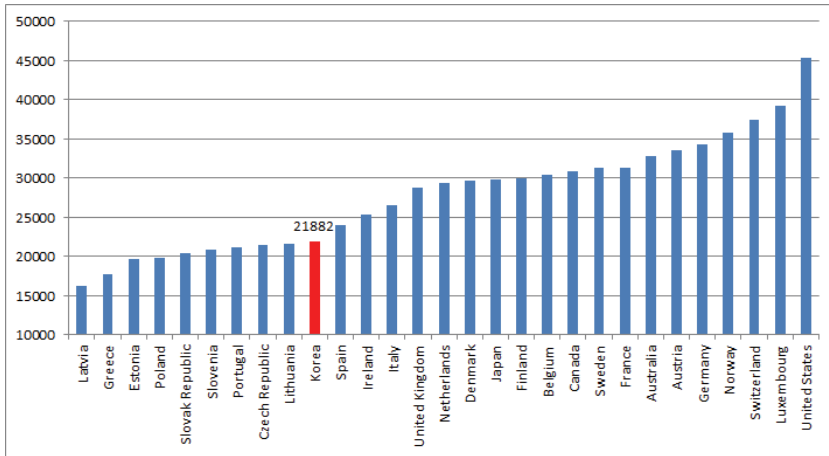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Household Debt, stats.oecd.org. 2019. 8. 13.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그림 작성.

OECD Better Life Index 자료에서 제시하는 순조정가처분소득(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기준으로 한국과 OECD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그림 9-2-8] 참조), 한국의 구매력기준(PPP) 1인당 순조정가처분소득은 2만 1882달러로 자료가 제시하는 29개 국가 가운데 10번째로 낮다. 여기서 순조정가처분소득의 개념은 국민계정의 정의에 따라 개인들의 총소득에서 소득과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과 사회보험기여금을 빼

고, 자본재의 감가상각분을 뺀 뒤, 가구가 정부로부터 현물 형태로 받는 사회적 급여 수준을 더한 액수에 해당한다(OECD, 2017). 조정가처분소득이 포획하려 하는 소득 범주가 일정한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가용소득 개념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된다. 첫째, OECD가 제시하는 순조정가처분소득은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이 보고서는 가구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OECD의 개념에서는 정부의 현물이전을 일종의 소득 증가분으로 파악해서 포함하는 대신 가구의 필수 항목인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제하지는 않는다. 반면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현물이전은 고려하지 않는 대신 가구의 필수 지출 항목은 통계에 포함한다.

[그림 9-2-8] 가구 순조정가처분소득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oecdbetterlifeindex.org/topics/income, 2019. 8. 14. 인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그림 작성.

10

한국 복지국가에 던지는 << 정책적 함의

이 보고서는 가장 먼저 소득주도성장의 등장 배경 및 개념을 살펴보고, 정책 기초의 한 축인 가구의 지출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가용소득 개념을 제안했다.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09~2017년 한국의 주거·의료·교육 분야의 핵심생계비 수준을 확인하고, 가처분소득에서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수준을 분석했다. 또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다른 복지국가 가운데 각각 자유주의형, 보수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으로 분류되는 미국, 독일, 스웨덴과 이웃 나라 일본의 핵심생계비 지출 및 가용소득 수준을 분석했다.

일단 한국 복지패널 분석을 통해 국내의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인 가구의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비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비 부담 수준은 2014년까지는 청년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아동 가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주택 관련 부채비용은 청년 및 아동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가용소득 수준은 노인 가구가 가장 낮았고, 청년 가구가 가장 높았다. 노인 가구의 가용소득은 비노인 가구의 절반 수준, 노인 단독 가구는 비노인 가구 가용소득의 30%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단독 가구는 주거비 절감 방안을, 노인 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가구 유형별로는 청년 단독 가구의 주거비 지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했으나 의료비 지출은 낮았다. 청년 가구 유형 가

운데는 청년 부부+자녀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필수 지출(교육비 및 부채비용)이 다른 청년 가구 유형보다 많기 때문이다. 2009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청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상승하였으나, 가용소득의 금액과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핵심생계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주택 소유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자가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절대금액이 임차 가구보다 높았다. 임차 가구는 주거비 지출이 많고, 자가 가구는 부채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거 관련 지출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노인 자가 가구와 노인 임차 가구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다. 노인 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 자가 가구의 주택 관련 부채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인 1, 2분위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와 의료비의 비율이 높았고, 4, 5분위는 주택 관련 부채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분위의 경우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20%를 상회했다. 1분위의 전체 평균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RIR)의 기준인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20%를 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분위에서는 의료비 부담 역시 가장 높은데, 노인 가구가 지난 10여 년 사이 하위 20%에 대거 유입된 현상에서 일정 부분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저소득계층을 위해 필수적인 생계를 위한 비용 즉, 주거비 및 의료비 지출의 보전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 가용소득의 국제 비교에서는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 가구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담이 높은 고비용 사회라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였다. 한국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은 거의 모든 가구 유형 및 분위에서 비교 대상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가구의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한 액수를 주거비로 보태도 한국의 가용소득 비

율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의 주거비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주거비 부담은 7.1%(전세금의 월세 환산액을 더해도 10.1%)로 스웨덴(15.7%), 독일(13.5%), 일본(12.6%), 미국(13.6%)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거 관련 부채비용, 즉 매달 원금 및 이자 상환액도 필수 생계비로 간주하여 분석했는데, 그 비율 역시 한국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국(3.7%)은 스웨덴(4.7%), 독일(7.2%), 일본(7.8%), 미국(8.0%)에 견줘 거의 절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낮은 주거비 부담 수준은 높은 가용소득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주거비와 관련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 국제 비교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OECD(2019a)의 Better Life Index에서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10가지 지표 가운데 하나로 '주거'를 제시하는데,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주거 여건이 아주 좋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OECD(2019a)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주거비는 총조정가처분소득(gross adjusted disposable income) 대비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주거비 부담이 총조정가처분소득의 26%인 영국이나 뉴질랜드와 견주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0%였다. 물론 고시촌이나 쪽방처럼 한국의 주거의 질이 낮은 점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OECD(2019a)의 통계는 이러한 통념과도 다소 상반된다. OECD(2019a)의 Better Life Index에서는 주거의 질도 보는데, 1인당 방의 수에서 한국은 1.5개로 OECD 평균(1.8개)보다는 낮지만, 비교 대상이 된 40개 국가 가운데서는 23번째로 중간 수준이었다. 또 주거의 질을 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수세식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거주 공간의 비율은 한국이 97.5%로 OECD 평균(95.6%)보다 높았다. OECD 국가별

순위로는 26번째로 다소 낮았다. OECD(2019a)는 주거 관련 변수 세 가지를 종합한 순위에서 한국을 다섯 번째로 높게 평가했다.

OECD(2019a)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매우 낮게 나오는 점을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대략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 OECD(2019a)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주거비 환산에서 반영했는지 불분명하다. OECD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환산한 액수를 보태면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3%포인트 늘어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전세의 월세 환산액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주거비 부담 수준은 여전히 낮다. OECD(2019a)의 통계에 전세의 월세 환산액을 다소 거칠게 대입하자면, 한국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15%에서 18%로 상승하는데, 여전히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둘째, 한국의 주택가격은 선진국 중에서는 중위권 수준에 속하며(이창무, 김현아, 조만, 2012), 2010년 이후 다른 복지국가들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컸던 점에 견주면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OECD, 2019b). 이창무 외(2012)에 따르면, 한 나라의 주택 가격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PIR 수준은 2010년 4.4로 산정돼 미국(3.5)이나 캐나다(3.4)보다는 높지만, 호주(6.1)나 영국(5.2)보다는 낮다. 한국의 수도권만 놓고 보면, PIR은 5.9로, 미국 뉴욕 및 주변 지역(6.1), 호주 시드니 및 주변 지역(9.6), 영국 런던 및 주변 지역(7.2)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물론 PIR과 같은 주택 가격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박종상, 2014), 이와 같은 지표는 참고용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또, OECD(2019b)가 각 국가의 2010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2000년 110.6에서 2018년 95.2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96.9에서 106.0으로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 됐던 스웨덴의 경우 같은 기간 62.4에서 105.3으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105.8 → 107.4) 역시 비율이 상승했고, 독일(113.4 → 112.1)과 일본(132.2 → 101.5)은 한국처럼 비율이 줄었다. OECD(2019b)의 기준대로라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라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임대료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해석도 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임대료 대비 집값(PRR)을 보면, 서울이 74.7로 런던(35.1), 뉴욕(19.4), 도쿄(40.9), 싱가포르(43.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NH 투자증권, 2019; 한겨레, 2019 재인용). 이와 같은 통계를 뒤집어 보면, 집값이 일정하다고 할 때 한국에서 임대료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보고서에서도 한국 전세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임대료의 직접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전기료 등의 공과금은 한국이 상당히 낮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2017년 기준으로 kWh당 8.47펜스(약 125원)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캐나다(8.46펜스)와 비슷한 수준이다(연합뉴스, 2018). 반면, 독일의 전기요금은 kWh당 26.68펜스로 한국의 세 배가 넘었다. 수도요금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OECD, 2013). 1m³당 상수도요금은 OECD 회원국의 주요 도시 중에서 한국의 대전이 가장 싼 0.66달러였고, 한국의 다섯 개 주요 도시가 1달러 미만으로 나왔다. 이 보고서의 비교 대상이 된 국가의 수도별 수도요금을 보면, 스톡홀름 2.08달러, 독일 전국 표준 6.30달러, 일본 도쿄 2.47달러, 미국 워싱

턴 DC 2.48달러였다.

그 밖에, 한국의 주된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매우 단순한 형태로 밀집돼 있는 것도 주거비 경감의 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아파트 한 동 단위로 위, 아래, 옆으로 붙은 아파트 구조상 난방비 및 관리비 절감의 원인이 되고, 아파트 등 단순한 구조로 인해 주택 수리비 등의 비용도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다른 국가에 견줘 주거비가 낮은 이유를 다소 길게 추정해 보았다. 한국에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경험을 한 결과, 한국의 주거비가 다른 국가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싼 점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거비 부담 수준이 낮은 결과, 가용소득 수준이 다른 복지국가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 가구 유형별, 분위별 핵심생계비 및 가용소득의 분석 결과는 여전히 한국의 사회정책에 적지 않은 과제를 던진다.

첫째, 한국은 다른 복지들과 견졌을 때,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다. 한국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처분소득 대비 4.7%로 비교 대상인 미국(5.9%) 다음으로 높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보장제도가 충분성에서 미흡하다는 의미다. 9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가구의 자기부담 의료비는 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공공이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한국에서 앞으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가 감당하는 의료비 부담은 점차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11.4%) 및 노인 부부 가구(11.1%)가 감당하는 의료비 부담 비율은 미국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노인 가구가 감당하는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수진, 2019). ‘재난’ 수준의 의료비 부담은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약 3%의 빈곤층을 제외하면 저분위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구주의 건강이 악화돼 수입원이 끊기는 가구는 병원비 부담뿐 아니라 소득 상실 때문에 생기는 생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및 상병수당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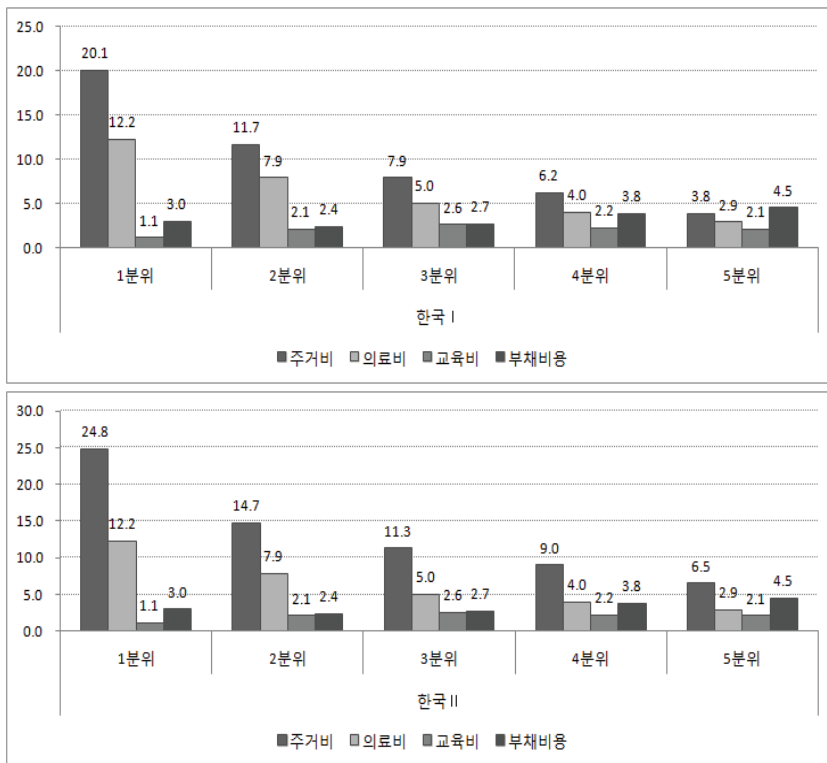
둘째, 한국은 가구의 교육비 부담 수준 역시 높다. 한국 가구의 교육비 부담 수준은 2.1%로 미국(2.4%)이나 일본(2.4%)보다는 낮지만, 스웨덴(0.3%)이나 독일(0.5%)보다는 현격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9장에서 확인한 바대로, 한국의 교육비 공적 지출은 OECD의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필수재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적인 배경이 사교육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됐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이 대부분의 분위에 걸쳐 가계에 부담을 주는 점 또한 사실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공교육의 질 문제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분야의 공적 지출 확대를 통한 가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노인 가구, 특히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가구 유형에서 가용소득 비율이 다른 복지국가보다 높았지만, 유일한 예외가 노인 단독 가구였다. 노인 단독 가구는 전세의 월세 환산액을 반영할 경우 가용소득 비율이 68%로,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참고로, 미국 노인 단독 가구의 가용소득 비율이 70.1%였다.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가구 유형에서 높은 생활 수준을 보였지만, 거의 유일한 예외가 노인 단독 가구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 단독 가구의 주거비,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저소득층의 가용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1분위는 다른 복지국가에 1분위에 견줘 상대적으로 가용소득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이들의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소득의 분배 및 재분배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10-1]에서는 소득분위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제시했다. 다른 지출 항목보다 의료비와 주거비의 지출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매우 높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0-1] 분위별 주거비·의료비·교육비·부채비용 지출 비율(상: 한국, 하: 한국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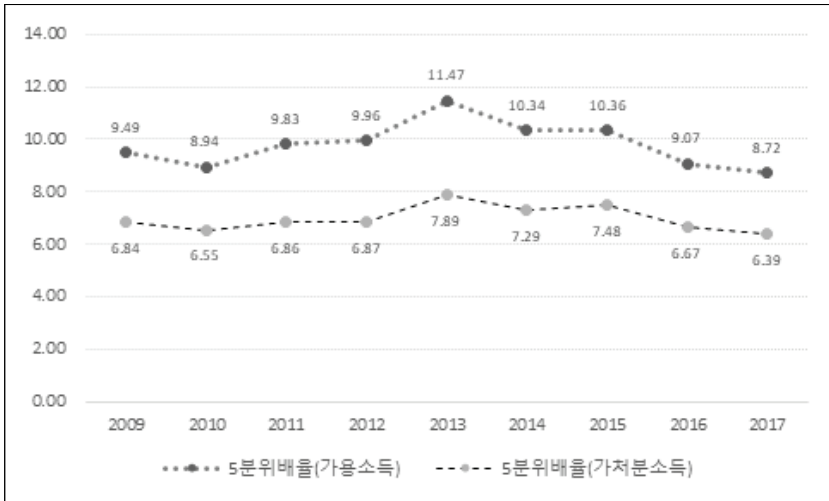


부채비용은 오히려 고소득층으로 이동할수록 부담이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부담은 중산층인 3분위에서 가장 높았다. 의료비와 주거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계층과 교육비 부담이 큰 중산층 이하 계층을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국의 분배 수준을 확인할 때, 흔히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배 지표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가구의 핵심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수준, 즉 가용소득 역시 정책적인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가계지출 경감’의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가용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림 10-2]는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 5분위 배율의 2009~2017년 변화 양상을 제시했다.

[그림 10-2] 가처분소득 및 가용소득 5분위 배율

(단위: 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한국복지패널(5차~13차), 원자료.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만 보면 2013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꾸준히 개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용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보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용소득 지표는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가 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듯하다.

아울러 이 연구의 한계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밝히는 한계들은 가용소득 개념을 둘러싼 추가적인 연구 주제가 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별 가용소득을 국민계정상의 국민소득과 비교 분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복지국가의 가구 유형별, 분위별 가용소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복지패널과 같은 미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가구소득 수준이 국민계정상의 소득 수준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는 한계도 있었다. 또한 국가별로 국민계정에 나타나는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 등과 가용소득을 비교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도 밝혀 둔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둘째, 한국과 다른 복지국가의 가용소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핵심생계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수는 수평적인 비교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음을 밝혀 둔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국가별로 제도가 다르고, 국가별 자료에서 다루는 변수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본 자료의 경우 공교육과 사교육비를 분리해서 집계하지 않고 두 가지 범주를 합해서 '교육비'로 집계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일본에 대해서는 공·사교육비 통계와 다른 국가의 공교육비 지출을 비교 분석하게 됐다. 이와 같은 한계는 해당 국가의 분석 내용을 다룬 장에도 밝혀 두었다.

셋째,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 관련 지출에서 사교육을 제외했다. 사교육

이 의료나 주거와 같이 생계를 위한 필수 생계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공동 연구진 모두가 동의했고, 관련 연구에서도 사교육비를 필수재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구의 사교육 비용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공교육 질이 향상된다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역시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넷째, 이 보고서에서는 가용소득을 가구 유형별, 분위별로 분석했으나 지역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집값 편차가 서울-지역, 서울의 강남-강북 사이에서 큰 점을 고려하면, 가용소득의 절대액수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역시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 보고서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측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결론 부분에서 간략하게 5분위 배율을 분석하는 것으로 같음했으나, 새로이 제안하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분배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가처분소득과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 지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테면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 주거 관련 부채비용 가운데 무엇이 분배 지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변수를 하나씩 빼면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연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이다.

여섯째, 이 보고서에서는 의료, 교육, 주거 및 주거 관련 부채비용을 가계의 핵심생계비로 간주하고 분석을 시도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식료품이나 교통, 통신 비용을 핵심생계비에서 누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서론에서 밝힌

바대로,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정책적인 개입의 여지가 많은 교육과 의료, 주거 부분을 중심으로 핵심생계비를 분석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가용소득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교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함의를 마련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을 위해서라도 가용소득의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제1장>

- 윤홍식 (2018)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사회정책. 25(2), 243-280.
- 이현주·강신욱·김현경·이병희·주상영·전지현 (2016), 저소득층 가구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2019)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조정가처분소득의 의미,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35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2003)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한국인구학 26(1). 79-113.
- 통계청 (2019) KOISIS,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http://kosis.kr/kosisP_dev/search/search.do에서 2019. 10. 24. 인출)

<제2장>

- 김태일 (2018)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사회정책, 25(3). 175-208.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8)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소득주도성장 바로알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9)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누리집 (http://www.ilg.go.kr/html/sub2_1.do에서 2019.10.31. 인출)
- 윤홍식 (2018)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사회정책. 25(2), 243-28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avoie, M. and Stockhammer, E. (2012). 임금주도 성장론: 개념, 이론 및 경제.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12월호. 3-14.

Lavoie, M. and Stockhammer, E. (2013a).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In Lavoie, M. and Stockhammer, E.(eds). Wage-led growth: An equitable strategy for economic recovery. 13-39. New York: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Lavoie, M. and Stockhammer, E. (2013b) Wage-led growth: An equitable strategy for economic recovery. New York: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제3장〉

오건호 (2009)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 이슈페이퍼 2009-05. 사회공공연구소.

오승연 (2015)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평가. KIRI 보험연구원. 리스크관리학회·보험연구원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

우천식, 조병구, 김태중, 김경근, 김영철, 김진영... 장수명 (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김서영, 홍경희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사회적 현물이전의 추정. 통계연구 23(1), 1-22.

통계청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통계정보 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2018)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유형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은행 (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한국은행

Dolnicar, S., Crouch, G. I., Devinney, T., Huybers, T., Louviere, J. J., & Oppewal, H. (2008). Tourism and discretionary income allocation. Heterogeneity among households. *Tourism Management*, 29(1), 44-52.

Hoeller, P, Joumard, I, Bloch, D., Pisu M. (2012). "Less Income

- Inequality and More Growth - Are They Compatible? Part 1. mapping income inequality across the OECD,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924. OECD Publishing
- ILO(2003).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tatistics, Report II of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ILO. s
- Kiander, J., Sauramo, P., & Tanninen, H. (2011). Finnish incomes policy as corporatist political exchang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the social wage.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17(4), 515-531.
- Linden, F., Green, G.W. Jr., Coder, J.F. (1988). A Marketer's Guide to Discretionary Income. Consumer Research Center, The Conference Board & US. Bureau of the Census.
- Maniatis, T. (2003). The net social wage in greece 1958-95.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17(4), 377-398.
- OECD (2019) OECD Better Life Index, 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income
- Smeeding, T. M. (2002). Globalization, Inequality, and the Rich Countries of the G-20: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LIS). Center for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8).
- Smeeding, T. M., & Sandstrom, S. (2005). Poverty and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A cross-national view of low income older women (No. 398). LIS Working Paper Series.
- United Nations (2011)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Second Edition, New York and Geneva.

〈제4장〉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은행. 2018. 일본 가계의 경제구조 변화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18-13호.
한국은행. 2017. 일본의 연령대별 가계소비 동향 및 시사점. 동향분석.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김미숙, 윤종혁, 최수진, 구자역, 윤정현, 정광석. 2016. 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 연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김지영, 윤종혁, 정은하. 2017. 2017 해외교육동향-일본편.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네트워크
배준호, 김규관, 김명중, 문성현, 임현정, 선우덕, ... 최동원. 2018.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나남.
Panel Data Research Center at Keio University(2018). JHPS/KHPS 2017 raw data.
총무성 가계조사.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총무성 가계조사 홈페이지 <https://www.e-stat.go.jp/>에서 2019. 10. 21. 추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2006~2017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8. 2018(13차)한국복지패널 조사표(조사 시점 2017년)

〈제5장〉

- 고제현·방송희 (2015) 해외 주택금융 사례연구 :독일, 미국, 일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권현주 (2016).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미국의 주거정책과 서비스. 한국주거학회지, 11(2), 19-23
김미숙, 윤종혁, 최수진, 구자역, (2016). 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 연구.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김수진(2018) 제 13장 보건의료제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남
- 김선웅, 2006.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 국토(298): 102 - 111.
- 미주한국일보(2019). 천정부지 치솟는 의료비, 기업도 직원도 운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929/1271555>.
 2019.9.30. 인출
- 신한나(2018) 미국과 호주의 민간의료보험제도와 운영현황 및 관리정책. 정책동향. 12(1):61-75
- 이재연,(2011) 주택금융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정책제안. 부동산 포커스 40:25-30
- 이준서, (2017).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법과 정책연구 17(1):29-61
- 정익중(2018) 제16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남.
- 정지아(2017). 트럼프시대 미국의료보험의 개편과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1):19-26.
- 진미윤(2017). 미국 주택바우처 전달체계의 최근 개편 논의와 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3:39-52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19). United States Federal Rental Assistance Fact Sheet 1. <https://www.cbpp.org/> 2019.9.2. 인출.
- Duffy, (2011). 2007 PSID Income and age Imputation Methodology. <https://psidonline.isr.umich.edu>. 2019.05.21. 인출.
- L. Grieger, S. Danziger, and R. Schoeni. (2009). Accurately measuring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using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4(2-3):105-117.
- Mattingly, Marybeth J., Schaefer, Andrew. and Carson, Jessica

- A.(2016). Child Care Costs Exceed 10 Percent of Family Income for One in Four Families. CARSEY RESEARCH National Issue Brief #109.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19a). PSID Main Interview User Manual:Release 2019. <https://psidonline.isr.umich.edu>. 2019.05.21. 인출.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19b). PSID income compared to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https://psidonline.isr.umich.edu>. 2019.05.21. 인출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19c). PSID expenditures compared to th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 <https://psidonline.isr.umich.edu>. 2019.05.21. 인출.
- McKernan, Signe-Mary and Ratcliffe, Caroline. (2002). Transition Events in the Dynamics of Poverty, The Urban Institute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9). <https://www.nber.org/taxsim/>
- OECD(2017a) Health at a Glance 2017.
- OECD(2017b)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 Olsen, E. and Zabel , J.(2014). United States Housing Policy in Handbook of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http://real.wharton.upenn.edu/~duranton/Duranton_Papers/Handbook/United_States_housing_policies.pdf
- Urban Institute,(2018). The Case for More , Not Less: Shortfalls in Federal Housing Assistance and Gaps in Evidence for Proposed Policy Changes. https://www.urban.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95616/case_for_more_not_less.pdf 2019.09.18. 인출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2019),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2017 Public use dataset. <https://simba.isr.umich.edu>. 2019. 03.20. 인출.
- OECD, (2018).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제6장〉

- 김미숙, 윤종혁, 최수진, 구자역, 윤정현, 정광석(2016), 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 연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김성룡(2019). 외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시설의 특징-독일, 싱가포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시설논문지, 26(3), 43-50.
- 김영미(2017). 독일의 건강보험체제와 통일 이후의 제도 변화. 사회보장법학, 6(2), 67-102.
- 송다영·박은정(2019).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4), 93-135.
- 이신용(2018).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정용택 외.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71-704.
- 이용갑. (2018). “의료보장제도”. 정용택 외.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9-541.
- 조상식(2010). ‘볼로냐 프로세스’와 독일 고등교육개혁. 교육의 이론과 실천. 15(3). 193-215.
- Becker, R.(2014). Entwicklung des deutschen Bildungssystems im Überblick.<https://www.bpb.de/gesellschaft/bildung/zukunft-bildung/194145/ueberblick?p=all> 2019. 6. 5. 인출.
- BMAS(2019). Soziale Sicherung im Überblick 2019. Bonn: BMAS.
- BMBF(2019). Das BAföG: Starke Förderung für Studierende, Schülerinnen und Schüler. https://www.xn--bafg-7qa.de/_media/190805_BMBF_BAfoeG_Pocketflyer_DIN-A6_bf.pdf 2019. 6. 5. 인출.
- Deutscher Bundestag(1994). Gesetzentwurf Entwurf eines Gesetzes zur

- Förderung des Wohnungsbaues (Wohnungsbauförderungsgesetz 1994 – WoBauFördG 1994) Drucksache 12/6616 <http://dipbt.bundestag.de/doc/btd/12/066/1206616.pdf> 2019. 6. 6. 인출.
- Egner, B.(2014). Wohnungspolitik seit 1945.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64(20-21), 13-19.
- Feld, L. P., Haucap, J., Wieland, V., & Wigger, B. U.(2013). Bildungsfinanzierung neu gestalten(No.56). Kronberger Kreis-Studien, Stiftung Marktwirtschaft.
- Forschungsdatenzentren der statistischen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2019). Metadatenreport. Teil II: Produktspezifische Informationen zur Nutzung der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 2013, DOI: 10.21242/63221.2013.00.04. 1.1.0 Wiesbaden 2019. 2019. 4. 29. 인출.
- Gerlinger, T.(2018). Baustelle Gesundheitssystem.Aktuelle Herausforderungen in derGesundheitspolitik. bdp. <http://www.bpb.de/apuz/270312/baustelle-gesundheitssystem-aktuelle-herausforderungen-in-der-gesundheitspolitik-essay> 2019. 8. 10. 인출
- Grabka, M. M., & Goebel, J.(2018). Einkommensverteilung in Deutschland: Realeinkommen sind seit 1991 gestiegen, aber mehr Menschen beziehen Niedrigeinkommen. DIW-Wochenbericht, 85(21), 449-459.
- Kaltenbrunner, R., & Waltersbacher, M.(2014). Wohnsituation in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64(20-21), 3-12.
- Münder, J. (2017). Bedarfsdeckende Förderung und Betreuung für Grundschulkindern durch Schaffung eines Rechtsanspruchs. https://www.fruehe-chancen.de/fileadmin/PDF/Fruehe_Chancen/170821_Expertise_Muender_Langfassung_Final.pdf 2019. 6. 30. 인출

- OECD(2019c), Society at a Glance 2019.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soc_glance-2019-en.pdf?expires=1569371119&id=id&accname=guest&checksum=55C0287D126095548E2EA26E9A533D17 2019. 9. 9. 인출
- Rodenhäuser, D., Held, B., & Diefenbacher, H., (2018). NWI 2018: Konsum treibt die Entwicklung des nationalen Wohlfahrtsindex an. IMK Policy Brief. Juli 2018, Hans-Böckler-Stiftung, Institut für Makroökonomie und Konjunkturforschung (IMK), Düsseldorf. <http://nbn-resolving.de/urn:nbn:de:101:1-2018080111454198430356> 2019. 07.15 인출
- Schier, M. & Voigtländer, M.(2016). Soziale Wohnraumförderung auf dem Prüfstand, IW Trends Vierteljahresschrift zur empirischen Wirtschaftsforschung, 43(1), 21-35.
- Statistisches Bundesamt(2016). Einkommens- und Verbrauchsstichprobe-EVS 2013. Wiesbaden.

〈참고 사이트〉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Einkommen-Konsum-Lebensbedingungen/Einkommen-Einnahmen-Ausgaben/bruttoeinkommen.html> 2019. 8. 3. 인출.
-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Einkommen-Konsum-Lebensbedingungen/Einkommen-Einnahmen-Ausgaben/_inhalt.html 2019. 8. 3. 인출.
-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Einkommen-Konsum-Lebensbedingungen/Konsumausgaben-Lebenshaltungskosten/Tabellen/privater-konsum-d-lwr.html> 2019. 7. 4. 인출.
-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Einkommen-Konsum-Lebensbedingungen/Einkommen-Einnahmen-Ausgaben/bruttoeinkommen.html>

n-Konsum-Lebensbedingungen/Konsumausgaben-Lebenshaltungskosten/Tabellen/privater-konsum-d-EVS.html 2019. 7. 4. 인출.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8/09/PD18_328_223.html 2019. 9. 28. 인출.

독일 통계 연구 및 분석 플랫폼 Statista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55734/umfrage/wohneigentumsquoten-in-europa/>
<https://de.statista.com/infografik/12075/gesetzliche-und-private-krankenversicherung-in-deutschland/> 2019. 9. 15. 인출.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55734/umfrage/wohneigentumsquoten-in-europa/> 2019. 9. 22. 인출.
<https://de.statista.com/infografik/5737/baufinanzierung-in-deutschland/> 2019. 9. 29. 인출.

독일 의료보험기금 홈페이지

<https://www.krankenkassen.de/gesetzliche-krankenkassen/system-gesetzliche-krankenversicherung/sozialversicherung-rechengroessen-beitragsbemessungsgrenze-versicherungspflichtgrenze/rechengroessen-2019/> 2019. 9. 15. 인출.

독일 온라인 시사지

<https://www.maz-online.de/Nachrichten/Politik/Europavergleich-Wohnkosten-fuer-Geringverdiener-in-Deutschland-besonders-hoch> (Märkische Allgemeine, 2019년 3월 20일자). 2019. 6. 10. 인출.
https://www.focus.de/finanzen/altersvorsorge/arm-im-alter-viele-frauen-verdienen-zu-wenig-das-hat-drastische-folgen-fuer-ihre-rente_id_10826742.html (Focus Online, 2019년 6월 14일자).

2019. 9. 29. 인출.

<https://www.spiegel.de/wirtschaft/immobilien-warum-wohnungen-und-haeuser-so-teuer-sind-a-1189118.html> (Spiegel Online, 2018년 2월 6일자). 2019. 10. 1. 인출.

독일 연방 인구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L78-Alleinlebende-Alter-Geschlecht-ab-1991.html> 2019. 9. 29. 인출.

독일 건축자금건축계약 홈페이지

<https://bausparvertrag.com/> 2019. 9. 30. 인출.

<https://bausparvertrag.com/staatliche-foerderung/> 2019. 9. 30. 인출.

독일 연방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Topics/International_affairs/Articles/2019-06-07-social-in-equality-and-inclusive-growth.html 2019. 9. 9. 인출.

독일 연방정부 Gut Leben in Deutschland 사이트

<https://www.gut-leben-in-deutschland.de/static/LB/indicators/income/gini-coefficient-income/> 2019. 9. 20. 인출.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D%9A%8C%EC%84%B8>
2019. 8. 1. 인출.

<https://de.wikipedia.org/wiki/Solidarit%C3%A4tszuschlag> 2019. 6. 30.
인출.

〈제7장〉

Försäkringskassan (2019) Child allowance.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nar_barnet_ar_fott/barnbidrag/lut/p/z0/fYzLDoIwEAC_puctqNwJKD4OxpAo9tIUKaRKtmW7IX6-6Ad4m0kmAwoaUGhmNxxh2Hs24-F1ler0vi6Qq5Om8qUuZZ4dLcq236S5dQW0RjqD-R8vFPadJ5aAeHtm-GZofIEerycbgMbrZChnIzYaDpShk78mMnSUh0ZBuDaFlvVDvmYX8eus6MgOEV3X7AGdh2ls/ 2019. 10. 3. 인출

SCB (2018) Fastighetsbeståndet.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boende-byggande-och-bebyggelse/fastighe-tstaxeringar/fastighetstaxeringar/pong/tabell-och-diagram/fastighetsbestandet/> 2019. 10. 6. 인출

Skolverket (2019) Education for all - the Swedish Education System. <https://www.skolverket.se/download/18.6bfaca41169863e6a653b46/1553956926501/pdf685.pdf> 2019.10.3. 인출

Swedish Institute (2019) Preschool - A place to grow. <https://sweden.se/society/play-is-key-in-preschool/> 2019. 10. 3. 인출

Swedish Institute (2018) Healthcare in Sweden. <https://sweden.se/society/health-care-in-sweden/> 2019. 10. 3. 인출

〈제8장〉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2011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

교육부. (2018).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교육부. (2019)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2019.09.24. 보도자료

김미곤, 강혜규, 고제이, 김태완, 남찬섭, 노대명, ... 최효진. (2018).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주)나남출판.

보건복지부. (2017). 2016 보건복지백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7). 한국의 사회동향 2017.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2011). 2011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 KOISIS,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각 연도, 2019. 10. 24. 다운로드.
- KOISIS, 가계동향조사.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각 연도, 2019. 10. 24. 다운로드.
- KOISIS, 인구총조사. 가구주의 연령별/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2019. 10. 24. 다운로드.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제9장 제1절〉

- 윤주현 (2000) 전세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 한국감정원 (2019) 지역별 전월세 환산율. 한국감정원 누리집. 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21&autoExec=Y 2019.10.30. 인출
- Thevenon, O. (2018) Tackling child poverty in Korea.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19. Paris.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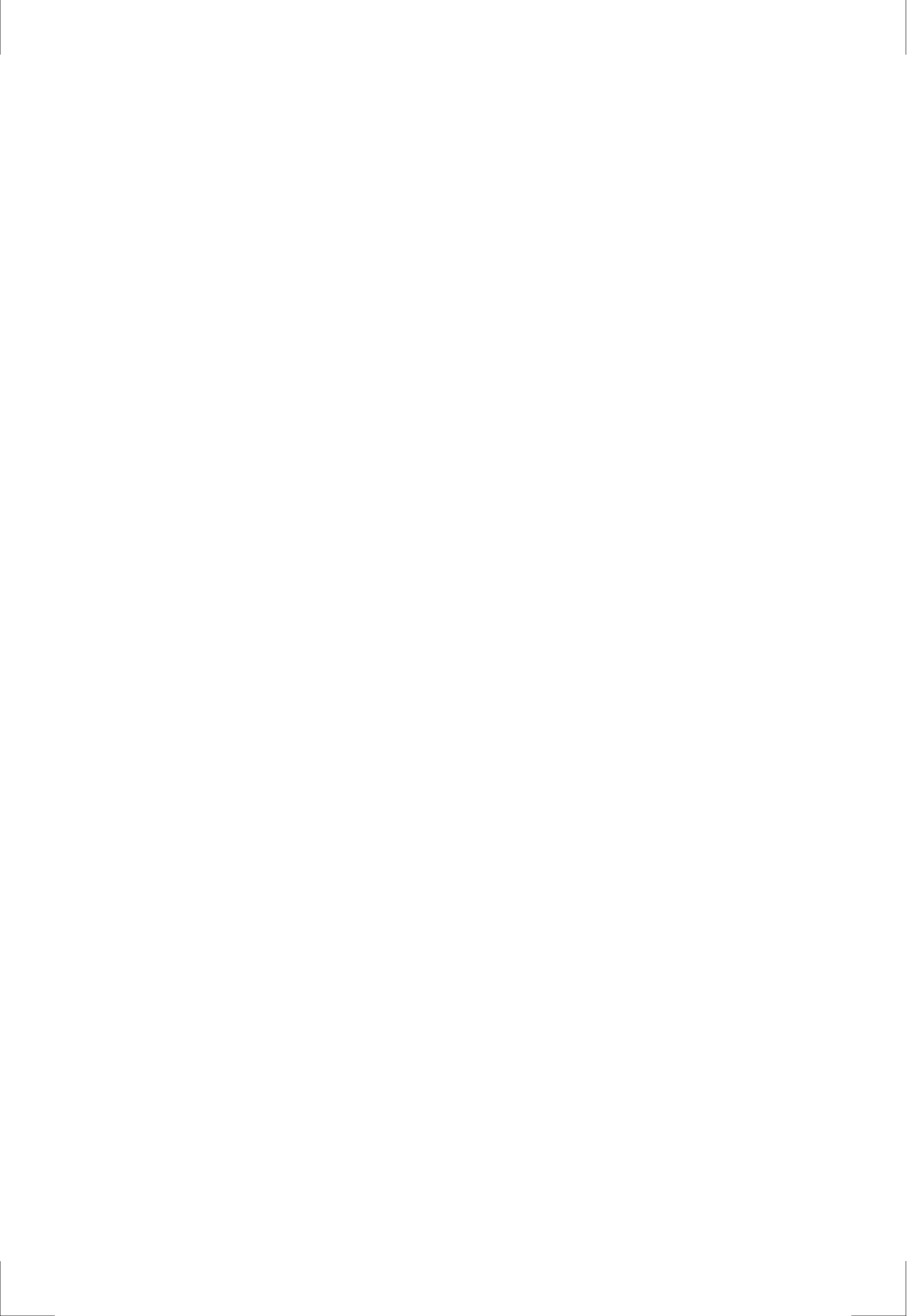
〈제9장 제2절〉

- 경향신문 (2015) 전세보증금 총액, 5년간 135조 급증,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1509132147135&sec_id=920202, 2019.9.3. 인출
- 김현진 (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박종서 (2015)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보건·복지 Issue & Focus. 293호.
- OECD (2019) OECD Data.

- data.oecd.org/edresource/public-spending-on-education.htm#indicator-chart. 2019.8.27. 인출
- 정해식, 강신욱, 김동진, 김성아 (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조선일보 (2017) '한국 주거비 부담 적지만... 좋은 집은 부족', 2017.12.13.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3/2017121300052.html
- OECD (2017) Better Life Index 2017: Definitions and metadata. http://www.oecd.org/statistics/OECD-Better-Life_Index_definitions_2017.pdf. 2019.9.3. 인출
- OECD (2019a) OECD statistics,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stats.oecd.org. 2019.8.13. 인출
- OECD (2019b) OECD statistics,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stats.oecd.org. 2019.8.13. 인출
- OECD (2019c) OECD statistics, Out-of-pocket health spending, stats.oecd.org. 2019.8.13. 인출
- OECD (2019d) OECD statistics, Public spending on health, stats.oecd.org. 2019.8.13. 인출
- OECD (2019e) OECD statistics, Housing expenditure, stats.oecd.org. 2019.8.13. 인출
- OECD (2019f) Affordable Housing Database, 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 2019.9.3. 인출
- OECD (2019g) OECD statistics, Household Debt, stats.oecd.org. 2019.8.13. 인출.
- OECD (2019h) OECD Better Life Index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oecdbetterlifeindex.org/topics/income, 2019.8.14. 인출

〈제10장〉

- 김수진 (2019)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함의와 추이. 보건복지포럼. 268. 74-85.
- 박종상 (2014) 주택가격 지표의 비판적 해석과 주택시장에의 시사점. 금융포커스. 23(13). 10-11.
- 연합뉴스 (2018) 가정용 전기료, OECD 회원국 중 최저... 산업용은 중간 수준.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6133200003>, 2019.9.3.
인출
- 이창무, 김현아, 조만 (2012)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의 산정방식 및 그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주택연구. 20(40). 5-25.
- 한겨레 (2019) 임대료 대비 집값, 서울이 '세계 1위', 2019.01.06. www.hani.co.kr/arti/PRINT/877174.html.
- OECD (2013) Environment at a Glance. Paris. OECD.
- OECD (2019a) OECD Better Life Index homepage.
www.oecdbetterlifeindex.org 2019.10.31. 인출
- OECD(2019b) OECD data homepage.
<https://data.oecd.org/price/housing-prices.htm>. 2019.10.31. 인출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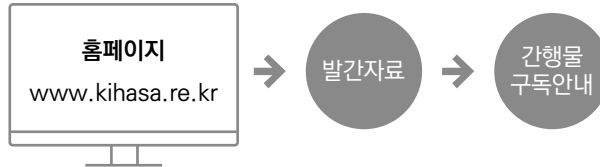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